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80-01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80-01

humanrights.go.kr KOR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12.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동 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원 :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동 제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정 다 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류 다 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성 선 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연구요약

Ⅰ. 서론

□ 연구배경

○ 장애인 체육 분야의 특성상 비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비해 접근권, 이동권, 차별 등의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체육의 인권과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체육선수를 대상으로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와 장애인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국내 장애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법·제도 및 관련 규정 현황과 성인지적 분석에 따른 문제점 파악

○ 해외의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성평등 및 인권기반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 학습권과 접근권, 건강/재생산권 및 폭력과 성폭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자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 등 수집·정리

○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Ⅱ. 해외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관련 성평등 정책방향과 시사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국제사회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혜택을 받는 객체에서 권리의 주체자로 점차 변화하였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운동 등을 거쳐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총회 결의, 유네스코 스포츠 헌장, 유럽스포츠헌장 등 국제인권 규범은 접근성을 포함한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 체육활동에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 철폐 및 처벌을 강조함

○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각 윤리강령을 통해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금하며 특히 성적 괴롭힘과 학대에 대해 정의하며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고발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해둠

○ 노르웨이는 스포츠 내 모든 형태의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미성년자 및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스포츠클럽에서는 직원의 성폭력 전과 여부가 기재된 신원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 정부에서는 피해자 및 스포츠클럽 등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대응에 관하여 분명한 언어로 작성된 명확한 조언과 단계별 권고안을 배포함

○ 네덜란드는 스포츠 성폭력 긴급콜센터를 운영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등에의 연결까지 지원함

□ 체육선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명확한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할 것임. 나아가 장애인 체육선수의 경우에는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삼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 등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Ⅲ. 국내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 괴롭힘, 인권침해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장애인 관련 괴롭힘의 용어나 장애인 학대 정의, 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장애인 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것은 장애인 인권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마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의 의미가 있음. 장애인 인권보장이 다른 분야에 비해 늦은 것을 감안하여 관련법의 적극적인 적용과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정부의 체육정책 시행은 장애인의 체육에 관한 인권보호와 생활체육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수립되고 있음. 조례, 정책의 효과는 정책의 수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가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집행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법 정신에 맞게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2007년 법 제정에 비해 10년 이상 지체, 스포츠 미투운동의 발화로 인한 규정개정으로 자발적인 개정동기 미약으로 규정개정의 실질적인 집행이 필요함. 또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마음놓고 드러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치 마련, 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조성 필요함

□ 주요 규정 현황과 문제점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주요규정과 운영규정의 개정사항 요약

- 권익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권익보호 전문 인력풀 구성과 관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은 각종 위원회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규정의 신설(제33조 제1항, '19.6.19 신설)과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성·선수 출신 위원을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신설하고 있음(제34조 제1항, '19.6.19 신설)
- 임원, 전임지도자, 국가대표 등의 결격사유 강화와 관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의 개정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인사규정'은 징계 사유로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음주 운전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제69조 제1항 제5호, '14.2.28. 신설, '15.3.25.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제70조의6 제1항, '11.12.30. 신설, '15.3.25. 개정)
- 선수·지도자 등록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와 관련하여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제7조 제1항, '19.6.19. 개정),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제12조 제5항, '19.6.19. 신설)

○ 향후 개선점

- 임원 등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전임지도자운영규정'은 전임지도자에 채용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한 조항 안에 성폭력, 성추행, 강간·강제추행으로 나누어 징계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 간 정리가 필요함
- 위원 해촉조항에 품위손상행위 이외에 성폭력의 명시가 필요함
- 징계사유에 성폭력 이외에 성희롱, 성매매 포함
- 징계요구에 성폭력 명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
- 성희롱·성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은 매뉴얼 명시와 교육을 통해 인식되도록 해야함

□ 주요 판례 분석 및 시사점

○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규정을 두고 있음. 장애인은 아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체육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판례는 찾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애인 체육선수가 권력관계에 있는 코치, 감독, 임원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음

○ 장애인 체육선수 관련 판결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의한 판례수집을 통해 가해자 처벌 및 범죄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화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임

Ⅳ. 장애인 체육선수 스포츠 환경 및 인권상황 조사·분석 결과

1. 실태조사

□ 학습권 실태

○ 전체의 70% 가까이는 대회출전이나 훈련 등으로 수업을 가끔 이상 빠지는 상황임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알 수 있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중·고등학생에서 이러한 경향이 빈번하게 발생함
- 정신적 장애보다는 신체적 장애, 중증보다는 경증에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이 확인됨
- 개인경기와 개인단체의 경우, 항상 빠지는 경우가 많아, 지도자와 1:1 혹은 개별적으로 경기를 해야 하는 경우 학교/학과 수업을 빠지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함을 유추할 수 있음

○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로 수업을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선수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물론,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이해와 필요성 및 개인의 의지 등과 이외 운동환경적 분위기(선수 선후배간의 위계적 관계 등)는 확인되지 못해 해석 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신적 장애인 경우, 그리고 장애등급이 중증인 경우, 부모의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상당수가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로 수업을 빠질 경우, 이에 대한 보충(보강)을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선생님이, 대학(원)생은 학과에서 대체방안으로 보충(이수)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과반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은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임
-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학습자료로 보충을 해주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으며 특히, 장애유형이 정신장애인 경우, 특히 중증에서는 부모가 이를 담당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장애인 체육선수들 중 대다수가 운동과 학업 병행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
-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인 경우, 그리고 장애등급은 경증에서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이동권

○ 장애인 체육선수들은 개인의 장애유형과 등급, 경기종목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럼에도 이용하는 장소는 '복지관·장애인 시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공공체육 시설'이 55.9%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 자가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자전거/오토바이, 도보 등과 같이 개인이 작동하거나 직접 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응답자(412명)의 31.3%는 '약간 불편하다', 19.2%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과반 정도(50.5%)가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이동수단 이용 시 불편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208명)에게 불편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콜택시 대기 시간이 길어서'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음. 특히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자 90명 중에 90%는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를 지적하였음

○ 훈련(운동)을 위해 이동할 때 동행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누구의 동행 없이 혼자 간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과반이 넘는 56.7%가 이에 응답하였음. 뒤이어 '동료(선수)' 12.5%,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11.8%, '배우자' 7.5%, '지인/친구' 5.4%, '가족' 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응답은 성별, 생애별(청년, 중장년)로 동일하였음

○ 훈련(운동)을 하기 위해 이동 시 활동지원사와 동행한다고 응답한 171명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부담금은 17.6만원이었음

- 장애유형 및 등급을 고려해서 보면, 신체적 장애이면서 경증인 경우 월 평균 부담금이 26만원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서 신체적 장애이면서 중증이 18.3만원이었고, 정신적 장애이면서 중증이 13만원,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은 10만원으로 확인됨

□ 접근권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6.9%(884명)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자는 성인(57.7%)이 중·고등학생(45.2%)보다, 신체적 장애 선수(58.3%)가 정신적 장애 선수(49.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884명에게, 불편함이 없었는지 조사한 결과 '다소 불편하다'는 응답이 28.6%,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도 7.1%로 확인됨

- 불편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33.5%가 응답한 '장애인용 운동용품, 기구, 장비가 부족해서'였음. 이어서 '편의시설(샤워실 등)이 부족해서' 25.3%, '비장애인이 많아서' 16.1%, '비용이 비싸서'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가 각 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58.9%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공공 체육시설 이용 경험은 신체적 장애 선수에서 60.0%로 나타나 정신적 장애 선수의 53.0%보다 소폭 높았음
- 경기종목으로 보면, '개인단체'가 69.2%로 가장 높았고, '단체종목' 59.4%, '기록종목'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54.6%, ‘개인경기’ 52.5% 순으로 나타남

- 공공 체육시설 이용 경험자 915명을 대상으로, 이용 과정에서 차별 경험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24.9%,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15.6%, ‘장애인이 출입하기 위한 시설(휠체어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장애인전용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29.1%,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눈치가 보여)로 나 스스로 시설이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 36.5%로 나타남

○ 민간 체육시설 이용 경험자는 전체 1,554명 중 55.9%인 869명으로 확인됨

-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 장애 등급은 경증에서 이용했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음
-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경험한 차별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21.4%,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17.0%, ‘장애인이 출입하기 위한 시설(휠체어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장애인전용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32.0%,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눈치가 보여)로 나 스스로 시설이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 36.2%로 조사되어 앞서 살펴본 공공 체육시설의 각 상황에서 차별 경험과 그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경향이 나타남

□ 건강권 및 재생산권

○ ‘나는 몸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지도자에게 휴식이나 휴가를 말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3.3%, ‘매우 그렇다’는 33.5%로, 긍정적인 응답이 86.8%이었음. 나머지 13.2%는 부정적인 응답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6.2%, ‘그렇지 않다’는 6.9%로 나타남

○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나는 생리로 몸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지도자에게 휴식이나 휴가를 말할 수 있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2%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포함)’고 응답하였음. 이와 같이 부정적 응답은 성인에서 19.3%로 중·고등학생 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나는 몸이 아파서 지도자에게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가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 7.7%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도자에게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가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 7.8%가 긍정하였음

○ ‘나는 생리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도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경기출전이나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1/4이 조금 넘는 28.9%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 위의 세 가지 경험은 중·고등학생에서의 경험이 모두 높았고 특히, 몸이 아픔에도 지도자에 의해 거부당한 경험은 ‘개인경기’에서, 그리고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숨긴 경험은 대체로 ‘단체종목’에서 좀 더 높았음

○ 본 조사에 참여한 여성 선수들 374명을 대상으로 먼저 ‘나는 경기출전이나 중요한 시합을 위해 피임약을 먹고 생리일을 미룬 적이 있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8%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중·고등학생이 15.2%로, 성인 11.4%보다 좀 더 높았음.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으로 보면, 신체적 장애이면서 중증에서의 응답이 12.9%로 가장 높았고 단체종목에서 23.1%로, 기록종목 12.6%, 개인단체 8.9%, 개인경기 6.8%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률이 높았음

□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및 관련 특성

○ 성폭력 피해 경험

- 각 유형별 피해 경험률은 언어적 성희롱 6.1%, 시각적 성희롱 6.0%, 육체적 성희롱(강제추행 및 강간/강간미수 포함) 5.7%, 기타 성희롱 2.6%, 디지털 성폭력 0.8%였음
- 1가지 유형 이상에서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전체 조사참여자 1,554명 중 9.2% (143명)를 차지함. 특히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13.6%로 남성 7.8%보다 유의미하게 높음
-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경험률은 중·고등학생이 성인보다, 정신적 장애가 신체적 장애보다, 경증이 중증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 ‘동료/후배 선수’가 40.6%로 가장 많고, ‘선배 선수’ 34.3%, ‘감독/코치’ 25.2%,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15.4%,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 4.9%, ‘활동지원사’와 ‘경기보조자’ 각각 4.2%, ‘시설관계자’ 3.5%, ‘기타’ 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언어적 성희롱은 선배 선수에서, 시각적 성희롱은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에서, 육체적 성희롱은 감독/코치에서, 기타 성희롱 및 디지털 성폭력은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성희롱·성폭력 발생 장소

- '훈련장'이 41.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기장' 28.0%, '식당, 회식자리' 18.2%, '합숙소' 14.7%, '전지훈련 숙소' 11.2%, '라커룸/샤워실' 7.7%, '이동차량' 7.0%, '운동부실' 6.3%, '지도자실(지도자 숙소 포함)' 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 대한 응답도 13.3%(19명)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단톡방/SNS, 복지관, 모텔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성희롱·성폭력 피해 처음 경험 시기

- 56.6%가 '대학교 혹은 성인일 때', 나머지 43.4%는 아동·청소년기에 관련 피해를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초등학생 때 경험했다는 응답이 9.8%이었는데, 남성이 10.9%로 여성 7.8%보다 좀 더 높았음
- 중·고등학생만 보면, '초등학생' 때 처음 경험했다는 응답이 40.0%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30.0%로 나타남

○ 현재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및 발생 빈도

- 143명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 현재 운동부 내에서도 관련 피해가 있다는 응답자는 17.5%(25명)였고, 특히 여성의 응답이 25.5%로 남성 13.0%보다 유의미하게 높음
- 현재 운동부 내 피해가 있다는 응답자 25명 중 48.0%(12명)가 '가끔 발생 한다', 44.0%(11명)는 '종종 발생 한다', 8.0%(2명)는 '자주 발생 한다'고 응답함

○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 및 무대응 이유

- '싫다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응답이 26.6%로 가장 많았고, 이보다는 소폭 낮은 25.9%가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모르는 척 했다', 14.7%는 '직접 말 하지는 않았지만 싫다는 불만 표시는 했다', 14.0%는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 들였다', 9.1%는 '어떤 말이나 행동(저항)도 하지 않았다', 6.3%는 '화를 내고 즉시 자리를 떠났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기서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다'와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모르는 척 했다'는 "무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의 35.0%에 해당됨
- 이러한 "무대응"은 정신적 장애이면서 중증인 경우 56.3%로 가장 높고, 신체적 장애이면서 경증에서는 18.8%로 가장 낮았음
- 무대응의 이유를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가 40.0%였고, 이어 22.0%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14.0%는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12.0%는 각

각 '그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남

○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도움 요청 및 2차 피해 경험

- 50.3%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18.9%는 '운동선수 동료에게 알렸다', 15.4%는 '가족 및 지인에게 알렸다', 9.1%는 각각 '운동부 내부 기관(성폭력전담기구, 상담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지원센터 등)에 신고했다'와 '지도자에게 알렸다', 4.2%는 '외부 기관(경찰서,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 신고했다'고 응답함
- 내·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신고)한 경우, 이 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보면 '운동부 내부 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중에서 '운동부 동료(선후배)가 알려 주었다'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률은 각각 16.7%였음. '지도자가 알려주었다'는 응답도 5.6%가 있었음
- 내·외부 기관 및 지도자/동료선수에게 도움(신고)을 요청한 경우, 67.3%는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함. 즉, 19.2%는 '가해자가 운동부 지도자 및 동료들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피해 상황을 다르게 알렸다', 13.5%는 '내·외부 기관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와 '가해자가 직접 혹은 동료들을 통해 나를 따돌리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11.5%는 '내·외부 기관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거나, 나의 사건 접수를 운동부 지도자와 동료에게 내 허락도 없이 알렸다'와 '동료들이 나의 사생활을 캐거나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와 같이 응답함
- 내·외부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1, 2순위)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음. 이보다는 낮은 33.3%는 '비밀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24.1%는 '운동부 내에 소문이 날까봐', 22.2%는 '가해자와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20.4%는 '장애로 인해 내·외부 기관에 혼자 갈 수 없는데, 동행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18.5%는 '내·외부 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16.7%는 '내부에 성희롱·성폭력 담당 부서가 없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및 들었던 경험

○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경험과 관련 행위자 및 성별

- 전체 중 6.6%(103명)가 목격하거나 들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행위자는 주로 '감독/코치', '선배 선수', '동료/후배 선수'로 각 응답률이 35.9%, 32.0%, 36.9%이었음
-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인 경우가 70.9%, '여성'인 경우는 17.5%, '잘 모름'이라는 응답도 18.4%로 나타남

○ 목격했거나 들었던 성희롱·성폭력 발생 장소 및 운동부 내 발생 정도

- 발생 장소는 '훈련장(46.6%)', '경기장(31.1%)', '합숙소(20.4%)', '회식자리(19.4%)', '전지훈련 숙소(12.6%)' 등의 순이었음
- 82.5%는 '가끔 발생 한다', 13.6%는 '종종 발생 한다', 3.9%는 '자주 발생 한다'고 응답함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인지 수준

○ 예방교육 참여율

- 운동 시작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8.8%로 낮은 수준이었음. 교육 참여율은 중·고등학생이 57.7%로 성인 48.1%보다 높았음

○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 및 도움 안 된 이유

-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2.5%, '약간 도움이 되었다'도 45.1%로, 대다수(87.6%)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 예방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42.9%로 가장 높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보다 낮은 27.4%의 피해율을 보임. 그러나 '약간 도움이 되었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각각 7.3%와 6.5%로 확연한 차이를 보임
-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62.8%는 '교육이 형식적이어서', 17.0%는 '교육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10.6%는 '교육 내용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함. 이외에도 '교육자(강사)의 강의 태도(발음, 속도, 자세 등)가 좋지 않아서(4.3%)', '교육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아서(2.1%)'도 있었음

○ 성폭력 인지 수준

-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던 그룹의 성폭력 인지 수준은 5점 만점 중 4.15점(±1.18)이었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의 성폭력 인지 수준은 4.03점(±1.25)으로, 이들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음

□ 장애인 운동부 성폭력 문제 근절 및 정책수요

○ 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 가능성

- 41.7%가 '약간 그렇다', 이보다 소폭 작지만 '매우 그렇다'는 강한 동의도 34.9%로 나타남. 부정적인 응답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가 15.4%, '전혀 그렇지 않다'는 8.0%로, 약 1/4인 23.4%는 동의를 하지 않았음

○ 운동부 내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

- '장애인 선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4이 조금 넘는 26.4%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선수들 간의 위계관계, 상명하복의 스포츠 문화 때문에'가 16.5%이었고, '비장애인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율이 낮기 때문에' 15.9%, '장애인 선수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3.2%, '운동(훈련)을 하다보면 신체 접촉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11.3%,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심층면접

□ 학습권 및 이동권, 운동시설 환경

○ 학습권

- 학기 중 경기출전으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학교에서 출석을 인정하나, 보충수업은 해주지 않아, 스스로 보충을 해야 하는 상황임
- 학교수업에 빠짐에 따른 상급학교나 대학진학에 어려움이 발생으로, 주중 경기출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

○ 이동권

- 장애 체육인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로, 중증이 아닌 이상 대기를 많이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고 함

○ 운동시설 환경

- 체육환경 공공과 민간 체육시설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이용이 차단되는 등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등 공공 체육시설은 대체로 오래전에 지어져 노후된 시설이 많고, 편의시설도 매우 부족하여, 장애 체육인이 운동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많다고 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생리권 및 건강권

○ 생리권

- 생리통이 심해 움직이는 것조차 어렵지만, 이 때문에 휴식이나 휴가를 요청할 수 없음. 이는 다분히 개인적인 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임. 오히려 관리하지 못한 개인적 문제로 취급됨

○ 건강권

- 훈련(운동) 중에 부딪쳐 멍이 들거나 심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지도자나 동료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혹시 경기출전을 못하게 될 수 있고, 경기출전이 어렵게 되거나, 더 좋은 조건의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임

□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

○ 신체적 폭력

- 구타, 얼차례 등 신체적 폭력은 심층면접자의 과반 정도가 경험을 하였으며, 단 1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당함을 외부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도자의 인맥이 너무 크기 때문임

○ 성폭력

- 심층면접자의 일부는 성희롱에서 성추행까지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모두 피해 당시 혹은 이후 내·외부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선수생활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음
- 한 사례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편견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주위 반응이 있었다고 함

□ 장애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장애 감수성

- 심층면접에 참여한 장애인 선수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은 지도자가 장애 감수성이 거의 없어, 선수가 건강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성폭력 예방교육

- 올해 상반기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온라인 선수등록 과정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수등록을 각 종목별 협회 사무국이나 보호자, 활동

보조인이 대신해 주고 있었음. 그래서 심층면접 참여자 대다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함

Ⅴ. 정책과제

□ 장애인 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체육회 관련 규정 개정 방향

○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여성과 장애인 선수 출신 40% 이상 포함
○ 신고체계 내 개인정보 내용 간소화 및 익명성 보장
○ 지역 전문 인력의 역할 구체화 및 내실성 제고
○ 성희롱·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등 다양한 성범죄 포괄

□ 장애인 체육인의 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향

○ 대리인에 의한 선수등록 금지 및 다양한 교육방식을 개발·적용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 장애인 체육선수 지도자에 대한 장애 감수성 및 인권 교육 의무화
○ 이천훈련원 및 지역 장애인체육회 내 인권상담 인력 보강 및 조사 절차의 독립성 강화
○ 여성폭력 지원시설 및 수사·법률 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피해 선수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연계 강화
○ 폭력 피해의 일상화와 피해 신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서 체육계의 위계구조 개선

□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경력 전환과 은퇴 준비 선수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 학습권 보장 강화
○ 경력전환 및 은퇴 (준비)선수에 대한 지원 강화

□ 체육시설 접근권 강화 및 차별 근절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및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시설 이용·접근의 장애요소 점검 및 장애친화적 시설환경 조성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접근의 장애요소로서 장애 체육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관련 시설 관리·감독 강화

○ 장애인 체육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동수단 지원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 5

Ⅱ. **해외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성평등 정책방향과 시사점** ····· 7

1. 유엔 등 국제기구 ····· 9
   가. 국제사회의 장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 ····· 9
   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체육선수 ····· 11
   다. 유네스코 ····· 15
   라. 유럽연합 ····· 16
2.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 17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 17
   나. 국제패럴림픽위원회 ····· 20
3. 국가 등 사례 ····· 24
   가. 노르웨이 ····· 24
   나. 네덜란드 ····· 26
4. 소결 ····· 27

Ⅲ. **국내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29

1.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31
   가. 법제도 현황 ····· 31
   나. 문제점 ····· 37
2. 주요 규정 현황과 문제점 ····· 38
   가. 주요 규정 현황 ····· 38

나. 문제점 ····· 53
3. 주요 판례 분석 및 시사점 ····· 56
4. 소결 ····· 57

Ⅳ. 장애인 체육선수 스포츠 환경 및 인권상황 조사·분석 결과 ····· 59

1. 연구 개요 ····· 61
가. 실태조사 ····· 61
나. 심층면접 ····· 68
2. 실태조사 결과 ····· 69
가. 응답자 특성 ····· 69
나. 학습권 실태 ····· 72
다. 이동권 및 접근권 ····· 85
라. 건강권 및 재생산권 ····· 107
마. 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 112
바. 성희롱·성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 138
사.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과 성폭력 인지 ····· 175
3. 심층면접 결과 ····· 187
가. 참여자 특성 ····· 187
나. 운동 시작 계기 및 의미 ····· 188
다. 학습권 및 이동권 ····· 189
라. 생리권 및 건강권 ····· 190
마. 신체적 폭력 피해와 대응 ····· 191
바. 성폭력 피해와 대응 ····· 193
사.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장애 감수성 교육 제공 ····· 194
아. 정책 수요 ····· 197
4. 소결 ····· 199

Ⅴ. 결론 및 정책과제 ····· 203

1. 결론 ····· 205
2. 정책과제 ····· 20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가. 장애인 선수 인권보장을 위한 체육회 관련 규정 개정 방향 ····· 207
나. 장애인 체육인의 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와 위계적 구조 개선 ····· 210
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경력 전환과 은퇴 준비 선수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 216
라. 체육시설 접근권 강화 및 차별 근절 ····· 217

■ **참고문헌** ····· 221

■ **부 록** ····· 225

〈부록 1〉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 227
〈부록 2〉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인용 ····· 240

표 목 차

〈표 Ⅳ-1〉 본 조사의 모집단 및 참여자(응답자) 현황 ····· 63
〈표 Ⅳ-2〉 조사 참여자의 장애유형 ····· 66
〈표 Ⅳ-3〉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설문지 구성 영역과 항목 ····· 67
〈표 Ⅳ-4〉 응답자 특성 ····· 71
〈표 Ⅳ-5〉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시 학교(학과)수업 빠지는 정도 ····· 75
〈표 Ⅳ-6〉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시 학교(학과)수업 빠지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 ···· 77
〈표 Ⅳ-7〉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로 학교(학과)수업 빠진 경우 보충 방법(중복응답) ····· 79
〈표 Ⅳ-8〉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로 학교(학과)수업 빠진 경우 학교(학과)의 보충에 대한 도움 정도 ····· 80
〈표 Ⅳ-9〉 운동과 학업 병행 필요도 ····· 81
〈표 Ⅳ-10〉 운동과 학업 병행 필요한 이유 ····· 83
〈표 Ⅳ-11〉 운동과 학업 병행 불필요한 이유 ····· 84
〈표 Ⅳ-12〉 주말·공휴일 운동 상황과 일상생활 부담 ····· 85
〈표 Ⅳ-13〉 주로 훈련(운동)하는 장소 ····· 87
〈표 Ⅳ-14〉 훈련(운동)장 갈 때 이용하는 이동수단 ····· 90
〈표 Ⅳ-15〉 이동수단 유형별 이용시 불편감 정도 ····· 91
〈표 Ⅳ-16〉 이동수단 이용시 불편한 이유 ····· 94
〈표 Ⅳ-17〉 훈련(운동)장 이동시 동행자 ····· 95
〈표 Ⅳ-18〉 활동지원사 고용에 따른 월 평균 본인부담금 ····· 96
〈표 Ⅳ-19〉 활동지원사 고용에 따른 본인 비용부담 정도 ····· 97
〈표 Ⅳ-20〉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 여부 ····· 98
〈표 Ⅳ-21〉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시 불편함 정도 ····· 99
〈표 Ⅳ-22〉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시 불편한 이유 ····· 101
〈표 Ⅳ-23〉 공공 체육시설 이용 여부 ····· 102
〈표 Ⅳ-24〉 공공 체육시설 이용시 차별 경험 ····· 104
〈표 Ⅳ-25〉 민간 체육시설 이용 여부 ····· 10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26〉 민간 체육시설 이용시 차별 경험 ····· 106
〈표 Ⅳ-27〉 몸이 아프거나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휴식·휴가 요구 가능 정도 ··· 108
〈표 Ⅳ-28〉 몸이 아프거나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거부당하거나 이를 숨긴 경험 ····· 109
〈표 Ⅳ-29〉 경기출전 및 중요한 시합으로 생리 및 임신을 미룬 경험 ····· 111
〈표 Ⅳ-30〉 훈련(운동) 과정에서의 체벌 및 지도자/선배에 대한 복종 인지 ····· 113
〈표 Ⅳ-31〉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 116
〈표 Ⅳ-32〉 폭력 피해 경험자 ····· 118
〈표 Ⅳ-33〉 폭력 행위자와의 관계(중복응답) ····· 121
〈표 Ⅳ-34〉 폭력 행위자의 성별(중복응답) ····· 122
〈표 Ⅳ-35〉 폭력 피해 발생 장소(중복응답) ····· 124
〈표 Ⅳ-36〉 폭력 피해 이후 주변 및 외부기관 도움 요청 여부 ····· 125
〈표 Ⅳ-37〉 폭력 피해 이후 도움 요청한 대상(중복응답) ····· 127
〈표 Ⅳ-38〉 폭력 피해 이후 가족과 주변인 및 내·외부 기관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128
〈표 Ⅳ-39〉 폭력 피해를 처음 경험한 시기 ····· 129
〈표 Ⅳ-40〉 현재 운동부 내 폭력 여부 ····· 130
〈표 Ⅳ-41〉 현재 운동부 내 폭력 발생 빈도 ····· 131
〈표 Ⅳ-42〉 동료 선수의 폭력 피해에 대해 듣거나 목격 경험 ····· 132
〈표 Ⅳ-43〉 동료 선수의 폭력 피해에 대해 듣거나 목격 경험(중복응답) ····· 133
〈표 Ⅳ-44〉 동료 선수에 대한 폭력 행위자의 성별(중복응답) ····· 135
〈표 Ⅳ-45〉 동료 선수에 대한 폭력의 발생 장소(중복응답) ····· 136
〈표 Ⅳ-46〉 동료 선수에 대한 폭력 발생 정도 ····· 137
〈표 Ⅳ-47〉 언어적 성희롱 경험 ····· 140
〈표 Ⅳ-48〉 시각적 성희롱 경험 ····· 142
〈표 Ⅳ-49〉 육체적 성희롱 경험 ····· 144
〈표 Ⅳ-50〉 기타 성희롱 경험 ····· 146
〈표 Ⅳ-51〉 불법촬영 피해 경험 ····· 147
〈표 Ⅳ-52〉 성희롱·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 ····· 150
〈표 Ⅳ-53〉 성폭력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중복응답) ····· 152
〈표 Ⅳ-54〉 성폭력 행위자 성별 ····· 154

〈표 Ⅳ-5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별 피해 경험률 ····· 155
〈표 Ⅳ-56〉 성희롱·성폭력 폭력 발생 장소 ····· 156
〈표 Ⅳ-57〉 성희롱·성폭력 폭력 피해 처음 경험 시기 ····· 157
〈표 Ⅳ-58〉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폭력 피해 경험 ····· 158
〈표 Ⅳ-59〉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폭력 피해 발생 정도 ····· 159
〈표 Ⅳ-60〉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 ····· 161
〈표 Ⅳ-61〉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하지 못한 이유 ····· 162
〈표 Ⅳ-62〉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도움 요청(중복응답) ····· 164
〈표 Ⅳ-63〉 내·외부 기관 신고 인지 경로 ····· 165
〈표 Ⅳ-64〉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내·외부 기관 및 지도자/동료선수에 도움요청 이후 2차 피해 경험(중복응답) ····· 166
〈표 Ⅳ-65〉 내·외부 기관 신고하지 않은 이유(1+2순위) ····· 168
〈표 Ⅳ-66〉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혹은 들었던 경험 ····· 170
〈표 Ⅳ-67〉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중복응답) ····· 171
〈표 Ⅳ-68〉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성별(중복응답) ····· 172
〈표 Ⅳ-69〉 성희롱·성폭력 발생장소(중복응답) ····· 173
〈표 Ⅳ-70〉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정도 ····· 174
〈표 Ⅳ-71〉 운동 시작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 176
〈표 Ⅳ-72〉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별 성폭력 피해 경험 ····· 177
〈표 Ⅳ-73〉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 178
〈표 Ⅳ-74〉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별 성폭력 피해 경험 ····· 179
〈표 Ⅳ-75〉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되지 않은 이유 ····· 180
〈표 Ⅳ-76〉 성폭력 인지 여부 ····· 181
〈표 Ⅳ-77〉 성폭력 인지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 ····· 182
〈표 Ⅳ-78〉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성폭력 인지 정도 ····· 183
〈표 Ⅳ-79〉 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 가능성 ····· 184
〈표 Ⅳ-80〉 운동부 내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 185
〈표 Ⅳ-81〉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 18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 림 목 차

[그림 Ⅳ-1]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시 학교(학과)수업 빠지는 정도 ····· 73
[그림 Ⅳ-2] 운동과 학업 병행 필요한 이유(중·고등학생 및 성인 응답 통합) ····· 83
[그림 Ⅳ-3] 주로 훈련(운동)하는 장소 ····· 86
[그림 Ⅳ-4] 훈련(운동)장 갈 때 이용하는 이동수단 ····· 89
[그림 Ⅳ-5]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시 불편한 이유 ····· 100
[그림 Ⅳ-6] 공공 체육시설 이용시 차별 경험 ····· 103
[그림 Ⅳ-7] 민간 체육시설 이용시 차별 경험 ····· 106
[그림 Ⅳ-8] 훈련(운동) 과정에서의 체벌 및 지도자/선배에 대한 복종 인지 ····· 112
[그림 Ⅳ-9] 폭력 피해 경험자 ····· 118
[그림 Ⅳ-10] 성희롱·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 ····· 14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연구배경 및 목적

체육계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7년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팀 감독의 여성 선수 성추행 사건과 2008년 초 KBS 시사기획에서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보도가 있었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 해, 문화관광부는 '프로스포츠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조사'(황정임 외, 2007)를 실시,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의 16.1%, 학생운동부 소속 선수의 37.5%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피해 당시 대체로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감독코치가 전권을 행사하는 등 위계적 구조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이명선 외, 2008)를 실시하였고, 이때 63.8%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이 위계적 구조에 의해 일상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이 제안되어 추진되었지만, 2018년 전 사회로 퍼져나간 '미투운동'을 계기로 체육계 성폭력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심석희 선수에 이어 신유용 선수의 연이은 미투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의 필요성이 재차 강하게 제기되면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대한 의원발의가 지난 1~2월 사이에 쏟아졌다. 이를테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률적·의료적 지원 등)와 행위자 처벌,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화 및 여성지도자 육성과 고용, 그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센터 설치·운영 등이 그것이다(김동식 외, 2019). 같은 기간 범정부차원에서도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추진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및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설치와 운영이었다. 특조단은 체육계 성폭력에 관한 피해 접수와 피해 사안에 대한 치유 지원 및 가해행위 진상조사, 성폭력 발생상황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단체의 인권현황 등에 대한 조사기능과 조직 진단,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도적 권고를 담당하고 있다. 혁신위는 체육계 구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기능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선수들의 미투와 함께 체육계를 대상으로 한 2개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1]가 발표되었다(대한체육회 보도자료, 2019.1.8.; 김동식 외, 2019).

---

1) 대한체육회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 및 대학생, 실업 성인팀 소속 선수 1,201명 대상, 성폭력 경험률은 2010년 26.6%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2.7%까지 감소함(국가대표선수의 경우 1.7% 수준).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체육계 미투 이후, 정부차원의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내용이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적·언어적 특수성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문제는 비장애인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장애인 선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장애인체육계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국 포럼을 개최하였다(대한장애인체육회 보도자료, 2019.3.19.). 지난 5월 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근절 후속대책에 따라 정관과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대한장애인체육회 보도자료, 2019.5.29.).

대한장애인체육회 자체적으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원인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발생한 지도자의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가맹단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2년 주기로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를 권고[2]한 바 있다. 그해 11월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장애인체육(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997명(일반선수 415명, 학생선수 105명, 전임 및 전일제 지도자 415명, 전국 특수학교 체육 담당교사 156명, 장애인체육선수 학부모 108명 등)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결과, 일반선수의 약 3%가 구타 경험이 있었고, 이는 대부분 코치·감독에 의해 발생한 반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

협회 2018년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종목 7개 단체 소속의 프로 선수 927명 대상, 프로입단 이후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14.2%, 최근 1년에도 4.3%가 피해를 경험함. 피해는 주로 감독·코치 및 선배 선수 등 위계적 구조에 의한 폭력이며, 프로경력에 무관하여 중복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성폭력이 일상적임을 확인함

2)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 개선 권고(2013.5)에 따르면, 우선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는 [1]장애인 체육 지도자에 대한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이외에도, [2]장애인 체육 지도자 양성과정 및 선발 시에 장애 특성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교육,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할 것, [3]장애인 선수들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이천장애인훈련원에 배치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를 이유로 선수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 등이 포함됨.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1]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개선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포함됨(국가인권위원회 과업지시서 3쪽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참여자가 없다고 응답하면서, 조사의 신뢰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12년 용인대 조사 이후, 지금까지 최소 3차례(2014, 2016, 2018년)는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동안의 사후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체육 분야는 특성상 비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비해 접근권, 이동권, 차별 등의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일반 체육의 인권과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체육선수를 대상으로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와 장애인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해외의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성평등 및 인권기반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국내 장애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법·제도 및 관련 규정 현황과 성인지적 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학습권과 접근권, 건강권/재생산권 및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나. 연구 방법

위의 연구 내용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국내외 문헌 자료를 수집·정리 및 검토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규정 전반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방법 및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Ⅳ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Ⅱ

해외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성평등 정책방향과 시사점

1. 유엔 등 국제기구 9
2.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17
3. 국가 등 사례 24
4. 소결 2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1. 유엔 등 국제기구

가. 국제사회의 장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이 설립된 후 국제사회는 전쟁 당시 자행된 홀로코스트 등 대규모의 잔학한 인권침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의무 주체성을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한다.[3]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신체적·사회적 차이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로우며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향유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4]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45년 제정된 유엔 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에서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장애를 실업, 질병 등과 같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 사회복지가 필요한 현상 혹은 상태로 규정할 뿐이었다.[5] 이렇듯 개인의 인권이 점차 강화되던 20세기 후반에도 국제사회에서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보다는 인권의 객체(objects of human rights)로 여겨졌다.[6]

---

3) https://www.un.org/en/sections/universal-declaration/history-document/index.html
4) 세계인권선언 (외교부 국문본), http://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5) Degener, Begg, From Invisible Citizens to Agents of Change: A Short History of the Struggl,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Commentary, p. 2.
6) Degener, Begg, From Invisible Citizens to Agents of Change: A Short History of the

국제사회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혜택을 수혜받는 객체에서 권리의 주체자로 점차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장애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 궤를 같이한다. 장애에 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장애의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 of disability)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장애의 의학적 모델이란 장애를 치료, 교정, 재활 등이 필요한 의료적 손상(impairment)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다.[7] 이러한 견해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장애인을 사회에서 차별하고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8] 반면 장애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은 장애를 사회적 구성체(social construct)로 인식하며, 손상은 신체 혹은 정신의 상태와 관련된 손상인데 비해, 장애는 환경과 사회가 그러한 손상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9] 즉 장애인에 대해 사회가 부과하는 모든 제약이 장애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ted Persons, 1975년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81년 국제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선포 및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채택 등과 더불어 장애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운동 등을 거쳐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는 국제법상 강제력이 있는 문서이다. 2019년 9월까지 180개국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10]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 중 18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특히 한국 정부는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조항 규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11]

Struggl,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Commentary, pp. 2-6.

7) A New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Commentary, p. 42.

8) A New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Commentary, p. 42.

9) A New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Commentary, p. 42.

10) STATUS OF RATIFICATION, http://indicators.ohchr.org/

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6.12.15.).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장애인 권익신장 기대.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12507&pWise=sub&pWiseSub=B1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12] 모든 사람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상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더 이상 개인의 결핍이나 질병에서 비롯되는 사람의 “잘못됨”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의 다름을 충분히 맞추지 못하는 개인과 사회 환경 상호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본다.[1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의 인권적 모델(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에 기초하여 장애를 이해한다. 장애의 인권적 모델은 장애가 사회적 구성체이며, 손상(impairments)이 인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장애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겹의 특성 중 하나이고, 따라서 장애 법제와 정책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14]

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체육선수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상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협약 제30조 제5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의 당사국이 1)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하며, 2)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레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하며, 3) “체육활동, 레크레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고, 4) 특히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레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5) “장애인이 레크레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 체육선수에게는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에 기초하여 충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12)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13) OHCHR, Monitor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ance for Human Rights Monitors, HR/P/PT/17, pp. 8-10.
14)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para. 9.

진다.

더불어 2014년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69/6 “교육, 건강, 개발과 평화 증진의 도구로서의 스포츠(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국제사회의 관객들에게 장애가 있는 선수들의 성취를 보여주며 장애 스포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바꾸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15] 이해관계자들이 장애인의 웰빙과 포용성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 스포츠를 활용할 것을 장려하였다.[16] 이러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현실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육활동에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제인권규범상 장애인 체육활동에서의 접근성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의 균등한 기회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규칙 11조는 유엔 당사국이 스포츠 경기장과 체육관 등 스포츠를 위한 장소 등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장애인의 국내 및 국제 운동경기 등에 참석하는 데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17] 또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장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동일하게 강습과 트레이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18] 나아가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1항(a)는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다. 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는 1) 이용가능성, 2) 접근성, 3) 허용성, 4) 변형가능성, 5) 적절성 등이 요구되는데, 이 중 개인과 커뮤니티가 문화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인과 장애인 및 빈곤층의 접근성이 반드시 제공되고 편의가 도모되어야 한다.[19] 또한 여기서의 ‘문화생활’

15) 유엔 총회, 교육, 건강, 개발과 평화 증진의 도구로서의 스포츠 (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 A/RES/69/6, 2014. 11. 10., 전문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9/6)

16) 유엔 총회, 교육, 건강, 개발과 평화 증진의 도구로서의 스포츠 (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 A/RES/69/6, 2014. 11. 10., 4문단.

17) 유엔총회 결의안 48/96호, ‘장애인의 균등한 기회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 12. 20., 규칙 제11조 1, 3호

18) 유엔총회 결의안 48/96호, ‘장애인의 균등한 기회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 12. 20., 규칙 제11조 4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에는 가능한 범위에서의 장애인의 레크레이션,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 장려 및 증진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20]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는 일반원칙조항으로, 모든 사람의 천부적인 존엄성, 비차별, 기회의 균등, 접근성, 남녀의 평등 등을 명시하였다. 위 일반원칙에 기초하여 협약 제9조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사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협약 당사국이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21] 그리고 여기에서의 '기타 실내·외 시설'에는 법집행기관, 재판기관, 수용소, 사회시설, 사회활동 및 문화, 종교, 정치, 스포츠 활동 등을 위한 공간 및 쇼핑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22] 이러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약 제4조 1항(f)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3]

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성평등

장애인권리협약은 특히 교차 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혹은 다중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을 중요한 문제로 고려한다. 특히 성별 및 성평등의 문제는 협약의 여러 부분에서 강조된다. 협약 전문은 성별에 따른 가중된 형태의 차별에 우려를 표하고,[24]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25] 이에 따라 협약 제3조에서는 협약의 기본적인 일반원칙 중 하나로 "남녀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26] 특히 협약 제6조는 협약 당사국이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

19)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권고 21호(2009), 16문단
20)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권고 21호(2009), 31문단
21)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제1항
2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권고 2호 (2014), 제2장 17문단
23) 협약 제2조는 "보편적인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4) 협약 전문 너.
25) 협약 전문 더.
26) 협약 3조 사.

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7] 나아가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 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28] 이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은 다중적 차별의 위험에 놓인 장애여성과 장애소녀, 그리고 모든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협약의 당사국은 성별에 기반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29]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6년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에 관한 협약 제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논평 제3호를 발표하기도 하였다.[30]

4) 장애인권리협약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대응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의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보호서비스는 특히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야 한다.[31] 나아가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하여야 하고,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27) 협약 제6조 제1항
28) 협약 제6조 제2항
29) 협약 제8조 제1항 나.
30)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제3호 (2016)
31) 협약 제16조 제1, 2항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32] 나아가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33]

다.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1978년 체육교육, 체육활동 및 스포츠에 관한 국제 헌장(The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 Education, Physical Activity and Sport)을 채택하였다. 유네스코 헌장은 "체육교육과 스포츠 활동"을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최초의 권리에 기초한 문서(rights-based document)이다.[34] 2015년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된 개정된 유네스코 헌장은 모든 사람은 인종, 성, 성적 지향,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이나 어떠한 다른 기준에 기반한 차별 없이 체육교육, 체육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기본권을 가진다면서(헌장 제1.1조), 체육교육, 체육활동과 스포츠에 참여할 포괄적이고, 알맞고 안전한 기회가 모든 사람들, 특히 학령 전 아동, 여성과 소녀, 노인, 장애인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헌장 제1.3조).

스포츠에서의 장애 이슈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헌장은 체육교육, 체육활동과 스포츠가 개발, 평화와 분쟁 이후 및 재난 이후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서,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 이니셔티브는 포괄적이어야 하며, 장애를 포함하여 문화와 성(gender), 나이 등에 관한 인지 감수성을 갖출 것을 요한다(헌장 제11.3조). 나아가 유네스코 헌장은 스포츠, 교육, 청년, 보건, 능동적 레크레이션, 개발, 도시 계획, 환경, 교통, 젠더와 장애 분야를 책임지는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 올림픽과 패럴림픽 운동, 스포츠 기구와 비정부 단체, 재계와 미디어, 교육자, 연구자, 스포츠 전문가와 봉사자, 참가자 및 지원인력과 심판관, 가족들 그리고 관람객 등 모든 관계자들이 체육교육, 체육활동과 스포츠 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며 위 관계자들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헌장 제3.2조).

---

32) 제16조 제3, 4항
33) 제16조 제5항
34)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physical-education-and-sport/sport-charter/

또한 유네스코 헌장은 스포츠가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헌장 제9.3조). 이에 더하여 안전과 위험 관리를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체육교육, 체육활동과 스포츠에서 특히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과 선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참여 등을 제한하거나 해를 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해가 되는 관행으로 차별, 인종차별, 호모포비아, 따돌림, 도핑 및 조작, 교육 박탈, 아동에 대한 과도한 트레이닝, 성적 착취, 매매 및 폭력 등을 예시로 들었다(헌장 제9.2조).

2013년 제5회 세계 유네스코 스포츠 장관급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베를린 선언(Declaration of Berlin)은 양질의 체육교육과 스포츠를 위해서 폭력과 성적 괴롭힘, 인종차별 및 다른 형태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포용적 환경이 근본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35] 이를 위해 베를린 선언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인지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라. 유럽연합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92년 유럽 스포츠 헌장(European Sports Charter)를 채택하였다. 위 헌장 제1조는 특히 아동, 청년과 여성에 대한 성적 괴롭힘과 학대 등으로부터 스포츠와 스포츠 정신을 비호하여 스포츠의 윤리적 기반 및 운동선수 등의 인간 존엄성과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6] 같은 기간 위 헌장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된 스포츠 윤리 규정(Code of Sports Ethics)은 공정한 시합(fair play)을 위한 윤리적 고려가 모든 스포츠 활동과 정책, 관리 등에서 핵심적이라는 기본적 원칙에 기반하여 특히 운동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공정한 시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37] 여기서의 공정한 시합이란 규칙에 따라 시합을 하는 것 이상으로 우정과 타인에 대한 존중, 부정행위나 도핑, 신체 및 언어 폭력, 아동과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성적 괴롭힘과 학대, 착취 및 불평등한 기회와 과도한 상업화 등을 배제하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38]

---

35) 유네스코 베를린 선언(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inisters and Senior Officials Responsibl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베를린, 2013년 5월 28-30일.

36) 유럽평의회, Recommendation No R(92)13, 유럽 스포츠 헌장(European Sports Charter), 1992. 9. 24. 채택 및 2001. 5. 16. 개정, 제1조 ii항

37) 유럽평의회, Recommendation No R(92)14 Rev, 스포츠 윤리규정(Code of Sports Ethics), 1992. 9. 24. 채택 및 2001. 5. 16. 개정, 전문 및 목적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2.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1) 개요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는 1894년 설립되어 올림픽 헌장에 기반하여 올림픽 개최를 총괄하는 최고 기관으로, '올림픽 정신(Olympism)'과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을 유지·계승하는 데 목적이 있다.[39] IOC는 설립된 지 100년 이상이 지난 후인 1995년, 올림픽 운동을 구성하는 세 개의 구성단체(IOC, 국제연맹, 국내올림픽위원회)의 각 대표와 선수 대표 및 독립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된 '여성과 스포츠 실무그룹(Women and Sport Working Group)이 만들어졌다.[40] 위 실무그룹은 2004년에 이르러서야 정식 위원회가 되었으며, 현재는 IOC 회장과 이사회에 스포츠의 전 단계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정책 자문 및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과 학대에 관한 인식 제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41] 올림픽 운동은 차별 없이 아마추어 운동선수를 양성하여 친목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림픽 헌장은 IOC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중 하나로 "남녀평등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차원 및 수준에서 여성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장려"를 제시하고 있다.[42]

2) 윤리규정

올림픽 운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평등의 모습은 'IOC 윤리강령(IOC Code of Ethics)'의 근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에서 재차 확인된다. IOC 윤리강령 제1조 4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 존중, 두 번째 인종·피부

---

38) 유럽평의회, Recommendation No R(92)14 Rev, 스포츠 윤리규정(Code of Sports Ethics), 1992. 9. 24. 채택 및 2001. 5. 16. 개정, 공정한 시합의 정의
39) 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2019. 6. 26. 개정.
40) 올림픽 운동에서의 여성 참여 자료표(Factsheet: Women in the Olympic Movement), IOC, 2016. 1. 22., p. 2.
41) 스포츠 여성 위원회(Women in Sport Commission), IOC, https://www.olympic.org/women-in-sport-commission
42) IOC,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2019. 6. 26. 개정, 제1장

색·성별·성적지향·언어·종교·정치적 의견·국가 혹은 사회적 출신·재산·나이 혹은 다른 상태를 포괄한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세 번째 신체적·성적·정신적인 내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괴롭힘(harassment)을 배제하도록 하는 국제인권협약에 대해 존중과 성적,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금할 것을 규정한다.[43]

IOC 윤리강령의 이행과 적용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IOC에 소속된 일체의 회원국 및 올림픽게임 참가자는 물론이고, 국가올림픽위원회(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s), 국제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s; IFs), 올림픽조직위원회 및 소속국가의 올림픽 주최와 관계되어있는 공무원 등 올림픽 준비·실행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관계자들 모두에 대해 윤리강령이 적용된다.[44]

3) 성 관련 규정

가) 2007 IOC 스포츠에서의 성적 괴롭힘과 학대에 관한 합의 성명서

IOC 의료위원회는 2006년 10월 스위스 로잔에서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과 학대"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과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과 학대를 구분·정의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나아가 예방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회의 내용은 2007년 2월 3일 채택된 '스포츠에서 성적 괴롭힘과 학대에 관한 합의 성명문(Consensus Statement on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에 담겨 있다.[45]

2007년 합의 성명서의 가장 큰 함의 중 하나는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적 착취를 구분하고 크게 제도적·개인적 차원으로 세분화했다는 데 있다. IOC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이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의도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권력을 남용하여 피해자나 제3자의 입장에서 원치 않았거나 강요된 성적인 언어, 비언어 또는 신체적 행동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성적 학대(sexual abuse)는 동의가

43) IOC 윤리강령(Code of Ethics), IOC, 2018 개정. https://stillmed.olympic.org/media/Document%20Library/OlympicOrg/Documents/Code-of-Ethics/2018/Code-of-Ethics-2018.pdf#_ga=2.186234857.1133389250.1569168803-1709701376.1566143761
44) IOC 윤리강령(Code of Ethics), IOC, 2018 개정, 전문(Preamble).
45)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07). Consensus Statement on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2007. 2. 8., https://www.olympic.org/news/ioc-adopts-consensus-statement-on-sexual-harassment-and-abuse-in-sport

없었거나 동의할 수 없었던 모든 성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2007년 IOC 합의 성명서에 따르면, 스포츠계 내 성적 괴롭힘과 학대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때 운동의 종류와 수준은 관계가 없으며, 특히 엘리트 스포츠에서 상당한 수준의 위험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나아가 여성에 비해 남성 가해자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제의 원인이 전형적인 권력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성적 괴롭힘과 학대는 연령이나 인종, 성적지향 등을 망라하고 일어나고 있지만, 운동선수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운동선수는 물론 코치, 의료진, 행정직원 등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적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OC는 위 합의 성명서를 통해 스포츠 업종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적 착취를 구분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 후, 성적 괴롭힘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스포츠 단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다.

- 성적 괴롭힘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구축
- 관련 정책 및 절차의 이행과정 모니터링
- 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가
- 스포츠계 내 성적 괴롭힘 및 학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공정하고 윤리적인 리더십 증진
- 성적 괴롭힘 및 학대 예방과 관련된 적극적인 파트너십 증진
- 이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 지원

나) 2016 IOC 스포츠에서의 괴롭힘과 학대에 대한 합의 성명서

2007년 발표된 합의 성명서 이후 스포츠계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괴롭힘과 학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에 기반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괴롭힘과 학대를 규율할 수 있도록 2016년 후속 합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46] 2007년과 2016년 합의 성명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괴롭힘과 학대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2007년의 경우 성적(sexual) 괴롭힘과 학대의 대상을 이성애적, 즉 여성과 남성 간의

46) Mountjoy, M., Brackenridge, C., Arrington, M., Blauwet, C., Carska-Sheppard, A., Fasting, K., & Starr, K. (2016).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Consensus State ment: Harassment and abuse (non-accidental violence) in sport" Br J Sports Med, 50(17), 1019-1029.

문제로 한정하였다면, 2016년에는 특히 장애인과 성소수자(LGBT) 운동선수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괴롭힘과 학대의 메커니즘에 신체적 접촉, 언어적, 정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이버, 무시(neglect), 따돌림(bullying), 신참 못살게 굴기(hazing)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포함하였고, 특히 사이버 상의 문제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각종 단어에 대한 정의를 명료하게 구분하여, 종류별로 문제를 진단하였다.

2016년 합의 성명서에서는 성적 괴롭힘 및 학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성적학대(sexual abuse)는 "동의가 강요 또는 조작되거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비접촉·접촉·삽입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성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은 "언어·비언어·신체적 형태의 원하지 않았거나 환영받지 못할 모든 성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성적 괴롭힘은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성적 학대의 경우 동의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제시한 이유는 기존 통계의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스포츠 업종 내 성적 괴롭힘 및 학대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의 경우 19%-92%, 성적 학대의 경우 2%~49%로 연구별로 오차가 매우 컸다.[47]

나. 국제패럴림픽위원회

1) 개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이하 IPC)는 패러 스포츠(Para sport)를 통해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1989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이자 국제 장애인스포츠의 대표적인 조직이다.[48] IPC헌장은 IPC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그리고 장애, 인종, 성별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장애를 가진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를 증진해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49]

---

47) Mountjoy, M., Brackenridge, C., Arrington, M., Blauwet, C., Carska-Sheppard, A., Fasting, K., & Starr, K. (2016).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Consensus Statement: Harassment and abuse (non-accidental violence) in sport" Br J Sports Med, 50(17), 1019-1029.

48)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https://www.paralympic.org/ipc/who-we-are

49) IPC 헌장 (Constitution) (2011), 제2.2.4 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2) 윤리규정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패럴림픽의 정신과 역사, 공정하고 존경받는 스포츠 경쟁의 전통에 기초하여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윤리규정(IPC Code of Ethics)을 규정하였다.[50] IPC 윤리규정은 모든 패럴림픽과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개최하는 경기, 그리고 모든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행사나 활동에 적용되며, 지역 또는 국가의 전통이나 관행에 우선하여 적용된다.[51]

윤리규정은 존엄, 진정성과 평등, 이해상충, 자산의 부적절한 사용,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증여, 격려금 및 상품, 체육선수의 행동강령, 코치와 팀 관계자의 행동강령, 반도핑 등 직원의 행동강령, 스포츠 기술관 행동강령, 선출직 및 임명직 스포츠 지도자 및 행정관의 행동강령, IPC 관리이사회 임원의 행동강령, IPC 위원회와 의회, 선거 후보의 행동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패럴림픽 구성원들이 인종, 성별, 국적, 출신 지역, 종교, 철학 또는 정치적 의견, 결혼 여부나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 싸워나가야 하며 특히 손상이나 장애에 기초한 차별은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1조).

위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속서인 'IPC 윤리강령 위반 고발에 관한 IPC 절차규정(IPC Regulations governing the procedure for dealing with complaints regarding alleged breaches of the IPC Code of Ethics)'에 의해 규율된다. 윤리강령의 적용대상자는 윤리강령 위반 사안을 법무 및 윤리 위원회(Legal and Ethics Committee)에 고발할 수 있으며(제1.2조), 사안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고발인에게 있다(제4.1조).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집행조치로서 피고발인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제3조). 위원회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기간 내에 접수하였음을 표하여야 하며, 한 달 이내에 절차적 사항 등에 관한 기초 평가를 하여야 한다(제6.1, 6.2조). 위원회에서 고발 사건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고발장과 증거 서류 등을 피고발인에게 전달하고, 피고발인은 28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7.1조). 위원회는 사안의 경중과 IPC 헌장에 따라 총회의 투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격 박탈, 자격정지, 투표권 제한, 경기 참여 제한 및 메달 박탈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제13조). 피고발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제14조).

---

50) 윤리규정 전문
51) 윤리규정 적용범위

3) 성 관련 규정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2008년 스포츠에서의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과 성폭력(sexual abuse)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성적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일어나는 불편함이나 희화화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일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선수들이 안전하고 지지받는 스포츠 환경을 누릴 권리를 인정한다는 견해를 밝혔다.[52]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성적 과롭힘과 성폭력이 문화적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과 단체의 건강을 해하는 인권침해라고 보았으며, 패럴림픽 구성원 모두는 패럴림픽 스포츠 커뮤니티 안에서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을 파악하고(identify) 예방하며, 존엄과 존중, 안전의 문화를 발전시킬 책임감을 공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53] 나아가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윤리규정 위반이며 그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성적 괴롭힘이란 "모든 환영받지 않는 성적 조언, 성적인 요청 또는 다른 형태의 원하지 않았거나 환영받지 않는 성적 행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의도가 순수하였다 할지라도 성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음란 자료의 공개적인 전시 (약간 에로틱한 것부터 매우 성적인 것까지)
- 성적인 발언, 초대 혹은 친근감 겁박
- 성적인 희롱(sexual insinuation)에 기반한 유머 사용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 혹은 개인의 성(sexuality) 또는 신체에 대한 발언
- 반복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만남 요구
- 신체의 특정 부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것
- 성적으로 공격적인 전화나 다른 형태의 (전자적인) 커뮤니케이션
- 성 관련 기물파손; 성적이거나 동성애 혐오적 그래피티
- 퍼포먼스나 자존감을 비웃거나 저평가하는 것
- 성(sex)에 기초한 따돌림
- 육체적 접촉, 쓰다듬기, 꼬집기 또는 입맞춤

출처: IPC Handbook(2008: Section 2, Chapter 4.2).

52) IPC Handbook, May 2008, IPC Position Statement on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Section 2, Chapter 4.2, 1.1
53) IPC Handbook, May 2008, IPC Position Statement on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Section 2, Chapter 4.2, 1.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성폭력은 선수들이 스스로 가해자와의 성적인 관계(sexual involvement)가 인정되고, 피할 수 없다거나 트레이닝이나 일상적인 행동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믿을 정도로 그루밍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의도가 어떠할지라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보상, 혜택, 우대 대우(rewards, privileges, preferential treatment) 등의 대가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
- 부적절한 노출(indecent exposure)
- 성폭력, 예를 들어 성적 공격(sexual assault) 및 강제적 성관계 시도
- 강간(incest and rape)

출처: IPC Handbook(2008: Section 2, Chapter 4.2).

나아가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그녀의 행동이 환영받지 못하고, 용납될 수 없고, 공격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그러한 활동이 환영받을거라 생각할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가능한 직접적으로 알려야 한다.
- 피해자는 비밀리에 코치나 직원, 상사 또는 믿을만한 상급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적절한 (법적)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목격자는 제3자를 향한 성적 괴롭힘 및/또는 폭력을 관계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 코치와 관계자들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운동선수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자신을 향한 성적인 모든 행동은 기록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목격자,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상황에 관해 누구와 대화하였는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신이 소속한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S), 국제패럴림픽경기연맹(IPSF) 또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모든 혐의에 관해 알려야 한다.
- 피해자와 목격자는 IPC 법률 및 윤리위원회에 카운슬링을 요청할 수 있다. 구제절차는 성적 괴롭힘 및/또는 폭력이 기밀로, 민감하게, 적시에 그리고 공정하게 다루어질 것을 보장한다.

출처: IPC Handbook(2008: Section 2, Chapter 4.2).

3. 국가 등 사례

가. 노르웨이[54]

노르웨이 스포츠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즐거움(Joy of Sport – for All)'이다. 2007년 노르웨이에서는 성별, 인종적 배경, 종교적 신념, 성적지향과 장애 여부와 관련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을 골자로 한 안건이 스포츠 총회(General Assembly of Sport)를 통과하였다. 노르웨이의 스포츠 정책문서(Sport Policy Document) 2011-2015는 "성(gender),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등과 상관없이 모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소 대표되는 집단의 참여를 증진하여 사회의 다양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였고,[55] 위 문서의 후속인 스포츠 정책문서 2015-2019는 "노르웨이 스포츠 내 모든 형태의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예외 없는 대응조치를 분명히 하였다.[56]

---

54) Prevention of Sexual and Gender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s: Initiatives in Europe and Beyond, Deutsche Sportjugend (dsj)/ 2nd edition, November 2012, pp. 48-51.

55) "Mål: Deltakelsen fra underrepresenterte grupper skal økes, slik at deltakelsen på en god måte gjenspeiler mangfoldet i samfunnet, ved at (...) nulltoleranse for diskriminering og trakassering uansett kjønn, etnisitet, livssyn, seksuell orientering og funksjonshemming håndheves.", 노르웨이 스포츠연맹(Norges Idrettsforbund), 스포츠 정책문서(Idrettspolitisk Dokument) 2011-2015, 2011, 2.4장

56) "Norsk idrett skal praktisere nulltoleranse for enhver form for diskriminering og trakassering innenfor idretten.", 노르웨이 스포츠연맹(Norges Idrettsforbund), 스포츠 정책문서(Idrettspolitisk Dokument) 2015-2019, 2015, 6.4장 d)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노르웨이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는 지침 10가지는 아래와 같다.[57]

1. 모든 이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고, 어떤 형태든지 불쾌하거나 모욕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행동 또는 행실을 자제한다.
2. 원치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삼간다.
3. 어떤 형태든지 성적인 언동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언어적 친밀감을 삼간다.
4. 선수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농담/의견 발언을 삼간다.
5. 지원 네트워크에 남성과 여성 모두 대표성을 갖도록 한다.
6. 사적인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있거나 부모/후견인 내지 스포츠 에이전시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선수와의 접촉을 피한다.
7. 선수, 코치 및 리더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8. 이중관계(dual relationships)를 방지한다.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해당 환경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명확히 한다.
9. 어떤 형태의 보상이라도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려는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10. 본 지침을 위반한 경우,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성적 괴롭힘과 성적 학대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와 스포츠 연합(NIF)은 2009. 1. 1.부터 모든 스포츠클럽은 미성년자 및 정신장애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와 책임감을 내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폭력 전과 여부가 기재된 경찰의 신원 조회 증명서를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58] 또한 2017년 12월자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대응 지침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57) 노르웨이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 및 스포츠연맹, 스포츠에서의 성적 괴롭힘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s), 2010, 4쪽.
1. Treat everyone with respect, and refrain from all forms of communication, action or behaviour that may be perceived as offensive.
2. Avoid body contact that may be perceived as unwanted.
3. Avoid all types of verbal intimacy that may be perceived as sexually charged.
4. Avoid expressions, jokes and opinions that relate to the athlete's gender or sexual orientation in a negative way.
5. Seek to have both sexes represented in the support network.
6. Avoid contact with the athletes in private spaces unless there are several persons present or in agreement with parents/guardians or the sports management.
7. Show respect for the athlete's, coaches and leader´s private life.
8. Avoid dual relationships. If a reciprocal relationship is established, the situation should be raised and clarified openly in the milieu.
9. Do not offer any form of reward with the purpose of demanding or anticipating sexual services in return.
10. Take action and give notice if a breach of these rules is experienced.

자 등의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스포츠클럽이 사건 대응을 하는데 용이하도록 명확한 조언과 단계별 권고안을 포함하였다.[59]

노르웨이의 스포츠에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장애나 젠더, 인종 등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과 성적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조치가 있을 거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등 관계자들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 또한, 노르웨이의 모든 스포츠 정책에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10가지는 명확하고 압축적인 언어로 성적인 언동에 대한 엄격히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하위 정책 등이 더욱 분명하게 수립되고 스포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네덜란드[60]

1996년, 세 명의 세계챔피언 출신의 네덜란드 여성 유도선수들이 1987년부터 1993년 동안 이루어진 성폭행 및 감정적 학대를 이유로 그들의 코치였던 피터 움스(Peter Ooms)를 고소하였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움스는 해고되었고 법에 따라 처벌되었다. 나아가 네덜란드 최대 스포츠 연맹인 네덜란드 스포츠 연맹(NOC*NSF)은 스포츠에서의 성희롱과 학대에 반대하는 "스포츠 성폭력 긴급콜센터(helpline for sexual harassment in sports)"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요 목표로는 첫째,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스포츠 연합을 돕는 구조를 개발하는 것과 둘째, 움스 사건처럼 사건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관대한 스포츠 문화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스포츠 성폭력 긴급콜센터" 프로젝트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20명의 국가 상담사들로 시작하였다. 상담사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가해자로 몰린 이들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스포츠구단이나 연맹 이사회 등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

---

58) Norwegian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 and Confederation of Sports (2008). The procurement and handling of police certificates of good conduct – guide for sports clubs in NIF. Oslo.

59) 하바드 오브레가드, 스포츠 내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조치 – 노르웨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국제심포지엄 "스포츠 #미투, 국제적 현황과 대응" 자료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

60) Prevention of Sexual and Gender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s: Initiatives in Europe and Beyond, Deutsche Sportjugend (dsj)/ 2nd edition, November 2012, pp. 67-7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을 수행한다. 초기에는 긴급전화 핫라인(SOS Telephone Hotline)과 아동 전화(Child Line)의 두 가지 국가 일반 전화 상담서비스를 활용해서 네덜란드 스포츠연맹이 운영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더 많은 제보를 위해서는 스포츠에 특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껴 네덜란드 스포츠연맹이 별도의 독립적인 긴급콜센터를 개설하였다. 콜센터는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일반 지원기관이나 경찰, 변호사 또는 검찰 등에 연결도 지원한다.

위 콜센터 헬프라인 제도는 네덜란드의 스포츠에서의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한 전략의 하나이다. 그 밖의 전략으로는 윤리강령 수립, 조직을 위한 모범적인 정책 마련,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등록제도, 정책개발에 관한 전자교육자료 e-러닝 모듈, 지역 사회 복지사들을 위한 연차교육과정 마련, 과학적 연구를 통한 안내 캠페인 및 평가 기준 마련 등이 있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국제사회의 담론은 장애인 체육선수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법제나 정책 등을 규정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 체육계 전반적으로 성범죄를 뿌리 뽑기위한 여러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누릴 권리에 대해 특별히 규정해둔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법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행동으로서 성애화된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동을 의미하며, 의도의 유무에 관계없이, 합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권력과 신뢰를 남용하여 저지르는 행위로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원하지 않거나 강요된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는 스포츠 내 성폭력에 관하여는 장애 혹은 비장애 체육선수인지와 상관없이 체육활동에서 문제 되는 성적 괴롭힘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경향이 엿보인다.[61]

61) Alexander, Stafford 및 Lewis, 영국 내 아동의 조직 스포츠 참여 경험(The Experiences of Children Participating in Organised Sport in the UK), NSPCC, 2011, 61쪽

스포츠 거버넌스는 선수의 복지를 핵심 요소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스포츠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1)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2) 선수의 복지를 포함한 스포츠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고, 3) 스포츠 문화를 '보살핌의 윤리' 중심으로 전환하며, 4)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5) 선수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하고, 6) 명확한 정책과 절차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62] 또한 체육활동에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대응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기저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진과 스포츠클럽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체육선수의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점과 그루밍이나 성적 학대가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에 놓인 체육선수라는 점에서 그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성범죄 처벌 및 예방에 관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그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은 장애 여부를 떠나서 성범죄 전체를 규율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르웨이와 같이 스포츠에서의 포괄적인 차별금지제도를 수립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62) 산드라 커비, 스포츠 내 학대 및 괴롭힘 근절, 2019년 국제심포지엄 "스포츠 #미투, 국제적 현황과 대응" 자료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Ⅲ

국내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31
2. 주요 규정 현황과 문제점 38
3. 주요 판례 분석 및 시사점 56
4. 소결 5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1.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가. 법제도 현황

현행법, 규정 등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침해행위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와 그 내용은 어떠한가에 관해 검토하게 될 것이며, 그 외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애인 괴롭힘 및 학대행위 금지조항에 성적 침해행위 등 인권침해행위 명시

장애인 관련 인권침해 금지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8.4.11 제정되었다. 여기서 "괴롭힘 등"의 용어를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로 정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포함한 인권침해행위를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1호). 이 조항은 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된 규정이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추행 및 강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제32조 제5항).

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다(제32조 제6항). 위 2개의 조항 역시 법 제정 당시부터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법률인 「장애인복지법」[63]은 '장애인 학대'의 정의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63) 「장애인복지법」은 이전에 「심신장애자복지법」(1981.6.5 제정)으로 제정되었던 것을 1989.12.30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이 조항은 2012.10.22 법 개정시 신설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괴롭힘 등'의 용어정의에 대해 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라는 법 취지에서 볼 때 제정 시부터 규정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반면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규정은 2012.10.22. 법 개정 시 신설된 것으로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나 1989년 법명 변경에 의한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에서 볼 때 장애인 학대규정은 매우 늦게 신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 법이 장애인복지를 규정한 법인데도 장애인 학대에 관한 규정 신설이 법 제정에서부터 30년 정도 걸린 것은 입법자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매우 늦게 자각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학대에 관한 규정 신설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신설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양쪽법 모두 장애인 대상의 괴롭힘이나 학대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열된 행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그 범위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괴롭힘이나 학대에 유기나 방임을 포함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제나 제외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유기나 방임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 금지 관련 제도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장애인 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도록 하고 있다(제59조의3).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2018.12.11. 개정).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준용한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59조의4).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신고자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범죄신고자 보호조치를 취한다(제59조의6).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제59조의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는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 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 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등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59조의 13).

3) 장애인 체육활동 차별금지,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제25조).

그 내용을 보면,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2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27조 제2항).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국가대표선수'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제경기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파견하기로 선발·확정한 사람을 국가대표선수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 조례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두어 장애인 체육진흥과 육성·지원을 모색해 가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2019. 6.18.)되었다.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는 정의규정과 함께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진흥과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도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장애인 체육 동호회

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보급,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장애학생 체육활동 및 체육수업 보조교사 등 지원,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이용 및 이용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 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87개의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를 두고 있다. 2009.8.4.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체육을 진흥하고 육성,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 체육활동의 진흥과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장애인 체육 관련 정책

장애인 체육정책은 스포츠 비리 근절 등의 인권보호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의 두 가지 측면에 목표를 두고 있다.

장애인 체육정책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2005.12.)받아 시행하고 있다. 전담직제 신설과 국민체육의 한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1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08~'12)」을 수립하였으며, 장애인체육사업 추진을 위한 대한장애인체육회('05.11) 및 16개 시·도장애인체육회 설치('08.2), 소관 33개 장애인 가맹 경기단체(인정등록 5개 포함) 지원 및 이천 장애인종합훈련원을 건립하는 등 장애인 체육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64]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 근절 등 체육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운영하며, 그 역할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 접수 및 조사, 실태조사(심층표본조사, 일부종목 전수조사), 피해자 지원, 정책·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한다. 체육계 혁신을 위해 체육계 구조개혁 민관합동위원회를 운영하며, 엘리트 위주의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스포츠 인권 보호 등 체육계 전반에 걸친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한다.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된 법안으로 (가칭)'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조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한다.[65]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교육 의무 이수, 성폭력 등으로 형 확정 시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등 선수보호 장치 강화[66]와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의 관련 징계규정 개선, 주요 위원회에 인권전문가 등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진천선수촌 및 이천훈련원 내 '인권상담센터' 설치, 여성관리자 배치, 사각지대 CCTV 보강 등 환경개선을 내용으로 한다.[67]

또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가 느껴지지 않는 문화 향유 여건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장애 관련 인식제고를 위해 장애인스포츠 인터넷중계 플랫폼 'KPC(대한장애인체육회)-TV' 운영(신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초·중·고 총 80개교)을 추진한다. 장애없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68] 건립(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300억원/신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확대('18년 3개소 → '19년 6개소)를 추진하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확충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5,100명/6개월간 월8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800명), 장애유형별 맞춤형 생활체육교실·동호회 지원(26억원),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시범사업(3개소)을 추진하고 있다.[69]

'2018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

64) 조향현(2009), "장애인 체육 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한 의견", 「장애인체육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p.18.
65)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19.1.11)
66)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19.1.10)
67)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도 업무계획」, pp.18-19.
68) 반다비 센터는 체육관형·수영장형·종목특화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역 수요에 맞게 건립 지원,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된다.
69)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도 업무계획」, p.10.

은 23.8%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이유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 홍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과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70]

나. 문제점

장애인 괴롭힘, 인권침해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8.4.11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부터 "괴롭힘 등"의 용어 정의와 장애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추행 및 강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을 명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라는 법 취지에 맞게 법 제정 당시부터 괴롭힘의 용어정의 등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반면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규정은 2012.10.22. 법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장애인 학대에 관한 규정신설이 법 제정에서부터 30년 정도 걸렸다. 이것은 입법자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매우 늦게 인식한 것으로 입법의 지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학대' 규정의 도입이 늦게 이루어진 만큼 장애인 학대 관련하여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장애인 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

7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1.10.). "문체부, 2018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률 23.8%로 전년 대비 3.7% 포인트 증가, 10년전(2009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https://www.koreanpc.kr/rulebook/rulebook.do?menu_idx=8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였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두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장애인 관련 괴롭힘의 용어나 장애인 학대를 정의한 것,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장애인 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것은 장애인 인권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마련으로 그 의미를 살려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인권보장이 다른 분야에 비해 늦은 것을 감안하여 관련법의 적극적인 적용과 함께 제도보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정부의 체육정책 시행은 장애인의 체육에 관한 인권보호와 생활체육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수립되고 있다. 조례, 정책의 효과는 정책의 수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가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집행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주요 규정 현황과 문제점

가. 주요 규정 현황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등 29개의 '주요 규정'과 법제상벌위원회 운영 규칙 등 15개의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71].

이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을 중심으로 2019년 큰 폭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권익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권익보호 전문 인력풀 구성, 임원 등의 결격사유 강화, 폭력·성폭력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에 관한 것이다. 규정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2015년부터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2019년에 다수의 규정개정이 있었다.

71) https://www.koreanpc.kr/rulebook/rulebook.do?menu_idx=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규정개정은 성희롱, 성폭력을 행한 사람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 강화,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강화 등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사람의 징계기준, 결격사유 강화 및 예방교육 확대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미투운동의 확산과 스포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다양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그 중 특히 스포츠 관련 공적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각 규정의 정비는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계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의 발생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의 여러 규정의 개정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장애인스포츠계의 성희롱·성폭력의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여기서 규정개정의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 및 정책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권익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권익보호 전문 인력풀 구성

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은 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에 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였다(제33조 제1항, '19.6.19 신설). 권익보호위원회 설치는 경기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로서 필수적인 위원회라고 하겠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여성과 장애인선수 출신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여 여성과 장애인 선수 출신이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닌 노력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재적의원 2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의무규정화하여 실제 여성이나 장애인 선수 출신이 위원회에 20%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선수위원회 구성 시 "남·여 위원의 비율은 각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선수위원회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고 하여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체육회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관 분야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위원회로서 법제상벌위원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둔다. 이외에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전문체육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국제위원회
4. 스포츠등급분류위원회
5. 남북장애인체육교류위원회
6. 지도자협의회
7. 선수위원회
8. 여성스포츠위원회
9. 마케팅위원회
10. 심판위원회
11. 임원심의위원회
12. **권익보호위원회 〈신설 '19.6.19.〉**
13. 장애인선수진로지원위원회 〈신설 '19.6.19.〉

② 장애인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각 호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3.7.〉

제34조(각종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3조 제1항과 각호의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19.6.19.〉

1.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2.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다)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과 장애인선수 출신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선출직 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등에 근거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인에게 발생한 권익보호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 권익보호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익보호 전문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시·도 전문인력풀은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출신,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상담사, 법률전문가 등과 행정지원이 가능한 시·도장애인체육회 직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19.5.29. 개정). 이 전문인력풀에 (성)폭력 상담사 등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과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것으로 보인다.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제11조(시·도 권익보호)
①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 권익보호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익보호 전문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체육회장이 위촉한다.
② 시·도 전문인력풀은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출신,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상담사, 법률전문가 등과 행정지원이 가능한 시·도장애인체육회 직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개정 '19. 5. 29.〉
③ 시·도 전문인력풀은 시·도 장애인체육인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상담, 신고접수, 교육, 홍보 역할을 담당하며 필요시 장애인체육회 신고· 조사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8년도 시도 전문인력풀 현황을 보면, 선수출신, 지도자 출신, 관련 학과 교수, 법률전문가, 행정지원을 포함하여 전국에 111명이 구성되어 있다[72]. 동 시도 장애인스포츠권익보호 인력풀 사업의 목적은 시도 전문인력풀 운영 지원을 통해 시도 단위의 밀접하고 신속한 장애체육인들의 권익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동 전문인력풀의 역할은 시도 전문인력풀 전체 워크숍 및 평가회 개최(각 연 1회), 시·도별 자체 간담회, 워크숍 및 세미나 등(교육 및 회의) 진행(연 3회 이상 실시), 장애인스포츠 인권관련 자료·교육(안) 개발 및 공유, 스포츠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접수,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사항에 관한 현장조사 및 사후조치 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 인권침해 조사 TF팀 구성 시 참여 및 협조 등이다.

여기서 전문인력풀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며, 워크숍, 간담회, 세미나 개최, 교육자료 개발, 스포츠 인권침해 상담, 신고사항 관련 현장 조사 및 사후 조치 지원 등 행사성 사업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전문인력풀이 사업 추진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도의 장애인체육회가 전문인력풀을 구성하도록 한 것은 실제로 각 지역에서 장애인스포츠 권익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들을 통해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찾으려는데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72)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 8명, 부산 5명, 대구 6명, 인천 7명, 광주 8명, 대전 5명, 울산 6명, 세종 7명, 경기 10명, 강원 5명, 충북 6명, 충남 5명, 전북 7명, 전남 9명, 경북 5명, 경남 6명, 제주 6명임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 "8. 장애인스포츠 권익보호센터 지원(담당 : 장애인체육과/장체회 체육인지원센터)".

따라서 동 인력풀의 역할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된 2019년 이후의 인력풀 활용결과를 평가해 보고 개선사항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임원, 전임지도자, 국가대표 등의 결격사유 강화

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은 개정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다.

동 정관은 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중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제4호, '19.6.19. 개정). 이전의 정관에서는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 규정하여 조회대상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폭력·성폭력에 대한 영구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이전에 해당 비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영구결격 사유로 정했던 것을 해당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개정하여 폭력·성폭력에 대한 영구결격 사유를 강화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9.6.19.〉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19.6.19.〉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나) 가맹단체운영규정

'가맹단체운영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과 동일

하게 개정(제14조 제2항, ‘19.6.19 개정)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다. 또한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15.12.21 신설).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9.6.19.〉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19.6.19.〉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가맹단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신설 ‘15.12.21〉

다) 시도지회운영규정

‘시도지회운영규정’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다(제9조 제2항).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이다(‘19.6.19 개정).

〈시도지회운영규정〉

제9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9. 6. 19〉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19. 6. 19〉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라) 지도자협의회운영규정

'지도자협의회운영규정'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제6조 제3항),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위원이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제1항 제4호).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한 규정이다.

〈지도자협의회운영규정〉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인 이내
3. 위원은 장애인체육회 정 가맹단체의 종목별 지도자협의회 대표로 한다.〈개정 '18.2.6.〉
②제1항의 위원은 정기 등록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③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마)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역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제6조 제3항),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위원이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제1항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인 이내
3. 위원은 장애인체육회 정 가맹단체의 종목별 심판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16.8.2〉 〈개정 '18.2.6〉
② 제1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16.8.2〉
1. 경기단체 등록심판으로서, 최근 2년 내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한 자
2. 정기 등록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6.8.2〉

제11조(위원의 해촉)
①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6.8.2〉
1.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4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심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바) 전임지도자운영규정

'전임지도자운영규정'은 전임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장애인체육회 등으로부터 성폭력 등으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 지도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하였다(제5조 제8호, '19.3.7 개정). 다른 비위의 경우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채용될 수 있으나 성폭력 등 심각한 비위의 경우 징계만료 경과와 상관없이 영구히 지도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폭력 등에 대한 채용결격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성폭력 보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본 성추행, 성희롱의 경우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동 조 제11호).

한편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자격정지 기간에 관계없이 영구결격하도록 하고 있다(동 조 제12호). 강간, 강제추행을 가장 심각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보아 자격정지의 양형에 관계없이 영구결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제8호의 성폭력, 제11호의 성추행, 제12호의 강간, 강제추행의 차별화된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법적인 용어인 강간,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규정안에 성추행과 강제추행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성폭력과 강간·강제추행이 공존함으로써 용어의 표현과 채용결격사유의 경중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임지도자운영규정〉

제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전임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 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시도지회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 지도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19.3.7〉

11.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12.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사) 국가대표선발규정

'국가대표선발규정'은 국가대표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와 「국민체육진흥법」상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19.6.19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6호의3),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제6호의4)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성폭력범죄

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은 2019.6.29. 동 규정 개정 시 포함된 것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하겠다.

'국가대표선발규정'은 성인이나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모두 국가대표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국가대표 선정 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규정이라고 하겠다.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9.6.19.〉
2.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개정 '19.6.19.〉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개정 '19.6.19.〉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7.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3) 징계기준 강화

가) 인사규정

'인사규정'은 징계 사유로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음주 운전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제69조 제1항 제5호, '14.2.28. 신설, '15.3.25.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70조의6 제1항, '11.12.30. 신설, '15.3.25. 개정).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를 징계 사유로 포함시켰고,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징계사유로 성폭력 이외에 성희롱, 성매매를 포함시키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희롱, 성매매도 체육인이 해서는 안될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규정 개정 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인사규정〉

제69조(징계의 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장애인체육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개정 '14·2·28〉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개정 '14·2·28〉
5.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음주 운전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14·2·28〉 〈개정 '15·3·25〉

제70조의6(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제70조3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제70조의8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신설 '11·12·30〉 〈개정 '15·3·25〉**

나) 가맹단체운영규정

'가맹단체운영규정'은 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 및 시·도 가맹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사유의 하나로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를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제3호, '18.12.12. 개정, '19.6.19. 개정). 징계사유에 성폭력을 포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성희롱, 성매매도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9조(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 및 시·도가맹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단체 및 시·도가맹단체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개정 '18.12.12〉〈개정 '19.6.19.〉
4. 해당 가맹단체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조 제3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②징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다)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조사 및 징계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규정하였으며(제23조 제1항 제2호),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는 유형으로 폭력·성폭력을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5항 제2호, '19.5.29. 신설).

징계대상이나 징계의 감경, 사면, 복권, 해제금지 사유로 성폭력을 넣은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외에도 성희롱과 성매매를 징계대상이나 징계의 감경, 사면, 복권, 해제금지 사유로 포함시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하여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5. 10. 27.〉〈개정 '19. 5. 29.〉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폭력·성폭력

제31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① 제26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 5. 29.〉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신설 '19. 5. 29.〉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2. 폭력·성폭력
3. 승부조작, 편파판정

4) 선수·지도자 등록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가)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에서는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제7조 제1항, '19.6.19. 개정),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제12조 제5항, '19.6.19. 신설).

지도자(제21조 제1항, 제25조 제5항)나 심판(제30조 제1항, 제34조 제5항)의 경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선수·지도자·심판등록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중요한 예방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장애인 체육선수 스포츠 환경 및 인권상황조사)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48.7%, 없는 사람은 51.3%로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절반 정도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경험자 중 도움 정도를 물어본 결과 87.6%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실제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도움 되었다'는 응답은 남성 65.2%, 여성 55.2%로, 비경험자 남성 98.8%, 여성 89.7%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방법과 교육내용이 교육대상에 맞게 구성되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7조(선수등록 제한 및 취소)
①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1호에서 5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6.19.〉
② 등록절차를 마친 선수는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선수등록절차)
① 시·도경기단체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용하는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선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19.6.19.〉

제21조(지도자등록 제한 및 취소)
①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1호에서 5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6.19.〉

② 등록절차를 마친 지도자는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지도자등록 절차)
① 시·도 경기단체는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용하는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지도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지도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19.6.19.〉

제30조(심판등록 제한 및 취소)
①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1호에서 5호에 해당되는 심판은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6.19.〉
②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은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심판등록 절차)
① 경기단체는 장애인체육회가 운용하는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심판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심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19.6.19.〉

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윤리강령

'대한장애인체육회 윤리강령'에 의하면, 임직원은 상호 간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제17조 제4항),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임직원 상호 간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으로 나누어 명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이 금지되는 성희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시된 행위유형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리강령에 직접적으로 행위를 명시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윤리강령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기준은 성희롱 의미, 판단기준, 구제 방법 등을 기술한 성희롱 관련 매뉴얼에서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시스템을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특히 음란사이트 방문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음란물, 불법촬영물의 유포 등 행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규정명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윤리강령〉

제9조(공·사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정보시스템을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행동강령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행동강령'은 성희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제17조의 3, '16.6.16 신설, '16.12.19 개정).

임직원이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금지규정을 명시한 것은 성희롱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윤리강령'에서의 지적과 같이 행동강령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기준은 성희롱 의미, 판단기준, 구제 방법 등을 기술한 성희롱 관련 매뉴얼에서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고 하겠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의3(성희롱의 금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16.6.16.〉 〈개정 '16.12.19.〉

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주요 규정과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규정개정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권익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권익보호 전문 인력풀 구성과 관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은 각종 위원회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규정의 신설(제33조 제1항, '19.6.19 신설)과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성·선수 출신 위원을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신설하고 있다(제34조 제1항, '19.6.19 신설).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 권익보호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익보호 전문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시·도 전문인력풀은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출신,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상담사, 법률전문가 등과 행정지원이 가능한 시·도장애인체육회 직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19.5.29. 개정).

둘째, 임원, 전임지도자, 국가대표 등의 결격사유 강화와 관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은 개정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다. 폭력·성폭력에 대한 영구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이전에 해당 비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영구결격 사유로 정했던 것을 해당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개정하여 폭력·성폭력에 대한 영구결격 사유를 강화하였다.

관련 규정들이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정되었다.

셋째, 징계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인사규정'은 징계 사유로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음주 운전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제69조 제1항 제5호, '14.2.28. 신설, '15.3.25.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70조의6 제1항, '11.12.30. 신설, '15.3.25. 개정).

동 규정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를 징계 사유로 포함시켰고,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성희롱, 성매매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동 규정이 유일하다. 다른 규정들은 성폭력만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데, 인사규정과 같이 성희롱, 성매매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선수·지도자 등록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와 관련하여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제7조 제1항, '19.6.19. 개정),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5항, '19.6.19. 신설).

'대한장애인체육회 윤리강령'은 임직원 상호 간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는바, 윤리강령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기준은 성희롱 의미, 판단기준, 구제 방법 등을 기술한 성희롱 관련 매뉴얼에서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전체적인 요약을 기초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 등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전임지도자운영규정'은 전임지도자에 채용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한 조항 안에 성폭력, 성추행, 강간·강제추행으로 나누어 징계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 간 정리가 필요하다. 법적인 용어인 강간,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바, 동일한 조항 안에 성추행과 강제추행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성폭력과 강간·강제추행이 공존함으로써 용어의 표현과 채용결격사유의 경중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사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위원 해촉조항에 품위손상행위 이외에 성폭력의 명시가 필요하다.

'국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해촉사유로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 제3호), 성폭력을 명시해야 한다. 추상적인 품위손상행위로는 성폭력의 포함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폭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위원회 운영규정 중 많은 규정에서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 명시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징계사유에 성폭력 이외에 성희롱, 성매매를 포함한다.

'인사규정'은 징계 사유로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음주 운전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제69조 제1항 제5호, '14.2.28. 신설, '15.3.25. 개정), 이들에 대한 징계감경을 배제하고 있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를 징계 사유로 포함시켰고,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징계사유로 성폭력 이외에 성희롱, 성매매를 포함시키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희롱, 성매매도 체육인이 해서는 안될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디. 다른 규정 개정 시 시사점을 줄 수 있고,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징계요구에 성폭력 명시가 필요하다.

'시·도지회 운영규정'은 장애인체육회의 시·도지회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하나로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제12조 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중 '폭력'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폭력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폭력 이외에 성폭력을 분명히 명시하여 성폭력의 경우도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절반 정도이고, 만족도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은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을 새로이 구성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되지 않은 이유로 '교육이 형식적이어서' 62.8%, '교육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17.0%, '교육내용이 어려워서' 10.6%, '교육자/강사의 강의태도(발음, 속도, 자세 등)가 좋지 않아서' 4.3%, '교육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아서' 2.1%의 순으로 나타나서 교육대상자에게 맞는 교육방법을 활용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여섯째, 성희롱의 구체적인 유형은 매뉴얼 명시와 교육을 통해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행위 유형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강령 등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강령 등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기준은 성희롱 관련 매뉴얼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성희롱 유형,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주요 판례 분석 및 시사점

장애인 대상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은 발생비중이 비교적 높고 따라서 판례 건수도 상당한 양에 이르고있다[73].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7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75]에 규정을 두고 있다. 장애인은 아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 특히 취약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처벌

---

73) 부산지방법원 2014.7.18 선고, 2014고합260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4고합175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3고합 123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10.24 선고 2014고합264 판결

74)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5)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체육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판례는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애인 체육선수가 권력관계에 있는 코치, 감독, 임원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겠다. 형사소송이 아니라 상담이나 신고조차 가능했을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장애인 체육선수 관련 판결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의한 판례수집을 통해 가해자 처벌 및 범죄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화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국내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법제도 현황을 관련 법률, 조례, 정부의 정책,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 인권침해 금지와 체육활동 차별금지 및 지원에 관한 규정들이 제도화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괴롭힘 및 학대행위 금지조항을 두어 성적 침해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금지한 동 법의 내용은 체육선수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또한 동 법에서는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체육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 정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제정과 스포츠 비리 근절 등의 인권보호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체육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을 비롯한 각종 규정개정을 통해 임원, 전임지도

자, 국가대표 등의 폭력, 성폭력에 대한 영구결격 사유 강화, 징계기준 강화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등의 규정화로 이어졌다. 관련 규정의 개정은 장애인 인권침해 금지와 체육활동 차별금지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인권침해 금지와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는 동 법이 시행된 2008.4.11.부터 존재했던 규정인데 2019년에 관련 규약 등이 개정된 것은 10년 이상 지체되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규정개정의 동기가 스포츠계 미투운동의 발화에 근거하고 있어서 자발적인 규정개정 동기는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대한장애인 체육회 정관 등 주요 규정과 위원회 규정 집행담당자들의 규정실행 의지가 적극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폭력, 성폭력에 관한 임원 등의 결격사유나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피해사실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체육선수의 입장에서 감독, 코치, 선배선수 등의 위계구조로 인해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선수생활에 불리할까봐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감수하는 경향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포착되었는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마음놓고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폭력·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라도 징계, 처벌을 통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는 찾기 어려운 장애인 체육선수 대상의 성폭력 판례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윤리강령에 성희롱 금지규정이 있고, 선수·지도자 등록규정에 등록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방교육의 현실화, 체계화가 필요하다.

한편 관련 규정상 성폭력, 성추행, 강간, 강제추행에 관한 용어가 혼재된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용어사용이 필요하며, 징계사유에 성폭력 이외에 성희롱, 성매매를 명시하고, 성희롱, 성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배포가 필요하다. 성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은, 예컨대 강간, 강제추행 이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도 성폭력의 하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이고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장애 체육인 관련 구성원 모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Ⅳ

장애인 체육선수 스포츠 환경 및 인권상황 조사·분석 결과

1. 연구 개요 61
2. 실태조사 결과 69
3. 심층면접 결과 187
4. 소결 19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연구 개요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즉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각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실태조사

1) 조사 준비 및 진행 과정

실태조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이메일 혹은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이에 관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8월 말부터 협의를 시작하였다.

연구 계획상으로는 9월 초부터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유형 중 온라인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지적장애 선수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와 최종 동의 리스트 제공 방식 등에 대해 상호 논의가 필요하여, 궁극적으로 9월 말이 되어서야 조사 진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다.

본 실태조사의 조사 시점(2019년 8월 중순)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체육선수는 총 13,565명이었다. 그러나 모바일 정보가 중복되는 인원들이 있었고[76], 이들을 제외한 실제 조사를 위해 개별 식별이 가능한 모바일 정보를 갖고 있는 대상자는 총 10,709명이었다. 이들을 본 실태조사의 최종 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모집단 현황은 〈표 Ⅳ-1〉과 같다.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조사를 위해서 개인정보(모바일 번호)에 대한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하므로, 9월 26일부터 전체 모집단 대상자에게 일괄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가장 하단에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으며, 동의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로 최종 구성하였다. 이 작업을 9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이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 체육회 및 관련 단체에 조사 홍보 및

76) 장애인 선수의 경우, 특히 중증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수등록 과정에서 코칭스태프나 협회 사무국 등에서 대신 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 과정에서 일괄 동일 모바일 번호를 기재한 경우도 있음. 이는 심층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임.

참여 독려 등 협조를 요청하였다. 궁극적으로 1차 조사는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조사 참여자가 10월 7일 기준 410명으로 저조하여, 1차 조사기간이 완료되기 3일 전에 조사 동의자 수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 조사안내 문자를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 중심으로 재발송하였다. 1, 2차 조사안내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자는 총 1,590명이었다. 이는 모집단의 14.8%에 해당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모두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2차 조사가 완료된 10월 18일, 조사 참여자는 912명으로 개인정보동의자의 57.4% 수준이었다. 이 기간 중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개최되었고, 이때 온라인 조사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합하는 경기장[77]에 조사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9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 대상자가 912명에 포함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논의하여, 10월 말까지 3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1, 2차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전체 모집단에 대해 조사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조사 독려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0월 31일까지 1,57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는 모집단의 14.7%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2) 조사 모집단과 조사 참여자 비교

본 조사의 최종 참여자는 1,576명이다. 이들 중 20세 미만은 총 158명이었다. 여기서 19세 성인은 40명, 중·고등학생은 104명, 초등학생은 14명이다. 본 조사는 크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및 성인(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맞게 각각 설문지를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조사 참여자 수가 14명으로 분석을 위해서는 그 규모가 부족하고, 또한 설문지 문항구성도 중·고등학생 및 성인과는 많이 차이가 있어, 본 분석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장애유형에서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잘 못 기재한 8명도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자는 1,554명이다.

본 조사의 모집단에서 성별은 크게 남성이 73.9%, 여성이 26.1%를 차지한다. 그런데 본 조사의 참여자 성별도 남성은 75.9%, 여성은 24.1%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77) 10월 15일: 15:00-18:00 농구(잠실학생체육관), 10:00-17:00 수영(인천문학박태환수영장) / 10월 16일: 09:00-18:00 볼링(스핀볼링센터), 10:00-18:00 탁구(잠실실내체육관) / 10월 17일: 10:00-16:00 배드민턴(불암산배드민턴장), 09:00-16:30 육상(잠실종합운동장 주(보조)경기장 / 10월 18일 08:00-18:00 역도(올림픽공원 올림픽홀), 10:00-12:45 축구(서울월드컵 경기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각 10세 간격마다 차이는 보이지만, 참여자의 연령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장애유형을 보면, 모집단의 경우 신체적 장애가 전체의 76.2%, 정신적 장애가 19.6%를 차지한다. 그러나 본 실태조사에서는 신체적 장애가 83.8%, 정신적 장애는 16.2%로 확인된다. 이는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조사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집단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부 장애유형의 선수들을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이 참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조사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모집단의 분포와 소폭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다양한 지역의 선수들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Ⅳ-1〉 본 조사의 모집단 및 참여자(응답자) 현황

구분		모집단[1]						실태조사[2]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N	%	N	%	N	%	N	%	N	%	N	%
연령	19세 이하	1143	75.0	380	25.0	1523	14.2	95	66.0	49	34.0	144	9.3
	20-29세	1295	75.2	427	24.8	1722	16.1	163	70.0	70	30.0	233	15.0
	30-39세	1008	82.1	220	17.9	1228	11.5	175	81.8	39	18.2	214	13.8
	40-49세	1414	77.3	416	22.7	1830	17.1	282	77.0	84	23.0	366	23.6
	50-59세	1772	69.5	777	30.5	2549	23.8	326	75.1	108	24.9	434	27.9
	60세 이상	1277	68.8	580	31.2	1857	17.3	139	85.3	24	14.7	163	10.5
장애유형	비장애인	281	62.9	166	37.1	447	4.2	0	0.0	0	0.0	0	0.0
	신체적 장애	5982	73.3	2178	26.7	8160	76.2	996	76.4	307	23.6	1303	83.8
	정신적 장애	1646	78.3	456	21.7	2102	19.6	184	73.3	67	26.7	251	16.2
	검도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0.1
	골프	472	71.6	187	28.4	659	6.2	62	75.6	20	24.4	82	5.3
	농구	401	89.7	46	10.3	447	4.2	72	91.1	7	8.9	79	5.1
	당구	332	80.8	79	19.2	411	3.8	63	85.1	11	14.9	74	4.8
	댄스 스포츠	86	42.2	118	57.8	204	1.9	7	53.8	6	46.2	13	0.8
	론볼	428	69.8	185	30.2	613	5.7	47	73.4	17	26.6	64	4.1
	롤러 스포츠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0.1
	바둑	0	0.0	0	0.0	0	0.0	6	100.0	0	0.0	6	0.4
	바이 애슬론	0	0.0	1	100.0	1	0.0	2	100.0	0	0.0	2	0.1

구분		모집단[1]						실태조사[2]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N	%	N	%	N	%	N	%	N	%	N	%
종목	배구	137	64.6	75	35.4	212	2.0	24	68.6	11	31.4	35	2.3
	배드민턴	311	74.2	108	25.8	419	3.9	84	80.8	20	19.2	104	6.7
	보치아	298	69.6	130	30.4	428	4.0	34	85.0	6	15.0	40	2.6
	볼링	521	66.7	260	33.3	781	7.3	103	67.8	49	32.2	152	9.8
	빙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사격	154	79.8	39	20.2	193	1.8	22	75.9	7	24.1	29	1.9
	사이클	133	76.9	40	23.1	173	1.6	23	79.3	6	20.7	29	1.9
	수영	481	72.5	182	27.5	663	6.2	88	70.4	37	29.6	125	8.0
	수중 - 핀수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스노보드	5	100.0		0.0	5	0.0	2	100.0	0	0.0	2	0.1
	스키	0	0.0	0	0.0	0	0.0	2	66.7	1	33.3	3	0.2
	승마	23	71.9	9	28.1	32	0.3	0	0.0	2	100.0	2	0.1
	아이스슬레지하키	35	97.2	1	2.8	36	0.3	8	88.9	1	11.1	9	0.6
	알파인 스키	13	65.0	7	35.0	20	0.2	3	100.0	0	0.0	3	0.2
	야구/소프트볼	0	0.0	0	0.0	0	0.0	2	100.0	0	0.0	2	0.1
	양궁	67	79.8	17	20.2	84	0.8	14	66.7	7	33.3	21	1.4
	역도	290	68.6	133	31.4	423	3.9	44	58.7	31	41.3	75	4.8
	요트	19	79.2	5	20.8	24	0.2	2	50.0	2	50.0	4	0.3
	유도	62	78.5	17	21.5	79	0.7	15	71.4	6	28.6	21	1.4
	육상	567	69.1	253	30.9	820	7.7	67	69.1	30	30.9	97	6.2
	조정	175	62.3	106	37.7	281	2.6	17	81.0	4	19.0	21	1.4
	철인3종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0.1
	축구	911	100.0	0	0.0	911	8.5	87	100.0	0	0.0	87	5.6
	크로스컨트리	3	50.0	3	50.0	6	0.1	1	50.0	1	50.0	2	0.1
	탁구	935	71.9	365	28.1	1300	12.1	190	76.0	60	24.0	250	16.1
	태권도	112	76.7	34	23.3	146	1.4	14	58.3	10	41.7	24	1.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구분		모집단[1]						실태조사[2]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N	%	N	%	N	%	N	%	N	%	N	%
	휠체어 럭비	115	93.5	8	6.5	123	1.1	23	95.8	1	4.2	24	1.5
	휠체어 컬링	34	68.0	16	32.0	50	0.5	8	66.7	4	33.3	12	0.8
	휠체어 테니스	81	82.7	17	17.3	98	0.9	16	76.2	5	23.8	21	1.4
	휠체어 펜싱	54	69.2	24	30.8	78	0.7	5	55.6	4	44.4	9	0.6
	기타	654	66.1	335	33.9	989	9.2	21	75.0	7	25.0	28	1.8
지역	서울	869	73.8	309	26.2	1178	56.9	136	71.2	55	28.8	191	12.3
	부산	391	77.9	111	22.1	502	24.3	61	80.3	15	19.7	76	4.9
	대구	337	70.6	140	29.4	477	23.1	54	68.4	25	31.6	79	5.1
	인천	447	78.7	121	21.3	568	27.5	54	74.0	19	26.0	73	4.7
	광주	325	73.9	115	26.1	440	21.3	36	69.2	16	30.8	52	3.3
	대전	350	72.8	131	27.2	481	23.2	56	81.2	13	18.8	69	4.4
	울산	335	76.0	106	24.0	441	21.3	30	66.7	15	33.3	45	2.9
	세종	95	72.0	37	28.0	132	6.4	19	95.0	1	5.0	20	1.3
	경기	1482	71.6	587	28.4	2069	100.0	247	76.0	78	24.0	325	20.9
	강원	342	75.3	112	24.7	454	21.9	68	87.2	10	12.8	78	5.0
	충북	427	73.4	155	26.6	582	28.1	57	70.4	24	29.6	81	5.2
	충남	539	73.0	199	27.0	738	35.7	83	78.3	23	21.7	106	6.8
	전북	402	73.9	142	26.1	544	26.3	44	73.3	16	26.7	60	3.9
	전남	399	79.5	103	20.5	502	24.3	37	77.1	11	22.9	48	3.1
	경북	434	72.9	161	27.1	595	28.8	78	81.3	18	18.8	96	6.2
	경남	420	75.7	135	24.3	555	26.8	76	79.2	20	20.8	96	6.2
	제주	311	69.7	135	30.3	446	21.6	44	74.6	15	25.4	59	3.8
	시도없음	4	80.0	1	20.0	5	0.2	0	0.0	0	0.0	0	0.0
전체		7,909	73.9	2,800	26.1	10,709	100.0	1,180	75.9	374	24.1	1,554	100.0

주: 1) 모집단 현황은 한국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 리스트에서 전화번호 중복자를 제외한 것임.
2) 실태조사의 19세 이하 응답자에는 초등학생(14명)은 제외되었음.

자료: 한국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

한편, 분석 대상자 1,554명에 대한 세부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청각장애' 13.6%, '지적장애' 13.4%, '뇌병변장애' 11.2%, '시각장애' 4.8%, '언어장애' 2.9%, '자폐성장애' 2.4% 순이다. 이 외에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 '안면장애', '정신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뇌전증장애'는 각각 1% 미만을 차지하며, '간장애'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없었다.

〈표 Ⅳ-2〉 조사 참여자의 장애유형

(단위: %, 명)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사례 수
48.9 (760)	11.2 (174)	4.8 (75)	13.6 (212)	2.9 (45)	0.4 (6)	0.8 (12)	0.1 (2)	-	0.2 (3)	0.8 (12)	0.1 (2)	13.4 (209)	2.4 (37)	0.3 (5)	100.0 (1,554)

3) 조사 내용

본 조사는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청소년), 그리고 성인(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각각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최종 응답자의 규모(14명)가 적고, 또한 문항도 청소년 및 성인과는 매우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 최종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조사 내용은 청소년용과 성인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조사 영역도 학습권과 접근권, 건강권/재생산권 및 폭력과 성폭력과 같이 총 5개로 구분하였다. 일부 접근권 영역에서 성인의 경우 훈련장/운동 장소로의 접근방법과 활동보조인의 고용과 비용 부담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을 뿐, 그리고 학습권에서 성인의 경우 대학(원)생에 한해서만 응답하고, 나머지 내용은 청소년과 성인이 모두 동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3〉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설문지 구성 영역과 항목

영역	항목	청소년	성인
학습권	대회출정/시합 준비로 학교/학과수업 빠진 경험 및 빠진 이유	○	○
	어떻게 학교/학과수업 보충 및 학교/학과에서 보충수업의 도움 정도	○	○
	운동과 공부 병행 필요성 및 필요/불필요 이유	○	○
	하루 평균 운동시간, 주말/공휴일 운동, 운동시간의 일상생활 지정 정도	○	○
접근권	평소 훈련/운동 장소, 해당 장소로 이동수단 및 이동수단의 불편정도, 불편한 이유		○
	훈련장/운동장소로 갈 때 동행자,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고용 시 월 지출 비용, 비용 부담정도		○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이용 여부 및 불편 정도, 불편 이유	○	○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여부 및 이용 거부/차별 경험	○	○
	민간체육시설 이용 여부 및 이용 거부/차별 경험	○	○
	평소 운동하는 시설까지 소요 시간	○	○
건강권과 재생산권	(생리로)몸이 아프거나 좋지 않을 때 휴식/휴가에 대해 요청 가능성,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	○	○
	몸이 아파서 혹은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경기출전/훈련참가 어려운 상황에서 거부당한 경험, 좋지 않은 몸 상태를 숨기고 경기출전/훈련참가 경험, 경기출전/시합을 위해 피임약을 복용하여 생리일을 미룬 경험	○	○
폭력 인식과 피해 경험	지도자의 체벌과 복종에 대한 인식	○	○
	운동부 내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 경험	○	○
	폭력 가해자와의 관계, 성별 및 폭력피해 장소, 폭력 피해 이후 내·외부 기관 도움 요청, 도움 요청한 대상/기관, 미용청한 이유	○	○
	동료의 폭력피해에 대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 가해자와의 관계, 성별 및 피해 장소, 발생 정도	○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경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가해자와의 관계, 성별 및 피해 장소, 처음 경험한 피해시기, 지금 운동부에서의 경험과 발생 정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 대응하지 않은 이유, 내·외부 기관 도움 요청 및 미요청 이유, 도움 요청으로 인한 2차 피해 및 트라우마	○	○
	동료의 성폭력피해에 대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 가해자와의 관계, 성별 및 발생 장소, 발생 정도	○	○
성폭력 인식 및 예방교육	성폭력 상황별 인식	○	○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도움 되지 않은 이유	○	○
	장애인 운동부 성폭력 근절 가능성 및 근절이 어려운 이유	○	○
인적사항	장애유형, 장애정도, 거주지역, 운동종목, 운동시작 연도	○	○

나. 심층면접

1) 심층면접 대상자 섭외

앞서 살펴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체육선수의 학습권, 이동권 및 접근권, 건강권 및 재생산권, 신체폭력(구타 등)과 성폭력에 대한 양적 실태는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적 수치 이면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기에는 실태조사로는 부족함이 있다. 특히, 신체폭력과 성폭력은 선수 개인적으로나 소속된 운동부/소속팀 및 협회 차원에서는 매우 민감한 이슈인 만큼, 사건 발생의 원인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수용도 등은 실태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크게 신체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인 선수와 이들의 보호자(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통해 3명을 추천받았다. 그러나 1명은 전화 섭외 과정에서 참여를 원치 않았고, 1명은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면접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1명은 면접장소에서 만났지만, 선수 개인의 심경 변화로 면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섭외 과정에서 신체폭력과 성폭력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이슈이고, 혹여나 선수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까 두려움과 소속 팀원(선수 동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부담감이 피해자에게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와 논의한 후,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지의 가장 뒤에 심층면접 희망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희망자에 한해서 섭외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10월 중순 실태조사가 완료된 이후 심층면접 희망자 리스트(성별, 장애유형, 종목, 거주지역 관련 정보 포함)를 조사대행기관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참여 희망자 중에 거주지역이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랜덤으로 섭오를 하였다. 이때 성별과 장애유형 및 운동종목은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수 12명(남성 2명, 여성 10명), 보호자 2명(어머니)이 연구가 마감되는 11월 말까지 섭외가 되어, 이들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심층면접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78)]

78) 심층면접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층면접 결과에서 참여자 특성을 참고하기 바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심층면접 구성 및 방법

심층면접은 신체폭력과 성폭력에 초점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폭력에 관한 인식과 경험, 피해 이후의 대처와 내·외부 기관 신고/조치, 2차 피해 경험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의견 등으로 실태조사의 구성과 큰 틀에서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다만, 심층면접 과정에서 폭력 피해의 상황과 맥락, 그리고 피해 경험에 따른 반응과 감정, 선수로의 어려움 등은 면접 참여자의 성별과 장애유형 및 운동종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어, 면접지는 고정된 하나의 구체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지 않고, 면접 참여자의 응답 상황과 컨디션 등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함께 젠더 감수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를 본 연구의 공동연구진으로 섭외하였고, 이 연구진을 통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진 이외 심층면접에는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1인의 연구진이 추가로 참여하여, 면접 내용을 기록하였고, 이를 통해 심층면접 진행자는 면접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진행자만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심층면접 진행자는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본인의 상황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였다. 그리고 면접 전에 면접의 목적과 활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답변하지 않아도 됨을 고지하였다. 면접은 면접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장소는 참여자의 거주지 이외에도 거주지 인근 커피숍과 운동하는 시설이었는데, 이때 가능한 한 한적하면서 면접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선별해서 정하였다.

2. 실태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1,554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보면, 남성은 1,180명으로 전체의 75.9%를, 여성은 374명으로 24.1%를 차지한다. 조사 대상은 중·고등학생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었는데, 중·고등학생은 전체의 6.7%, 성인은 93.3%이었다. 생애로 다시 구분해서 보면, 청소년은 중·고

등학생과 같이 6.7%로 동일하며, 청년은 31.3%, 나머지 62.0%는 중장년이었다.

장애유형을 대분류 기준에서 보면, '신체적 장애'가 83.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16.2%는 '정신적 장애'이다. 정신적 장애는 여성이 17.9%로 남성 15.6%보다 소폭 더 높았다.

장애유형을 중분류 기준에서 보면, '외부신체기능장애'가 91.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내부기관장애'는 2.0%, 나머지 16.1%는 '발달/정신장애(발달장애 15.8%, 정신장애 0.3%)'에 해당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외부신체기능장애'와 '내부기관장애' 비율이 여성보다 소폭 더 높았고, 여성은 '발달장애' 비율이 남성보다 소폭 더 높았다.

장애유형을 소분류 기준으로 보면, '지체장애'가 전체 분석대상자의 과반에 조금 밑도는 48.9%로 가장 높았고, '뇌병변장애' 11.2%, '시각장애' 4.8%, '청각장애' 13.6%, '언어장애' 2.9%, '안면장애' 0.4%, '신장/심장/호흡기/장루·요루/뇌전증장애(신장장애 0.8%, 심장장애 0.1%, 호흡기장애 0.2%, 장루·요루장애 0.8%, 뇌전증장애 0.1%)' 2.0%, '지적/자폐/정신장애(지적장애 13.4%, 자폐 2.4%, 정신장애0.3%)'가 16.2%이었다. 여기서 '지체장애'와 '신장/호흡기/장루·요루/뇌전증장애'는 남성이, '시각과 청각장애, 지적장애' 비율은 여성이 소폭 더 높았다.

장애등급(예전 등급제 기준)은 크게 '경증(4~6급)'과 '중증(1~3급)'으로 구분하였는데, '경증'은 16.2%였고, 나머지 83.8%는 '중증'이었다. 성별로 보면, '중증'은 남성이 84.5%로 여성 81.8%보다 소폭 높았다.

중목은 크게 '기록종목'과 '단체종목', '개인단체종목'과 '개인경기'로 구분하였는데, '기록종목'이 거의 절반 정도인 46.4%로 가장 많았다. '개인단체'는 25.5%, '단체종목' 16.3%, '개인경기' 11.8% 순으로 나타났다. '기록종목'은 여성이 57.2%로 남성 43.0%보다, 그리고 '단체종목'은 남성이 19.3%로 여성 7.0%보다 각각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4〉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성별	남성			75.9	-	-	1,180
	여성			24.1	-	-	374
대상	중·고등학생			6.7	6.0	8.8	104
	성인			93.3	94.0	91.2	1,450
생애	청소년			6.7	6.0	8.8	10.4
	청년			31.3	30.7	33.4	487
	중장년			62.0	63.3	57.8	963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83.8	84.4	82.1	1,303
	정신적 장애			16.2	15.6	17.9	251
장애 유형 (중)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81.9	82.2	80.7	1,272
		내부기관의 장애		2.0	2.2	1.3	31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15.8	15.3	17.7	246
		정신장애		0.3	0.3	0.3	5
장애 유형 (소)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장애	지체장애	48.9	50.5	43.9	760
			뇌병변장애	11.2	11.2	11.2	174
			시각장애	4.8	4.7	5.3	75
			청각장애	13.6	12.6	16.8	212
			언어장애	2.9	2.9	2.9	45
			안면장애	0.4	0.3	0.5	6
		소계		819	82.2	80.7	1,272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	0.8	0.5	0.8	12
			심장장애	0.1	0.0	0.3	2
			호흡기장애	0.2	0.3	0.0	3
			장루·요루장애	0.8	0.8	0.5	12
			뇌전증장애	0.1	0.2	0.0	2
		소계		2.0	2.2	1.3	31

구분				비율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13.4	12.5	16.6	209
			자폐성장애	2.4	2.8	1.1	37
		정신장애	정신장애	0.3	0.3	0.3	5
		소계		16.2	15.6	17.9	251
장애등급	경증(4~6급)			16.2	15.5	18.2	251
	중증(1~3급)			83.8	84.5	81.8	1,303
종목	기록			46.4	43.0	57.2	721
	단체			16.3	19.3	7.0	254
	개인단체			25.5	25.9	24.1	296
	개인경기			11.8	11.8	11.8	183
전체	비율			100.0	100.0	100.0	1,554
	사례수				1,180	374	

나. 학습권 실태

본 조사의 참여자는 총 1,554명으로 이들 중 중·고등학생은 104명, 대학(원)생은 105명이다. 이들은 장애인 체육선수의 학습권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중에서는 99명(95.2%)만이 학습권 실태 문항에 응답하였고, 나머지 5명[79]은 응답하지 않았다. 대학(원)생은 모두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고등학생 99명과 대학(원)생 105명, 총 204명이 학습권 실태 문항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1) 대회출전 및 시합(훈련)시 학교(학과)수업 결손 정도 및 자발적 선택과 보충 방법

대회출전이나 시합 준비(훈련)의 이유로 학교(학과)수업에 빠진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혀 없다'는 응답은 33.3%(68명)이었다. 나머지 66.7%

79) 무응답자 5명 중 2명은 신체적 장애(뇌병변장애 1명, 청각장애 1명), 3명은 정신적 장애(모두 지적장애)였음. 그리고 이들의 장애등급은 1명만 경증이었고, 나머지 4명은 중증이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136명)는 빠진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에서 '가끔 있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종종 있다'는 응답은 15.2%, '항상 있다'는 응답도 13.2%가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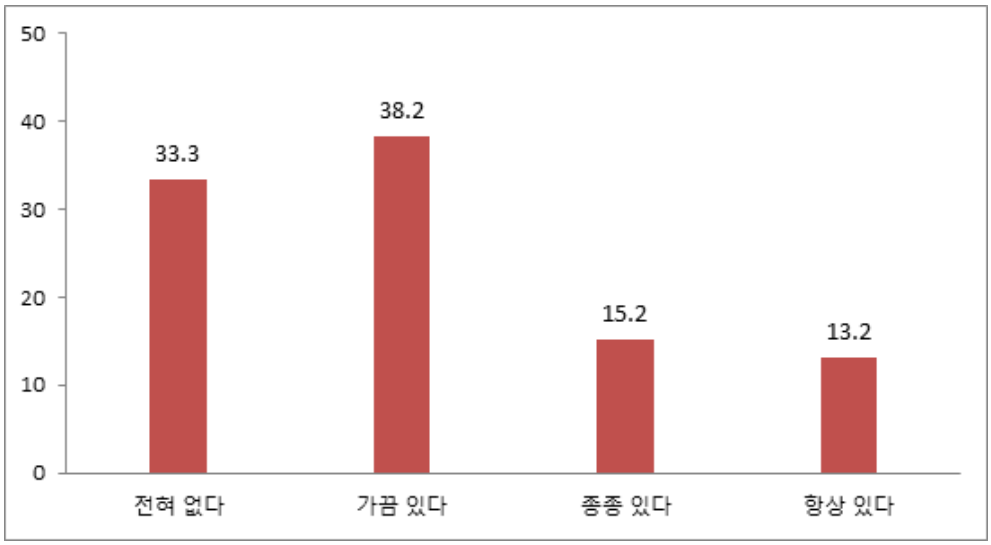

[그림 Ⅳ-1]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시 학교(학과)수업 빠지는 정도

성별로 보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남성 34.7%와 여성 30.0%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있다'는 응답자 중 그 빈도가 '종종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이 23.3%로 남성 11.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항상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이 13.9%로 여성 11.7%보다 약간 더 높았다. '종종'과 '항상' 있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여성이 35.0%로 남성 2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대상자별로 보면, 학교(학과)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중·고등학생이 28.3%로 대학(원)생 38.1%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다시 말해서, 중·고등학생은 대학(원)생보다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을 위해 학교(학과)수업을 빠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항상' 빠진다는 비율은 성인(대학(원)생)이 16.2%로, 중·고등학생 10.1%보다 좀 더 높았다.

장애유형을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대회 출전이나 시합 준비(훈련)로 학교(학과)수업을 '항상' 빠진다는 비율은 신체적 장애가 14.5%였는데, 이는 정신적 장애 체육선수의

동일 응답 11.5%보다 소폭 더 높다. 소분류 기준으로 가끔 이상으로 학교(학과)수업을 빠진다는 응답은 '심장장애' 2명 모두, '자폐성장애' 11명 중 90.9%,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는 모두 70% 이상이 응답하였다.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항상' 빠진다는 응답은 '뇌변병 장애(19.0%)'와 '청각 장애(18.8%)', '자폐성 장애(18.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등급[80]별로 보면, 경증 장애의 경우 학교(학과)수업을 빠진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8.0%이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의 경우는 이보다 4배 이상 높은 36.9%가 이에 응답하였다. 즉, 경증의 체육선수의 경우 수업에 빠진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리고 빠지는 빈도 역시 '항상 있다'는 응답이 '중증'에서는 12.3%였지만, '경증'에서는 이보다 높은 20.0%이었다.

경기종목을 보면, '항상' 빠진다는 응답은 '개인경기'와 '개인단체'가 각각 19.0%와 18.9%로 가장 높았다. 이보다는 낮지만 '기록종목'은 11.2%, '단체종목'은 10.3%가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전체의 70% 가까이는 대회출전이나 훈련 등으로 수업을 가끔 이상 빠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중·고등학생이 이런 상황을 좀 더 경험한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보다는 신체적 장애, 중증보다는 경증에서 수업에 빠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개인경기와 개인단체의 경우, 항상 빠지는 비율이 높아, 지도자와 1:1 혹은 개별적으로 경기를 해야 하는 경우 학교/학과 수업을 빠지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함을 유추할 수 있다.

80)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고, 체육인의 경우 스포츠 등급분류를 따르지만, 이는 종목과 장애유형에 따라 상이하여, 비교분석이 어려움. 이에 본 분석에서는 이전의 장애등급제(경증과 중증)를 적용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5〉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시 학교(학과)수업 빠지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비율				사례수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종종 있다	항상 있다	
성별	남성			34.7	39.6	11.8	13.9	144
	여성			30.0	35.0	23.3	11.7	60
대상	중·고등학생			28.3	42.4	19.2	10.1	99
	대학(원)생			38.1	34.3	11.4	16.2	105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31.6	41.0	12.8	14.5	117
	정신적 장애			35.6	34.5	18.4	11.5	87
장애 유형 (소)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장애	지체장애	29.5	50.0	6.8	13.6	44
			뇌병변장애	47.6	14.3	19.0	19.0	21
			시각장애	22.2	66.7	11.1	0.0	9
			청각장애	21.9	40.6	18.8	18.8	32
			언어장애	50.0	25.0	12.5	12.5	8
			안면장애	-	-	-	-	-
		내부기관 장애	신장/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 등	33.3	66.7	0.0	0.0	3
	정신적 장애	발달/정신 장애	지적/자폐/ 정신장애	35.6	34.5	18.4	11.5	87
장애 등급	경증(4~6급)			8.0	60.0	12.0	20.0	25
	중증(1~3급)			36.9	35.2	15.6	12.3	179
종목	기록			33.6	37.4	17.8	11.2	107
	단체			33.3	41.0	15.4	10.3	39
	개인단체			32.4	35.1	13.5	18.9	37
	개인경기			33.3	42.9	4.8	19.0	21
전체	비율			33.3	38.2	15.2	13.2	204
	사례수			68	78	31	27	

주: 장애유형 중 소분류에 속하는 신장/심장/호흡기/뇌전증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속하는 지적/자폐/정신장애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소수여서, 여기서는 신체적 장애 중 외부신체 기능장애에 속하는 장애의 세부 장애유형만을 제시함

이와 같이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준비로 학교(학과)수업을 가끔 이상으로 빠진다고 응답자 136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이 자발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지도자나 부모의 결정에 의한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나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는 응답이 81.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나머지는 '부모의 결정 때문이다'와 '감독이나 코치 등 주변의 강요나 압박 때문이다'로 각각 9.6%와 8.8%가 응답하였다.

대상자별로 보면, '나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는 응답은 대학(원)생이 84.6%로 중·고등학생 78.9%보다 좀 더 높았다. 이외 응답에서는 대상자 간 차이를 보였는데, 성인은 '감독이나 코치 등 주변의 강요나 압박 때문이다(12.3%)'는 응답이, 중·고등학생은 '부모의 결정 때문이다(15.5%)'는 응답이 준거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나 스스로 결정했다'는 응답은 신체적 장애에서 85.0%로 정신적 장애 76.8%보다 높았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는 '부모의 결정 때문이다'는 응답이 16.1%로 신체적 장애의 동일 응답인 5.0%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장애등급별로 보면, 스스로 결정한 경우는 예상할 수 있듯이 등급이 '경증'에서 87.0%로 '중증' 80.5%보다 좀 더 높았다. 반면에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는 '중증'이 10.6%로 '경증' 4.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어서 장애유형(대분류 기준)과 장애등급을 교차하여 살펴보았다. 경기출전이나 시합(훈련) 시에 학교(학과)수업을 빠지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경우는 '경증의 신체적 장애'에서 94.1%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중증의 신체적 장애' 82.5%, '중증의 정신적 장애' 78.0%, '경증의 정신적 장애' 66.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경기종목별로 보면, '스스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기록종목'에서 77.5%로 가장 낮았다. '감독이나 코치 등 주변의 강요나 압박'으로 학교(학과)수업을 빠지는 경우는 '개인경기'에서 14.3%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로 수업을 빠지는 것의 결정은 대체로 선수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이해와 필요성 및 개인의 의지 등 이외의 운동 환경적 분위기(선수 선후배간의 위계적 관계 등)는 확인하지 못해 해석 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는 본인이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유형이 정신적 장애인 경우, 그리고 장애등급이 중증인 경우, 부모의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6〉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시 학교(학과)수업 빠지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

(단위: %, 명)

구분		비율			사례수
		나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감독이나 코치 등 주변의 강요나 압박 때문이다	부모의 결정 때문이다	
성별	남성	78.7	10.6	10.6	94
	여성	88.1	4.8	7.1	42
대상	중·고등학생	78.9	5.6	15.5	71
	대학(원)생	84.6	12.3	3.1	65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85.0	10.0	5.0	80
	정신적 장애	76.8	7.1	16.1	56
장애 등급	경증(4~6급)	87.0	8.7	4.3	23
	중증(1~3급)	80.5	8.8	10.6	113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94.1	5.9	0.0	17
	신체적 장애 × 중증	82.5	11.1	6.3	63
	정신적 장애 × 경증	66.7	16.7	16.7	6
	정신적 장애 × 중증	78.0	6.0	16.0	50
종목	기록	77.5	9.9	12.7	71
	단체	80.8	7.7	11.5	26
	개인단체	92.0	4.0	4.0	25
	개인경기	85.7	14.3	0.0	14
전체	비율	81.6	8.8	9.6	136
	사례수	111	12	13	

2) 대회 출전 및 시합(훈련)으로 학교(학과)수업 결손시 보충 방법과 학교 보강시 도움 정도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으로 학교(학과)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136명에게, 어떻게 수업을 따라가는지 물어 보았다. 이는 대상에 따라 응답보기가 다른 만큼,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고등학생의 경우 '나 스스로 학습한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 '학교 선생님(감독, 코치 등 제외)이 보충수업을 해 준다'는 응답이 33.8%, '부모님이 학습자료로 보충해 준다' 23.9%,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통해 보충한다' 8.5%이었다.

대학(원)생의 경우도 중·고등학생의 응답과 같이 '나 스스로 학습(보강)한다'는 응답이 60.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과에서 리포트 제출 등으로 학과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해 준다' 38.5%, '학과에서 보강수업을 해준다' 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81].

이상의 결과를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의 성별로 살펴보았는데, 소폭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응답 순위와 경향은 동일하였다.

이어서 장애유형(대분류)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학(원)생과 중·고등학생 중 신체적 장애의 결과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중 정신적 장애의 경우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체적 장애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나, 정신적 장애의 경우 '학교 선생님(감독, 코치 등 제외)이 보충수업을 해 준다'는 응답이 38.6%로 '나 스스로 학습한다'는 응답 36.4%보다 소폭 더 많았다. 또한 '부모님이 학습자료로 보충해 준다'는 응답도, 신체적 장애는 18.5%이지만, 정신적 장애는 이보다는 높은 27.3%가 응답하였다.

장애등급별로 보면, 이 역시 경증과 중증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체 결과와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중 '중증'의 경우 '부모님이 학습자료로 보충해 준다'는 응답이 26.7%로, '경증'의 9.1%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고등학생 '중증'의 경우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통해 보충한다'는 응답이 10.0%이었는데, '경증'은 없었다. 오히려 '경증'은 '학교선생님이 보충수업을 해 준다'와 '나 스스로 학습한다'는 응답이 각각 45.5%와 54.5%로, '중증'의 응답 31.7%와 43.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상당수가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로 수업을 빠질 경우, 이에 대한 보충(보강)을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선생님이, 대학(원)생은 학과에서 대체방안으로 보충(이수)을 해 주고 있긴 하지만 과반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은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학습자료로 보충을 해 주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특히,

81)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의 응답 중 '기타'에 속하는 비율은 각각 14.1%와 10.8%임. 중·고등학생의 '기타'에 속하는 학교수업을 빠진 이유 중에서는 'e스쿨(2.7%)', '포기한다(2.7%)', '현재 부족한 학업에 대체가 없는 상황이고 환경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학원·과외 등 받을 수 없다'는 응답이 많았음. 대학(원)생의 경우 '기타' 응답 중에는 '결석 처리함', '공문 제출하여 출석처리 함', '도우미를 통해 수업 필기를 빌림', '친구를 통해 보충함' 등의 응답이 있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장애유형이 정신적 장애인 경우나 중증에서는 부모가 이를 담당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7〉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로 학교(학과)수업 빠진 경우 보충 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학교 선생 보충 수업 해줌	학원·개인 과외 보충	부모 학습 자료 보충 해줌	자체 학습	기타	사례수	학과에서 보강 수업 해줌	학과에 리포트로 대신함	자체 학습	기타	사례수
장애유형	중고등학생	신체적 장애	25.9	11.1	18.5	59.3	11.1	27					
		정신적 장애	38.6	6.8	27.3	36.4	15.9	44					
	대학(원)생	신체적 장애							24.5	39.6	60.4	11.3	53
		정신적 장애							8.3	33.3	58.3	8.3	12
장애등급	중고등학생	경증(4~6급)	45.5	0.0	9.1	54.5	18.2	11					
		중증(1~3급)	31.7	10.0	26.7	43.3	13.3	60					
	대학(원)생	경증(4~6급)							25.0	41.7	66.7	0.0	12
		중증(1~3급)							20.8	37.7	58.5	13.2	53
전체		비율	33.8	8.5	23.9	45.1	14.1	71	21.5	38.5	60.0	10.8	65
		사례수	24	6	17	32	10		7	14	25	39	

주: 중복응답으로 전체 비율은 100%를 넘을 수 있음.

위의 응답에서 학교(학과)수업을 빠진 경우 '학교(학과)에서 보충(보강)수업을 해 준다' 거나 '학교(학과)에서 리포트 제출 등으로 학과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해 준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은 24명, 대학(원)생은 34명이었다. 이들에게 학교(학과)의 보강 및 리포트 제출이 학교수업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의 87.5%는 약간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대학(원)생

의 경우도 79.4%가 약간 혹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의 12.5%, 대학(원)생의 20.6%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같이 부정적인 응답에 대해서 장애등록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정신적 장애에서만 17.6%로 나타났고, 신체적 장애에서는 모두 긍정의 응답만 있었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는 다르게, 신체적 장애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23.4%였고, 정신적 장애는 응답이 없었다.

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에 대한 장애등급별 차이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경증에서 20.0%가, 중증에서 10.5%가 이에 응답하였지만, 대학(원)생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중증에서 부정적 응답이 25.0% 있었지만, 경증에서는 전혀 없었다.

이상과 같이 학교(학과)의 보충/보강은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 차이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만, 이 응답의 상이함이 각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나타난 것인지, 무엇 때문에 대상자에 따라 이처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표 Ⅳ-8〉 대회출전이나 시합(훈련) 준비로 학교(학과)수업 빠진 경우 학교(학과)의 보충에 대한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사례수
장애 유형	중고등 학생	신체적 장애	0.0	0.0	71.4	28.6	7					
		정신적 장애	0.0	17.6	52.9	29.4	17					
	대학 (원)생	신체적 장애						6.7	16.7	53.3	23.3	30
		정신적 장애						0.0	0.0	100.0	0.0	4
장애 등급	중고등 학생	경증(4~6급)	0.0	20.0	60.0	20.0	5					
		중증(1~3급)	0.0	10.5	57.9	31.6	19					
	대학 (원)생	경증(4~6급)						0.0	0.0	66.7	33.3	6
		중증(1~3급)						7.1	17.9	57.1	17.9	28
전체		비율	0.0	12.5	58.3	29.2	24	5.9	14.7	58.8	20.6	34
		사례수	0	3	14	7		2	5	20	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3) 운동과 공부(학업) 병행 필요도와 관련 이유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 204명에게 운동과 공부(학업)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대학(원)생은 '매우 필요하다'고 과반이 조금 넘는 51.4%가 응답하였다. 이보다는 낮지만 '약간 필요하다'는 36.2%이었다. 그러나 '별로 필요 없다'는 7.6%, '전혀 필요 없다'는 4.8%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87.6%가 '필요하다', 12.4%는 '필요 없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상자별로 운동과 학업의 병행 필요도는 소폭의 차이를 보였는데,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고등학생이 81.8%이지만, 대학(원)생은 이보다 소폭 더 높은 87.6%이었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로 보면, 이 안에서도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장애유형은 정신적 장애보다는 신체적 장애에서, 그리고 장애등급이 중증에 비해 경증에서 운동과 학업 병행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테면, 장애유형별에서 대학(원)생 중 정신적 장애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3.9%이지만, 신체적 장애는 91.5%로 현저히 높았다. 장애등급도 중증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87.0%이지만, 경증은 이보다 소폭 높은 92.4%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장애인 체육선수들 중 대다수가 운동과 학업 병행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보더라도, 70% 이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인 경우, 그리고 장애정도가 경증에서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Ⅳ-9〉 운동과 학업 병행 필요도

(단위: %, 명)

구분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매우 필요함	약간 필요함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사례수	매우 필요함	약간 필요함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사례수
장애유형	중고등학생	신체적 장애	37.1	45.7	8.6	8.6	35					
		정신적 장애	32.8	48.4	14.1	4.7	64					
	대학(원)생	신체적 장애						53.7	37.8	4.9	3.7	82
		정신적 장애						43.5	30.4	17.4	8.7	23

구분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매우 필요 함	약간 필요 함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사례 수	매우 필요 함	약간 필요 함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사례 수
장애 등급	중고등 학생	경증(4~6급)	16.7	75.0	8.3	0.0	12					
		중증(1~3급)	36.8	43.7	12.6	6.9	87					
	대학 (원)생	경증(4~6급)						46.2	46.2	7.7	0.0	13
		중증(1~3급)						52.2	34.8	7.6	5.4	92
전체		비율	34.3	47.5	12.1	6.1	99	51.4	36.2	7.6	4.8	105
		사례수	34	47	12	6		54	38	8	5	

이상에서와 같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먼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중·고등학생이 81명, 대학(원)생은 92명이었다. 이들이 응답한 이유 1~2순위 분포를 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응답이 많았던 것은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로서 50.6%가 이에 속한다. 이보다는 소폭 낮은 45.7%는 '운동을 그만 둔 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친구관계를 위해서' 38.3%, '대회출전을 위한 학력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29.6%, '대학팀/실업팀 등에 들어가기 위해서' 28.4%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대학(원)생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운동을 그만 둔 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로, 62.0%가 이에 속한다. 이보다 소폭 낮은 59.8%는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 다음은 큰 간격차를 보였는데, '실업팀 등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에 30.4%가 응답했으며, 21.7%는 '친구관계를 위해서', 18.5%는 '대회출전을 위한 학력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10〉 운동과 학업 병행 필요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운동을 그만 둔 후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회 출전을 위한 학력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대학팀/실업팀 등에 들어 가기 위해서 ((실업팀 등 취업을 준비 하기 위해서))	기타	사례수
중고등 학생	비율	45.7	50.6	29.6	38.3	28.4	7.4	81
	사례수	37	41	24	31	23	6	
대학 (원)생	비율	62.0	59.8	18.5	21.7	30.4	7.6	92
	사례수	57	55	17	20	28	7	
전체	비율	54.3	55.5	23.7	29.5	29.5	7.5	173
	사례수	94	96	41	51	51	13	

주: 중복응답으로 전체 비율은 100%를 넘을 수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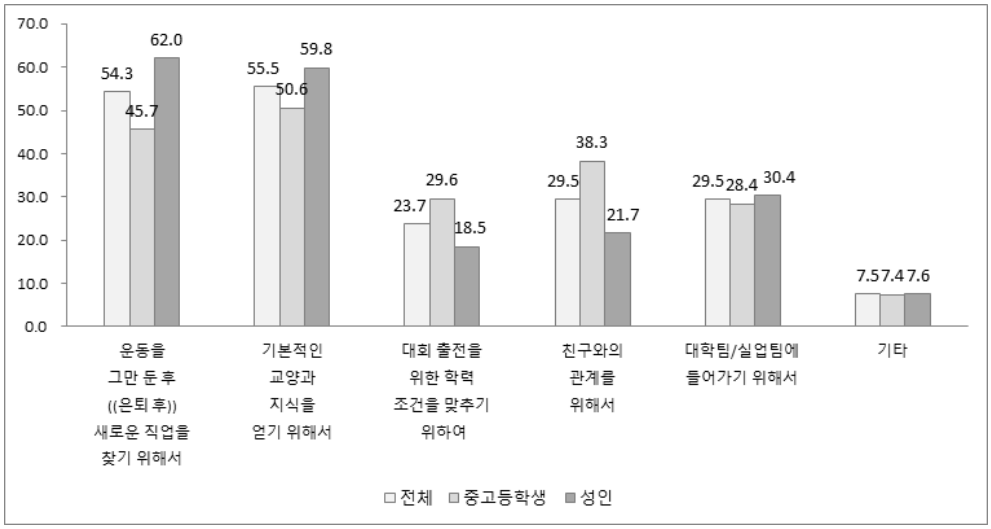

[그림 Ⅳ-2] 운동과 학업 병행 필요한 이유(중·고등학생 및 성인 응답 통합)

이어서 운동과 학업 병행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31명(중·고등학생 18명, 대학(원)생 13명)에게 그 이유에 대해 1~2순위로 물어보았다.

먼저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신체적으로 피곤해서'였는데

66.7%가 이에 응답하였다. 이보다 소폭 낮은 61.1%는 '운동과 훈련에 방해가 되므로'라고 응답하였다. 이 다음으로 33.3%는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 '27.8%는 '대회 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응답 순위에 있어 중·고등학생과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가 '운동과 훈련에 방해가 되므로'로 84.6%가 이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이유는 '대회 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로 61.5%가 응답하였다. 이외 '신체적으로 피곤해서' 38.5%,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 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운동과 학업 병행 불필요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운동과 훈련에 방해가 되므로	신체적으로 피곤해서	코치, 감독이 원하지 않으므로	대회 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	기타	사례수
중 고등 학생	비율	61.1	66.7	-	27.8	33.3	11.1	18
	사례수	11	12		5	6	2	
대학 (원) 생	비율	84.6	38.5	-	61.5	15.4	0.0	13
	사례수	11	5		8	2	0	
전체	비율	71.0	54.8	-	41.9	25.8	6.5	31
	사례수	22	17		13	8	2	

주: 중복응답으로 전체 비율은 100%를 넘을 수 있음

4) 운동 시간 및 주말·공휴일 운동과 일상생활 부담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 204명에게 평소 하루 평균 운동시간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과반이 조금 넘는 52.5%는 '1~2시간 이내'이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이보다 낮은 33.3%가 '3~4시간 이내'라고 응답하였고, '5~6시간 이내' 1.1%, '7~8시간 미만 이내' 0.5%, '8시간 이상' 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응답한 평소 운동 시간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동일한지 물어보았는데, '전혀 안 한다'는 응답은 22.5%에 불과했고, '시합이 있을 때만 한다'는 응답률이 40.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시합이 없어도 한다'는 응답도 36.8%이었다.

이어서 이러한 평소 운동시간이 일상생활에 지장(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보았다. 그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각 29.9%와 33.3%로, 전체 중 63.2%가 평소 운동시간이 일상생활에 지장(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36.8%는 부담(약간 그렇다 26.5%, 매우 그렇다 10.3%)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평소 주말/공휴일 운동 상황이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 교차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학(원)생의 경우, 운동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담이 된다(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시합이 있을 때만 주말 운동을 하는 경우 56.2%, 시합이 없어도 주말 운동을 하는 경우 38.6%였다. 그러나 공휴일과 주말에는 운동하지 않는 경우,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20.0%로 큰 격차를 보였다.

〈표 Ⅳ-12〉 주말·공휴일 운동 상황과 일상생활 부담

(단위: %, 명)

구분			일상생활 부담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말/공휴일 운동 상황	중고등학생	전혀 안 한다	50.0	11.5	26.9	11.5	26
		시합이 있을 때만 한다	37.1	40.0	17.1	5.7	35
		시합이 없어도 한다	31.6	47.4	13.2	7.9	38
		사례수	38	35	18	8	99
	대학(원)생	전혀 안 한다	45.0	35.0	10.0	10.0	20
		시합이 있을 때만 한다	10.4	33.3	45.8	10.4	48
		시합이 없어도 한다	24.3	27.0	32.4	16.2	37
		사례수	23	33	36	13	105
전체		비율	29.9	33.3	26.5	10.3	204
		사례수	61	68	54	21	

주: 중복응답으로 전체 비율은 100%를 넘을 수 있음

다. 이동권 및 접근권

여기서는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훈련(운동)을 하러 가는 것과 관련된 '이동권'과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접근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 이동권과 접근권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분석 대상은 1,450명이 된다.

1) 이동권

가) 주된 훈련(운동) 장소 및 이동 수단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이동권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주로 훈련(운동)하는 장소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21.2%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민간체육시설'이 20.3%이었으며, '공공체육시설' 18.0%, '복지관 장애인 시설' 16.7%, '학교체육시설' 7.7%, '근처 야외 등산로 혹은 공원' 6.2%, '집안' 2.6%, '이천 훈련원 등 선수촌'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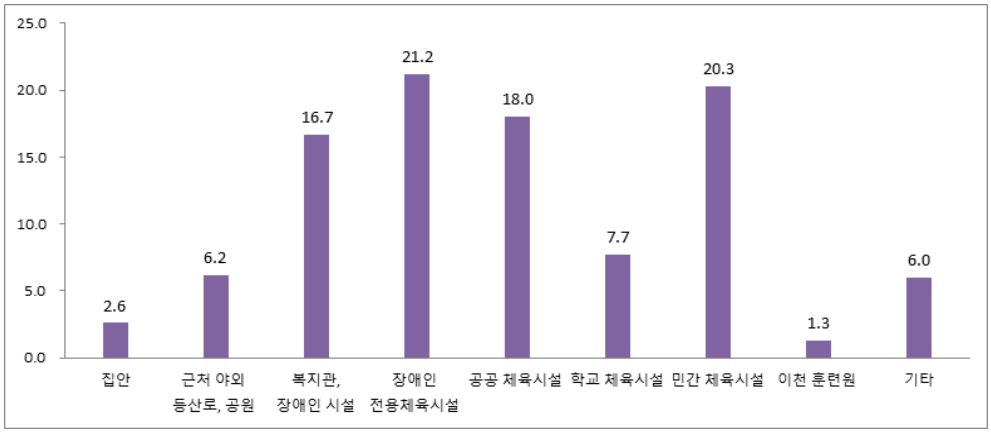

[그림 Ⅳ-3] 주로 훈련(운동)하는 장소

이에 대한 성별 간 결과는 소폭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의 응답 순위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장애유형별로 보면, 이 역시 전체의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교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이었다. '학교체육시설'은 정신적 장애가 13.6%로 신체적 장애 6.9%보다 2배 정도 더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정신적 장애는 10.9%이었지만, 신체적 장애는 21.6%이었다. 신체적 장애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것은 차이가 거의 없지만, 내부기관장애의 경우 '복지관·장애인시설'과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응답이 각 26.7%로, 외부신체기능장애의 응답이 각각 16.6%와 21.5%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신에 외부신체기능장애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이 18.0%로 좀 더 응답률이 높았다.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중증의 경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주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22.8%와 18.5%로, 경증에서의 각각 응답인 13.4%, 15.5%보다 좀 더 높았다.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응답은 경증이 30.7%로 중증 18.2%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종목별로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은 개인경기 종목인 경우 응답이 각 32.2%로 가장 높았고, 단체 혹은 개인 단체종목의 경우는 '복지관·장애인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3.8~25.5%로 기록 종목과 개인경기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단체종목의 경우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4.2%로, 다른 종목이 10% 미만의 응답률을 보이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체육선수들은 개인의 장애유형과 등급, 경기종목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용하는 장소는 '복지관·장애인시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공공체육 시설'이 55.9%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외 '기타' 응답도 6.0%가 있었는데, 개인별 종목 및 장애 특성에 따라 답변이 매우 다양하였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응답이 많았던 것은 '볼링장'으로 14명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는 종목이 볼링인 경우, 훈련(운동) 장소가 특별히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관·장애인체육시설에는 없어, 실제 해당 스포츠 센터에 가서 훈련(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3〉 주로 훈련(운동)하는 장소

(단위: %, 명)

구분		집안	근처 야외 등산로, 공원	복지관. 장애인 시설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	공공 체육 시설	학교 체육 시설	민간 체육 시설	이천 훈련원 등 선수촌	기타	사례 수
성별	남성	2.1	6.0	16.4	20.7	19.3	7.9	20.7	1.1	5.7	1,109
	여성	4.1	6.7	17.6	22.9	13.8	7.0	18.8	2.1	7.0	341
성인	청년	4.7	7.4	10.9	19.9	16.2	13.6	15.8	2.9	8.6	487
	중장년	1.5	5.6	19.6	21.9	18.9	4.8	22.5	0.5	4.7	963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2.3	6.2	16.8	20.9	17.9	6.9	21.6	1.4	6.0	1,266
	외부신체 기능장애	2.3	6.1	16.6	21.0	18.0	7.0	21.5	1.5	6.0	1,236
	내부기관 장애	0.0	6.7	26.7	16.7	13.3	3.3	26.7	0.0	6.7	30
	정신적 장애	4.3	6.5	15.8	23.9	18.5	13.6	10.9	0.5	6.0	184

구분		집안	근처 야외 등산로, 공원	복지관. 장애인 시설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	공공 체육 시설	학교 체육 시설	민간 체육 시설	이천 훈련원 등 선수촌	기타	사례 수
장애 등급	경증(4~6급)	1.3	7.6	15.5	13.4	15.5	12.2	30.7	0.8	2.9	238
	중증(1~3급)	2.8	5.9	16.9	22.8	18.5	6.8	18.2	1.4	6.6	1,212
종목	기록	3.5	9.6	10.2	15.4	21.6	5.8	24.3	1.4	8.1	654
	단체	3.3	6.7	23.8	23.3	18.3	14.2	7.1	0.8	2.5	240
	개인단체	1.3	0.8	25.5	24.7	19.1	8.5	16.0	0.8	3.2	376
	개인경기	0.6	4.4	12.2	32.2	2.2	4.4	32.2	2.8	8.9	180
전체	비율	2.6	6.2	16.7	21.2	18.0	7.7	20.3	1.3	6.0	1,450
	사례수	37	90	242	308	261	112	294	19	87	

나) 훈련(운동)을 위한 주된 이동수단 및 이용 불편

훈련(운동)을 하러 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에 대해 물어보았다. 가장 응답이 많았던 것은 '자가용'으로 60.3%가 이에 해당되었다. 다른 이동수단은 이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다음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9.7%이었고, 이어 '지하철/전철' 7.9%, '일반버스' 7.6%, '도보(걸어간다)' 5.3%,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가 2.8%, '자전거/오토바이' 1.6%, '기타' 1.5%, '일반택시' 1.4%, '셔틀형 복지버스' 0.9%, '복지관 버스' 0.8%, '지자체/단체 특장버스' 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82].

82) 응답자의 거주지로부터 평소 훈련(운동)하러 가는 장소까지 이동시간을 대중교통 시간으로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으로 구분해서 이동수단을 살펴본 결과, 이동시간이 어떠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최소 53.3%, 최대 63.1%로 가장 큰 응답을 보임. '지하철/전철'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이동시간과 비례적으로 응답이 높음(30분 이내 4.2%, 1시간 이내 9.6%, 2시간 이내 11.3%, 2시간 이상 17.3%).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대체로 30분 이내에서 11.7%의 응답으로 가장 높았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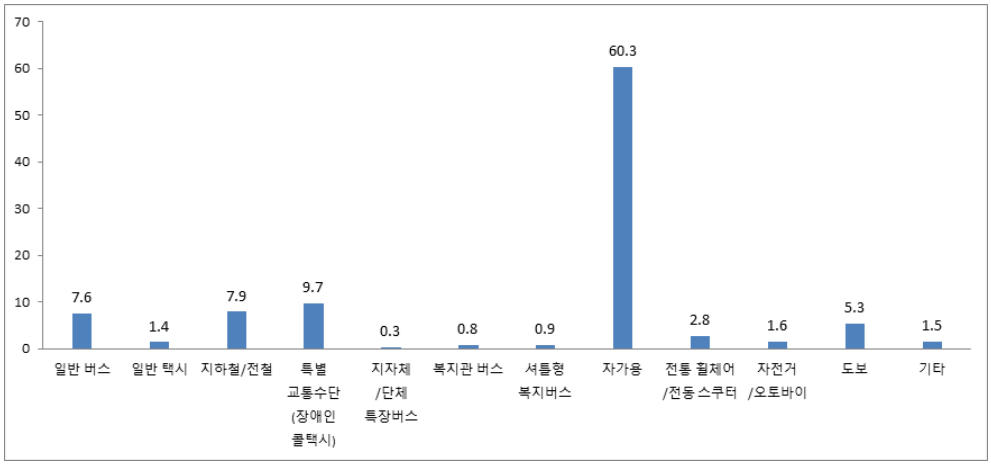

[그림 Ⅳ-4] 훈련(운동)장 갈 때 이용하는 이동수단

특히 응답이 가장 많았던 '자가용'은 장애유형이 신체적 장애인 경우 65.2%로 가장 높았고, 정신적 장애는 26.6%로 이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오히려 정신적 장애인 경우 '일반버스' 이용이 25.0%로 신체적 장애 5.1%과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간 이동수단 차이를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가용', '특별교통수단',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정신적 장애보다, 정신적 장애는 '일반버스', '지하철/전철', '복지관 버스', '셔틀형 복지버스', '도보'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신체적 장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등급에 따른 이동수단으로는 '자가용'이 경증 59.2%, 중증 60.6%로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장애등급별 차이가 뚜렷이 보이는 이동수단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으로, 경증은 1.7%만 응답한 반면, 중증은 11.2%로 나타났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해서 보면, 신체적 장애는 절대적으로 '자가용' 이용이 많지만, 이 다음의 이동수단으로 경증은 '일반버스'를, 중증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신적 장애의 경우, 경증에서는 '지하철/전철'과 '일반버스'가 각각 41.2%, 35.3%로 이용률이 높은 이동수단이지만, 중증에서는 '일반버스'와 함께 '자가용'이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장애인 체육선수들은 자신의 장애유형이나 장애등급에 따라 훈련(운동)을 위해 이용하는 이동수단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4〉 훈련(운동)장 갈 때 이용하는 이동수단

(단위: %, 명)

구분		일반 버스	일반 택시	지하철 /전철	특별 교통 수단	지자체 /단체 특장 버스	복지관 버스	셔틀형 복지 버스	자가용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자전거 /오토 바이	도보	기타	사례 수
성별	남성	7.2	1.2	7.1	8.2	0.2	0.5	0.5	64.2	2.8	1.7	5.0	1.4	1,109
	여성	8.8	2.1	10.3	14.4	0.6	1.5	2.3	47.8	2.9	1.2	6.5	1.8	341
성인	청년	16.2	2.7	13.6	8.6	0.2	1.0	1.0	40.5	2.1	1.4	9.9	2.9	487
	중장년	3.2	0.7	5.0	10.2	0.3	0.6	0.8	70.4	3.2	1.7	3.0	0.8	963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5.1	1.3	6.6	10.0	0.3	0.5	0.8	65.2	3.2	1.4	4.5	1.1	1,266
	외부신체 기능장애	5.2	1.4	6.8	9.8	0.3	0.4	0.8	65.3	3.1	1.5	4.4	1.1	1,236
	내부기관 장애	0.0	0.0	0.0	16.7	0.0	3.3	0.0	63.3	6.7	0.0	6.7	3.3	30
	정신적 장애	25.0	1.6	16.3	7.6	0.0	2.7	1.6	26.6	0.5	2.7	10.9	4.3	184
장애 등급	경증(4~6급)	10.9	3.8	9.7	1.7	0.4	0.4	1.7	59.2	1.7	2.5	7.1	0.8	238
	중증(1~3급)	6.9	0.9	7.5	11.2	0.2	0.8	0.7	60.6	3.1	1.4	5.0	1.7	1,212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9.0	3.6	7.2	1.8	0.5	0.5	1.8	62.4	1.8	2.7	7.7	0.9	221
	신체적 장애 × 중증	4.2	0.9	6.5	11.7	0.3	0.5	0.6	65.8	3.4	1.1	3.8	1.1	1,045
	정신적 장애 × 경증	35.3	5.9	41.2	0.0	0.0	0.0	0.0	17.6	0.0	0.0	0.0	0.0	17
	정신적 장애 × 중증	24.0	1.2	13.8	8.4	0.0	3.0	1.8	27.5	0.6	3.0	12.0	4.8	167
전체	비율	7.6	1.4	7.9	9.7	0.3	0.8	0.9	60.3	2.8	1.6	5.3	1.5	1,450
	사례수	110	20	114	140	4	11	13	875	41	23	77	22	

위의 응답에서 자가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자전거/오토바이, 도보 등과 같이 개인이 작동하거나 직접 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이동수단을 이용한다는 응답자 412명을 대상으로 이용 중에 불편함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약간 불편하다' 31.3%, '매우 불편하다' 19.2%로 나타나, 과반 정도(50.5%)가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동수단별로 보면, '일반택시'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높았는데, 95.0%(약간 불편하다 60.0%, 매우 불편하다 35.0%)가 이에 응답하였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음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으로서 64.2%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 기준으로 보면, '일반택시'가 35.0%로 가장 높고, '특별교통수단' 27.1%, '일반버스' 15.5%, '지하철/전철' 14.0%, '셔틀형 복지버스'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을 장애등급과 함께 고려해서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을 보면, 경증의 신체적 장애에서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이 24.1%로 가장 높았다. 중증의 신체적 장애에서는 이보다는 소폭 낮은 21.8%가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정신적 장애의 경우, 경증은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자가 없었고, 중증은 11.5%가 이에 응답하였다.

〈표 Ⅳ-15〉 이동수단 유형별 이용시 불편감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불편하지 않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약간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사례수
신체적 장애 × 경증	일반버스	35.0	0.0	45.0	20.0	20
	일반택시	0.0	0.0	62.5	37.5	8
	지하철/전철	25.0	31.3	12.5	31.3	16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25.0	25.0	25.0	25.0	4
	지자체/단체 특장버스	100.0	0.0	0.0	0.0	1
	복지관버스	0.0	100.0	0.0	0.0	1
	셔틀형 복지버스	0.0	25.0	75.0	0.0	4
	사례수(소계)	24.1	14.8	37.0	24.1	54
		13	8	20	13	
신체적 장애 × 중증	일반버스	22.7	18.2	40.9	18.2	44
	일반택시	0.0	0.0	66.7	33.3	9
	지하철/전철	26.5	30.9	29.4	13.2	68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2.3	19.7	39.3	28.7	122
	지자체/단체 특장버스	33.3	33.3	33.3	0.0	3
	복지관버스	40.0	40.0	20.0	0.0	5
	셔틀형 복지버스	50.0	33.3	0.0	16.7	6
	사례수(소계)	19.1	22.6	36.6	21.8	257
		49	58	94	56	

구분		전혀 불편하지 않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약간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사례수
정신적 장애 × 경증	일반버스	83.3	0.0	16.7	0.0	6
	일반택시	100.0	0.0	0.0	0.0	1
	지하철/전철	42.9	42.9	14.3	0.0	7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	-	-	-	-
	지자체/단체 특장버스	-	-	-	-	-
	복지관버스	-	-	-	-	-
	셔틀형 복지버스	-	-	-	-	-
	사례수(소계)	64.3	21.4	14.3	0.0	14
		9	3	2	0	
정신적 장애 × 중증	일반버스	57.5	22.5	7.5	12.5	40
	일반택시	0.0	0.0	50.0	50.0	2
	지하철/전철	47.8	30.4	13.0	8.7	23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28.6	35.7	21.4	14.3	14
	지자체/단체 특장버스	-	-	-	-	-
	복지관버스	40.0	20.0	40.0	0.0	5
	셔틀형 복지버스	33.3	33.3	33.3	0.0	3
	사례수(소계)	47.1	26.4	14.9	11.5	87
		41	23	13	10	
전체	일반버스	40.9	15.5	28.2	15.5	110
	일반택시	5.0	0.0	60.0	35.0	20
	지하철/전철	31.6	31.6	22.8	14.0	114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4.3	21.4	37.1	27.1	140
	지자체/단체 특장버스	50.0	25.0	25.0	0.0	4
	복지관버스	36.4	36.4	27.3	0.0	11
	셔틀형 복지버스	30.8	30.8	30.8	7.7	13
	비율	27.2	22.3	31.3	19.2	412
	사례수	112	92	129	79	

이동수단 이용시 불편하다고 응답한 20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 결과 '콜택시 대기 시간이 길어서'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자 90명 중에 90%는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를 지적하였다. '일반택시'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자 19명 중에 이 응답은 36.8%(7명)로 나타났다.

이 다음에 불편한 이유로 많이 응답된 것이 '저상버스가 많이 없어서'로, 14.4%가 이에 응답하였다. 이 응답은 '복지관 버스' 이용자(5명)와 '일반버스' 이용자(48명), '지하철/전철' 이용자(42명)에서 주로 많이 나왔다. 이외 '운동에 필요한 장비를 실어주지 않아서'와 '집이나 훈련장 인근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8.7%와 7.7%가 있었다. '기타' 응답도 23.1%가 있었는데 매우 다양한 응답이 있었고, 이를 특정 이유로 묶을 수 없어 주요 내용은 각주[83]를 참고하기 바란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해서 보면, 신체적 장애이든, 정신적 장애이든 모두 장애등급 중증에서 '콜택시 대기 시간이 길어서'라는 응답률이 40% 이상으로 경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상버스가 많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주로 신체적 장애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83) '기타' 의견으로는 '휠체어 고정장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 부담(비용)이 있어서', '일반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많아서' 등이 있었음.

〈표 Ⅳ-16〉 이동수단 이용시 불편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저상 버스가 많이 없어서	콜택시 대기 시간이 길어서	집이나 훈련장 인근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운동에 필요한 장비를 실어주지 않아서	기타	사례 수
이동 수단	일반버스	22.9	10.4	12.5	16.7	37.5	48
	일반택시	5.3	36.8	21.1	5.3	31.6	19
	지하철/전철	31.0	4.8	11.9	19.0	33.3	42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2.2	90.0	0.0	0.0	7.8	90
	지자체/단체 특장버스	0.0	100.0	0.0	0.0	0.0	1
	복지관버스	66.7	0.0	0.0	0.0	33.3	3
	셔틀형 복지버스	20.0	0.0	20.0	20.0	40.0	5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21.2	15.2	15.2	15.2	33.3	33
	신체적 장애 × 중증	14.0	54.0	6.0	7.3	18.7	150
	정신적 장애 × 경증	0.0	0.0	0.0	0.0	100.0	2
	정신적 장애 × 중증	8.7	43.5	8.7	8.7	30.4	23
전체	비율	14.4	46.2	7.7	8.7	23.1	208
	사례수	30	96	16	18	48	

다) 훈련(운동)장 이동시 동행자 및 활동보조인 비용 부담

훈련(운동)을 위해 이동할 때 누가 동행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누구의 동행 없이 혼자 간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과반이 넘는 56.7%가 이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동료(선수)' 12.5%, 이어서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11.8%, '배우자' 7.5%, '지인/친구' 5.4%, '가족'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성별, 생애별(청년, 중장년)로 관계없이 동일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동행 없이 혼자 간다'는 응답률은 경증 신체적 장애인 경우 68.8%로 가장 높았다. 중증 신체적 장애는 56.6%이었고, 경증 정신적 장애가 47.1%, 중증 정신적 장애가 이보다 소폭 낮은 42.5%이었다.

이와 반대로 '활동지원사'와 동행한다는 응답률은 신체적 장애이든, 정신적 장애이든 대체로 중증에서 높았는데, 중증 정신적 장애가 16.2%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중증 신체적 장애 13.4%, 경증 정신적 장애 5.9%, 그리고 경증 신체적 장애 1.4% 순이었다.

〈표 Ⅳ-17〉 훈련(운동)장 이동시 동행자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가족 (아들/딸/부모 등)	지인/친구	동료 (선수)	활동 지원사 (활동 보조인)	기타	누구의 동행 없이 혼자 (스스로)	사례수
성별	남성	7.2	4.9	5.6	12.6	11.6	0.9	57.2	1,109
	여성	8.5	5.9	5.0	12.0	12.3	1.2	55.1	341
성인	청년	4.1	12.7	3.5	13.8	12.1	1.2	52.6	487
	중장년	9.2	1.2	6.4	11.8	11.6	0.8	58.8	963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8.1	2.6	5.7	12.7	11.3	0.9	58.7	1,266
	외부신체 기능장애	7.8	2.7	5.6	12.5	11.3	1.0	59.1	1,236
	내부기관 장애	16.7	0.0	10.0	23.3	10.0	0.0	40.0	30
	정신적 장애	3.8	22.3	3.8	10.9	15.2	1.1	42.9	184
장애 등급	경증(4~6급)	5.9	1.7	8.0	15.1	1.7	0.4	67.2	238
	중증(1~3급)	7.8	5.8	5.0	12.0	13.8	1.1	54.6	1,212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5.9	0.5	8.1	15.4	1.4	0.0	68.8	221
	신체적 장애 × 중증	8.5	3.1	5.2	12.2	13.4	1.1	56.6	1,045
	정신적 장애 × 경증	5.9	17.6	5.9	11.8	5.9	5.9	47.1	17
	정신적 장애 × 중증	3.6	22.8	3.6	10.8	16.2	0.6	42.5	167
전체	비율	7.5	5.1	5.4	12.5	11.8	1.0	56.7	1,450
	사례수	109	74	79	181	171	14	822	

훈련(운동)을 하기 위해 이동 시 활동지원사와 동행한다고 응답한 171명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전반적으로 월 평균 부담금은 17.6만원이었다. 이를 장애유형 및 등급을 고려해서 보면, 경증 신체적 장애인 경우 월 평균 부담금이 2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중증 신체적 장애는 18.3만원이었고, 중증 정신적 장애 13만원, 경증 정신적 장애 10만원으로 나타났다[84].

〈표 Ⅳ-18〉 활동지원사 고용에 따른 월 평균 본인부담금

(단위: 만원, 명)

구분		월 평균 본인부담금	사례 수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26.0	3
	신체적 장애 × 중증	18.3	140
	정신적 장애 × 경증	10.0	1
	정신적 장애 × 중증	13.0	27
전체		17.6	171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이동을 하는 171명에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43.3%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보다는 낮지만 '매우 부담이 된다'는 응답도 20.5%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63.8%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85]은 생애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청년의 경우 71.2%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중장년의 59.8%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해서 보면, 해당자가 많은 중증 신체적 장애의 경우(140명), '매우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22.9%, '약간 부담이 된다' 36.4%로 59.3%가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중증 정신적 장애의 경우(27명), '매우'와 '약간'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81.5%로 대다수가 이에 해당되었다.

84) 이 결과에서 신체적 장애이면서 경증은 3명,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은 1명으로 이 문항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적어,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신체적 장애이면서 중증은 140명, 정신적 장애이면서 중증은 27명임).

85) 본 조사 시 소득을 묻지 않아, 이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생애(청년 vs. 중장년)를 통해 살펴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19〉 활동지원사 고용에 따른 본인 비용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약간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사례수
성인	청년	16.9	11.9	61.0	10.2	59
	중장년	25.0	15.2	33.9	25.9	112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0.0	0.0	100.0	0.0	3
	신체적 장애 × 중증	25.7	15.0	36.4	22.9	140
	정신적 장애 × 경증	0.0	0.0	100.0	0.0	1
	정신적 장애 × 중증	7.4	11.1	70.4	11.1	27
전체	비율	22.2	14.0	43.3	20.5	171
	사례수	38	24	74	35	

2) 접근권

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 및 불편 경험

여기서는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훈련(운동)을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여부와 이용 시 불편 정도 및 차별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다. 여기서부터는 중·고등학생과 성인 모두(1,554명)가 응답하였다.

먼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56.9%(884명)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성인(57.7%)이 중·고등학생(45.2%)보다, 신체적 장애 선수(58.3%)가 정신적 장애 선수(49.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종목을 보면, '개인단체'가 66.9%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이어 '단체' 57.9%, '개인경기' 56.3%, '기록경기' 5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사례수
대상	중·고등학생		45.2	54.8	104
	성인		57.7	42.3	1,450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58.3	41.7	1,303
		외부신체 기능장애	58.3	41.7	1,272
		내부기관장애	58.1	41.9	31
	정신적 장애		49.8	50.2	251
장애등급	경증(4~6급)		57.0	43.0	251
	중증(1~3급)		56.9	43.1	1,303
종목	기록		51.2	48.8	721
	단체		57.9	42.1	254
	개인단체		66.9	33.1	396
	개인경기		56.3	43.7	183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56.3	43.7	229
	신체적 장애 × 중증		58.7	41.3	1,074
	정신적 장애 × 경증		63.6	36.4	22
	정신적 장애 × 중증		48.5	51.5	229
전체	비율		56.9	43.1	1,554
	사례수		884	670	

이렇게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884명에게, 불편함이 없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다소 불편하다'는 응답이 28.6%,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도 7.1%이었다. 전반적으로 35.7%는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편하다는 응답률은 신체적 장애에서 대체로 높았는데, 신체적 장애이면서 경증인 경우 43.4%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신체적 장애이면서 중증은 이보다 낮은 36.5%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21〉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시 불편함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불편하지 않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다소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사례수
대상	중·고등학생	42.6	44.7	12.8	0.0	47
	성인	23.1	39.9	29.5	7.5	837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20.9	41.4	30.6	7.1	759
	정신적 장애	43.2	32.8	16.8	7.2	125
장애등급	경증(4~6급)	26.6	32.2	35.0	6.3	143
	중증(1~3급)	23.6	41.7	27.4	7.3	741
종목	기록	26.0	38.2	27.6	8.1	369
	단체	27.2	38.8	25.9	8.2	147
	개인단체	19.6	43.8	30.9	5.7	265
	개인경기	24.3	39.8	30.1	5.8	103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24.0	32.6	38.0	5.4	129
	신체적 장애 × 중증	20.3	43.2	29.0	7.5	630
	정신적 장애 × 경증	50.0	28.6	7.1	14.3	14
	정신적 장애 × 중증	42.3	33.3	18.0	6.3	111
전체	비율	24.1	40.2	28.6	7.1	884
	사례수	213	355	253	63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하다'는 응답자는 316명이다. 이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33.5%가 응답한 '장애인용 운동용품, 기구, 장비가 부족해서'였다. 이어서 '편의시설(샤워실 등)이 부족해서'로 25.3%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비장애인이 많아서' 16.1%, '비용이 비싸서'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가 각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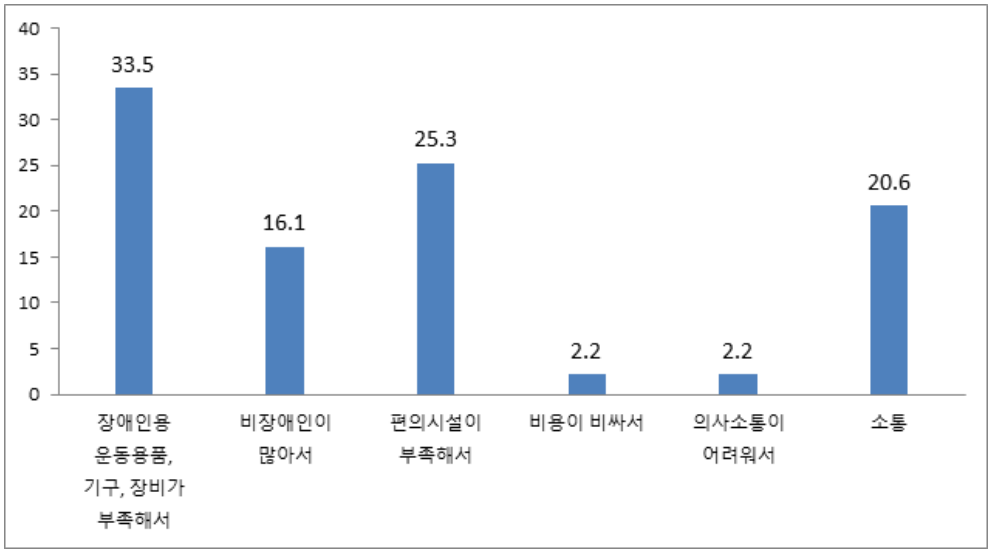

[그림 Ⅳ-5]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시 불편한 이유

장애유형 및 등급을 고려해서 보면, 대체로 신체적 장애인에게서 '장애인 운동용품, 기구, 장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정신적 장애의 경우 역시 전체 불편 이유는 비슷하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에 대한 응답률은 신체적 장애보다 높았다. 경기종목별 불편 이유를 보면, '장애인용 운동용품, 기구, 장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개인경기에서 45.9%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다.

한편, 이유들 중 '기타'에 속하는 경우가 20.6%로 이유가 매우 다양하지만, 3~5명 정도 응답한 이유들을 보면, '시설이 비좁아서', '사용시간이 제한되어서', '시설이 오래되어서', '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해서', '시설이 외곽에 있거나, 멀어서' 등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22〉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시 불편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장애인용 운동용품, 기구, 장비가 부족해서	비장애인이 많아서	편의시설(샤워실 등)이 부족해서	비용이 비싸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기타	사례수
대상	중·고등학생	50.0	0.0	33.3	0.0	16.7	0.0	6
	성인	33.2	16.5	25.2	2.3	1.9	21.0	310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34.6	14.0	27.6	2.1	1.0	20.6	286
	정신적 장애	23.3	36.7	3.3	3.3	13.3	20.0	30
장애등급	경증(4~6급)	30.5	13.6	25.4	3.4	3.4	23.7	59
	중증(1~3급)	34.2	16.7	25.3	1.9	1.9	19.8	257
종목	기록	35.6	15.9	24.2	3.0	2.3	18.9	132
	단체	38.0	14.0	26.0	0.0	4.0	18.0	50
	개인단체	23.7	17.5	27.8	3.1	2.1	25.8	97
	개인경기	45.9	16.2	21.6	0.0	0.0	16.2	37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32.1	14.3	26.8	3.6	0.0	23.2	56
	신체적 장애×중증	35.2	13.9	27.8	1.7	1.3	20.0	230
	정신적 장애×경증	0.0	0.0	0.0	0.0	66.7	33.3	3
	정신적 장애×중증	25.9	40.7	3.7	3.7	7.4	18.5	27
전체	비율	33.5	16.1	25.3	2.2	2.2	20.6	316
	사례수	106	51	80	7	7	65	

나) 공공 체육시설 이용 및 차별 경험

이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있다'는 응답은 과반이 조금 넘는 58.9%이었다. 나머지 41.1%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공공 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신체적 장애 선수에서 60.0%로 정신적 장애 선수의 53.0%보다 소폭 더 많았다. 경기종목으로 보면, '개인단체'가 69.2%로 가장 높았고, '단체종목' 59.4%, '기록종목' 54.6%, '개인경기' 5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공공 체육시설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사례수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60.0	40.0	1,303
	정신적 장애	53.0	47.0	251
장애등급	경증(4~6급)	61.4	38.6	251
	중증(1~3급)	58.4	41.6	1,303
종목	기록	54.6	45.4	721
	단체	59.4	40.6	254
	개인단체	69.2	30.8	396
	개인경기	52.5	47.5	183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59.8	40.2	229
	신체적 장애×중증	60.1	39.9	1,074
	정신적 장애×경증	77.3	22.7	22
	정신적 장애×중증	50.7	49.3	229
전체	비율	58.9	41.1	1,554
	사례수	915	639	

이와 같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해 본 적 있다는 응답자 915명을 대상으로, 이용 과정에서 차별 경험이 있었는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물어보았다.

각 결과를 보면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 '예' 응답은 24.9%이었다.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15.6%, '장애인이 출입하기 위한 시설(휠체어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장애인전용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29.1%, 그리고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눈치가 보여)로 나 스스로 시설이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36.5%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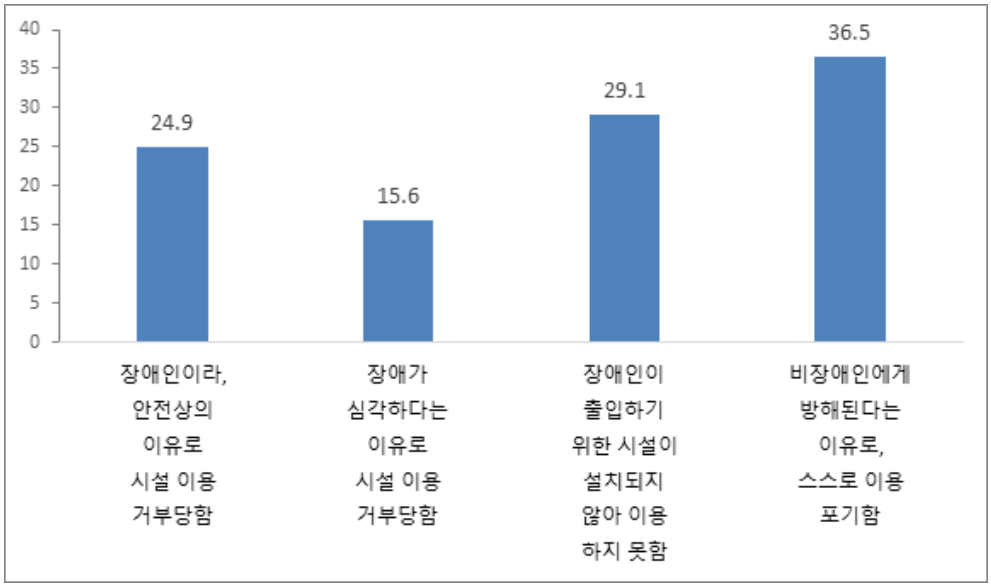

[그림 Ⅳ-6] 공공 체육시설 이용시 차별 경험

이러한 차별 경험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라 소폭의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경증 신체적 장애에서는 안전상의 이유,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중증 신체적 장애에서는 경증에 비해 이러한 이유로 시설 이용 거부를 당한 경험률이 더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공공장소 이용의 상황과 이유에 따라 차별 경험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15.6~36.5% 정도의 적지 않는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혹은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률이 높던 경우는 신체적 장애이면서 중증인 선수였다.

〈표 Ⅳ-24〉 공공 체육시설 이용시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이용 거부당함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 거부당함	장애인이 출입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함	비장애인에게 방해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용 포기함	사례수
대상	중·고등학생	18.6	20.3	16.9	32.2	59
	성인	25.4	15.3	29.9	36.8	856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25.1	16.1	31.7	37.9	782
	정신적 장애	24.1	12.8	13.5	28.6	133
장애 등급	경증(4~6급)	14.9	8.4	20.1	30.5	154
	중증(1~3급)	26.9	17.1	30.9	37.7	761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13.1	8.0	18.2	29.9	137
	신체적 장애×중증	27.6	17.8	34.6	39.5	645
	정신적 장애×경증	29.4	11.8	35.3	35.3	17
	정신적 장애×중증	23.3	12.9	10.3	27.6	116
전체	비율	24.9	15.6	29.1	36.5	915
	사례수	228	143	266	334	

주: 각 값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을 의미함.

다) 민간 체육시설 이용 및 차별 경험

여기서는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 과정에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는 등 차별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먼저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해 본적 있는 경우는 전체 1,554명 중 55.9%인 869명이었다. 이 역시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 장애등급은 경증에서 이용했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25〉 민간 체육시설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사례수
대상	중·고등학생	45.2	54.8	104
	성인	56.7	43.3	1,450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56.6	43.4	1,303
	정신적 장애	52.2	47.8	251
장애등급	경증(4~6급)	73.7	26.3	251
	중증(1~3급)	52.5	47.5	1,303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74.7	25.3	229
	신체적 장애×중증	52.8	47.2	1,074
	정신적 장애×경증	63.6	36.4	22
	정신적 장애×중증	51.1	48.9	229
전체	비율	55.9	44.1	1,554
	사례수	869	685	

다음으로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경험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 869명 중에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1.4%,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17.0%, '장애인이 출입하기 위한 시설(휠체어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장애인전용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32.0%, 그리고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눈치가 보여)로 나 스스로 시설이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36.2%가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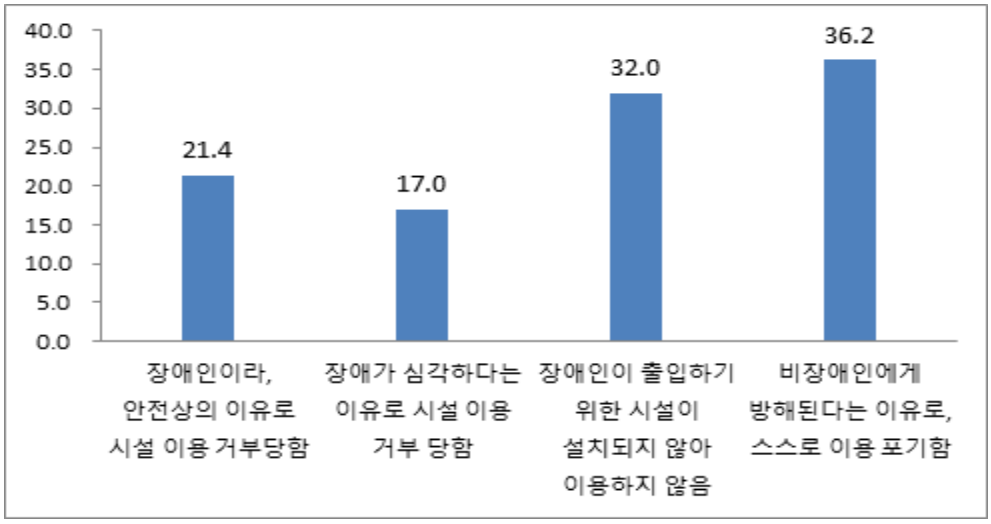

[그림 Ⅳ-7] 민간 체육시설 이용시 차별 경험

이는 앞서 살펴본,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각 상황에서 경험한 차별 정도와 그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민간 체육시설 이용 시에도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그리고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비율은 신체적 장애이면서 중증인 경우에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경증 신체적 장애에서는 거부당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Ⅳ-26〉 민간 체육시설 이용시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이용 거부당함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 거부당함	장애인이 출입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함	비장애인에게 방해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용 포기함	사례수
대상	중·고등학생	21.3	12.8	8.5	40.4	47
	성인	21.4	17.3	33.3	36.0	822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21.1	17.1	35.5	36.9	738
	정신적 장애	22.9	16.8	12.2	32.8	131
장애 등급	경증(4~6급)	9.2	7.6	17.3	21.1	185
	중증(1~3급)	24.7	19.6	36.0	40.4	684

구분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이용 거부당함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 거부당함	장애인이 출입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함	비장애인에게 방해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용 포기함	사례수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7.0	6.4	17.5	21.1	171
	신체적 장애×중증	25.4	20.3	40.9	41.6	567
	정신적 장애×경증	35.7	21.4	14.3	21.4	14
	정신적 장애×중증	21.4	16.2	12.0	34.2	117
종목	기록	24.6	20.6	32.8	37.8	402
	단체	22.6	17.3	27.8	30.1	133
	개인단체	17.2	12.0	33.9	40.3	233
	개인경기	16.8	13.9	29.7	28.7	101
전체	비율	21.4	17.0	32.0	36.2	869
	사례수	186	148	278	315	

주: 각 값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을 의미함.

라. 건강권 및 재생산권

1) 몸이 아프거나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휴식·휴가 요구

조사에 응답한 1,554명 모두에게 몸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여성의 경우 생리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지도자(감독, 코치)에게 휴식이나 휴가를 말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먼저 일반적으로 '나는 몸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지도자에게 휴식이나 휴가를 말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3.3%, '매우 그렇다'는 33.5%로, 긍정적인 응답이 86.8%이었다. 나머지 13.2%는 부정적인 응답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6.2%, '그렇지 않다'는 6.9%이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응답인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포함)'에 대해서 성별(여성 14.2%, 남성 12.7%)과 대상자(성인 13.2%, 중·고등학생 11.6%)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장애유형별로도 정신적 장애의 부정적 응답은 14.4%로, 신체적 장애의 12.9%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장애등급(경증 15.6%, 중증 12.6%)별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어서 여성 응답자 374명을 대상으로 '나는 생리로 몸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지도자에게 휴식이나 휴가를 말할 수 있다'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18.2%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포함)'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응답률은 성인에서 19.3%로 중·고등학생 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Ⅳ-27〉 몸이 아프거나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휴식·휴가 요구 가능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응답					여성만 응답				
		나는 몸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지도자에게 휴식·휴가를 말할 수 있다				사례수	나는 생리로 몸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지도자에게 휴식·휴가를 말할 수 있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성	5.8	6.9	53.1	34.1	1,180					
	여성	7.2	7.0	54.0	31.8	374	7.0	11.2	50.8	31.0	374
대상	중·고등학생	5.8	5.8	48.1	40.4	104	3.0	3.0	60.6	33.3	33
	성인	6.2	7.0	53.7	33.0	1,450	7.3	12.0	49.9	30.8	341
생애	청소년	5.8	5.8	48.1	40.4	104	3.0	3.0	60.6	33.3	33
	청년	7.6	8.4	45.8	38.2	487	8.0	13.6	50.4	28.0	125
	중장년	5.5	6.3	57.7	30.4	963	6.9	11.1	49.5	32.4	216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5.8	7.1	55.0	32.2	1,303	6.8	11.1	52.1	30.0	307
	정신적 장애	8.4	6.0	45.0	40.6	251	7.5	11.9	44.8	35.8	67
장애 등급	경증(4~6급)	9.6	6.0	53.0	31.5	251	11.8	4.4	57.4	26.5	68
	중증(1~3급)	5.5	7.1	53.4	33.9	1,303	5.9	12.7	49.3	32.0	306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8.7	6.1	54.1	31.0	229	10.6	4.5	59.1	25.8	66
	신체적 장애 ×중증	5.1	7.4	55.1	32.4	1,074	5.8	12.9	50.2	31.1	241
	정신적 장애 ×경증	18.2	4.5	40.9	36.4	22	50.0	0.0	0.0	50.0	2
	정신적 장애 ×중증	7.4	6.1	45.4	41.0	229	6.2	12.3	46.2	35.4	65
전체	비율	6.2	6.9	53.3	33.5	1,554	7.0	11.2	50.8	31.0	374
	사례수	96	108	829	521		26	42	190	11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몸이 아프거나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거부당한 경험

앞의 질문에 이어, 여기서는 몸이 아프거나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경기출전이나 훈련으로 휴식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지, 혹은 경기출전이나 훈련을 위해 이를 숨겼는지 물어보았다.

먼저 '나는 몸이 아파서 지도자에게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가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 7.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374명에게는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도자에게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가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 7.8%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여성에게 추가적으로 '나는 생리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도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경기출전이나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1/4이 조금 넘는 28.9%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상의 3가지 항목을 생애로 구분해서 보면, 중·고등학생에서의 경험이 모두 높았는데, 특히 '나는 생리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도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경기출전이나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다'에 대해 중·고등학생 여성 중 36.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성인은 이보다 낮은 28.2%가 동일한 응답을 하였다.

특히, 이렇게 몸이 아픔에도 지도자에 의해 거부당한 경험률은 '개인경기'에서, 그리고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숨긴 경험률은 대체로 '단체종목'에서 좀 더 높았다.

〈표 Ⅳ-28〉 몸이 아프거나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거부당하거나 이를 숨긴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체 응답		여성만 응답		
		몸이 아팠지만 지도자가 경기출전/훈련의 이유로 거부함	사례수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도자가 경기출전/훈련의 이유로 거부함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를 숨기고 경기출전/훈련에 참가함	사례수
성별	남성	7.7	1,180			
	여성	7.8	374	7.8	28.9	374
대상	중·고등학생	9.6	104	12.1	36.4	33
	성인	7.6	1,450	7.3	28.2	341
생애	청소년	9.6	104	12.1	36.4	33
	청년	12.9	487	13.6	42.4	125
	중장년	4.9	963	3.7	19.9	216

구분		전체 응답		여성만 응답		
		몸이 아팠지만 지도자가 경기출전/훈련의 이유로 거부함	사례수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도자가 경기출전/훈련의 이유로 거부함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를 숨기고 경기출전/훈련에 참가함	사례수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7.9	1,303	8.5	30.0	307
	정신적 장애	6.8	251	4.5	23.9	67
장애등급	경증(4~6급)	5.6	251	2.9	22.1	68
	중증(1~3급)	8.1	1,303	8.8	30.4	306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4.4	229	3.0	22.7	66
	신체적 장애×중증	8.7	1,074	10.0	32.0	241
	정신적 장애×경증	18.2	22	0.0	0.0	2
	정신적 장애×중증	5.7	229	4.6	24.6	65
종목	기록	8.3	721	8.4	29.4	214
	단체	6.7	254	3.8	30.8	26
	개인단체	6.3	396	7.8	27.8	90
	개인경기	9.8	183	6.8	27.3	44
전체	비율	7.7	1,554	7.8	28.9	374
	사례수	120		29	108	

주: 각 값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을 의미함.

3) 경기출전 및 중요한 시합으로 생리와 임신을 미룬 경험

여성 선수들 374명을 대상으로 먼저 '나는 경기출전이나 중요한 시합을 위해 피임약을 먹고 생리일을 미룬 적이 있다'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11.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 응답이 15.2%로, 성인 11.4%보다 좀 더 높았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으로 보면, 신체적 장애이면서 중증에서의 응답이 12.9%로 가장 높았다. 또한 단체종목에서 23.1%로, 이는 기록종목 12.6%, 개인단체 8.9%, 개인경기 6.8%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이어서 여자 청소년 선수를 제외한 341명은 '나는 경기출전이나 중요한 시합을 위해 임신계획을 미룬 적이 있다'에 대해 3.2%, '나는 임신을 했지만, 운동을 더 이상 하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못할까봐 낙태를 고민한 적이 있다'에 대해 0.6%가 각각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29〉 경기출전 및 중요한 시합으로 생리 및 임신을 미룬 경험

(단위: %, 명)

구분		여성만 응답		성인 여성만 응답		
		경기출전/중요한 시합 위해 피임약 먹고 생리를 미룬 경험 있음	사례수	경기출전/중요한 시합 위해 임신을 미룬 경험 있음	임신 했지만, 운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할까봐 낙태를 고민한 적 있음	사례수
성별	여성	11.8	374	3.2	0.6	341
대상	중·고등학생	15.2	33			
	성인	11.4	341	3.2	0.6	341
생애	청소년	15.2	33			
	청년	15.2	125	4.8	0.8	125
	중장년	9.3	216	2.3	0.5	216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12.4	307	3.7	0.7	295
	정신적 장애	9.0	67	0.0	0.0	46
장애 등급	경증(4~6급)	10.3	68	1.5	0.0	65
	중증(1~3급)	12.1	306	3.6	0.7	276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10.6	66	1.6	0.0	64
	신체적 장애×중증	12.9	241	4.3	0.9	231
	정신적 장애×경증	0.0	2	0.0	0.0	1
	정신적 장애×중증	9.2	65	0.0	0.0	45
종목	기록	12.6	214	3.2	0.0	189
	단체	23.1	26	0.0	0.0	25
	개인단체	8.9	90	6.0	2.4	83
	개인경기	6.8	44	0.0	0.0	44
전체	비율	11.8	374	3.2	0.6	341
	사례수	44		11	2	

주: 각 값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을 의미함.

마. 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1) 체벌과 복종에 대한 인식

여기서는 훈련(운동) 과정에서의 체벌과 복종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1]'경기력 향상이나 팀워크를 위해 체벌은 필요하다', [2]'선수는 지도자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3]'후배는 선배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와 같이 3가지 항목으로 물어보았다.

먼저 [1]'경기력 향상이나 팀워크를 위해 체벌은 필요하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20.2%,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4.1%로, 거의 1/4인 24.3%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와 지도자 간 위계적 관계를 볼 수 있는 [2]'선수는 지도자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6.0%가 있었고,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의 응답도 6.9%, 전체적으로 42.9%가 이에 동의하였다. 선후배 간의 위계성을 보기 위한 [3]'후배는 선배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19.8%,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3.6%, 전체적으로 23.4%가 동의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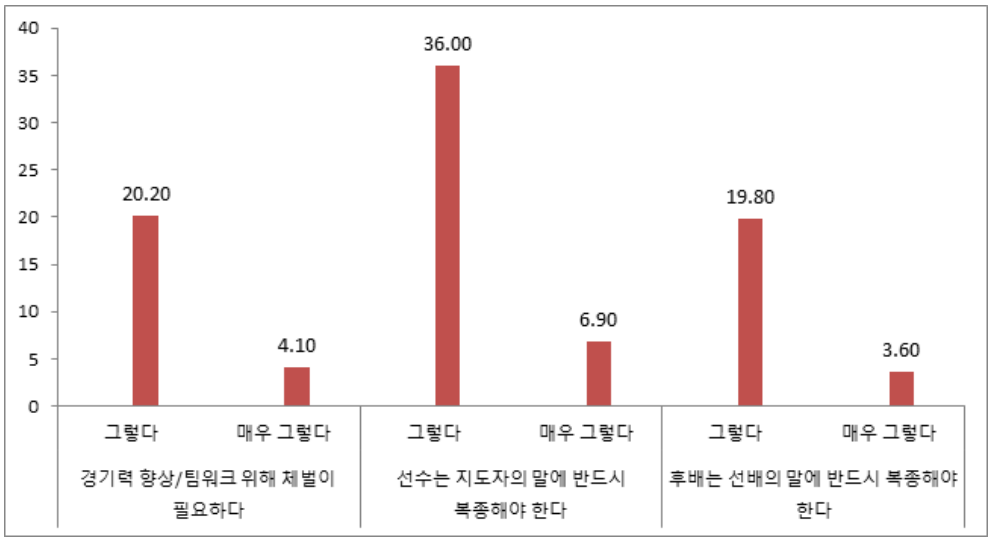

[그림 Ⅳ-8] 훈련(운동) 과정에서의 체벌 및 지도자/선배에 대한 복종 인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이 3가지 항목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고등학생과 성인 간에는 [2]와 [3]과 같이 위계적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테면, [2]'선수는 지도자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에 대해 중·고등학생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8.1%이다. 그런데 성인은 이보다 낮은 42.6%였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만 보면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중·고등학생은 15.4%이지만, 성인은 6.3%이었다. [3]'후배는 선배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테면, 중·고등학생의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1.7%인데 반해, 성인은 이보다 낮은 22.8%로 차이를 보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2]와 [3]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신적 장애 선수가 신체적 장애 선수보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높고, '그렇다'는 응답을 포함한 동의 비율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를 장애등급을 고려해서 보면, 정신적 장애이면서 중증인 선수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를테면, [2]'선수는 지도자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에 대해 정신적 장애이면서 중증 선수의 동의 비율은 49.0%로 가장 높은데, 이는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 선수의 동의가 27.3%, 신체적 장애이면서 경증 혹은 중증인 선수의 동의는 각각 39.3%와 42.7%인 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종목별로 보면, 이 역시 [2]와 [3]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는데, 대체로 '단체종목'에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Ⅳ-30〉 훈련(운동) 과정에서의 체벌 및 지도자/선배에 대한 복종 인지

(단위: %, 명)

구분		경기력 향상/팀워크 위해 체벌 필요하다		선수는 지도자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후배는 선배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사례수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성	20.4	4.1	35.9	7.7	19.5	3.7	1,180
	여성	19.5	4.0	36.4	4.3	20.9	3.2	374
	x^2 (p)	2.320		5.382		0.559		
대상	중·고등학생	20.2	4.8	32.7	15.4	24.0	7.7	104
	성인	20.2	4.0	36.3	6.3	19.5	3.3	1,450
	x^2 (p)	0.336		13.929 (**)		7.948 (*)		

구분		경기력 향상/ 팀워크 위해 체벌 필요하다		선수는 지도자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후배는 선배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사례수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장애유형 (대)	신체적 장애	21.0	3.6	36.8	5.4	19.6	2.5	1,303
	정신적 장애	16.3	6.4	32.3	14.7	21.1	9.2	251
	x^2 (p)	6.697		29.204 (**)		29.060 (**)		
장애등급	경증(4~6급)	19.1	2.8	33.5	4.8	16.3	0.8	251
	중증(1~3급)	20.4	4.3	36.5	7.3	20.5	4.1	1,303
	x^2 (p)	1.589		3.635		10.486 (*)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18.3	3.1	34.1	5.2	15.7	0.9	229
	신체적 장애 × 중증	21.5	3.7	37.3	5.4	20.4	2.9	1,074
	정신적 장애 × 경증	27.3	0.0	27.3	0.0	22.7	0.0	22
	정신적 장애 × 중증	15.3	7.0	32.8	16.2	21.0	10.0	229
	x^2 (p)	13.289		40.418 (**)		40.918 (**)		
종목	기록	20.1	3.5	32.7	6.5	19.7	2.6	721
	단체	22.8	6.3	42.5	11.0	24.0	8.3	254
	개인단체	18.9	3.8	34.1	5.6	17.4	3.3	396
	개인경기	19.7	3.8	44.3	5.5	19.7	1.6	183
	x^2 (p)	8.155		29.022 (**)		28.795 (**)		
전체	비율	20.2	4.1	36.0	6.9	19.8	3.6	1,554
	사례수	314	63	560	107	308	56	

*p<0.05, **p<0.01[86]

주: 여기서는 4점 척도 중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제외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만 제시하였음.

86) 분석과정에서 통계 검증이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분석 후 각 유의수준을 제시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실제 운동을 하면서 성별에 상관없이 지도자나 선후배 혹은 동료 선수들로부터 직접적인 폭력 피해나 폭력적 상황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총 13가지 항목에 대해 '예', '아니오'로 물어보았다.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이 [1]'나는 운동을 하면서 맞은 적이 있다', [2]'나는 운동을 하면서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3]'나는 운동을 하면서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4]'나는 운동부 단톡방에서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5]'나는 운동을 하면서 놀림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6]'나는 운동부 단톡방에서 놀림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 [7]'나는 운동을 하면서 나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훈련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8]'나는 운동을 하면서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이나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다', [9]'나는 운동을 하면서 억지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0]'나는 운동을 하면서 다른 선수의 과제(숙제)를 대신해 줄 것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11]'나는 운동을 하면서 강제로 흡연이나 음주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12]'나는 운동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체벌로 경기 출전이나 훈련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13]'나는 운동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체벌로 혼자 빈 공간(교실, 운동부실, 라커룸 등)에 가둬진 적이 있다'에 관한 것이다.

우선 폭력 피해 경험률을 보면, [1]은 6.9%, [2]는 8.8%, [3]은 13.0%, [4]는 4.0%, [5]는 6.6%, [6]은 4.4%, [7]은 10.4%, [8]은 7.8%, [9]는 2.2%, [10]은 1.4%, [11]은 2.4%, [12]는 4.5%, [13]은 1.5%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험이 가장 많았던 폭력 유형은 [3]'나는 운동을 하면서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로서 13.0%가 이에 응답하였다. 이어서 [7]'나는 운동을 하면서 나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훈련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10.4%, [2]'나는 운동을 하면서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8.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위에서 살펴본 13가지 폭력 유형에서 [3]과 [7]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모두 남성의 피해 경험률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대상자별로 보면, 폭력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1], [2], [13] 유형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1]과 [2]는 신체적 폭행에 관한 것이다. 이를테면 [1]'나는 운동을 하면서 맞은 적이 있다'와 [2]'나는 운동을 하면서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경험률은 각각 9.6%와 11.5%이지만, '성인'은 이보다 낮은 6.8%와 8.6%이었다.

장애유형별 및 장애등급별로 보면, 폭력 유형에 따라 경험이 다소 상이했다. 이를테면, '정신적 장애'가 '신체적 장애'보다 피해 경험률이 높았던 유형은 [1], [2], [6], [8], [9], [10], [13]이었다. 반대로 '신체적 장애'가 '정신적 장애'보다 경험률이 높았던 피해 유형은 [3], [5], [7], [11], [12] 이었다. 장애등급별로는 [7]과 [8] 유형의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폭력 피해 경험률이 '중증'보다 '경증'에서 높았다.

종목별로도 경험하는 폭력 유형에 소폭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개인경기'에서 폭력 경험이 가장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표 Ⅳ-31〉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사례수
성별	남성	7.2	9.5	12.8	4.2	6.6	4.7	10.3	8.1	2.7	1.7	2.7	5.2	1.7	1,180
	여성	6.1	6.7	13.6	3.5	6.4	3.7	10.7	6.7	0.5	0.3	1.3	2.4	0.8	374
	x^2 (p)	0.488	2.784	0.177	0.339	0.017	0.564	0.039	0.833	6.290 (*)	4.341 (*)	2.310	5.040 (*)	1.552	
대상	중·고등학생	9.6	11.5	8.7	1.9	3.8	3.8	8.7	7.7	1.9	1.0	1.0	3.8	1.9	104
	성인	6.8	8.6	13.3	4.1	6.8	4.5	10.6	7.8	2.2	1.4	2.5	4.6	1.4	1,450
	x^2 (p)	1.225	1.028	1.861	1.243	1.342	0.093	0.374	0.001	0.037	0.127	0.966	0.112	0.150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6.3	7.8	13.0	4.0	6.7	4.4	10.7	7.5	2.0	1.2	2.5	4.5	1.2	1,303
	정신적 장애	10.4	13.9	12.7	4.0	6.0	4.8	9.2	9.2	3.2	2.0	1.6	4.4	3.2	251
	x^2 (p)	5.379 (*)	9.793 (**)	0.017	0.000	0.169	0.082	0.510	0.791	1.397	0.922	0.798	0.010	5.983 (*)	
장애등급	경증 (4~6급)	8.8	9.6	15.9	4.8	8.4	6.0	8.4	6.4	4.0	2.8	2.8	5.2	2.4	251
	중증 (1~3급)	6.6	8.7	12.4	3.8	6.2	4.1	10.8	8.1	1.8	1.1	2.3	4.4	1.3	1,303
	x^2 (p)	1.525	0.207	2.284	0.489	1.586	1.664	1.358	0.831	4.513 (*)	4.640 (*)	0.214	0.317	1.701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6.6	7.4	14.0	3.9	70	5.2	6.1	4.4	2.6	1.7	2.2	3.9	0.9	229
	신체적 장애×중증	6.2	7.9	12.8	4.0	6.6	4.2	11.6	8.2	1.9	1.1	2.6	4.7	1.2	1,074
	정신적 장애×경증	31.8	31.8	36.4	13.6	22.7	13.6	31.8	27.3	18.2	13.6	9.1	18.2	18.2	2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사례수
	정신적 장애×중증	8.3	12.2	10.5	3.1	4.4	3.9	7.0	7.4	1.7	0.9	0.9	3.1	1.7	229
	x^2 (p)	22.579 (**)	19.433 (**)	12.118 (**)	5.868	11.245 (*)	5.029	19.934 (**)	15.654 (**)	27.238 (**)	26.009 (**)	6.776	10.916 (*)	43.312 (**)	
종목	기록	7.4	8.3	12.2	3.3	5.5	3.7	9.8	7.5	1.5	1.0	1.8	4.0	0.8	721
	단체	6.3	11.4	15.7	6.3	5.9	5.5	11.8	9.4	2.4	2.4	3.9	6.3	2.8	254
	개인단체	5.3	6.3	10.9	2.8	6.8	3.8	10.9	6.1	2.3	1.3	2.0	3.3	1.5	396
	개인경기	9.8	12.6	16.9	6.0	10.9	7.1	9.8	10.4	4.4	1.6	3.3	6.6	2.2	183
	x^2 (p)	4.364	8.648 (*)	6.216	7.829	7.120	4.966	0.928	4.427	5.605	2.867	4.538	5.459	5.539	
전체	비율	6.9	8.8	13.0	4.0	6.6	4.4	10.4	7.8	2.2	1.4	2.4	4.5	1.5	1,554
	사례수	108	137	292	62	102	69	162	121	34	21	37	70	23	

*p<0.05, **p<0.01

주: 여기서는 '예'에 대한 응답 비율만 제시하였음.
(1) 맞은 적이 있다, (2)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3)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4) 운동부 단톡방에서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5) 놀림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6) 단톡방에서 놀림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 (7) 나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훈련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8)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이나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다, (9) 억지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0) 다른 선수의 과제(숙제)를 대신해 줄 것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11) 강제로 흡연이나 음주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12)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체벌로 경기 출전이나 훈련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13)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체벌로 혼자 빈 공간(교실, 운동부실, 라커룸 등)에 가둬진 적이 있다.

앞서 살펴본 폭력 피해 13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1,544명 중 22.2%인 345명이었다. 이들은 성별, 대상자별 및 장애유형, 등급, 종목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했을 때,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인 경우 폭력 피해자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고, 이는 다른 유형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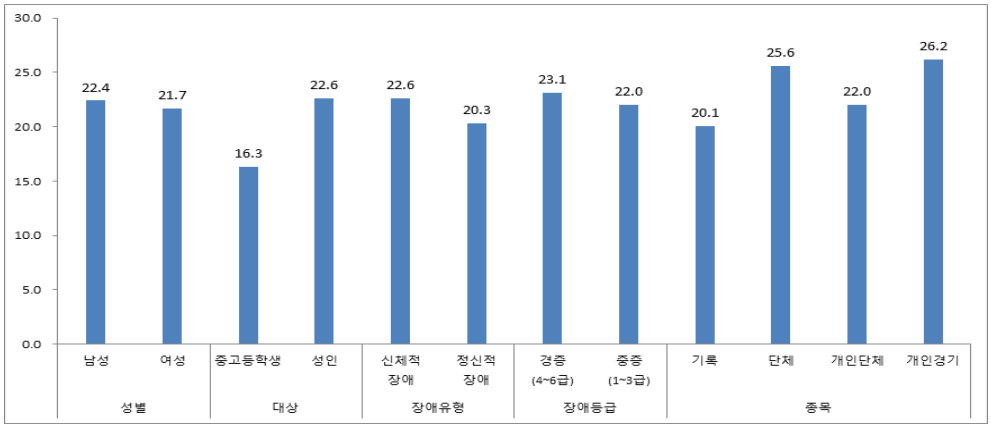

[그림 Ⅳ-9] 폭력 피해 경험자

〈표 Ⅳ-32〉 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명)

구분		경험자	
		%	N
성별	남성	22.4	264
	여성	21.7	81
	x^2 (p)	0.084	
대상	중·고등학생	16.3	17
	성인	22.6	328
	x^2 (p)	2.212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22.6	294
	정신적 장애	20.3	51
	x^2 (p)	0.614	
장애등급	경증(4~6급)	23.1	58
	중증(1~3급)	22.0	287
	x^2 (p)	0.143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21.0	48
	신체적 장애×중증	22.9	246
	정신적 장애×경증	45.5	10
	정신적 장애×중증	17.9	41
	x^2 (p)	9.848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구분		경험자	
		%	N
종목	기록	20.1	145
	단체	25.6	65
	개인단체	22.0	87
	개인경기	26.2	48
	x^2 (p)	5.245	
전체		22.2	345

3) 폭력 가해 및 피해의 특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345명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한 가해자와의 관계와 성별, 폭력이 발생한 장소, 그리고 폭력 경험 이후 신고와 대처, 이런 유사 폭력을 경험한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가) 폭력 행위자와의 관계

이들에게 폭력적 행위 및 폭력적 상황을 만들었던 행위자(중복응답)는 '감독/코치'가 49.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선배 선수' 31.6%, '동료/후배 선수' 22.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보다 응답률이 크게 낮지만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의료, 행정 스태프 등)' 6.4%,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와 '시설 관계자'가 각각 4.9%, '경기보조자(운동조력자)' 4.6%,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3.8% 등도 있었다.

성별로 보면, 가장 응답이 높은 '감독/코치'가 행위자인 경우는 남성이 51.5%로 여성 43.2%보다 높았다. 이렇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던 폭력 행위자는 '감독/코치' 이외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 '선배 선수', '활동지원사', '시설관계자'이었고,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응답률이 높았던 행위자는 '동료/후배 선수',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경기보조자'이었다.

대상자별로 보면, '감독/코치'에 의한 폭력 피해는 중·고등학생이 82.4%로 성인 47.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청소년에 비해 '선배 선수', '동료/후배 선수',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에 의한 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감독/코치'에 의한 폭력 피해는 정신적 장애가 64.7%로 신체적 장애 46.9%보다 높았다. 이외의 행위자에 대한 응답은 신체적 장애에서 대부분 높았는

데, 대표적인 것으로 '선배 선수'에 의한 피해는 정신적 장애에서 19.6%이었지만, 신체적 장애에서는 이보다 높은 33.7%이었다.

장애등급별로 보면, 폭력 행위자로 응답이 많았던 '감독/코치',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에 의한 폭력 피해는 경증보다는 중증에서 높았다. 또한 '활동지원사', '경기보조자', '시설관계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도 중증에서 좀 더 높았다.

종목별로 보면, '감독/코치'에 의한 폭력 피해는 단체종목에서 6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인종목 53.8%, 개인경기 39.6%, 개인단체 36.8% 순으로 나타났다.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와 '선배 선수' 및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에 의한 폭력 피해는 단체종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6.7%(23명)이었는데, 주로 협회 임직원, 전 코치, 비장애인 선수 등이 언급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보면, 훈련(운동) 과정에서 장애인 체육선수들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을 제공한 대상자는 주로 감독/코치였고, 또한 선배 및 후배/동료 선수들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응답률은 낮지만, 감독/코치가 아닌 코칭스태프와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들도 폭력 행위자로 확인이 된다.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응답률은 소수이나, 운동종목 관련 협회 임직원도 폭력 행위자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은 대상자의 연령과 장애유형 및 등급, 종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중·고등학생 선수들의 경우 주된 폭력 행위자는 감독/코치였다. 그러나 성인 선수들의 경우에는 선후배 및 동료 선수들, 타 팀의 코치/감독 및 선수들이 폭력 행위자로 확인된다. 감독/코치에 의한 폭력 행위의 피해는 정신적 장애, 그리고 중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33〉 폭력 행위자와의 관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감독/코치	코칭 스태프 (의료/행정 스태프 등)	선배 선수	동료/후배 선수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활동 지원사 (활동 보조인)	경기 보조자 (운동 조력자)	시설 관계자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51.5	6.8	31.8	20.8	4.2	4.2	4.5	5.7	5.3	264
	여성	43.2	4.9	30.9	25.9	7.4	2.5	4.9	2.5	11.1	81
대상	중·고등학생	82.4	5.9	11.8	17.6	0.0	5.9	5.9	5.9	0.0	17
	성인	47.9	6.4	32.6	22.3	5.2	3.7	4.6	4.9	7.0	328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46.9	6.5	33.7	22.8	4.4	4.4	3.7	5.4	7.8	294
	정신적 장애	64.7	5.9	19.6	17.6	7.8	0.0	9.8	2.0	0.0	51
장애 등급	경증 (4~6급)	39.7	3.4	31.0	31.0	5.2	3.4	3.4	1.7	5.2	58
	중증 (1~3급)	51.6	7.0	31.7	20.2	4.9	3.8	4.9	5.6	7.0	287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33.3	4.2	35.4	33.3	2.1	4.2	2.1	2.1	6.3	48
	신체적 장애 ×중증	49.6	6.9	33.3	20.7	4.9	4.5	4.1	6.1	8.1	246
	정신적 장애 ×경증	70.0	0.0	10.0	20.0	20.0	0.0	10.0	0.0	0.0	10
	정신적 장애 ×중증	63.4	7.3	22.0	17.1	4.9	0.0	9.8	2.4	0.0	41
종목	기록	53.8	7.6	24.8	15.9	6.9	5.5	6.9	3.4	5.5	145
	단체	64.6	10.8	26.2	20.0	7.7	3.1	3.1	3.1	4.6	65
	개인단체	36.8	2.3	41.4	31.0	1.1	2.3	4.6	9.2	10.3	87
	개인경기	39.6	4.2	41.7	27.1	2.1	2.1	0.0	4.2	6.3	48
전체	비율	49.6	6.4	31.6	22.0	4.9	3.8	4.6	4.9	6.7	345
	사례수	171	22	109	76	17	13	16	17	23	

나) 폭력 행위자와의 관계 및 발생 장소

위에서 살펴본 폭력 행위자의 성별(중복응답)을 보면, 84.1%가 남성이었고, 25.8%는 여성이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성별로 보면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폭력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폭력 행위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89.4%이며, 행위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는 17.4%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는 66.7%, 여성인 경우는 53.1%이었다. 대상자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중·고등학생의 경우 행위자의 성별이 남성은 76.5%, 여성은 35.3%인데 반해, 성인에 대한 폭력 행위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84.5%로 중·고등학생보다 좀 더 높았고, 행위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는 25.3%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한편,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폭력 행위자의 성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물론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해서 보면,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에서 행위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가 90.0%로 가장 높았다. 종목별로 보면, 폭력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는 '개인경기'에서 91.7%로 가장 높았고, '기록경기'에서 79.3%로 가장 낮았다. 행위자가 여성인 경우는 반대로 '기록경기'로서 31.7%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개인경기'에서는 18.8%로 가장 낮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폭력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으로 확인된다. 이는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는 장애인 영역과 비장애인 영역 모두 남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종목에도 남성 지도자를 더 선호하므로, 절대적으로 지도자의 성비가 남성이 많은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표 Ⅳ-34〉 폭력 행위자의 성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사례수
성별	남성	89.4	17.4	264
	여성	66.7	53.1	81
대상	중·고등학생	76.5	35.3	17
	성인	84.5	25.3	328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84.0	26.2	294
	정신적 장애	84.3	23.5	51

구분		남성	여성	사례수
장애등급	경증(4~6급)	82.8	27.6	58
	중증(1~3급)	84.3	25.4	287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81.3	31.3	48
	신체적 장애 × 중증	84.6	25.2	246
	정신적 장애 × 경증	90.0	10.0	10
	정신적 장애 × 중증	82.9	26.8	41
종목	기록	79.3	31.7	145
	단체	87.7	21.5	65
	개인단체	85.1	23.0	87
	개인경기	91.7	18.8	48
전체	비율	84.1	25.8	345
	사례수	290	89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폭력적 상황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던 345명에게 이들이 경험했던 폭력 발생의 장소를 물어보았다(중복응답). 그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장소는 '훈련장'으로 59.4%가 이에 해당된다. 이어서 '경기장'이 30.7%, '합숙소' 13.3%, '식당/회식자리' 11.6%, '전지훈련 숙소' 7.5%, '운동부실' 7.0%, '지도자실(지도자 숙소 포함)' 4.6%, '이동차량' 4.3%, '라커룸/샤워실'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별로 보면 발생장소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테면, 중·고등학생의 82.4%는 '훈련장'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성인의 동일 응답 58.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성인의 경우 '식당/회식자리'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12.2%로, 0.0%인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았다.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로 보면, 신체적 장애인 경우는 피해 발생 장소가 '합숙소', '전지훈련 숙소', '운동부실', '식당/회식자리', '이동차량'인 경우가 정신적 장애 선수보다 높았고, 반대로 정신적 장애 선수는 '경기장', '훈련장', '지도자실', '라커룸/샤워실'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신체적 장애 선수보다 높았다. 장애등급별로는 대체로 중증 선수들은 '훈련장', '합숙소', '전지훈련 숙소', '운동부실', '라커룸/샤워실'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경증 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목별로 보면, 폭력 피해 장소가 '경기장', '훈련장'인 경우는 단체종목에서, '합숙

소', '운동부실'인 경우는 개인경기 종목에서, '식당/회식자리'인 경우는 개인경기 종목과 개인단체 종목에서 각각 응답이 높았다.

한편 응답보기에 속하지 않아 '기타'로 응답한 경우도 8.1%가 있었다. 여기에는 '단톡방'이라는 응답이 25.0%(7명/28명)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전화', '복지관', '사석' 등의 응답도 일부 있었다.

〈표 Ⅳ-35〉 폭력 피해 발생 장소(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경기장	훈련장	합숙소	전지훈련숙소	지도자실(지도자숙소 포함)	운동부실	라커룸/샤워실	회식자리	이동차량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30.3	58.3	13.3	6.8	4.9	8.0	2.3	13.3	4.5	8.0	264
	여성	32.1	63.0	13.6	9.9	3.7	3.7	3.7	6.2	3.7	8.6	81
대상	중·고등학생	29.4	82.4	17.6	11.8	11.8	11.8	5.9	0.0	0.0	5.9	17
	성인	30.8	58.2	13.1	7.3	4.3	6.7	2.4	12.2	4.6	8.2	328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30.6	58.5	15.3	8.2	4.1	7.1	2.0	13.6	4.8	8.2	294
	정신적 장애	31.4	64.7	2.0	3.9	7.8	5.9	5.9	0.0	2.0	7.8	51
장애등급	경증(4~6급)	34.5	41.4	5.2	3.4	5.2	5.2	1.7	12.1	5.2	10.3	58
	중증(1~3급)	30.0	63.1	15.0	8.4	4.5	7.3	2.8	11.5	4.2	7.7	287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35.4	41.7	6.3	2.1	2.1	6.3	2.1	14.6	6.3	6.3	48
	신체적 장애×중증	29.7	61.8	17.1	9.3	4.5	7.3	2.0	13.4	4.5	8.5	246
	정신적 장애×경증	30.0	40.0	0.0	10.0	20.0	0.0	0.0	0.0	0.0	30.0	10
	정신적 장애×중증	31.7	70.7	2.4	2.4	4.9	7.3	7.3	0.0	2.4	2.4	41
종목	기록	28.3	57.2	13.1	9.0	4.8	5.5	3.4	8.3	3.4	9.7	145
	단체	38.5	66.2	6.2	6.2	6.2	3.1	3.1	4.6	6.2	10.8	65
	개인단체	29.9	63.2	14.9	6.9	3.4	8.0	1.1	17.2	3.4	4.6	87
	개인경기	29.2	50.0	20.8	6.3	4.2	14.6	2.1	20.8	6.3	6.3	48
전체	비율	30.7	59.4	13.3	7.5	4.6	7.0	2.6	11.6	4.3	8.1	345
	사례수	106	205	46	26	16	24	9	40	15	2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다) 폭력 피해 이후 도움 요청 대상과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폭력을 경험한 이후 주변 가족이나 동료, 외부 기관(경찰서,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345명의 피해 경험자 중 16.8%(58명)만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21.0%로 남성 15.5%보다 좀 더 높았다. 대상자별로는 중·고등학생 중에는 41.2%가 응답하여, 성인 15.5%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의 경우 29.4%로 신체적 장애 14.6%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장애등급의 경우, 경증과 중증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해 보면, 정신적 장애이면서 중증인 경우, 주변이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31.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이 20.0%, 신체적 장애이면서 경증이 18.8%, 신체적 장애이면서 중증은 13.8%로 각각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종목별로는 '기록종목'에서 19.3%로 가장 높았고, '단체종목'이 그 다음인 16.9%, '개인단체' 14.9%, '개인경기' 1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목 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었다.

〈표 Ⅳ-36〉 폭력 피해 이후 주변 및 외부기관 도움 요청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사례수
성별	남성	15.5	84.5	264
	여성	21.0	79.0	81
	x^2 (p)	1.320		
대상	중·고등학생	41.2	58.8	17
	성인	15.5	84.5	328
	x^2 (p)	7.590 (**)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14.6	85.4	294
	정신적 장애	29.4	70.6	51
	x^2 (p)	6.794 (**)		
장애등급	경증(4~6급)	19.0	81.0	58
	중증(1~3급)	16.4	83.6	287
	x^2 (p)	0.231		

구분		있다	없다	사례수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18.8	81.3	48
	신체적 장애×중증	13.8	86.2	246
	정신적 장애×경증	20.0	80.0	10
	정신적 장애×중증	31.7	68.3	41
	x^2 (p)	8.280 (*)		
종목	기록	19.3	80.7	145
	단체	16.9	83.1	65
	개인단체	14.9	85.1	87
	개인경기	12.5	87.5	48
	x^2 (p)	1.503		
전체	비율	16.8	83.2	345
	사례수	58	287	

*p<0.05, **p<0.01

도움을 요청했다는 58명에게, 그 대상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중복응답). 그 결과,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등)이나 친인척'이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친구 및 지인' 34.5%, '체육회 등 체육단체' 24.1%, '운동부 내 선후배, 동료' 19.0%, '운동부 내 감독/코치 등 코칭스태프' 17.2%, '학교 밖 상담센터(상담선생님), 외부 상담센터' 13.8%, '외부 수사기관(경찰 등)' 10.3%, '운동부 내 상담센터(상담선생님)' 6.9%, '정부 혹은 시청/구청/군청 지자체 및 정부기관'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유사한 응답으로 묶어서 보면, 운동부 자체 기관(운동부 내 상담센터,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1.0%였다. 그리고 운동부 밖의 외부 기관(학교 밖 상담센터, 수사기관, 정부/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7.5%이었다.

대상자별로 보면, 중·고등학생은 대다수가 '가족이나 친인척'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85.7%가 이에 해당하였다. 다음은 '운동부 내 선후배, 동료'로 57.1%, '친구 및 지인'이 28.6%이었다. 내부 기관으로 '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14.3%뿐이었고,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성인의 경우 역시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및 지인'에 도움을 청한 경우가 각 35.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운동부 내 감독/코치 등 코칭스태프'가 19.6%이었다. 내·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를 보면, 내부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은 33.3%, 외부 기관은 31.4%로 비슷하였다.

〈표 Ⅳ-37〉 폭력 피해 이후 도움 요청한 대상(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및 지인	운동부 내 감독 등 코칭 스태프	운동부 내 선후배, 동료	운동부 내 상담 센터	체육회 등 체육 단체	외부 상담 센터	외부 수사 기관 (경찰 등)	지자체 및 정부 기관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46.3	36.6	14.6	17.1	7.3	22.0	12.2	9.8	4.9	4.9	41
	여성	29.4	29.4	23.5	23.5	5.9	29.4	17.6	11.8	0.0	5.9	17
대상	중·고등학생	85.7	28.6	0.0	57.1	0.0	14.3	0.0	0.0	0.0	0.0	7
	성인	35.3	35.3	19.6	13.7	7.8	25.5	15.7	11.8	3.9	5.9	51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44.4	44.4	22.2	0.0	11.1	11.1	11.1	22.2	0.0	0.0	9
	신체적 장애 ×중증	32.4	41.2	14.7	26.5	8.8	38.2	11.8	5.9	5.9	8.8	34
	정신적 장애 ×경증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
	정신적 장애 ×중증	53.8	15.4	23.1	15.4	0.0	0.0	23.1	15.4	0.0	0.0	13
전체	비율	41.4	34.5	17.2	19.0	6.9	24.1	13.8	10.3	3.4	5.2	58
	사례수	24	20	10	11	4	14	8	6	2	3	

폭력 피해를 경험했지만 주변 및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28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중복응답).

그 결과, '이야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다. 이보다는 소폭 낮지만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가 35.9%, '상대방과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상대방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27.2%, '불만을 얘기하면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 24.7%, '내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17.1%, '나의 장애로 인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서' 15.3%, '도움을 요청할 마땅한 곳을 몰라서' 13.6%, '나에게 복수를 할까 두려워서' 12.5%,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11.8%, '비난이나 왕따가 걱정되어서'와 '알려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각각 7.3%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Ⅳ-38〉 폭력 피해 이후 가족과 주변인 및 내·외부 기관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장애로 인해 충분히 도움 요청 어려워서	행위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복이 두려워서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불만을 얘기하면 선수 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 몰라서	상대방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비난이나 왕따가 걱정돼서	알려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도움 요청할 마땅한 곳을 몰라서	내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15.2	35.4	13.9	38.1	22.4	14.3	26.9	6.3	6.7	14.3	17.9	1.3	223
	여성	15.6	37.5	7.8	35.9	32.8	3.1	28.1	10.9	9.4	10.9	14.1	3.1	64
대상	중·고등학생	20.0	30.0	20.0	10.0	30.0	30.0	20.0	10.0	0.0	0.0	30.0	0.0	10
	성인	15.2	36.1	12.3	38.6	24.5	11.2	27.4	7.2	7.6	14.1	16.6	1.8	277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2.6	41.0	5.1	28.2	12.8	12.8	43.6	7.7	5.1	5.1	15.4	5.1	39
	신체적 장애 ×중증	15.1	34.4	13.7	42.0	28.8	9.9	26.4	8.0	7.5	14.6	16.0	1.4	212
	정신적 장애 ×경증	37.5	25.0	25.0	50.0	12.5	12.5	37.5	0.0	12.5	37.5	12.5	0.0	8
	정신적 장애 ×중증	28.6	42.9	10.7	14.3	14.3	25.0	7.1	3.6	7.1	10.7	28.6	0.0	28
전체	비율	15.3	35.9	12.5	37.6	24.7	11.8	27.2	7.3	7.3	13.6	17.1	1.7	287
	사례수	44	103	36	108	71	34	78	21	21	39	49	5	

4) 폭력 처음 경험 시기 및 현재 운동부 내 폭력 경험과 빈도

가) 폭력 처음 경험 시기

폭력을 처음 경험한 시기를 물어본 결과, 과반이 조금 넘는 52.2%가 '대학교 혹은 성인일 때'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는 '고등학교'가 15.1%, '중학교'가 16.5%, 그리고 '초등학교'도 16.2%가 있었다.

대상자별로 보면,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때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9.4%이었다. '청년(19~39세)'의 경우, '대학교 혹은 성인일 때'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등학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4.2%, ‘중학교’ 21.0%, ‘초등학교’ 16.9%이었다. 중장년의 경우는 ‘대학교 혹은 성인일 때’ 폭력을 처음 경험했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초등학교’로 13.7%, ‘중학교’ 12.7%, ‘고등학교’ 8.3%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시기(연령)인데, 본 조사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폭력을 처음 경험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경우 운동을 시작한 시기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로 성인보다는 운동 시작 시기에 대한 오차가 적기 때문에, 이 대상만 본다면 실제 폭력 피해를 경험했거나 폭력적 상황을 겪었던 첫 시기가 ‘초등학교’인 경우가 41.2%인 것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Ⅳ-39〉 폭력 피해를 처음 경험한 시기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성인일 때	사례수
성별	남성	18.6	17.0	15.9	48.5	264
	여성	8.6	14.8	12.3	64.2	81
	x^2 (p)	7.399				
생애	청소년	41.2	29.4	29.4	0.0	17
	청년	16.9	21.0	24.2	37.9	124
	중장년	13.7	12.7	8.3	65.2	204
	x^2 (p)	47.949 (**)				
전체	비율	16.2	16.5	15.1	52.2	345
	사례수	56	57	52	180	

*p<0.05, **p<0.01

나) 현재 운동부 내 폭력 발생 빈도

위의 질문에 이어 현재 운동부 내에서 폭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22.0%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응답은 35.3%였는데, 이는 청년 21.0%, 중장년 21.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목을 보면, ‘기록종목’인 경우 응답이 24.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단체종목’ 21.5%, ‘개인단체종목’ 19.5%, ‘개인경기종목’ 1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0〉 현재 운동부 내 폭력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사례수
성별	남성	21.2	78.8	264
	여성	24.7	75.3	81
	x^2 (p)	0.437		
생애	청소년	35.3	64.7	17
	청년	21.0	79.0	124
	중장년	21.6	78.4	204
	x^2 (p)	1.848		
종목	기록	24.8	75.2	145
	단체	21.5	78.5	65
	개인단체	19.5	80.5	87
	개인경기	18.8	81.3	48
	x^2 (p)	1.284		
전체	비율	22.0	78.0	345
	사례수	76	269	

*p〈0.05, **p〈0.01

현재 소속되어 있는 운동부 내에서 폭력이 있다고 응답한 76명에게, 폭력 발생 빈도에 대해 물어보았다. 3/4 이상인 76.3%는 '가끔 발생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보다는 크게 낮지만, 19.7%가 '종종 발생 한다', 그리고 3.9%는 '자주 발생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41〉 현재 운동부 내 폭력 발생 빈도

(단위: %, 명)

구분		가끔 발생	종종 발생	자주 발생	사례수
성별	남성	78.6	16.1	5.4	56
	여성	70.0	30.0	0.0	20
	x^2 (p)	2.662			
생애	청소년	100.0	0.0	0.0	6
	청년	69.2	26.9	3.8	26
	중장년	77.3	18.2	4.5	44
	x^2 (p)	2.813			
종목	기록	75.0	22.2	2.8	36
	단체	85.7	14.3	0.0	14
	개인단체	76.5	17.6	5.9	17
	개인경기	66.7	22.2	11.1	9
	x^2 (p)	2.678			
전체	비율	76.3	19.7	3.9	76
	사례수	58	15	3	

*p〈0.05, **p〈0.01

5) 폭력 피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과 관련 특성

가) 폭력 피해를 듣거나 목격한 경험

여기서는 전체 조사 참여자 1,554명에게 동료 선배, 후배 혹은 동기 선수들이 앞서 살펴본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실제 보았거나 들은 적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16.9%인 262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주변 동료의 폭력 피해를 듣거나 실제 목격한 경우는 성별 간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대상자 간에는 성인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응답자 비율이 소폭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로 보면,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인 경우, 주변 동료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듣거나 목격한 비율이 22.7%로 가장 높았다(p〈0.05). 또한 종목별로는 '개인경기종목'에서 22.4%로 가장 높고, '단체종목' 18.9%, '개인단체종목' 17.4%, '기록종목' 1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2〉 동료 선수의 폭력 피해에 대해 듣거나 목격 경험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사례수
성별	남성	17.5	82.5	1,180
	여성	15.0	85.0	374
	x^2 (p)	1.250		
대상	중·고등학생	11.5	88.5	104
	성인	17.2	82.8	1,450
	x^2 (p)	2.252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17.7	82.3	1,303
	정신적 장애	12.7	87.3	251
	x^2 (p)	3.609		
장애등급	경증(4~6급)	13.1	86.9	251
	중증(1~3급)	17.6	82.4	1,303
	x^2 (p)	2.943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12.2	87.8	229
	신체적 장애 × 중증	18.8	81.2	1,074
	정신적 장애 × 경증	22.7	77.3	22
	정신적 장애 × 중증	11.8	88.2	229
	x^2 (p)	11.154 (*)		
종목	기록	14.4	85.6	721
	단체	18.9	81.1	254
	개인단체	17.4	82.6	396
	개인경기	22.4	77.6	183
	x^2 (p)	7.907 (*)		
전체	비율	16.9	83.1	1,554
	사례수	262	1292	

*p<0.05, **p<0.01

이상에서와 같이 동료들의 폭력 피해를 직접 목격하였거나 들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262명의 선수들에게 그런 행위를 한 대상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중복응답). 그 결과 '감독/코치'라는 응답이 과반이 조금 넘는 50.4%로 가장 높았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으로는 '선배 선수'로 36.6%가 응답하였고, 이어서 '동료/후배 선수' 24.0%,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 8.4%, '경기보조자' 5.0%, '타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와 '활동지원사', '시설관계자'가 각각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별로 보면, '감독/코치'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고등학생이 58.3%로 성인 50.0%보다 소폭 더 높았다. 그리고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 역시 중·고등학생은 16.7%로, 성인 8.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렇지만, '선배 선수', '동료/후배 선수'에 대한 응답은 성인이 각각 37.2%와 24.4%로, 중·고등학생의 동일 대상에 대한 응답 25.0%와 16.7%에 비해 높았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해서 보면, '감독/코치' 혹은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에 의한 폭력 행위는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신체적 장애보다는 정신적 장애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선배 선수'에 의한 폭력은 정신적 장애보다는 신체적 장애에서 좀 더 높았다.

종목별로 보면, '감독/코치',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에 의한 폭력은 기록종목이나 단체종목에서, 그리고 '선배선수'나 '동료/후배 선수'에 의한 폭력은 개인단체종목이나 개인경기종목, 단체종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Ⅳ-43〉 동료 선수의 폭력 피해에 대해 듣거나 목격 경험(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감독/코치	코칭스태프(의료/행정스태프 등)	선배 선수	동료/후배 선수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경기보조자(운동조력자)	시설관계자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50.5	9.7	36.4	22.3	4.4	4.9	4.4	4.9	1.9	206
	여성	50.0	3.6	37.5	30.4	3.6	1.8	7.1	1.8	3.6	56
대상	중·고등학생	58.3	16.7	25.0	16.7	0.0	0.0	16.7	0.0	0.0	12
	성인	50.0	8.0	37.2	24.4	4.4	4.4	4.4	4.4	2.4	250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50.4	7.0	38.7	24.3	3.5	3.9	4.3	3.9	2.2	230
	정신적 장애	50.0	18.8	21.9	21.9	9.4	6.3	9.4	6.3	3.1	32
장애등급	경증(4~6급)	42.4	15.2	51.5	21.2	6.1	3.0	0.0	3.0	0.0	33
	중증(1~3급)	51.5	7.4	34.5	24.5	3.9	4.4	5.7	4.4	2.6	229

구분		감독/코치	코칭 스태프 (의료/행정 스태프 등)	선배 선수	동료/후배 선수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활동 지원사 (활동 보조인)	경기 보조자 (운동 조력자)	시설 관계자	기타	사례수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35.7	10.7	57.1	25.0	3.6	3.6	0.0	3.6	0.0	28
	신체적 장애 ×중증	52.5	6.4	36.1	24.3	3.5	4.0	5.0	4.0	2.5	202
	정신적 장애 ×경증	80.0	40.0	20.0	0.0	20.0	0.0	0.0	0.0	0.0	5
	정신적 장애 ×중증	44.4	14.8	22.2	25.9	7.4	7.4	11.1	7.4	3.7	27
종목	기록	55.8	10.6	28.8	15.4	2.9	3.8	5.8	3.8	1.0	104
	단체	50.0	18.8	35.4	29.2	4.2	4.2	4.2	0.0	4.2	48
	개인단체	43.5	1.4	44.9	29.0	4.3	7.2	5.8	7.2	1.4	69
	개인경기	48.8	2.4	43.9	31.7	7.3	0.0	2.4	4.9	4.9	41
전체	비율	50.4	8.4	36.6	24.0	4.2	4.2	5.0	4.2	2.3	262
	사례수	132	22	96	63	11	11	13	11	6	

앞서 동료들이 폭력 행위를 겪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262명에게, 그런 행위를 한 대상자의 성별을 물었다(중복응답). 그 결과 76.7%는 '남성'이라고 응답하였고, 15.6%는 '여성', 15.3%는 성별을 '잘 모름'이라고 응답하였다.

폭력행위자의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인 경우 폭력행위자가 '남성'이라는 응답이 81.6%이었지만, 여성은 '남성'이라는 응답이 58.9%이었다. 그러나 '여성'이 행위자였다는 응답의 경우, 남성은 11.2%이었지만, 여성은 32.1%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남성은 13.6%, 여성은 21.4%이었다.

이렇게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행위자의 성별이 다른 것은 일정 부분, 남녀 응답자의 종목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개인단체종목인 경우 폭력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가 82.6%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이 종목에서는 행위자가 '여성'인 경우도 20.3%로, 다른 종목에 비해 행위자가 '여성'이라는 응답도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폭력 행위자가 '여성'이라는 응답은 단체종목에서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44〉 동료 선수에 대한 폭력 행위자의 성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잘 모름	사례수
성별	남성	81.6	11.2	13.6	206
	여성	58.9	32.1	21.4	56
대상	중·고등학생	75.0	8.3	25.0	12
	성인	76.8	16.0	14.8	250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77.4	16.1	14.8	230
	정신적 장애	71.9	12.5	18.8	32
장애등급	경증(4~6급)	81.8	18.2	9.1	33
	중증(1~3급)	76.0	15.3	16.2	229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82.1	21.4	7.1	28
	신체적 장애 × 중증	76.7	15.3	15.8	202
	정신적 장애 × 경증	80.0	0.0	20.0	5
	정신적 장애 × 중증	70.4	14.8	18.5	27
종목	기록	72.1	14.4	18.3	104
	단체	77.1	16.7	14.6	48
	개인단체	82.6	20.3	11.6	69
	개인경기	78.0	9.8	14.6	41
전체	비율	76.7	15.6	15.3	262
	사례수	201	41	40	

동료 선수에 대한 폭력 행위를 목격했거나 들었던 적이 있는 경우, 그러한 폭력행위가 발생된 장소에 대해 추가로 물어보았다. 이 또한 앞서 살펴본 폭력 행위를 직접 경험한 응답자의 경험 장소와 비슷하였다. 즉, '훈련장'이라는 응답이 66.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기장' 33.2%, '합숙소' 17.6%, '회식자리' 12.6%, '운동부실' 11.1%, '전지훈련 숙소' 8.8%, '라커룸/샤워실' 4.6%, '지도자실'과 '이동차량' 각각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생장소에 대한 응답 경향은 이를 목격하였거나 들었던 응답자의 성별이나 대상자별, 그리고 장애유형별과 등급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이를테면, '지도자실'에 대한 응답은 정신적 장애이면서 중증에서 11.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목별로도 발생

장소에 차이를 보였다. 이를테면, 발생장소가 '훈련장'이라는 응답은 개인단체종목인 경우 73.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기록종목 67.3%, 단체종목 62.5%, 개인경기 58.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숙소' 혹은 '전지훈련 숙소'의 경우 개인경기종목에서 각각 24.4%와 14.6%로, 타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발생 장소로서 응답률이 높았다.

〈표 Ⅳ-45〉 동료 선수에 대한 폭력의 발생 장소(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경기장	훈련장	합숙소	전지훈련 숙소	지도자실 (숙소 포함)	운동부실	라커룸/샤워실	회식자리	이동차량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34.5	65.0	17.0	8.3	3.9	11.2	4.9	14.6	4.4	4.4	206
	여성	28.6	73.2	19.6	10.7	1.8	10.7	3.6	5.4	0.0	5.4	56
대상	중·고등학생	41.7	75.0	16.7	16.7	8.3	25.0	16.7	0.0	0.0	8.3	12
	성인	32.8	66.4	17.6	8.4	3.2	10.4	4.0	13.2	3.6	4.4	250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33.0	67.4	19.1	7.8	2.6	11.7	4.3	14.3	3.9	3.9	230
	정신적 장애	34.4	62.5	6.3	15.6	9.4	6.3	6.3	0.0	0.0	9.4	32
장애등급	경증(4~6급)	24.2	72.7	9.1	9.1	3.0	9.1	6.1	12.1	3.0	3.0	33
	중증(1~3급)	34.5	65.9	18.8	8.7	3.5	11.4	4.4	12.7	3.5	4.8	229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21.4	75.0	10.7	3.6	3.6	10.7	3.6	14.3	3.6	3.6	28
	신체적 장애×중증	34.7	66.3	20.3	8.4	2.5	11.9	4.5	14.4	4.0	4.0	202
	정신적 장애×경증	40.0	60.0	0.0	40.0	0.0	0.0	20.0	0.0	0.0	0.0	5
	정신적 장애×중증	33.3	63.0	7.4	11.1	11.1	7.4	3.7	0.0	0.0	11.1	27
종목	기록	35.6	67.3	16.3	10.6	3.8	10.6	4.8	6.7	3.8	3.8	104
	단체	31.3	62.5	14.6	4.2	6.3	2.1	4.2	14.6	6.3	10.4	48
	개인단체	26.1	73.9	17.4	5.8	2.9	15.9	4.3	17.4	1.4	2.9	69
	개인경기	41.5	58.5	24.4	14.6	0.0	14.6	4.9	17.1	2.4	2.4	41
전체	비율	33.2	66.8	17.6	8.8	3.4	11.1	4.6	12.6	3.4	4.6	262
	사례수	87	175	46	23	9	29	12	33	9	1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마지막으로 동료에 대한 폭력이 운동부 내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물어보았다. 대다수인 84.7%는 '가끔 발생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종종 발생 한다'도 12.2%, '자주 발생 한다'도 3.1%가 응답하였다. 이를 응답자의 성별, 대상자별 및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종목별로 보더라도 '종종' 혹은 '자주' 발생한다는 응답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Ⅳ-46〉 동료 선수에 대한 폭력 발생 정도

(단위: %, 명)

구분		가끔 발생	종종 발생	자주 발생	사례수
성별	남성	85.4	10.7	3.9	206
	여성	82.1	17.9	0.0	56
	x^2 (p)	4.088			
대상	중·고등학생	83.3	16.7	0.0	12
	성인	84.8	12.0	3.2	250
	x^2 (p)	0.591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84.8	12.2	3.0	230
	정신적 장애	84.4	12.5	3.1	32
	x^2 (p)	0.004			
장애등급	경증(4~6급)	87.9	12.1	0.0	33
	중증(1~3급)	84.3	12.2	3.5	229
	x^2 (p)	1.197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85.7	14.3	0.0	28
	신체적 장애 × 중증	84.7	11.9	3.5	202
	정신적 장애 × 경증	100.0	0.0	0.0	5
	정신적 장애 × 중증	81.5	14.8	3.7	27
	x^2 (p)	2.209			
종목	기록	83.7	13.5	2.9	104
	단체	81.3	14.6	4.2	48
	개인단체	87.0	11.6	1.4	69
	개인경기	87.8	7.3	4.9	41
	x^2 (p)	2.582			
전체	비율	84.7	12.2	3.1	262
	사례수	222	32	8	

*p<0.05, **p<0.01

바. 성희롱·성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1) 성희롱·성폭력 유형별 경험

본 실태조사는 장애인 체육인의 성폭력의 피해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따랐다. 그 이유는 장애인 체육인의 성폭력 피해가 조직의 위계적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피해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의 예시에 따르면, 성희롱은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2018)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는 이 유형별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87]

먼저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강간(「형법」 제297조 등)이나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 등),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등),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시각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타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모두 포괄한다.

---

87)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차이가 있다면 처벌 여부임.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행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됨. 성희롱과 성폭력 모두 위의 관련법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음.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을 경우 및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성희롱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성폭력 범죄 성립 요건이 성립된다면 처벌은 형사절차를 통해 결정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외 본 실태조사에서는 카메라 등에 의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행위도 포함하였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88]으로 정의된다. 즉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된다).

가) 언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항목은 총 3가지가 본 실태조사에 포함되었는데, 즉 [1]'누군가 내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등의 크기나 모양 등)에 대해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2]'누군가 나에게 야한 말을 하거나 내가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경험을 말을 한 적 있다', [3]'내가 싫다고 했음에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전화, 카톡, 이메일, 편지 등을 계속 보낸 적이 있다'가 해당된다.

이 3가지 유형의 언어적 성희롱을 운동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1]은 3.9%(61명), [2]는 4.2%(65명), [3]은 1.8%(28명)가 각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1], [2]에 대해서는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1]과 [2]에 대한 남성의 경험률은 각각 3.0%와 3.5%이지만, 여성의 경험률은 이보다 높은 7.0%와 6.4%로 나타났다([1]χ^2=11.963, $p<0.01$; [2]χ^2=6.135, $p<0.05$). [3] 역시 여성의 경험률은 2.7%로 남성 1.5%보다 높았지만,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별로 보면, [1]과 [3] 행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의 경험률이 각각 4.8%와 3.8%로 성인 3.9%와 1.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2]에 대해서는 성인이 4.2%로 중·고등학생 3.8%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 3가지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대상자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유형별로는 [1]과 [2]에 대해서는 신체적 장애에서, [3]에 대해서는 정신적 장애에서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3]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내가 싫다고 했음에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전화, 카톡, 이메일, 편지 등

88) 디지털 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함(여성가족부, 2018.6.: 21).

을 계속 보낸 적이 있다'에 대한 경험률은 정신적 장애 선수가 4.0%로, 신체적 장애 선수 1.4%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x^2=8.057, p<0.01). 그러나 장애등급인 경증과 중증 간의 차이는 없었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할 때, [3]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인 경우 피해 경험률은 9.1%, 중증은 3.5%, 신체적 장애이면서 경증은 1.7%, 중증은 1.3%로 각각 나타났다(x^2=11.821, p<0.01).

〈표 Ⅳ-47〉 언어적 성희롱 경험

(단위: %, 명)

구분		누군가 내 신체 부위에 대해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야한 말을 하거나 내가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경험을 말한 적 있다	내가 싫다고 했음에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전화, 카톡, 이메일, 편지 등을 계속 보낸 적이 있다	사례수
성별	남성	3.0	3.5	1.5	1,180
	여성	7.0	6.4	2.7	374
	x^2 (p)	11.963 (**)	6.135 (*)	2.117	
대상	중·고등학생	4.8	3.8	3.8	104
	성인	3.9	4.2	1.7	1,450
	x^2 (p)	0.230	0.032	2.633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4.1	4.4	1.4	1,303
	정신적 장애	2.8	3.2	4.0	251
	x^2 (p)	1.025	0.740	8.057 (**)	
장애등급	경증(4~6급)	3.2	4.4	2.4	251
	중증(1~3급)	4.1	4.1	1.7	1,303
	x^2 (p)	0.432	0.030	0.586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3.1	3.9	1.7	229
	신체적 장애×중증	4.4	4.5	1.3	1,074
	정신적 장애×경증	4.5	9.1	9.1	22
	정신적 장애×중증	2.6	2.6	3.5	229
	x^2 (p)	2.094	2.974	11.821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구분		누군가 내 신체 부위에 대해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야한 말을 하거나 내가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경험을 말한 적 있다	내가 싫다고 했음에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전화, 카톡, 이메일, 편지 등을 계속 보낸 적이 있다	사례수
종목	기록	4.4	4.2	2.4	721
	단체	2.0	2.4	1.6	254
	개인단체	3.0	4.5	0.8	396
	개인경기	6.6	6.0	2.2	183
	x^2 (p)	7.285	3.757	3.927	
전체	비율	3.9	4.2	1.8	1,554
	사례수	61	65	28	

*p<0.05, **p<0.01

나) 시각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은 총 4가지 행위로 물어보았다. 이를테면 [1]'누군가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 온 적이 있다', [2]'누군가 이상한 시선으로 내 몸을 쳐다본 적이 있다', [3]'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야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 [4]'누군가 내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 등 벌거벗은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진 적이 있다'가 그것이다.

결과를 보면, [1]에 대한 피해 경험은 1.4%, [2]는 4.4%, [3]은 2.8%, [4]는 1.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2]에 대해서 남성은 3.4%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성은 2배 이상 높은 7.8%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12.748, p<0.01). 중·고등학생과 성인 간의 시각적 성희롱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로 보더라도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할 경우에 [1]~[3] 행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들 행위 모두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에서의 피해 경험률이 [1]은 13.6%, [2]는 27.3%, [3]은 18.2%이었는데, 이는 다른 그룹에서 3~4% 미만의 피해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p<0.01).

〈표 Ⅳ-48〉 시각적 성희롱 경험

(단위: %, 명)

구분		누군가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있다	누군가 이상한 시선으로 내 몸을 쳐다본 적이 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야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	누군가 내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 등 벌거벗은 신체 부위를 보여준 적이 있다	사례수
성별	남성	1.5	3.4	2.8	1.1	1,180
	여성	1.1	7.8	2.7	0.8	374
	x^2 (p)	0.423	12.748 (**)	0.016	0.250	
대상	중·고등학생	1.9	3.8	3.8	1.0	104
	성인	1.4	4.5	2.7	1.0	1,450
	x^2 (p)	0.206	0.093	0.482	0.005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1.2	4.4	2.5	0.9	1,303
	정신적 장애	2.4	4.8	4.4	1.6	251
	x^2 (p)	2.038	0.082	2.903	0.935	
장애 등급	경증(4~6급)	3.2	6.0	3.6	1.6	251
	중증(1~3급)	1.1	4.1	2.6	0.9	1,303
	x^2 (p)	6.731 (**)	1.664	0.746	0.935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2.2	3.9	2.2	1.3	229
	신체적 장애×중증	1.0	4.5	2.5	0.8	1,074
	정신적 장애×경증	13.6	27.3	18.2	4.5	22
	정신적 장애×중증	1.3	2.6	3.1	1.3	229
	x^2 (p)	25.706 (**)	28.961 (**)	20.047 (**)	3.409	
종목	기록	1.0	4.4	3.1	0.6	721
	단체	2.8	3.1	2.8	1.2	254
	개인단체	1.0	3.8	1.8	1.5	396
	개인경기	1.3	7.7	3.8	1.6	183
	x^2 (p)	5.535	5.839	2.448	3.236	
전체	비율	1.4	4.4	2.8	1.0	1,554
	사례수	22	69	43	16	

*p〈0.05, **p〈0.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다) 육체적 성희롱(성추행 및 강간/강간미수)

육체적 성희롱은 성추행 및 강간/강간미수에 해당되는데, 총 11가지 행위로 측정하였다. 즉, [1]'누군가 내 허락 없이 손, 머리, 어깨, 허벅지, 엉덩이 등 내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 [2]'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나를 자신의 옆이나 무릎위에 앉히거나,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3]'누군가 나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기분 나쁠 정도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 [4]'누군가 나에게 어깨 주무르기, 팔베개, 마사지 등을 강요한 적이 있다', [5]'누군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자신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 [6]'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에게 뽀뽀나 키스,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 [7]'누군가 내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8]'누군가 지나가면서 혹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내 몸의 중요한 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 [9]'누군가 나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10]'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의 입이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한 적이 있다', [11]'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의 성기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던 적이 있다'가 포함되었다.

피해 경험률을 보면, [1]은 4.0%, [2]는 1.9%, [3]은 1.7%, [4]는 2.1%, [5]는 0.9%, [6]은 1.4%, [7]은 1.0%, [8]은 1.2%, [9]는 0.8%, [10]은 0.7%, [11]은 0.6%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1], [2], [3]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남성보다 높았다($p<0.05$). 장애유형별로는 [4], [5], [9], [10], [1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신적 장애에서의 피해율이 신체적 장애보다 높았다($p<0.05$).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했을 때는 11가지 행위 중 [3]~[6], [8]~[11] 행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3]~[6], [8]~[9], [11]: $p<0.01$, [10]: $p<0.05$).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 중증, 신체적 장애이면서 경증, 중증 순으로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자별 및 장애등급별 피해 차이는 행위별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Ⅳ-49〉 육체적 성희롱 경험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사례수
성별	남성	3.4	1.5	1.4	1.9	0.8	1.2	0.8	1.2	0.8	0.6	0.6	1,180
	여성	5.9	3.2	2.9	2.7	1.1	2.1	1.6	1.3	1.1	1.1	0.5	374
	x^2 (p)	4.606 (*)	4.249 (*)	4.180 (*)	0.717	0.157	1.846	1.596	0.053	0.322	0.917	0.017	
대상	중·고등학생	4.8	1.9	3.8	3.8	1.0	1.9	2.9	1.0	1.0	1.9	1.0	104
	성인	3.9	1.9	1.6	2.0	0.9	1.4	0.9	1.2	0.8	0.6	0.6	1,450
	x^2 (p)	0.195	0.000	2.903	1.591	0.005	0.206	3.764	0.063	0.021	2.342	0.283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4.1	1.8	1.5	1.8	0.6	1.2	0.8	1.0	0.5	0.5	0.3	1,303
	정신적 장애	3.6	2.4	3.2	4.0	2.4	2.4	2.0	2.4	2.4	2.0	2.0	251
	x^2 (p)	0.128	0.334	3.685	4.985 (*)	7.439 (**)	2.038	2.721	3.380	8.713 (**)	7.024 (**)	10.378 (**)	
장애 등급	경증 (4~6급)	4.0	2.0	2.8	2.8	1.6	2.0	1.2	1.6	1.6	1.2	1.2	251
	중증 (1~3급)	4.0	1.9	1.5	2.0	0.8	1.3	1.0	1.2	0.7	0.6	0.5	1,303
	x^2 (p)	0.000	0.006	1.938	0.637	1.609	0.712	0.081	0.341	2.068	1.012	1.973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3.5	1.7	1.3	0.9	0.9	0.9	0.9	0.9	0.9	0.9	0.9	229
	신체적 장애 ×중증	4.2	1.9	1.5	2.0	0.6	1.3	0.8	1.0	0.5	0.4	0.2	1,074
	정신적 장애 ×경증	9.1	4.5	18.2	22.7	9.1	13.6	4.5	9.1	9.1	4.5	4.5	22
	정신적 장애 ×중증	3.1	2.2	1.7	2.2	1.7	1.3	1.7	1.7	1.7	1.7	1.7	229
	x^2 (p)	2.275	0.939	35.477 (**)	46.806 (**)	19.775 (**)	24.139 (**)	4.266	12.380 (**)	22.142 (**)	9.935 (*)	14.657 (**)	
종목	기록	3.7	1.9	1.5	1.8	0.6	1.2	1.0	1.4	0.7	0.7	0.4	721
	단체	2.8	1.2	1.6	2.8	1.6	2.0	1.2	1.2	0.8	0.8	1,2	254
	개인단체	4.0	2.0	1.8	2.3	1.0	1.5	0.8	0.8	1.0	0.5	0.5	396
	개인경기	6.6	2.7	2.7	2.2	1.1	1.1	1.6	1.6	1.1	1.1	0.5	183
	x^2 (p)	4.275	1.392	1.292	0.891	2.388	0.866	1.037	1.137	0.474	0.643	1.973	
전체	비율	4.0	1.9	1.7	2.1	0.9	1.4	1.0	1.2	0.8	0.7	0.6	1,554
	사례수	62	30	27	33	14	22	16	19	13	11	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p<0.05, **p<0.01

주: [1] 누군가 내 허락 없이 손, 머리, 어깨, 허벅지, 엉덩이 등 내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
[2]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나를 자신의 옆이나 무릎위에 앉히거나,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3] 누군가 나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기분 나쁠 정도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
[4] 누군가 나에게 어깨 주무르기, 팔베개, 마사지 등을 강요한 적이 있다,
[5] 누군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자신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
[6]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에게 뽀뽀나 키스,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
[7] 누군가 내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8] 누군가 지나가면서 혹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내 몸의 중요한 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
[9] 누군가 나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10]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의 입이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한 적이 있다,
[11]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의 성기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던 적이 있다

라) 기타 성희롱

앞서 살펴본 언어적, 시각적 및 육체적 성희롱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성희롱과 관련해서, 본 실태조사에서는 2가지 행위로 물어보았다. 즉, [1]'누군가 나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한 적이 있다', [2]'누군가 나에게 경기출전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가 기타 성희롱에 속한다.

피해 경험률은 [1]이 2.1%, [2]가 1.0%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2]에 대해서 정신적 장애인 경우 피해 경험률이 2.4%로 신체적 장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x^2=6.361, p<0.05).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했을 때, [1]과 [2]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결과와 동일하게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에서 피해 경험률이 각각 13.6%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나머지 3개 그룹의 피해 경험률 3% 미만보다 4배 이상 높았다([1]x^2=15.608, p<0.01 / [2]x^2=38.360, p<0.01).

〈표 Ⅳ-50〉 기타 성희롱 경험

(단위: %, 명)

구분		누군가 나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경기출전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사례수
성별	남성	2.1	1.0	1,180
	여성	2.1	0.8	374
	x^2 (p)	0.001	0.137	
대상	중·고등학생	3.8	1.0	104
	성인	2.0	1.0	1,450
	x^2 (p)	1.591	0.000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1.8	0.7	1,303
	정신적 장애	3.6	2.4	251
	x^2 (p)	3.079	6.361 (*)	
장애 등급	경증(4~6급)	3.6	2.0	251
	중증(1~3급)	1.8	0.8	1,303
	x^2 (p)	3.079	3.301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2.6	0.9	229
	신체적 장애×중증	1.7	0.7	1,074
	정신적 장애×경증	13.6	13.6	22
	정신적 장애×중증	2.6	1.3	229
	x^2 (p)	15.608 (**)	38.360 (**)	
종목	기록	2.1	0.7	721
	단체	3.5	1.6	254
	개인단체	1.3	1.3	396
	개인경기	2.2	0.5	183
	x^2 (p)	3.885	2.246	
전체	비율	2.1	1.0	1,554
	사례수	33	15	

*p<0.05, **p<0.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마) 디지털 성폭력

신종 성범죄로 본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2가지 행위 즉, [1]'누군가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적이 있다'와 [2]'누군가 내 동의 없이 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적이 있다'로 구성하여, 피해 경험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1], [2]에 대한 피해 경험률이 각각 0.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피해 경험률은 성별과 대상자별 차이는 없었다. 다만 장애유형별 및 장애등급별 모두 [1]과 [2]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1], [2] 모두 장애유형은 정신적 장애, 장애등급은 경증에서 각각 피해 경험률이 2.0%로 신체적 장애 및 중증의 각각 피해 경험률 0.5%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x^2=5.183, p<0.05).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함께 고려했을 때 또한 [1]과 [2] 모두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가장 유의미하게 높았다(x^2=48.893, p<0.01).

〈표 Ⅳ-51〉 불법촬영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누군가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내 동의 없이 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적이 있다	사례수
성별	남성	0.8	0.9	1,180
	여성	0.5	0.3	374
	x^2 (p)	0.362	1.638	
대상	중·고등학생	1.9	1.9	104
	성인	0.7	0.7	1,450
	x^2 (p)	1.927	1.927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0.5	0.5	1,303
	정신적 장애	2.0	2.0	251
	x^2 (p)	5.813 (*)	5.813 (*)	
장애등급	경증(4~6급)	2.0	2.0	251
	중증(1~3급)	0.5	0.5	1,303
	x^2 (p)	5.813 (*)	5.813 (*)	

구분		누군가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내 동의 없이 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적이 있다	사례수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0.9	0.9	229
	신체적 장애×중증	0.5	0.5	1,074
	정신적 장애×경증	13.6	13.6	22
	정신적 장애×중증	0.9	0.9	229
	x^2 (p)	48.893 (**)	48.893 (**)	
종목	기록	0.6	0.6	721
	단체	1.6	1.6	254
	개인단체	0.3	0.8	396
	개인경기	1.6	0.5	183
	x^2 (p)	5.772	2.703	
전체	비율	0.8	0.8	1,554
	사례수	12	12	

*p<0.05, **p<0.01

바) 전체

앞서 살펴본 5가지 성희롱·성폭력 유형별 세부 항목에서의 경험을 합산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유형별 피해 경험률을 보면, 언어적 성희롱은 6.1%, 시각적 성희롱은 6.0%, 육체적 성희롱은 5.7%, 기타 성희롱은 2.6%, 디지털 성폭력은 0.8%이었다.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유형 이상에서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참여자 중에 9.2%(143명)를 차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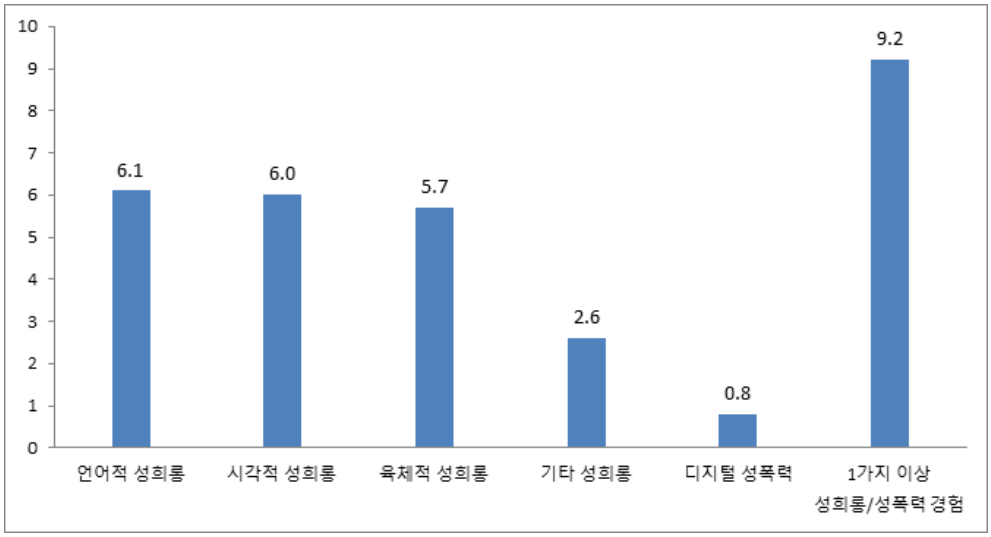

[그림 Ⅳ-10] 성희롱·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

성별로 보면,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여성(9.4%, 9.6%, 8.8%)이 남성(5.1%, 4.9%, 4.7%)에 비해 피해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물론 성별 간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남성에서의 피해 경험률이 0.9%로 여성 0.3%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22개 성희롱 및 성폭력 유형 중에 1가지 이상 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보면, 남성은 전체 조사 참여자 1,180명 중 7.8%가 해당되나 여성은 이보다 높은 374명 중 13.6%가 이에 해당되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대상자별로 보면, 중·고등학생과 성인 간의 차이는 디지털 성폭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테면,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1.9%였고, 성인은 이보다 낮은 0.7%로 이들 간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이외 육체적 성희롱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대한 피해 경험은 중·고등학생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기타 성희롱과 디지털 성폭력에서 정신적 장애의 피해 경험률이 신체적 장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기타 성희롱의 유의수준은 0.1 기준). 장애등급별로는 디지털 성폭력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증에서의 피해 경험률이 2.0%로 중증 0.5%보다 높았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하면, 언어적 성희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에서의

피해 경험률이 월등히 높았다. 이를테면, 강제추행과 강간/강간미수가 포함된 육체적 성희롱의 경우,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에서의 피해 경험률은 27.3%이었는데, 이는 그 다음으로 높은 신체적 장애이면서 중증의 피해 경험률 6.0%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에 해당되는 조사 참여자가 총 22명으로 그 수가 다른 유형의 조사 참여자보다 크게 적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어, 해석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종목별로 보면 대체로 개인경기 종목에서의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종목 간 차이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었다.

〈표 Ⅳ-52〉 성희롱·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률						합계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강제추행/강간)	기타 성희롱	디지털 성폭력	1가지 이상 성희롱·성폭력 경험	
성별	남성	5.1	4.9	4.7	2.6	0.9	7.8	1,180
	여성	9.4	9.6	8.8	2.7	0.3	13.6	374
	x^2 (p)	9.037 (**)	11.088 (**)	8.746 (**)	0.002	1.638	11.591 (**)	
대상	중·고등학생	6.7	6.7	4.8	3.8	1.9	9.6	104
	성인	6.1	6.0	5.8	2.6	0.7	9.2	1,450
	x^2 (p)	0.074	0.091	0.175	0.633	1.927	0.023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6.3	5.9	5.6	2.3	0.5	9.3	1,303
	정신적 장애	5.2	6.8	6.4	4.4	2.0	8.8	251
	x^2 (p)	0.455	0.276	0.232	3.545 (+)	5.813 (*)	0.068	
장애 등급	경증(4~6급)	5.2	6.8	6.0	4.0	2.0	8.8	251
	중증(1~3급)	6.3	5.9	5.7	2.4	0.5	9.3	1,303
	x^2 (p)	0.455	0.276	0.034	2.110	5.813 (*)	0.06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률						합계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강제추행/강간)	기타 성희롱	디지털 성폭력	1가지 이상 성희롱·성폭력 경험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4.8	4.8	3.9	2.6	0.9	7.0	229
	신체적 장애 × 중증	6.6	6.1	6.0	2.2	0.5	9.8	1,074
	정신적 장애 × 경증	9.1	27.3	27.3	18.2	13.6	27.3	22
	정신적 장애 × 중증	4.8	4.8	4.4	3.1	0.9	7.0	229
	x^2 (p)	2.172	18.705 (**)	21.177 (**)	21.530 (**)	48.893 (**)	11.712 (**)	
종목	기록	6.2	6.5	5.3	2.5	0.6	8.9	721
	단체	3.9	4.3	5.1	3.9	1.6	7.9	254
	개인단체	5.8	5.1	5.8	2.3	0.8	8.6	396
	개인경기	9.3	8.7	8.2	2.2	0.5	13.7	183
	x^2 (p)	5.398	4.632	2.525	2.076	2.703	5.163	
전체		6.1	6.0	5.7	2.6	0.8	9.2	1,554

+p<0.1, *p<0.05, **p<0.01

2) 성희롱·성폭력 폭력 행위자 및 관련 특성

가) 성희롱·성폭력 폭력 행위자 및 성별

앞서 운동을 하면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143명을 대상으로 피해를 경험했을 때, 본인에게 그런 행위를 한 대상과 그 대상의 성별에 대해 물어보았다. 행위자가 복수인 경우도 있어, 전체 응답률은 100%를 넘는다.

그 결과 '동료/후배 선수'가 40.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선배 선수' 34.3%, '감독/코치' 25.2%,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15.4%,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 4.9%, '활동지원사'와 '경기보조자' 각각 4.2%, '시설관계자' 3.5%, '기타' 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행위자의 순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별 간 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감독/코치',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

‘활동지원사’, ‘경기보조자’, ‘시설관계자’가 좀 더 행위자로서 비율이 높았다면, 여성은 남성보다 ‘선배 선수’, ‘동료/후배 선수’,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가 행위자인 비율이 좀 더 높았다.

대상자별로 보면, 특히 중·고등학생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감독/코치’, ‘선배 선수’, ‘동료/후배 선수’라는 응답이 각각 50.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성인의 동일 행위자에 대한 응답이 23.3%, 33.1%, 39.8%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종목별로 보면, 행위자가 ‘감독/코치’인 경우는 개인경기종목에서 40.0%로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 체육선수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선배 및 동료/후배 선수, 감독/코치 등 코칭스태프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성별부터 종목에 이르기까지 세부 특성(변수)에 대해서는 응답자 수가 적어, 해석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Ⅳ-53〉 성폭력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감독/코치	코칭스태프(의료/행정스태프 등)	선배 선수	동료/후배 선수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경기보조자(운동조력자)	시설관계자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27.2	5.4	32.6	38.0	14.1	5.4	5.4	5.4	2.2	92
	여성	21.6	3.9	37.3	45.1	17.6	2.0	2.0	0.0	3.9	51
대상	중·고등학생	50.0	10.0	50.0	50.0	0.0	0.0	0.0	0.0	0.0	10
	성인	23.3	4.5	33.1	39.8	16.5	4.5	4.5	3.8	3.0	133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26.4	5.0	34.7	39.7	13.2	4.1	4.1	3.3	3.3	121
	정신적 장애	18.2	4.5	31.8	45.5	27.3	4.5	4.5	4.5	0.0	22
장애등급	경증(4~6급)	18.2	0.0	31.8	36.4	9.1	9.1	4.5	9.1	4.5	22
	중증(1~3급)	26.4	5.8	34.7	41.3	16.5	3.3	4.1	2.5	2.5	12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구분		감독/코치	코칭 스태프 (의료/행정 스태프 등)	선배 선수	동료/후배 선수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활동 지원사 (활동 보조인)	경기 보조자 (운동 조력자)	시설 관계자	기타	사례 수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6.3	0.0	25.0	37.5	6.3	12.5	0.0	12.5	6.3	16
	신체적 장애 ×중증	29.5	5.7	36.2	40.0	14.3	2.9	4.8	1.9	2.9	105
	정신적 장애 ×경증	50.0	0.0	50.0	33.3	16.7	0.0	16.7	0.0	0.0	6
	정신적 장애 ×중증	6.3	6.3	25.0	50.0	31.3	6.3	0.0	6.3	0.0	16
종목	기록	18.8	7.8	35.9	43.8	14.1	3.1	1.6	4.7	3.1	64
	단체	15.0	5.0	30.0	40.0	30.0	5.0	0.0	5.0	0.0	20
	개인단체	32.4	2.9	38.2	44.1	8.8	8.8	11.8	2.9	2.9	34
	개인경기	40.0	0.0	28.0	28.0	16.0	0.0	4.0	0.0	4.0	25
전체	비율	25.2	4.9	34.3	40.6	15.4	4.2	4.2	3.5	2.8	143
	사례수	36	7	49	58	22	6	6	5	4	

이렇게 성희롱·성폭력을 행한 대상자의 성별(중복응답)을 보면, 90.2%가 '남성'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9.6%는 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행위자의 성별이 '남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평균보다 소폭 높은 91.3%였고, 행위자가 '여성'이라는 응답은 17.4%이었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본인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행한 대상자의 성별은 주로 '남성'으로, 88.2%가 이에 응답하였으며, 그렇지만 '여성'이라는 응답도 23.5%가 있었다. 본 실태조사의 대상자별(중·고등학생 및 성인) 행위자의 성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는 특히 신체적 장애인 경우 행위자 성별에서 '여성'이라는 응답이 21.5%, 장애등급이 중증에서 행위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20.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Ⅳ-54〉 성폭력 행위자 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사례수
성별	남성	91.3	17.4	92
	여성	88.2	23.5	51
대상	중·고등학생	90.0	20.0	10
	성인	90.2	19.5	133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90.1	21.5	121
	정신적 장애	90.9	9.1	22
장애등급	경증(4~6급)	90.9	13.6	22
	중증(1~3급)	90.1	20.7	121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93.8	12.5	16
	신체적 장애×중증	89.5	22.9	105
	정신적 장애×경증	83.3	16.7	6
	정신적 장애×중증	93.8	6.3	16
종목	기록	92.2	15.6	64
	단체	85.0	20.0	20
	개인단체	91.2	20.6	34
	개인경기	88.0	28.0	25
전체	비율	90.2	19.6	143
	사례수	129	28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행위자가 어떤 유형의 성희롱·성폭력을 주로 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위자 중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활동지원사, 경기보조자, 시설관계자의 경우 해당자의 수가 적어 이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언어적 성희롱은 선배 선수에서, 시각적 성희롱은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에서, 육체적 성희롱은 감독/코치에서, 기타 성희롱 및 디지털 성폭력은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5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별 피해 경험률

(단위: %, 명)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률					전체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강제추행/강간)	기타 성희롱	디지털 성폭력	
감독/코치	69.4	50.0	**77.8**	30.6	8.3	36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	85.7	71.4	85.7	71.4	14.3	7
선배 선수	**71.4**	67.3	69.4	24.5	4.0	49
동료/후배 선수	63.8	70.7	58.6	25.9	8.6	58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68.2	**90.9**	63.6	**54.5**	**13.6**	22
활동지원사	83.3	83.3	100.0	50.0	33.3	6
경기보조자	50.0	100.0	83.3	50.0	16.7	6
시설관계자	40.0	80.0	20.0	60.0	20.0	5
기타	75.0	100.0	75.0	0.0	0.0	4
전체	66.4	65.7	62.2	28.7	8.4	143

주: 각 셀은 성희롱·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을 의미함.

나) 성희롱·성폭력 폭력 발생 장소

성희롱·성폭력 발생 장소는 '훈련장'이 41.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기장' 28.0%, '식당, 회식자리' 18.2%, '합숙소' 14.7%, '전지훈련 숙소' 11.2%, '라커룸/샤워실' 7.7%, '이동차량' 7.0%, '운동부실' 6.3%, '지도자실(지도자 숙소 포함)'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대한 응답도 13.3%(19명)가 있었다. 여기에는 단톡방/SNS, 복지관, 모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경기장', '훈련장'에서, 남성은 이외 '합숙소', '전지훈련 숙소' 등에서 피해 경험이 발생했다는 응답률이 좀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기타' 응답이 많았는데, '모텔에 끌려갔다'는 응답과 특정 종목 시설 등에 대한 응답이 있었고, 남성은 '복지관', '자택'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Ⅳ-56〉 성희롱·성폭력 폭력 발생 장소

(단위: %, 명)

구분		경기장	훈련장	합숙소	전지 훈련 장소	지도 자실 (숙소 포함)	운동 부실	라커룸/ 샤워실	회식 자리	이동 차량	기타	사례 수
성별	남성	25.0	40.2	16.3	12.0	4.3	8.7	8.7	22.8	7.6	8.7	92
	여성	33.3	43.1	11.8	9.8	2.0	2.0	5.9	9.8	5.9	21.6	51
대상	중·고등학생	60.0	70.0	20.0	20.0	0.0	0.0	10.0	10.0	10.0	0.0	10
	성인	25.6	39.1	14.3	10.5	3.8	6.8	7.5	18.8	6.8	14.3	133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25.6	43.0	13.2	9.9	4.1	5.8	6.6	19.0	7.4	14.0	121
	정신적 장애	40.9	31.8	22.7	18.2	0.0	9.1	13.6	13.6	4.5	9.1	22
장애 등급	경증 (4~6급)	18.2	22.7	13.6	13.6	0.0	9.1	13.6	13.6	13.6	9.1	22
	중증 (1~3급)	29.8	44.6	14.9	10.7	4.1	5.8	6.6	19.0	5.8	14.0	121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12.5	25.0	6.3	12.5	0.0	6.3	12.5	12.5	12.5	12.5	16
	신체적 장애 ×중증	27.6	45.7	14.3	9.5	4.8	5.7	5.7	20.0	6.7	14.3	105
	정신적 장애 ×경증	33.3	16.7	33.3	16.7	0.0	16.7	16.7	16.7	16.7	0.0	6
	정신적 장애 ×중증	43.8	37.5	18.8	18.8	0.0	6.3	12.5	12.5	0.0	12.5	16
종목	기록	31.3	34.4	10.9	14.1	4.7	4.7	7.8	15.6	7.8	15.6	64
	단체	25.0	50.0	30.0	15.0	0.0	0.0	0.0	20.0	5.0	5.0	20
	개인단체	26.5	47.1	14.7	2.9	5.9	8.8	11.8	23.5	8.8	11.8	34
	개인경기	24.0	44.0	12.0	12.0	0.0	12.0	8.0	16.0	4.0	16.0	25
전체	비율	28.0	41.3	14.7	11.2	3.5	6.3	7.7	18.2	7.0	13.3	143
	사례수	40	59	21	16	5	9	11	26	10	19	

다) 성희롱·성폭력 폭력 피해 처음 경험 시기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143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를 처음 경험했던 시기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과반이 조금 넘는 56.6%는 '대학교 혹은 성인일 때'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43.4%는 아동·청소년기에 관련 피해를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때 경험했다는 응답이 9.8%이었는데, 이때는 남성이 10.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로 여성 7.8%보다 좀 더 높았다.

대상자별로 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40.0%가 '초등학교'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30.0%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과 비교 할 때 다른 양상이다. 성인은 60.9%가 '대학교 혹은 성인일 때'라고 응답하였고, '초등학교'는 7.5%만 응답하여, 중·고등학생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18.534, p<0.01).

〈표 Ⅳ-57〉 성희롱·성폭력 폭력 피해 처음 경험 시기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성인일 때	사례수
성별	남성	10.9	16.3	19.6	53.5	92
	여성	7.8	11.8	17.6	62.7	51
	x^2 (p)	1.352				
대상	중·고등학생	40.0	30.0	30.0	0.0	10
	성인	7.5	13.5	18.0	60.9	133
	x^2 (p)	18.534 (**)				
장애유형 (대)	신체적 장애	9.1	14.9	16.5	59.5	121
	정신적 장애	13.6	13.6	31.8	40.9	22
	x^2 (p)	3.853				
장애등급	경증(4~6급)	9.1	18.2	22.7	50.0	22
	중증(1~3급)	9.9	14.0	18.2	57.9	121
	x^2 (p)	0.636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12.5	18.8	12.5	56.3	16
	신체적 장애×중증	8.6	14.3	17.1	60.0	105
	정신적 장애×경증	0.0	16.7	50.0	33.3	6
	정신적 장애×중증	18.8	12.5	25.0	43.8	16
	x^2 (p)	7.600				
종목	기록	10.9	20.3	21.9	46.9	64
	단체	20.0	0.0	20.0	60.0	20
	개인단체	5.9	17.6	11.8	64.7	34
	개인경기	4.0	8.0	20.0	68.0	25
	x^2 (p)	12.206				
전체	비율	9.8	14.7	18.9	56.6	143
	사례수	14	21	27	81	

*p<0.05, **p<0.01

라) 현재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폭력 경험 및 피해 빈도

(1)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143명에게 현재 운동부 내에서도 관련 피해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17.5%(25명)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에 대한 응답은 여성이 25.5%로 남성 13.0%보다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3.524$, $p<0.1$). 종목별로도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기록종목에서 현재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다는 응답이 26.6%로 가장 높았고, 단체종목은 5.0%로 가장 낮았다($x^2=7.109$, $p<0.1$).

〈표 Ⅳ-58〉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사례수
성별	남성	13.0	87.0	92
	여성	25.5	74.5	51
	x^2 (p)	3.524 (+)		
대상	중·고등학생	20.0	80.0	10
	성인	17.3	82.7	133
	x^2 (p)	0.047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16.5	83.5	121
	정신적 장애	22.7	77.3	22
	x^2 (p)	0.496		
장애등급	경증(4~6급)	27.3	72.7	22
	중증(1~3급)	15.7	84.3	121
	x^2 (p)	1.727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25.0	75.0	16
	신체적 장애×중증	15.2	84.8	105
	정신적 장애×경증	33.3	66.7	6
	정신적 장애×중증	18.8	81.3	16
	x^2 (p)	2.05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예	아니오	사례수
종목	기록	26.6	73.4	64
	단체	5.0	95.0	20
	개인단체	11.8	88.2	34
	개인경기	12.0	88.0	25
	x^2 (p)	7.109 (+)		
전체	비율	17.5	82.5	143
	사례수	25	118	

+p<0.1

(2)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정도

앞서 현재 운동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자 25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를 물어보았다. 48.0%(12명)가 '가끔 발생 한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종종 발생 한다'는 이보다 소폭 낮은 44.0%(11명)이, 그리고 '자주 발생 한다'는 응답은 8.0%(2명)가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대상자별 등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응답자가 25명으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현황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Ⅳ-59〉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폭력 피해 발생 정도

(단위: %, 명)

구분		가끔 발생	종종 발생	자주 발생	사례수
성별	남성	33.3	58.3	8.3	12
	여성	61.5	30.8	7.7	13
	x^2 (p)	2.115			
대상	중·고등학생	100.0	0.0	0.0	2
	성인	43.5	47.8	8.7	23
	x^2 (p)	2.355			
장애유형 (대)	신체적 장애	45.0	50.0	5.0	20
	정신적 장애	60.0	20.0	20.0	5
	x^2 (p)	2.131			
장애등급	경증(4~6급)	16.7	66.7	16.7	6
	중증(1~3급)	57.9	36.8	5.3	19
	x^2 (p)	3.278			

구분		가끔 발생	종종 발생	자주 발생	사례수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0.0	100.0	0.0	4
	신체적 장애×중증	56.3	37.5	6.3	16
	정신적 장애×경증	50.0	0.0	50.0	2
	정신적 장애×중증	66.7	33.3	0.0	3
	x^2 (p)	11.360 (+)			
종목	기록	52.9	35.3	11.8	17
	단체	0.0	100.0	0.0	1
	개인단체	50.0	50.0	0.0	4
	개인경기	33.3	66.7	0.0	3
	x^2 (p)	3.034			
전체	비율	48.0	44.0	8.0	25
	사례수	12	11	2	

+p<0.1

3)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

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

지금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143명에게 피해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싫다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응답이 26.6%로 가장 많았다. 이보다는 소폭 낮은 25.9%가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모르는 척 했다'고 응답하였다. 14.7%는 '직접 말 하지는 않았지만 싫다는 불만 표시는 했다', 14.0%는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 들였다', 9.1%는 '어떤 말이나 행동(저항)도 하지 않았다', 6.3%는 '화를 내고 즉시 자리를 떠났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면,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다'와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모르는 척 했다'는 "무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의 35.0%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무대응은 정신적 장애에서 50.0%로 신체적 장애 32.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x^2=10.961, p<0.1).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해서 보면, 특히나 정신적 장애이면서 중증인 경우 무대응의 응답률이 56.3%로 가장 높고, 신체적 장애이면서 경증에서는 무대응 응답률이 18.8%로 가장 낮았다(x^2=33.419, p<0.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60〉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

(단위: %, 명)

구분		어떤 말이나 행동(저항)도 하지 않았다	싫다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싫다는 불만 표시는 했다	화를 내고 즉시 자리를 떠났다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 들였다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모르는 척 했다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12.0	26.1	12.0	7.6	16.3	23.9	2.2	92
	여성	3.9	27.5	19.6	3.9	9.8	29.4	5.9	51
	x^2 (p)	7.035							
대상	중·고등학생	30.0	30.0	10.0	0.0	0.0	30.0	0.0	10
	성인	7.5	26.3	15.0	6.8	15.0	25.6	3.8	133
	x^2 (p)	8.006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6.6	28.9	14.9	5.0	15.7	25.6	3.3	121
	정신적 장애	22.7	13.6	13.6	13.6	4.5	27.3	4.5	22
	x^2 (p)	10.961 (+)							
장애 등급	경증(4~6급)	9.1	22.7	22.7	18.2	9.1	13.6	4.5	22
	중증(1~3급)	9.1	27.3	13.2	4.1	14.9	28.1	3.3	121
	x^2 (p)	9.160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6.3	31.3	25.0	6.3	12.5	12.5	6.3	16
	신체적 장애×중증	6.7	28.6	13.3	4.8	16.2	27.6	2.9	105
	정신적 장애×경증	16.7	0.0	16.7	50.0	0.0	16.7	0.0	6
	정신적 장애×중증	25.0	18.8	12.5	0.0	6.3	31.3	6.3	16
	x^2 (p)	33.419 (*)							
종목	기록	6.3	25.0	17.2	6.3	12.5	28.1	4.7	64
	단체	25.0	25.0	5.0	10.0	10.0	20.0	5.0	20
	개인단체	5.9	23.5	20.6	2.9	20.6	23.5	2.9	34
	개인경기	8.0	36.0	8.0	8.0	12.0	28.0	0.0	25
	x^2 (p)	15.124							
전체	비율	9.1	26.6	14.7	6.3	14.0	25.9	3.5	143
	사례수	13	38	21	9	20	37	5	

+p<0.1, *p<0.05, **p<0.01

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 하지 못한 이유

앞서 살펴본 "무대응"에 응답한 5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가장 응답이 많았던 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로, 40.0%가 이에 해당된다. 이보다 응답률이 낮지만 22.0%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14.0%는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12.0%는 각각 '그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61〉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그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사례수
성별	남성	18.2	9.1	39.4	9.1	24.2	33
	여성	0.0	23.5	41.2	17.6	17.6	17
	x^2 (p)	5.677					
대상	중·고등학생	33.3	16.7	16.7	0.0	33.3	6
	성인	9.1	13.6	43.2	13.6	20.5	44
	x^2 (p)	4.765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12.8	10.3	46.2	10.3	20.5	39
	정신적 장애	9.1	27.3	18.2	18.2	27.3	11
	x^2 (p)	4.180					
장애 등급	경증(4~6급)	20.0	0.0	60.0	0.0	20.0	5
	중증(1~3급)	11.1	15.6	37.8	13.3	22.2	45
	x^2 (p)	2.306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0.0	0.0	100.0	0.0	0.0	3
	신체적 장애×중증	13.9	11.1	41.7	11.1	22.2	36
	정신적 장애×경증	50.0	0.0	0.0	0.0	50.0	2
	정신적 장애×중증	0.0	33.3	22.2	22.2	22.2	9
	x^2 (p)	14.28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그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사례수
종목	기록	18.2	0.0	45.5	18.2	18.2	22
	단체	11.1	11.1	33.3	11.1	33.3	9
	개인단체	10.0	40.0	20.0	0.0	30.0	10
	개인경기	0.0	22.2	55.6	11.1	11.1	9
	x^2 (p)	15.384					
전체	비율	12.0	14.0	40.0	12.0	22.0	50
	사례수	6	7	20	6	11	

*p<0.05, **p<0.01

4)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가족이나 동료, 외부기관 도움 요청 및 2차 피해

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도움 요청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자에게 피해 이후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과반이 조금 넘는 50.3%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18.9%는 '운동선수 동료에게 알렸다', 15.4%는 '가족 및 지인에게 알렸다', 9.1%는 각각 '운동부 내부 기관(성폭력전담기구, 상담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등)에 신고했다'와 '지도자에게 알렸다', 4.2% '외부 기관(경찰서,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 신고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응답이 많았던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로는 신체적 장애이면서 중증인 경우(60.0%), 그리고 종목은 개인단체종목(64.7%)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표 Ⅳ-62〉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도움 요청(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운동부 내부 기관에 신고했다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	지도자에게 알렸다	동료선수에게 알렸다	가족 및 지인에게 알렸다	기타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사례수
성별	남성	10.9	3.3	10.9	17.4	14.1	3.3	50.0	92
	여성	5.9	5.9	5.9	21.6	17.6	2.0	51.0	51
대상	중·고등학생	40.0	10.0	10.0	0.0	30.0	0.0	10.0	10
	성인	6.8	3.8	9.0	20.3	14.3	3.0	53.4	133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7.4	2.5	8.3	17.4	12.4	3.3	57.9	121
	정신적 장애	18.2	13.6	13.6	27.3	31.8	0.0	9.1	22
장애 등급	경증(4~6급)	13.6	13.6	9.1	27.3	9.1	4.5	31.8	22
	중증(1~3급)	8.3	2.5	9.1	17.4	16.5	2.5	53.7	121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6.3	12.5	6.3	18.8	6.3	6.3	43.8	16
	신체적 장애 ×중증	7.6	1.0	8.6	17.1	13.3	2.9	60.0	105
	정신적 장애 ×경증	33.3	16.7	16.7	50.0	16.7	0.0	0.0	6
	정신적 장애 ×중증	12.5	12.5	12.5	18.8	37.5	0.0	12.5	16
종목	기록	10.9	7.8	7.8	18.8	20.3	3.1	46.9	64
	단체	10.0	0.0	20.0	25.0	10.0	10.0	30.0	20
	개인단체	5.9	2.9	5.9	8.8	14.7	0.0	64.7	34
	개인경기	8.0	0.0	8.0	28.0	8.0	0.0	56.0	25
전체	비율	9.1	4.2	9.1	18.9	15.4	2.8	50.3	143
	사례수	13	6	13	27	22	4	72	

나) 내·외부 기관 신고 인지 경로

위의 결과에서 내부 혹은 외부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18명으로, 이들 기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운동부 내부 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중에서 '운동부 동료(선후배)가 알려 주었다'와 '인터넷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률은 각각 16.7%였다. '지도자가 알려주었다'는 응답도 5.6%가 있었다.

〈표 Ⅳ-63〉 내·외부 기관 신고 인지 경로

(단위: %, 명)

구분		운동부 내부 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다	지도자가 알려 주었다	운동부 동료(선후배)가 알려 주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58.3	8.3	8.3	25.0	0.0	12
	여성	16.7	0.0	33.3	0.0	50.0	6
	x^2 (p)	11.063 (*)					
대상	중·고등학생	60.0	0.0	0.0	20.0	20.0	5
	성인	38.5	7.7	23.1	15.4	15.4	13
	x^2 (p)	2.008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33.3	8.3	25.0	16.7	16.7	12
	정신적 장애	66.7	0.0	0.0	16.7	16.7	6
	x^2 (p)	3.000					
장애 등급	경증(4~6급)	40.0	20.0	20.0	0.0	20.0	5
	중증(1~3급)	46.2	0.0	15.4	23.1	15.4	13
	x^2 (p)	3.877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0.0	33.3	33.3	0.0	33.3	3
	신체적 장애 ×중증	44.4	0.0	22.2	22.2	11.1	9
	정신적 장애 ×경증	100.0	0.0	0.0	0.0	0.0	2
	정신적 장애 ×중증	50.0	0.0	0.0	25.0	25.0	4
	x^2 (p)	11.750					
종목	기록	45.5	0.0	9.1	18.2	27.3	11
	단체	50.0	0.0	0.0	50.0	0.0	2
	개인단체	66.7	0.0	33.3	0.0	0.0	3
	개인경기	0.0	50.0	50.0	0.0	0.0	2
	x^2 (p)	15.875					
전체	비율	44.4	5.6	16.7	16.7	16.7	18
	사례수	8	1	3	3	3	

*p<0.05, **p<0.01

다) 2차 피해 경험

앞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후 내·외부 기관에 신고하였거나, 지도자 및 동료 선수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총 52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52명 중 32.7%만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67.3%는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보면, '가해자가 운동부 지도자 및 동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피해 상황을 다르게 알렸다'는 응답이 19.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5%가 '내·외부 기관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와 '가해자가 직접 혹은 동료들을 통해 나를 따돌리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에 각각 응답하였다. '내·외부 기관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거나, 나의 사건 접수를 운동부 지도자와 동료에게 내 허락도 없이 알렸다'와 '동료들이 나의 사생활을 캐거나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가 각각 11.5%씩 이었다.

〈표 Ⅳ-64〉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내·외부 기관 및 지도자/동료선수에 도움요청 이후 2차 피해 경험(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내·외부 기관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거나, 나의 사건 접수를 운동부 지도자와 동료에게 내 허락도 없이 알렸다	내·외부 기관에서 나에 대해 조사하면서 기분 나쁜 질문을 하거나, 나를 오히려 비난하고 의심하였다	내·외부 기관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가해자가 운동부 지도자 및 동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피해 상황을 다르게 알렸다	가해자가 직접 혹은 동료들을 통해 나를 따돌리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동료들이 나의 사생활을 캐거나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료들이 나에게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기타	2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	사례수
성별	남성	17.1	5.7	11.4	25.7	11.4	14.3	8.6	2.9	22.9	35
	여성	0.0	0.0	17.6	5.9	17.6	5.9	5.9	11.8	52.9	17

구분		내·외부 기관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거나, 나의 사건 접수를 운동부 지도자와 동료에게 내 허락도 없이 알렸다	내·외부 기관에서 나에 대해 조사하면서 기분 나쁜 질문을 하거나, 나를 오히려 비난하고 의심하였다	내·외부 기관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가해자가 운동부 지도자 및 동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피해 상황을 다르게 알렸다	가해자가 직접 혹은 동료들을 통해 나를 따돌리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동료들이 나의 사생활을 캐거나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료들이 나에게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기타	2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	사례수
대상	중·고등학생	16.7	0.0	16.7	16.7	0.0	16.7	16.7	0.0	33.3	6
	성인	10.9	4.3	13.0	19.6	15.2	10.9	6.5	6.5	32.6	46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5.3	5.3	7.9	21.1	10.5	15.8	5.3	7.9	39.5	38
	정신적 장애	28.6	0.0	28.6	14.3	21.4	0.0	14.3	0.0	14.3	14
장애 등급	경증(4~6급)	33.3	8.3	16.7	33.3	25.0	8.3	0.0	8.3	8.3	12
	중증(1~3급)	5.0	2.5	12.5	15.0	10.0	12.5	10.0	5.0	40.0	40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0.0	14.3	28.6	28.6	28.6	14.3	0.0	14.3	14.3	7
	신체적 장애 ×중증	2	1	1	6	2	5	2	2	14	31
	정신적 장애 ×경증	80.0	0.0	0.0	40.0	20.0	0.0	0.0	0.0	0.0	5
	정신적 장애 ×중증	0.0	0.0	44.4	0.0	22.2	0.0	22.2	0.0	22.2	9
종목	기록	9.1	4.5	13.6	31.8	18.2	18.2	0.0	9.1	31.8	22
	단체	27.3	0.0	27.3	0.0	0.0	9.1	9.1	0.0	27.3	11
	개인단체	12.5	12.5	0.0	12.5	12.5	0.0	25.0	0.0	25.0	8
	개인경기	0.0	0.0	9.1	18.2	18.2	9.1	9.1	9.1	45.5	11
전체	비율	11.5	3.8	13.5	19.2	13.5	11.5	7.7	5.8	32.7	52
	사례수	6	2	7	10	7	6	4	3	17	

라) 내·외부 기관 신고하지 않은 이유

앞서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지도자나 동료 선수, 혹은 가족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내부 혹은 외부 기관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5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1, 2순위로 물어보았다.

결과를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보다는 낮은 33.3%는 '비밀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24.1%는 '운동부 내에 소문이 날까봐', 22.2%는 '가해자와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20.4%는 '장애로 인해 내·외부 기관에 혼자 갈 수 없는데, 동행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18.5%는 '내·외부 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16.7%는 '내부에 성희롱·성폭력 담당 부서가 없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65〉 내·외부 기관 신고하지 않은 이유(1+2순위)

(단위: %, 명)

구분		장애로 인해 내·외부 기관에 혼자 갈 수 없는데, 동행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내·외부 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내부에 성희롱 성폭력 담당 부서가 없어서	비밀 보장이 안될 것 같아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불이익 받을 것 같아서)	가해자와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운동부 내에 소문이 날까봐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26.5	23.5	14.7	41.2	47.1	17.6	23.5	5.9	34
	여성	10.0	10.0	20.0	20.0	70.0	30.0	25.0	15.0	20
대상	중·고등학생	0.0	50.0	25.0	0.0	25.0	25.0	50.0	25.0	4
	성인	22.0	16.0	16.0	36.0	58.0	22.0	22.0	8.0	50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15.8	21.1	13.2	36.8	55.3	23.7	23.7	10.5	38
	정신적 장애	31.3	12.5	25.0	25.0	56.3	18.8	25.0	6.3	16
장애 등급	경증(4~6급)	20.0	40.0	10.0	20.0	70.0	30.0	10.0	0.0	10
	중증(1~3급)	20.5	13.6	18.2	36.4	52.3	20.5	27.3	11.4	4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장애로 인해 내·외부 기관에 혼자 갈 수 없는데, 동행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내·외부 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내부에 성희롱 성폭력 담당 부서가 없어서	비밀 보장이 안될 것 같아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불이익 받을 것 같아서)	가해자와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운동부 내에 소문이 날까봐	기타	사례수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40.0	60.0	20.0	20.0	40.0	20.0	0.0	0.0	5
	신체적 장애 ×중증	12.1	15.2	12.1	39.4	57.6	24.2	27.3	12.1	33
	정신적 장애 ×경증	0.0	20.0	0.0	20.0	100.0	40.0	20.0	0.0	5
	정신적 장애 ×중증	45.5	9.1	36.4	27.3	36.4	9.1	27.3	9.1	11
종목	기록	23.1	26.9	15.4	23.1	57.7	19.2	26.9	7.7	26
	단체	30.0	0.0	10.0	50.0	50.0	20.0	40.0	0.0	10
	개인단체	22.2	22.2	33.3	22.2	33.3	33.3	11.1	22.2	9
	개인경기	0.0	11.1	11.1	55.6	77.8	22.2	11.1	11.1	9
전체	비율	20.4	18.5	16.7	33.3	55.6	22.2	24.1	9.3	54
	사례수	11	10	9	18	30	12	13	5	

5)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경험 및 특성

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여기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본인이 아닌 동료 선수들에게 발생된 것을 직접 목격했거나 들어서 알게 된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았다. 전체 조사 참여자 1,554명 중 6.6%(103명)가 목격이나 들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인 경우, 그리고 개인경기 종목인 경우 응답률이 각각 18.2%와 9.8%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특성(변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Ⅳ-66〉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혹은 들었던 경험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사례수
성별	남성	6.4	93.6	1,180
	여성	7.5	92.5	374
	x^2 (p)	0.587		
대상	중·고등학생	6.7	93.3	104
	성인	6.6	93.4	1,450
	x^2 (p)	0.002		
장애유형 (대)	신체적 장애	6.8	93.2	1,303
	정신적 장애	6.0	94.0	251
	x^2 (p)	0.206		
장애등급	경증(4~6급)	5.2	94.8	251
	중증(1~3급)	6.9	93.1	1,303
	x^2 (p)	1.015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3.9	96.1	229
	신체적 장애×중증	7.4	92.6	1,074
	정신적 장애×경증	18.2	81.8	22
	정신적 장애×중증	4.8	95.2	229
	x^2 (p)	9.589 (*)		
종목	기록	7.6	92.4	721
	단체	5.1	94.9	254
	개인단체	4.3	95.7	396
	개인경기	9.8	90.2	183
	x^2 (p)	8.634 (*)		
전체	비율	6.6	93.4	1,554
	사례수	103	1,451	

*p〈0.05, **p〈0.01

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성별

목격했거나 들었던 사건의 행위자에 대해 보면, '감독/코치', '선배 선수', '동료/후배 선수'가 각각 35.9%, 32.0%, 36.9%로 응답률이 비슷하게 높았다.

특히 남성에 있어서는 '감독/코치'의 응답 비율이 40.0%로 여성의 동일 응답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25.0%보다 높았다. 특히 '감독/코치'에 대한 응답률 차이는 대상자별로 볼 때 가장 컸는데, 성인은 33.3%이지만, 중·고등학생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71.4%이었다.

〈표 Ⅳ-67〉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감독/코치	코칭스태프(의료/행정스태프)	선배선수	동료/후배선수	다른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경기보조자(운동조력자)	시설관계자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40.0	8.0	36.0	36.0	9.3	5.3	4.0	1.3	2.7	75
	여성	25.0	3.6	21.4	39.3	21.4	3.6	0.0	0.0	7.1	28
대상	중·고등학생	71.4	28.6	28.6	28.6	0.0	0.0	0.0	0.0	0.0	7
	성인	33.3	5.2	32.3	37.5	13.5	5.2	3.1	1.0	4.2	96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36.4	5.7	36.4	35.2	10.2	4.5	1.1	1.1	3.4	88
	정신적 장애	33.3	13.3	6.7	46.7	26.7	6.7	13.3	0.0	6.7	15
장애등급	경증(4~6급)	38.5	15.4	15.4	23.1	15.4	15.4	7.7	0.0	15.4	13
	중증(1~3급)	35.6	5.6	34.4	38.9	12.2	3.3	2.2	1.1	2.2	90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22.2	0.0	22.2	22.2	11.1	11.1	0.0	0.0	22.2	9
	신체적 장애×중증	38.0	6.3	38.0	36.7	10.1	3.8	1.3	1.3	1.3	79
	정신적 장애×경증	75.0	50.0	0.0	25.0	25.0	25.0	25.0	0.0	0.0	4
	정신적 장애×중증	18.2	0.0	9.1	54.5	27.3	0.0	9.1	0.0	9.1	11
종목	기록	27.3	9.1	30.9	43.6	14.5	7.3	1.8	0.0	5.5	55
	단체	30.8	7.7	30.8	38.5	15.4	0.0	15.4	0.0	0.0	13
	개인단체	41.2	5.9	47.1	29.4	5.9	0.0	0.0	5.9	0.0	17
	개인경기	61.1	0.0	22.2	22.2	11.1	5.6	0.0	0.0	5.6	18
전체	비율	35.9	6.8	32.0	36.9	12.6	4.9	2.9	1.0	3.9	103
	사례수	37	7	33	38	13	5	3	1	4	

목격했거나 들었던 사건에 대한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인 경우가 70.9%, '여성'인 경우는 17.5%,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18.4%로 나타났다.

〈표 Ⅳ-68〉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성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잘 모름	사례수
성별	남성	69.3	18.7	18.7	75
	여성	75.0	14.3	17.9	28
대상	중·고등학생	57.1	0.0	42.9	7
	성인	71.9	18.8	16.7	96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68.2	20.5	19.3	88
	정신적 장애	86.7	0.0	13.3	15
장애등급	경증(4~6급)	61.5	7.7	30.8	13
	중증(1~3급)	72.2	18.9	16.7	90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55.6	11.1	33.3	9
	신체적 장애×중증	69.6	21.5	17.7	79
	정신적 장애×경증	75.0	0.0	25.0	4
	정신적 장애×중증	90.9	0.0	9.1	11
종목	기록	69.1	10.9	21.8	55
	단체	69.2	23.1	15.4	13
	개인단체	82.4	23.5	5.9	17
	개인경기	66.7	27.8	22.2	18
전체	비율	70.9	17.5	18.4	103
	사례수	73	18	19	

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장소

목격했거나 들었던 사건의 발생 장소를 보면, 이 또한 본인이 겪었던 발생 장소와 동일하게 '훈련장(46.6%)', '경기장(31.1%)', '합숙소(20.4%)', '회식자리(19.4%)', '전지훈련 숙소(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69〉 성희롱·성폭력 발생장소(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경기장	훈련장	합숙소	전지 훈련 숙소	지도 자실 (숙소 포함)	운동 부실	라커룸 (샤워실)	회식 자리	이동 차량	기타	사례 수
성별	남성	29.3	50.7	20.0	14.7	6.7	6.7	13.3	20.0	2.7	9.3	75
	여성	35.7	35.7	21.4	7.1	3.6	7.1	0.0	17.9	0.0	10.7	28
대상	중·고등학생	57.1	85.7	28.6	14.3	14.3	28.6	28.6	14.3	0.0	0.0	7
	성인	29.2	43.8	19.8	12.5	5.2	5.2	8.3	19.8	2.1	10.4	96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29.5	46.6	19.3	12.5	5.7	6.8	6.8	20.5	2.3	8.0	88
	정신적 장애	40.0	46.7	26.7	13.3	6.7	6.7	26.7	13.3	0.0	20.0	15
장애 등급	경증 (4~6급)	15.4	38.5	23.1	7.7	7.7	7.7	15.4	46.2	0.0	7.7	13
	중증 (1~3급)	33.3	47.8	20.0	13.3	5.6	6.7	8.9	15.6	2.2	10.0	90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11.1	33.3	11.1	0.0	11.1	11.1	0.0	55.6	0.0	11.1	9
	신체적 장애 ×중증	31.6	48.1	20.3	13.9	5.1	6.3	7.6	16.5	2.5	7.6	79
	정신적 장애 ×경증	25.0	50.0	50.0	25.0	0.0	0.0	50.0	25.0	0.0	0.0	4
	정신적 장애 ×중증	45.5	45.5	18.2	9.1	9.1	9.1	18.2	9.1	0.0	27.3	11
종목	기록	36.4	38.2	16.4	9.1	5.5	3.6	9.1	18.2	1.8	10.9	55
	단체	30.8	46.2	23.1	23.1	0.0	7.7	0.0	30.8	0.0	7.7	13
	개인단체	23.5	70.6	17.6	11.8	17.6	17.6	17.6	23.5	0.0	5.9	17
	개인경기	22.2	50.0	33.3	16.7	0.0	5.6	11.1	11.1	5.6	11.1	18
전체	비율	31.1	46.6	20.4	12.6	5.8	6.8	9.7	19.4	1.9	9.7	103
	사례수	32	48	21	13	6	7	10	20	2	10	

라)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정도

동료 선수들에게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물어보았다. 82.5%는 '가끔 발생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3.6%는 '종종 발생 한다', 3.9%는 '자주

발생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70〉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정도

(단위: %, 명)

구분		가끔 발생	종종 발생	자주 발생	사례수
성별	남성	82.7	13.3	4.0	75
	여성	82.1	14.3	3.6	28
	x^2 (p)	0.024			
대상	중·고등학생	100.0	0.0	0.0	7
	성인	81.3	14.6	4.2	96
	x^2 (p)	1.590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83.0	13.6	3.4	88
	정신적 장애	80.0	13.3	6.7	15
	x^2 (p)	0.365			
장애등급	경증(4~6급)	61.5	30.8	7.7	13
	중증(1~3급)	85.6	11.1	3.3	90
	x^2 (p)	4.579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55.6	44.4	0.0	9
	신체적 장애×중증	86.1	10.1	3.8	79
	정신적 장애×경증	75.0	0.0	25.0	4
	정신적 장애×중증	81.8	18.2	0.0	11
	x^2 (p)	14.028 (*)			
종목	기록	80.0	16.4	3.6	55
	단체	84.6	15.4	0.0	13
	개인단체	76.5	17.6	5.9	17
	개인경기	94.4	0.0	5.6	18
	x^2 (p)	4.247			
전체	비율	82.5	13.6	3.9	103
	사례수	85	14	4	

*p<0.05, **p<0.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과 성폭력 인지

1) 운동 시작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가)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장애인 체육선수의 평소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조사에 참여한 1,554명에게 운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과반에 조금 밑도는 48.8%인 758명만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51.2%(796명)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48.6%, 여성 49.2%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별로 보면, 중·고등학생의 참여율이 57.7%로 성인 48.1%보다 거의 10%p 높았다[89].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적 장애(51.0%)가 신체적 장애(48.3%)보다, 그리고 장애등급별로는 경증(51.4%)이 중증(48.3%)보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 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함께 고려해서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정신장애이면서 경증에서 참여율이 68.2%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유형은 평균 수준으로 보였다. 경기종목별로 보면, 개인경기종목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58.5%로 가장 높았고, 개인단체종목 51.5%, 단체종목 47.6%, 기록종목 45.2%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이다(χ^2= 11.863, p<0.01)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과반 이상의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시작한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해 본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실제 다른 교육 과정에서 일부 성폭력 예방 내용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응답자가 기억하지 못해 '아니오'라고 응답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50% 미만인 것은 매운 낮은 수준이다.

89)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을 생애(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로 구분해서 보면, 청소년기는 동일하게 57.7%로 가장 높고, 청년기(19-39세)는 50.5%, 중장년기(40세 이상)는 46.9%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미하였음.

〈표 Ⅳ-71〉 운동 시작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사례수
성별	남성	48.6	51.4	1,180
	여성	49.2	50.8	374
	x^2 (p)	0.035		
대상	중·고등학생	57.7	42.3	104
	성인	48.1	51.9	1,450
	x^2 (p)	3.545 (+)		
장애유형 (대)	신체적 장애	48.3	51.7	1,303
	정신적 장애	51.0	49.0	251
	x^2 (p)	0.590		
장애등급	경증(4~6급)	51.4	48.6	251
	중증(1~3급)	48.3	51.7	1,303
	x^2 (p)	0.821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49.8	50.2	229
	신체적 장애×중증	48.0	52.0	1,074
	정신적 장애×경증	68.2	31.8	22
	정신적 장애×중증	49.3	50.7	229
	x^2 (p)	3.668		
종목	기록	45.2	54.8	721
	단체	47.6	52.4	254
	개인단체	51.5	48.5	396
	개인경기	58.5	41.5	183
	x^2 (p)	11.863 (**)		
전체	비율	48.8	51.2	1,554
	사례수	758	796	

+p〈0.1, *p〈0.05, **p〈0.01

나)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과 성폭력 피해 경험

위에서 살펴본 운동 시작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여부와 실제 성폭력 피해 경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성폭력 피해 경험률에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9.9%였는데, 이는 관련 예방교육 비참여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8.5%보다 소폭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폭력 피해 이후 교육 참여 여부 등을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결과만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성폭력 피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Ⅳ-72〉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별 성폭력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성폭력 피해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사례수	X^2 (p)
성폭력 예방교육	받음	9.9	90.1	758	0.849
	받지 않음	8.5	91.5	796	
전체	비율	9.2	90.8	100.0	
	사례수	143	1,411	1,554	

2) 성폭력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와 도움 안 된 이유

가)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앞서 살펴본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해 본적이 있다는 758명에게, 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해 4점 척도(전혀 도움 되지 않음 ~ 매우 도움 됨)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 '매우 도움이 되었다' 42.5%, '약간 도움이 되었다' 45.1%로, 대다수(87.6%)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나머지 12.4%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좀 더 살펴보면, 여성(15.8%)이 남성(11.3%)보다, 성인(12.8%)이 중·고등학생(8.4%)보다, 신체적 장애(13.0%)가 정신적 장애(9.4%)보다, 중증(13.7%)이 경증(6.3%)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 별로)'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실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된 것은 장애등급만 해당되었다(x^2=8.477, p<0.05).

〈표 Ⅳ-73〉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사례수
성별	남성	2.4	8.9	44.8	43.9	574
	여성	3.8	12.0	46.2	38.0	184
	x^2 (p)	3.491				
대상	중·고등학생	1.7	6.7	40.0	51.7	60
	성인	2.9	9.9	45.6	41.7	698
	x^2 (p)	2.554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2.5	10.5	46.0	41.0	630
	정신적 장애	3.9	5.5	40.6	50.0	128
	x^2 (p)	6.226				
장애등급	경증(4~6급)	1.6	4.7	41.9	51.9	129
	중증(1~3급)	3.0	10.7	45.8	40.5	629
	x^2 (p)	8.477 (*)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0.9	4.4	45.6	49.1	114
	신체적 장애×중증	2.9	11.8	46.1	39.1	516
	정신적 장애×경증	6.7	6.7	13.3	73.3	15
	정신적 장애×중증	3.5	5.3	44.2	46.9	113
	x^2 (p)	20.643 (*)				
종목	기록	2.1	9.5	44.8	43.6	326
	단체	4.1	9.1	43.0	43.8	121
	개인단체	2.9	9.8	49.5	37.7	204
	개인경기	2.8	10.3	40.2	46.7	107
	x^2 (p)	4.634				
전체	비율	2.8	9.6	45.1	42.5	758
	사례수	21	73	342	322	

*p〈0.05, **p〈0.01

나)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와 성폭력 피해 경험

여기서는 추가로 성폭력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에 따른 실제 성폭력 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방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42.9%로 가장 높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보다 낮은 27.4%의 피해율을 보였다. 그러나 '약간 도움이 되었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각각 7.3%와 6.5%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x^2=57.348, p<0.01).

이 결과만으로 명확히 확인은 어렵지만, 지금의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앞에서는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만, 성폭력 피해자로 국한해서 보면 지금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과연 실제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보 공유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피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실제 피해자의 응답을 통해 추론을 할 수 있다.

〈표 Ⅳ-74〉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별 성폭력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성폭력 피해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사례수	x^2 (p)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 됨	42.9	57.1	21	57.348 (**)
	별로 도움 안 됨	27.4	72.6	73	
	약간 도움 됨	7.3	92.7	342	
	매우 도움 됨	6.5	93.5	322	
전체	비율	9.9	90.1	100.0	
	사례수	75	683	785	

*p<0.05, **p<0.01

다)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되지 않은 이유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는 94명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유로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교육이 형식적이어서'였는데, 62.8%가 이에 응답하였다. 이보다는 응답이 낮지만 17.0%는 '교육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10.6%는 '교육 내용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교육자(강사)의 강의 태도(발음, 속도, 자세 등)가 좋지 않아서(4.3%)', '교육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아서(2.1%)'도 있었다.

그러나 성별, 대상별 및 장애유형과 종목에 따른 응답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Ⅳ-75〉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교육 내용이 어려워서	교육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교육자(강사)의 강의 태도가 좋지 않아서	교육 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아서	교육이 형식적이어서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13.8	18.5	3.1	0.0	61.5	3.1	65
	여성	3.4	13.8	6.9	6.9	65.5	3.4	29
	x^2 (p)	7.524						
대상	중·고등학생	40.0	20.0	0.0	0.0	40.0	0.0	5
	성인	9.0	16.9	4.5	2.2	64.0	3.4	89
	x^2 (p)	5.249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8.5	14.6	3.7	2.4	67.1	3.7	82
	정신적 장애	25.0	33.3	8.3	0.0	33.3	0.0	12
	x^2 (p)	7.985						
장애 등급	경증(4~6급)	12.5	25.0	0.0	0.0	37.5	25.0	8
	중증(1~3급)	10.5	16.3	4.7	2.3	65.1	1.2	86
	x^2 (p)	14.834 (*)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0.0	33.3	0.0	0.0	33.3	33.3	6
	신체적 장애 ×중증	9.2	13.2	3.9	2.6	69.7	1.3	76
	정신적 장애 ×경증	50.0	0.0	0.0	0.0	50.0	0.0	2
	정신적 장애 ×중증	20.0	40.0	10.0	0.0	30.0	0.0	10
	x^2 (p)	32.654 (**)						
종목	기록	10.5	13.2	5.3	5.3	65.8	0.0	38
	단체	6.3	12.5	6.3	0.0	75.0	0.0	16
	개인단체	19.2	19.2	3.8	0.0	53.8	3.8	26
	개인경기	0.0	28.6	0.0	0.0	57.1	14.3	14
	x^2 (p)	17.069						
전체	비율	10.6	17.0	4.3	2.1	62.8	3.2	94
	사례수	10	16	4	2	59	3	

*p<0.05, **p<0.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3) 성폭력 인지와 성폭력 예방교육과의 연관성

가) 성폭력 인지 수준

성폭력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5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즉, [1]'사무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는 것은 성희롱이다', [2]'교사(지도자)가 선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성희롱이다'. [3]'성희롱 피해는 여성만 해당되며, 남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4]'강제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5]'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에 관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1]에 대해서는 74.2%, [2]는 75.8%, [3]은 92.8%, [4]는 80.6%, [5]는 85.3%가 알고 있었다.

〈표 Ⅳ-76〉 성폭력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례수
사무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는 것은 성희롱이다	74.2	25.8	1,554
교사(지도자)가 선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성희롱이다	75.8	24.2	1,554
성희롱 피해는 여성만 해당되며, 남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7.2	92.8	1,554
강제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80.6	19.4	1,554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	14.7	85.3	1,554

이와 같이 [1]에서 [5]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57.3%였고, [1]~[5] 중 4가지를 알고 있는 경우는 14.6%, 3가지만 알고 있는 경우는 8.4%, 2가지는 18.7%, 1가지는 0.8%, 전혀 알지 못한 경우는 0.1%이었다.

이와 같이 5가지 항목에 대한 인지 여부를 모두 합쳐 인지 수준(평균 점수 ± 표준편차)으로 하여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체 성폭력 인지 수준은 총 5점 만점에 4.09점(±1.03)이었다. 성별과 대상자별로 보면, 인지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장애유형이 신체적 장애인 경우 평균 점수는 4.12점(±1.20)으로 정신적 정애 3.91점(±1.2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장애등급도 경증에서는 인지 수준이 총 5점 만점에 4.24점(±1.08)으로 중증 4.06점(±1.24)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해서 보면, 가장 인지수준이 높은 집단은 신체적 장애이면서 경증으로 5점 만점에 4.31점(±1.03)이었고,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은 3.50점(±1.34)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77〉 성폭력 인지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

(단위: 점, 명)

구분		성폭력 인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p)
성별	남성	4.08	1.22	1,180	-0.171
	여성	4.10	1.21	374	
대상	중·고등학생	4.14	1.12	104	0.497
	성인	4.08	1.23	1,450	
장애유형 (대)	신체적 장애	4.12	1.20	1,303	2.481 (*)
	정신적 장애	3.91	1.29	251	
장애등급	경증(4~6급)	4.24	1.08	251	2.219 (*)
	중증(1~3급)	4.06	1.24	1,303	
장애유형 × 장애등급	신체적 장애 × 경증	4.31	1.03	229	23.665 (**)
	신체적 장애 × 중증	4.08	1.23	1,074	
	정신적 장애 × 경증	3.50	1.34	22	
	정신적 장애 × 중증	3.95	1.28	229	
전체		4.09	1.03	1,554	

*p<0.05, **p<0.01

나)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인지 수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 따른 성폭력 인지 수준의 차이 정도를 살펴보았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던 그룹의 성폭력 인지 수준은 5점 만점 중 4.15점(±1.18)이었다. 그러나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의 성폭력 인지 수준은 4.03점(±1.25)으로, 이들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78〉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성폭력 인지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성폭력 인지 정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	경험함	4.15	1.18	758	2.049 (*)
	경험 안함	4.03	1.25	796	
전체		4.09	1.22	1,554	

*p〈0.05

주: 총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4) 장애인 운동부 성폭력 문제 근절

가) 운동부 성폭력 근절 가능성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체육선수 1,554명에게 운동부에서 발생되는 성폭력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 정도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41.7%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보다 소폭 작지만 '매우 그렇다'는 강한 동의도 34.9%가 있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응답도 있었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가 15.4%, '전혀 그렇지 않다'는 8.0%로, 약 1/4인 23.4%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남녀 선수의 동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상자인 중·고등학생과 성인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테면 중·고등학생의 부동의(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은 32.7%로, 성인 22.7%에 비해 높았다(χ^2=11.731, p〈0.01).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의 응답은 중·고등학생이 15.4%로 성인 7.4%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았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적 장애에서의 부동의 응답이 27.5%로 신체적 장애의 동일 응답 22.6%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χ^2=9.026, p〈0.05).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도 정신적 장애는 11.6%인데 반해, 신체적 장애는 7.3%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장애등급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하면, 부동의 응답은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에서 가장 높았는데, 과반이 넘는 54.5%가 이에 해당된다(χ^2=24.594, p〈0.01).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도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의 경우, 22.7%이었는데, 이는 신체적 장애이면서 경증의 동일 응답 4.4%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표 Ⅳ-79〉 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 가능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성별	남성	8.1	14.8	41.2	35.8	1,180
	여성	7.5	17.4	43.3	31.8	374
	x^2 (p)	2.975				
대상	중·고등학생	15.4	17.3	43.3	24.0	104
	성인	7.4	15.3	41.6	35.7	1,450
	x^2 (p)	11.731 (**)				
장애유형(대)	신체적 장애	7.3	15.3	41.2	36.1	1,303
	정신적 장애	11.6	15.9	44.2	28.3	251
	x^2 (p)	9.026 (*)				
장애등급	경증(4~6급)	6.0	14.3	43.4	36.3	251
	중증(1~3급)	8.4	15.7	41.4	34.6	1,303
	x^2 (p)	2.118				
장애유형×장애등급	신체적 장애×경증	4.4	12.7	45.0	38.0	229
	신체적 장애×중증	7.9	15.9	40.4	35.8	1,074
	정신적 장애×경증	22.7	31.8	27.3	18.2	22
	정신적 장애×중증	10.5	14.4	45.9	29.3	229
	x^2 (p)	24.594 (**)				
종목	기록	9.2	16.8	39.7	34.4	721
	단체	10.2	12.6	44.9	32.3	254
	개인단체	6.1	15.9	42.4	35.6	396
	개인경기	4.4	13.1	43.7	38.8	183
	x^2 (p)	13.510				
전체	비율	8.0	15.4	41.7	34.9	1,554
	사례수	124	240	648	542	

*p<0.05, **p<0.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나) 운동부 내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운동부 내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을 한 36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장애인 선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4이 조금 넘는 2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선수들 간의 위계관계, 상명하복의 스포츠 문화 때문에'가 16.5%이었고, 이어서 '비장애인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율이 낮기 때문에' 15.9%, '장애인 선수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3.2%, '운동(훈련)을 하다보면 신체 접촉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11.3%,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 대해서 성별, 대상자별,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경기종목별 순위 차이나 응답률 차이가 소폭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었다.

〈표 Ⅳ-80〉 운동부 내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장애인 선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율이 낮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선수 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훈련)을 하다보면 신체 접촉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선수들 간의 위계관계, 상명하복의 스포츠 문화 때문에	기타	사례수
성별	남성	26.2	17.0	11.4	12.9	10.0	15.5	7.0	271
	여성	26.9	12.9	5.4	14.0	15.1	19.4	6.5	93
	x^2 (p)	5.614							
대상	중·고등학생	32.4	20.6	11.8	8.8	8.8	11.8	5.9	34
	성인	25.8	15.5	9.7	13.6	11.5	17.0	7.0	330
	x^2 (p)	2.451							

구분		장애인 선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율이 낮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선수 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훈련)을 하다보면 신체 접촉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선수들 간의 위계관계, 상명하복의 스포츠 문화 때문에	기타	사례수
장애 유형 (대)	신체적 장애	27.5	13.9	9.2	13.2	11.5	18.3	6.4	295
	정신적 장애	21.7	24.6	13.0	13.0	10.1	8.7	8.7	69
	x^2 (p)	9.240							
장애 등급	경증(4~6급)	33.3	19.6	7.8	17.6	7.8	7.8	5.9	51
	중증(1~3급)	25.2	15.3	10.2	12.5	11.8	17.9	7.0	313
	x^2 (p)	6.124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신체적 장애 ×경증	33.3	17.9	7.7	20.5	10.3	7.7	2.6	39
	신체적 장애 ×중증	26.6	13.3	9.4	12.1	11.7	19.9	7.0	256
	정신적 장애 ×경증	33.3	25.0	8.3	8.3	0.0	8.3	16.7	12
	정신적 장애 ×중증	19.3	24.6	14.0	14.0	12.3	8.8	7.0	57
	x^2 (p)	20.303							
종목	기록	25.7	15.5	9.1	15.5	10.7	16.6	7.0	187
	단체	19.0	22.4	13.8	13.8	8.6	12.1	10.3	58
	개인단체	31.0	12.6	10.3	11.5	11.5	18.4	4.6	87
	개인경기	31.3	15.6	6.3	3.1	18.8	18.8	6.3	32
	x^2 (p)	13.959							
전체	비율	26.4	15.9	9.9	13.2	11.3	16.5	6.9	364
	사례수	96	58	36	48	41	60	25	

*p<0.05, **p<0.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3. 심층면접 결과[90]

가. 참여자 특성

심층면접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총 14명이었다. 이들 중 보호자는 2명, 선수는 12명이었다. 보호자는 모두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이며, 나머지 12명은 성인으로 이들 중 2명은 남성, 나머지 10명은 여성이었다.

심층면접 참여자의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가 10명, 정신적 장애가 4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명의 신체적 장애 선수 중 7명은 지체장애, 2명은 뇌병변장애, 나머지 1명은 시각장애이며, 4명의 정신적 장애 선수 중 3명은 지적장애, 1명은 자폐성장애이었다. 이들의 장애등급은 1급이 8명, 3급이 3명이며, 나머지 3명은 (참여자가 원하지 않아)응답하지 않았다.

참여자의 운동 종목[91]은 수영(1명), 알파인스키(1명), 보치아(1명), 배드민턴(2명), 볼링(2명), 역도(1명), 농구(2명), 탁구(2명), 양궁(1명), 골볼(1명)로 다양하였다.

〈표 Ⅳ-81〉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구분	대상자 유형	성별	장애유형(대)	장애유형(소) / 등급	종목	비고
사례1	보호자	여성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 1급	수영	모
사례2	선수	남성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 3급	알파인 스키, 축구(前)	
사례3	선수	남성	신체적 장애	뇌병변장애 / 무응답	보치아, 육상(휠체어)	
사례4	선수	여성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 3급	배드민턴, 쇼트트랙	
사례5	보호자	여성	정신적 장애	자폐성장애 / 1급	볼링	모
사례6	선수	여성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 1급	배드민턴	
사례7	선수	여성	신체적 장애	뇌병변장애 / 3급	볼링	
사례8	선수	여성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 1급	역도	
사례9	선수	여성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 무응답	농구(휠체어)	
사례10	선수	여성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 1급	농구(휠체어)	

90) 여기서는 11월 7일까지 진행된 3명의 심층면접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중간보고회 이후 계획된 6명에 대한 면접내용과 그 결과는 향후 제시할 것임

91) 종목이 2개 이상인 선수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주로 하는 운동을 제시한 것임.

구분	대상자 유형	성별	장애유형(대)	장애유형(소) / 등급	종목	비고
사례11	선수	여성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 1급	탁구(휠체어)	
사례12	선수	여성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 1급	양궁(휠체어)	
사례13	선수	여성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 1급	탁구(휠체어)	
사례14	선수	여성	신체적 장애	시각장애 / 무응답	골볼	
전체	- 총 14명 · 남성 2명, 여성 12명(10명 선수, 2명 보호자) · 장애유형(대분류): 신체적 장애 10명, 정신적 장애 4명 · 장애유형(소분류): 지체장애 7명, 뇌병변장애 2명, 시각장애 1명, 지적장애 3명, 자폐성장애 1명					

나. 운동 시작 계기 및 의미

심층면접 참여자 대다수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경우였다. 이들은 병원에서 재활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운동'을 추천받았거나 자조모임에서 관련 정보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상당수는 이렇게 재활로 시작한 운동이 생활체육으로 이어져,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경우였다. 한 참가자는 장애인 체육선수의 이동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인 역할을 하다가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일부는 장애를 얻기 전의 운동 생활을 하였고, 이를 지속한 경우도 있었다.

심층면접 참여자에게 있어 운동은 처음에는 재활을 위한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본인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삶 그 자체이며, 또한 타인과 관계하고 소통하는 수단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운동은 자신이 직면한 장애적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긍정적 요소가 많음으로 면접자는 스스로 운동에 대한 흥미를 가지면서 체육활동에 더 매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소속팀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 대다수는 이제 특정 기관, 특정 지역을 위해, 일부는 국가를 대표해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 체육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동은 면접 참여자에게 처음에는 '재활'로 시작한 행위였지만, 지금은 '사회와의 소통'과 '삶의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목표에 대한 도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개개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다. 학습권 및 이동권

1) 학습권

심층면접 참여자 14명 중 청소년은 3명(보호자가 자녀에 대해 응답한 경우 2명, 청소년 본인이 응답한 경우 1명)이었는데, 1명(청소년 본인 응답)만이 학습권에 관해 응답을 하였다.

이 사례에 따르면, 학기 중에 경기출전의 이유로 학교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학교에서는 출석으로 인정을 하지만 보충수업을 해 주지 않아, 스스로 본인이 보충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참여자 스스로가 직접 보충하지 않으면 상급학교나 대학진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학생은 주중에 경기출전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고 하였다.

> 학생들은 학기 중 경기출전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수업에 빠지게 될 경우 궁극적으로 학년 인정을 받지 못해, 상급 학교나 대학 진학을 못 할 수도 있다. 보통 평일 경기출전을 하게 되면 출석처리를 해 주지만, 보충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사례14)

2) 이동권 및 운동시설 환경

가) 이동권

심층면접 참여자 중 일부는 훈련장(운동부)에 갈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장애등급이 낮을 경우 후 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신체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훈련장, 운동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고 지적되었다.

> 보통 훈련장(운동부)에 갈 때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이용하는데, 등급이 낮아 이용이 후 순위라서 그럴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사례7)

나) 운동시설 환경

여기서의 운동시설 환경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나 국공립 체육시설, 그리고 민간 체육시설 모두를 의미한다. 한 면접 참여자는 직업이 있어 일과시간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나 국공립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이 통제받는 등, 이러한 차별적 경험을 받게 되면서 민간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운동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데, 일과시간에는 장애인 전용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주말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이용하는 편이다. 민간체육시설은 이용하고 싶은데,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등 관련 차별 경험을 동료 장애선수들이 말해주면서 아예 민간시설은 가본 적이 없다.(사례10)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나 국공립 체육시설은 최근에 지은 곳도 있지만, 대체로 오래 전에 설치되어 주차장 규모나 주차장 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민간 체육시설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은 장애 친화적인 공간이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주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오래 전에 지은 시설이라 주차장도 부족하고 협소하며, 셔틀 간격도 길고, 샤워시설도 낡아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아무래도 비장애인의 이용이 많으므로, 시설 자체가 장애 친화적이지 못하다.(사례10)

라. 생리권 및 건강권

생리 기간, 특히 심각한 생리통은 휴식이나 휴가가 필요할 수 있다. 여러 면접 참여자는 생리하는 것은 다분히 사적인 일이므로, 이 일로 휴식이나 휴가를 요청하는 것은 운동부 내에서는 꾀를 부리는 것과 같이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오히려 이를 관리하지 못한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생리를 하더라도 참거나 이를 숨기거나, 혹은 약물을 이용해 생리일을 조절하고 있었다.

> 생리를 하더라도 말은 하지 못하고, 매우 심한 생리통이 있는 경우라도 휴식을 요청할 수 없다. (감독 등 지도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오히려 꾀병이라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는다.(사례6)

> 선수가 알아서 참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지 그런(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변 동료 선수들이 약을 먹고 생리시기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시합을 앞두고는 많이들 한다. 그 이유는 시합이 우선이기 때문이다.(사례8)

> 생리한다는 이유로 훈련에서 열외가 될 수 없다. 최근에는 생리조절 방법이 다양해서 스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로가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사례9)

생리통이 심하면 이 상황을 지도자에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능한 개인이 처리하고 관리하며, 숨겨야 하는 일이지 공개적으로 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사례11)

경기출전을 해야 하는 경우 큰 패드를 사용한다.(사례12)

주로 약을 먹고 미루거나 참는 것밖에 없다.(사례14)

건강 측면에서도 훈련(운동) 과정에서 부딪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거나 때로 갈비뼈 등에 금이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를 지도자에게 말을 하게 될 경우 어렵게 얻게 된 경기출전권이 상실될 수 있어, 그렇다고 동료 선수들에게 고민을 말하다가 지도자의 귀에 들어갈 경우 이 역시 경기출전을 못할 수도 있어 아프지만 꾹 참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프지만 홀로 숨기고 참아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발 선수, 대표 선수로서 선발되거나 좀 더 좋은 조건의 팀으로 이적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현재 청소년이지만 실력이 좋아 성인팀에도 종종 합류하여 같이 훈련을 하고, 시합에도 나가기도 하는데 현재 인대가 늘어나 있고, 뼈도 휘어져 있지만 메달을 따야 이후에 대학 진학에 유리하여, 지도자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참으면서 훈련에 임한다.(사례14)

이처럼 아프지만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은 선수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는 체육계의 문화가 전통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체육계의 위계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메달 따려면 참아야 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말고, 지도자 밑에서 복종해라,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게 메달을 따느냐"는 말을 선배들을 통해 많이 들었는데,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사례14)

마. 신체적 폭력 피해와 대응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구타, 얼차려 등 신체적 폭력은 면접 참여자 중 과반 정도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폭력 피해를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경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지닌 인맥이 너무 커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지닌 장애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 어릴 적 장애로 인해 다른 선수들보다 이해도가 떨어져 훈련을 따라가는 속도가 늦다보니, 그리고 몸동작도 크지 않아 감독으로부터 험한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 지적장애로 인해 처음에는 감독이 평소에는 잘 해주다가 간혹 혼을 낼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혼돈이 많았다. 그래서 선수생활을 잠시 그만 두었다. 그러나 다시 복귀했을 때 여전히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계속되었다. 최근에는 동료 선수들로부터 내 자심의 몸(체형)에 대한 놀림이 많아,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두게 될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지도자와 동료 선수들로부터 괴롭힘이 계속되어 결국에는 운동 종목을 바꾸었다. 새로운 종목에서도 언어적 폭력은 여전히 있다. 다른 운동부로 이동을 하고 싶지만, 지도자가 인맥이 넓어 이동도 어렵다.(사례2)

> 훈련과정에서 감독/코치가 거친 말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다 선수를 위한 지도(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또 종목 자체가 위험하여 주의 차원에서 험한 말을 한 것이라 이해되어, 기분은 나쁘지 않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릴 적 지도자로부터 대나무 막대기로 훈련 차원에서 맞는 일들이 잦았다. 다른 기관/지역으로 스카우트되어 공식적으로 이동하기(나오기) 전까지는 이러 폭력이 계속되었다.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사례4)

> 최근 코치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구타가 있었고, 신고하려고 했지만 코치가 미안하다고 했고 최고선수로 만들어주겠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그 이후 아무런 일이 없었듯이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사례6)

> 신체접촉을 미리 말하고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체접촉을 하게 되면 모두 나를 위한 지도라고 생각은 들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 선수는 비장애인 선수에 비해 지도자와 선수 간의 위계가 강해서, 지도자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 할 수 없다.(사례14)

이상의 사례에서와 같이 신체적 폭력이 지닌 부당함과 이에 대한 저항/대응의 어려움이 체육현장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이 개인적으로는 부당하고 개인의 인권에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신체적 폭력이 있으므로 더욱 훈련(운동)에 매진할 수 있고, 개인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여 꼭 부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어느 정도 훈련과정에서는 신체적 폭력이 필요하다. 그 (폭력적)상황이 두렵고 무서워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려고 하고 그래서 경기력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분은 나쁘고 폭력 상황은 있지만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폭력은 다른 문제이다.(사례4)

바. 성폭력 피해와 대응

심층면접 참여자 중에는 본인이 직접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하였거나, 동료선수들이 경험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들었던 적이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들은 언어적 성희롱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그런 피해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행한 대상이 감독·코치였기 때문이다. 결국 선수들이 이러한 성적 행위를 상대방이 행할 때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위계성 때문이다.

사례마다 피해 이후의 대응은 사뭇 달랐는데, 어떤 사례는 피해 이후 직접 지도자에게 말하고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례는 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았다고 한다.

신체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알았다면 신고를 했을 것인데, 그(피해)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신고기관을 알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하지 못했을 것이다.(사례2)

피해 경험이 없지만 주변 여자 동료 선수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보았는데, 코치가 선수들의 허락도 없이 머리나 어깨 등 신체일부를 만지거나, 실제 기분 나쁜 선수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계속하는 경우가 있었다. 동료 선수가 너무 힘들어 신고하고 싶어했지만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겁이 나서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었더라도 동료 선수와 같이 신고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신고했다가 코치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 경기 출전과 같이 운동선수로의 삶이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사례3)

최근 출전한 경기에서 코치로부터 “너는 OO이 OOOO”라는 정말 듣기 싫은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했다. 몇 차례 이런 행위를 경험하면서 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워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사례6)

지자체로 가면, 더더욱 개인종목의 경우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피해를 직접 겪거나 동료가 피해 상황에 놓인 것을 목격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해야 할지 모른다.(사례7)

성폭력 발생시 신고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한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운동생활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다)을 져야 한다.(사례9)

이상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게 되어 행위자를 처벌하고 싶더라도, 실제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처벌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가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고 싶어 주변에 신고나 도움을 청했지만 장애인(특히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무시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동료 선수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코치로부터 겪었던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코치는 지도자 일을 그만두어야 했지만, 그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받지는 않았다.(사례4)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성폭력 피해에도 적용되곤 하는데, 지체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어 운동부 안이든 밖이든 도움을 청하더라도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어떤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것이 장애인이다.(사례9)

종목의 선택은 대체로 아동·청소년은 전문가의 권유나 자조모임을 통해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의 경우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처음 선택한 종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물론 운동부 내 경쟁에 밀려 경기 출전이 불확실해져서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훈련 과정이나 감독·코치 및 동료 선수들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하면서 종목을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체접촉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 훈련 중에 코치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지나가면서 스치듯 신체를 치고 가는 등 기분 나쁜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다른 기관/지역으로 옮기기 전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사례4)

사.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장애 감수성 교육 제공

대다수의 심층면접 참여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겪었지만, 이것이 성폭력인지, 단순 지도였는지 분간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인지하였더라도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대응하며 또한 내·외부 기관에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희롱은 무엇이고, 성폭력은 성희롱과 어떤 차이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단지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다. 감독·코치 등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가 없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심층면접 참여자가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이었다.

> 고등학교 때(어릴 적) 혹은 장애를 얻기 전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 체육회에 등록하고 훈련을 하고서는 전혀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사례2,5,7)

> 오래 전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 본 적은 없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겪게 될 경우, 어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혹은 신고할 수 있는지) 모른다.(사례3)

> 지난 몇 년 동안 운동을 했지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의무라고 하지만 운동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 있지만, 실제 성희롱과 성폭력이 무엇인지,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는 못한다. 교육이 없어서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사례6)

> 성폭력 예방교육은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지도자라라도 성폭력에 관해 이해가 없다.(사례8)

> 2년 전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하였지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사례10)

> 지금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최근 심판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현재 소속팀에서도, 그리고 심판자격을 취득할 때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사례11)

그런데 최근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선수 등록과정에서 기존의 도핑예방교육을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도 일정 시간 이수를 하도록 프로그램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 선수들 중에는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종목별 협회 사무국이나 가족 및 활동보조인이 있어 이들이 선수들을 대신하여 선수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도핑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대신하고 있어 실제 선수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선수등록 과정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도핑방지교육과 함께 일정 시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체로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선수등록을 본인 스스로 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지도자나 사무

국, 활동보조인, 가족 등이 대신 해 주어서, 선수 등록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전만 하더라도 사무국에서 여러 창을 띄워 한꺼번에 많은 선수들의 선수등록을 대신 해 주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성폭력예방교육은 없었고 도핑예방교육만 있었다.(사례12)

총무부서, 친구에게 미리 나(선수)의 정보를 주어, 선수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선수등록 과정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했는지 나는 모르며,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사례13)

한편, 지도자의 장애 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이는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모든 장애인 선수는 각자가 지닌 장애적 특성이 달라, 같은 훈련(운동)을 하더라도 피해야 하거나 휴식시간의 정도 역시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지도자가 개인별 장애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동일하게 지도하면서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남자 지도자만 있을 때는 남녀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여자 지도자가 많아지면서 여자 내의 성 문제에 대한 민감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다. 여자 지도자가 비장애인이다 보니 장애 여성선수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것도 있다.(사례9)

아무래도 장애인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감독의 경우 비장애인 선수의 지도자 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장애유형이더라도 구체적인 장애로 가게 되면, 필요한 도움과 운동과정에서의 훈련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비장애인의 훈련(운동)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사례10)

지도자는 선수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도를 하는 등 형식적 지도를 하고 있다. 대다수 지도자들이 장애인체육회로부터 파견직이 많아, 편견과 차별 적이고, 지도력이 부족한 지도자가 많다.(사례13)

지도자와 같이 부모 역시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 자녀에게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수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를 인지하고, 인지하더라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등 관련 정보나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현재 자녀가 청소년기에 있는데, 특별히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이를 체육회나 관련 단체에서 관련 정보나 교육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또한 (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의 자녀가)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로서 이러한 경험이 아이에게 있다면 부모가 어떻게 이를 알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와 이후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나 교육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사례1)

아무리 지도적 차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라면 그 지도차원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선수의 부모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도자의 신체적 접촉은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신체 접촉을 성폭력 행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코치(남성)가 나의 자녀(여성)를 지도하면서, 손을 잡거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신체를 잡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 운동을 하다보면 신체접촉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최근 지도자들이 신체접촉 없이 지도하는 것이 못 마땅하다. 물론 성폭력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신체접촉이 필요한 종목도 있고, 수영은 지도자의 신체 교정을 통해 기록이 좋아지는 종목이다. 모든 종목에 동일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자 지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종목에 따라 지도자의 교수법도 달라져야 한다.(사례1)

아. 정책 수요

위에서는 장애인 체육선수의 학습권과 이동권 및 체육시설 환경, 생리권과 건강권,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포함하여 아래의 내용은 심층면접 참여자가 지금 장애인 체육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정책과제이다.

○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및 강화
- 심하게 언어폭력을 행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인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 선수등록 시에 최근 도핑예방교육과 함께 성폭력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사무국, 지도자, 가족 등 주변인이 대신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반드시 당사자가 선수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없는 경우 주변인과 함께 선수등록을 같이하면서, 성폭력예방교육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 합숙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전에 받도록 해야 한다.
- 대다수 지도자는 운동선수가 경기력을 향상되도록 헌신을 하는데, 지도자 본인도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을 잘 인지하지 못해 관련 문제에 연류되는 경우도 있어, 지도자와 선수 모두에게 관련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 장애공감 및 관련 감수성 교육 강화
- 장애인 선수는 비장애인 선수에 비해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사고적으로 반응속도가 늦고 이를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지만, 지도자들이 이를 이해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여 장애인 선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선수들 간에 이러한 상처 받은 얘기를 많이 하므로, 장애인 선수의 지도자는 반드시 장애 감수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 폭력예방을 위해 우선은 인성이 좋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 및 관련 매뉴얼 제공
- 선수들이 겁먹지 않고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말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편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곳(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 선수들이 신체적 폭력 혹은 성폭력을 겪게 되었을 때, 동료선수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해 주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 성희롱·성폭력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하나씩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배포되어야 한다.
- 체육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성폭력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부서로서 역할을 하기 꺼려하므로,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개선
- 정립회관의 경우, 화장실 안에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보통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이나 배우자의 도움이 샤워할 때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성이 다른 경우 도움을 줄 수 없다. 국립재활원은 독립된 공간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샤워시설 공간이 분리 설치되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배우자나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차별 근절
-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 등 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평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대회를 나가야 하는데, 일반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개인비용으로 참가해야 하기에 부담이 크다. 결국 엘리트 선수와 비엘리트(생활체육) 선수로 구분되어 대회가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고 참가비용 등 지원을 모든 선수들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장애인 지도자가 있음에도 비장애인 지도자를 선호하고, 또한 같은 장애인 지도자 내에서도 경증(휠체어 보다는 스탠딩을)을 더 선호하는 등 차별이 장애 분야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만큼, 실력이 우수하다면 (중증)장애인 장애인 선수출신 지도자가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 및 체육인의 인식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

○ 비용 지원
- 이천훈련원에서 훈련을 하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비가 나오기 때문이다. 비록 적은 비용이지만, 장애인 선수들 중에 특별히 운동 이외 부업을 하고 경우는 아주 드물며,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천훈련원은 국가대표 혹은 후보군이 아닌 이상 들어오기 어렵고, 평소 상을 받아 꾸준히 포인트를 쌓지 않는 한 국제대회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는데, 국가대표 혹은 실업팀 소속 선수는 지원을 받지만, 그 외 일반 선수는 자비로 국제대회 등에 나가야 하므로, 실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 현재 동호회 선수의 경우 선수로 공식 전환되면 좋겠는다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정식 선수가 되면 교통비 등 지원금이 있기 때문이다.
- 최근 활동지원사의 지원 대상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확대되었는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증의 장애인 선수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 전문 지도자 양성 및 지원 강화
- 선수들이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도자를 지금과 같이 체육회에서의 파견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닌 좋은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이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홍보
- 장애인 선수들 상당수는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가 많은데, 장애를 얻게 되면 충격으로 은둔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다. 장애인 본인과 가족이 모두 회복되고 긍정적 사고 전환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비롯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상황에 대해 실태조사 방법과 심층면접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태조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올해 8월 기준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분석대상 가능 인원은 1,554명이었다. 심층면접은 실태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았거나 좀 더 원인규명을 위해 다양한 장애유형 및 대상자를 섭외하였고, 최종 14명(보호자/어머니 2명, 남성 2명, 여성 10명)이 참여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 인권상황을 크게 학습권, 이동권 및 접근권, 건강권 및 재생산권, 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성희롱·성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과 성폭력 인지 등의 순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학습권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과반 이상이 경기출전이나 훈련을 위해 수업 결손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선수 본인이 하였지만, 그 상황은 구조적인 부분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수업 결손이 있는 경우, 보충(보강)수업을 하는 경우는 1/4 정도 수준이며, 과반 정도는 선수 본인 스스로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학업과 운동의 병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90% 가까이가 동의하고 있어, 수업 결손의 방지나, 결손 시 보충(보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선수들의 60% 이상은 체육시설 이용 시 자가용을 많이 사용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장애등급이 낮은 경우 더 많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였다. 주로 이들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지만, 상당수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이용 시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주된 이유는 장애인 운동용품, 편의시설 부족 등 때문이었다.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낮게는 15%에서 높게는 30%까지 다양했다.

건강권과 재생산권 역시,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 휴식이나 휴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말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응답도 있었고, 생리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자신의 몸 관리를 못하는 것으로 취급받거나 이를 말하기 어려워, 중요한 경기출전일이 있는 날에 생리일이 겹치면 여성 장애인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약을 복용하고 생리 기간을 연기시키는 것이었다.

구타, 얼차려 등 신체적 폭력에 대한 필요성은 팀워크 및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실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주로 이러한 폭력의 행위자는 감독/코치, 선배 및 후배/동료 선수가 많았고, 경기장, 훈련장, 합숙소 등이 주된 발생 장소였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도 비슷하였는데, 대체로 10명 중 1명은 피해 경험이 있었고, 여성만 보면 13.6%로 남성 7.8%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 발생 장소 역시 신체적 폭력과 거의 동일하였다. 문제는 피해 이후 대응이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넘겼다와 같이 무대응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35%이었는데, 그 이유는 대응을 하더라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대응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행위자와의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아서 등,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성폭력 예방교육은 과반에 조금 밑도는 약 49%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나머지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제 체육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 수준에 차이가 있고, 성폭력 피해 경험에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응의 방법도 달랐다. 무대응인 경우가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에서 높았다.

이상이 실태조사의 내용인데, 심층면접도 동일하게 각 인권영역마다 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학습권 측면에서 장애를 가지고 체육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운동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이 그럴 경우, 경제활동 등 생계의 문제와 운동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회적 불안감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체적 폭력을 비롯한 성폭력은 체육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인지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경우 경기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성폭력 예방교육도 선수등록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는 매우 낮고, 실제 대리인이 대신 등록을 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V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205
2. 정책과제 20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1.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적 침해 지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장애인 관련 현행법과 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장애와 스포츠 관련 협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개개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아 체육활동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성적 괴롭힘과 폭력은 엄격히 금지되며,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선수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모든 체육인의 복지의 핵심 요소임도 명확히 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관련해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을 최근 개정하여 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과 장애인 선수 출신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도록 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의무규정이 아닌 노력규정으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시·도의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 권익보호사업 추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풀에 (성)폭력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도 (성)폭력 피해자 관점,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전문가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이 다소 협소하며, 오히려 행사성 사업을 위한 전문가풀로 활용되지 않을까 의구심도 든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는 임원, 전임지도자 및 국가대표 등에 대한 결격사유에 폭력과 성폭력이 포함되도록 한 것, 그리고 영구결격 사유로 강화한 것은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그 방향을 잡은 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및 심판이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할 때 반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 것도, 현재 관련 교육에 대한 경험치가 낮은 것과 그로 인한 피해 인식과 적절한 대응력의 부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용어가 일관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위법 행위에 성폭력이 빠져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지점도 확인되었다.

이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들(2019년 8월 기준) 대상으로 학습권과 이동권/시설이용권, 생리권 및 건강권, 신체적 폭력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자는 중·고등학생 및 성인으로 1,554명이었다.

학습권과 관련해서는 60% 이상이 경기 출전이나 훈련 등으로 수업을 빠지고 있었는데, 대다수는 선수 스스로가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 정도는 감독/코치 및 부모에 의해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렇게 수업에 빠졌을 때, 보충수업은 거의 과반은 스스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 선수들 중 87.6%는 운동과 학업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 운동을 그만 둔 이후의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함이 과반 가까이 있었다.

장애인 체육선수들은 주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나 민간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동은 60.3%가 자가용으로 하고 있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응답도 9.7%가 있었다. 그러나 콜택시 대기 시간이 길어서 불편하다는 응답도 과반 가까이 있었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약 30%는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 장애인용 운동용품이나 기구, 장비가 부족하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다. 공공이나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과반 가까이는 장애라는 이유, 장애에 대한 편견, 비장애인에 대한 이용 방해 등의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휴식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0% 가까이는 부정적 응답을 하였는데, 실제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도자가 경기출전/훈련의 이유로 거부한 경우가 거의 30%가 있었고, 또한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를 숨기고 경기출전이나 훈련에 참가한 적도 8%로 나타났다.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경기력 향상과 팀워크를 위해 체벌이 필요하고, 선수는 지도자 및 선배 선수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작게는 1.5%부터 많게는 10.4%까지 신체적 폭력이나 단톡방에서의 언어/시각적 폭력 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의 행위자(가해자)는 감독/코치, 선배선수, 동료/후배 선수였고, 이들의 성별은 90% 가까이가 남성이었다. 폭력의 피해 장소는 훈련장, 경기장, 합숙소, 회식자리가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 노출된 이후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7% 수준이었다. 이외 대다수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데, 이 중에서 장애로 인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경우도 15.2%가 있었다. 가장 많은 이유로 지적한 것은 '얘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로, 체육계의 만성화된 폭력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폭력 경험의 첫 시기가 초등학교라는 응답이

16.2%로, 어릴 적 운동을 시작하면서 폭력도 같이 훈련과정에서 지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음도 살펴볼 수 있었다.

성희롱과 성폭력도 그 유형에 따라 경험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 이상의 성폭력 유형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의 9.2%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13.6%로 남성 7.8% 보다 상대적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성희롱·성폭력 역시 행위자는 감독/코치, 선배 및 동료/후배 선수가 많았으며, 발생 장소도 훈련장, 경기장, 합숙소 등이었다. 이렇게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가 35%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로 장애를 갖고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적 행위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무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인 체육계 내에서의 구조적이고 위계적인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92].

마지막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는 과반이 밑도는 48.6%였다. 나머지는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실제 교육을 받은 그룹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율과 성폭력 피해 이후의 대응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2. 정책과제

가. 장애인 선수 인권보장을 위한 체육회 관련 규정 개정 방향

1) 위원회 위원 구성시 여성과 장애인 선수 출신 40% 이상 포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은 10분의 6 (40%)이 초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는 총 503개인데,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378개로 전체

92) 본 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에 발생한 국가대표 선수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장애인체육 (성)폭력 실태조사의 참석자(학생 및 일반선수 520명)와 비교할 때 거의 3배 정도 많은 규모의 조사이며, 주요 결과로서 폭력 피해 경험률도 많게는 10.4%까지 확인되었고, 성희롱·성폭력은 그 당시 피해율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피해율이 9.2%로 나타나, 장애인 체육계 내 폭력과 성폭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음.

의 75.1%를 차지한다.[93]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이 최근 개정(2019.6.19.)되었을 때, 제34조(각종 위원회의 운영) 4호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과 장애인선수 출신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정부위원회는 특정 성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있는 상황에서, 2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규정'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의 노력 규정이 아닌, 현재의 정부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인 최소 40%의 의무규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여성'만을 40%까지 설정할 것인지, 여기에 '장애인선수 출신'을 포함할지, 아니면 '장애인선수 출신'은 별도의 %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장애선수 출신도 특정 성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해당 특정 성에 일정 비율로 차지해야 하고, 반대 성은 나머지 40% 비율로 설정하되 여기에도 반대 성의 장애선수 출신이 포함되도록 하여, 성별 및 장애가 모두 고려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유형도 반드시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장애인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대변하는 위원회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위촉위원들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2) 신고체계 내 개인정보 내용 간소화 및 익명성 보장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이 개정될 때 두 가지 위원회가 추가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하나가 권익보호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체육인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전담 위원회로서, 실제 업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내 체육인지원센터에서 하게 된다. 여기에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과 교육 및 홍보, 권익침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권익침해에 대한 조사,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장애인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접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은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신고의 방법 등)의 2항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이름, 연락처, 신고 취지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3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인정의

93) 여성신문 (보도자료. 2019.3.11.). 정부위원회 4곳 중 1곳, '여성 40% 미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705

추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접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신고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담이 큰 피해자의 경우, 신고 자체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신고는 가능한 간소하게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실태조사에서도, 그리고 심층면접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것이 피해 이후 내·외부 기관에 도움(신고)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받게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특히 장애인 체육선수에게 운동(체육활동)은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재활의 수단이면서 사회참여와 소통의 수단,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가 간소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피해를 직접 경험한 선수도, 그리고 동료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들었던 선수도 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것이 충족되어야만 신고접수를 하고 처리되는 지금의 체계는 피해자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가능한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발생 장소와 행위자, 그리고 대략적인 상황(원인 등)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여 바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피해자로서 신고자 및 신고 대리인을 보호하는 신속한 사건처리 방식일 것이다.

3) 지역 전문 인력의 역할 구체화 및 내실성 제고

이번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개정 시 포함된 내용 중 하나가 제11조(시·도 권익보호)인데, 여기서는 시·도의 지역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지역 내 발생한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권익침해적 상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한 지역의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항에는 시·도 전문인력풀은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출신,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상담사, 법률 전문가 등과 행정지원이 가능한 시·도장애인체육회 직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인력풀의 역할에는 시도 전문인력풀 전체 워크숍 및 평가회 개최(각 연 1회), 시·도별 자체 간담회, 워크숍 및 세미나 등(교육 및 회의) 진행(연 3회 이상 실시), 장애인스포츠 인권관련 자료·교육(안) 개발 및 공유, 스포츠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접수,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사항에 관한 현장조사 및 사후조치 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 인권침해 조사 TF팀 구성시 참여 및 협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워크숍,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은 행사성 사업이며,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접수는 상담사 및 법률 전문가로 제한되며, 그나마 스포츠 인권침해 대한 현장조사 및 사후조치 지원이 시·도 전문인력풀을 활용한 제대로된 역할일 것인데, 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동 인력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된 2019년 이후의 인력풀 활용결과를 평가해 보고 개선사항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등 다양한 성범죄 포괄

먼저 용어 정리 측면에서 보면, '전임지도자운영규정' 제8호에는 성폭력, 제11호에는 성추행, 제12호에는 강간, 강제추행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간 차별화된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법적인 용어인 강간,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규정안에 성추행과 강제추행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성폭력과 강간·강제추행이 공존함으로써 용어의 표현과 채용 결격사유의 경중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다.

이어서 성범죄 정의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전임지도자운영규정' 제5조(채용결격사유),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6조(국가대표지도자 선발)에서 성폭력으로서 성추행, 강간은 포함되어 있지만, 성매매와 최근 신종 성범죄인 디지털성폭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지도자 및 전임지도자 규정 이외(가맹단체운영규칙 제19조 1항 등)에도 동일한 만큼, 모든 규정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폭력 등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여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 체육인의 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와 위계적 구조 개선

1) 대리인에 의한 선수등록 금지 및 다양한 교육방식을 개발·적용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12조(선수등록절차) 5항은 올해 6월에 신설되었는데,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등록과정에 도핑방지교육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만 의무화하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제25조, 지도자등록 절차 5항), 심판(제34조, 심판등록 절차 4항)도 동일하다.

현재 기존의 등록시스템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이 탑재되어 교육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등록선수가 아닌 이상 확인이 어려워 연구진이 직접 검토는 하지 못했다. 또한 장애유형 중에도 시각장애과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장애유형마다 교육제공의 방식과 방법은 달라야 하는데, 최근 선수등록을 한 선수를 통해 확인하기로는 현재 시스템에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성범죄도 매우 다양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폭력 등을 포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심층면접 과정에서 확인하였듯이, 선수등록 과정에서 거의 모든 장애인 선수들이 스스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지자체 협회 사무국이나 소속팀 직원, 혹은 감독/코치 및 스태프, 부모, 활동보조인 등이 대신 신청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선수등록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장애인 선수들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접촉을 실제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하고 있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측정하고 있는 예방교육 건수는 부정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 모집단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등록선수 모집단 수는 약 1.3만명이지만, 여기서 15~20% 정도[94]는 핸드폰 번호가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대리인이 여러 장애인 선수들을 대신하여 선수등록을 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태조사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0% 미만이었고, 심층면접에서도 선수 참여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2명은 부모 응답)은 대리인이 자신의 선수등록을 대신해 주었다고 하였고, 그래서 이번 장애인 전국체전 시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등록과정에서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수 본인에 의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정보(통계)의 오류는 물론이며, 지금의 등록과정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제공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수등록은 가능한 선수 본인이 직접하도록 하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선수등록의 도움을 받도록 하되 해당 장애인 선수는 반드시 이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면서 관련 교육(도핑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모두)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94)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검증은 받은 않은 수치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방식도 장애유형(시각장애, 청각장애 등)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맞춤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고, 정례화되어야 한다. 이런 고려가 궁극적으로, 지금의 온·오프라인 교육에서 장애인 체육인이 제외되지 않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 장애인 체육선수 지도자에 대한 장애 감수성 및 인권 교육 의무화[95]

이번 심층면접에 참여한 선수들의 장애유형과 종목은 다양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감독, 코치 등 지도자가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이해 부족은 '장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한 예로, 지체장애라 하더라도, 선수마다 장애의 신체부위가 틀리고, 이로 인해 해당 종목에서 개인마다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상이할 수 있고, 또한 운동의 환경조건도 개인마다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지만, 지도자는 단순히 지체장애로만 이해하고, 선수 개인마다 가진 특수성을 간과하고 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개인마다 가진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도 있지만 선수 개인별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부는 장애인 체육계에서 비장애인 선수 출신을 지도자를 선호하고 이들을 우선 채용하는 문화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장애인 지도자가 장애인 선수나 팀을 지도하는 기회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장애인 선수 출신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경증 장애 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하였다.

---

95) 스포츠혁신위원회 제3차 권고문 56쪽 인용
"장애인스포츠 지도자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낮은 사회적 위치성으로 이한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격검정 시험이나 연수프로그래 등에서 장애인 특성 이해와 차별에 대한 인식교육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연수프로그램(안)을 살펴보면, 1급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연수프로그램에는 장애특성에 대한 교육이 없으며, 장애인 차별 이해 분야가 250시간 중에 4시간 배정되어 있을 뿐이다.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 연수 프로그램에는 장애특성 이해와 지도법이 90시간 중 25시가 배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차별 분야는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이와 같이 장애인 체육인의 지도자를 비장애인 선수 출신으로 선호하고 우선 채용하는 것은 지금의 지도자 평가가 경기 성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적이 좋으면 재계약될 것이고, 이전 보다 더 좋은 성적(목표)을 성취하기 위해 지도자의 지도 방향은 더더욱 성적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성적 중심의 구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인권 존중이나 장애 감수성 등은 지도자의 중요한 평가 항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 평가 시에 선수들의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와 장기 비전과 훈련 방법 이외에도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 존중과 학습권 보장 등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인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에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장애인 감수성 교육과 인권 교육은 지도자가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과정에도 필수 이수해야할 교육 내용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지도자에게도 장애인 체육인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최대한 열어주어, 장애공감 속에서 후배들의 선수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이천훈련원 및 지역 장애인체육회 내 인권상담 인력 보강 및 조사 절차의 독립성 강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육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권익교육과 온·오프라인 상담·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이천훈련원에 스포츠인권상담실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선수 내담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인권사각지대 관리 및 점검, 입촌 선수 및 지도자 대상 스포츠 인권교육 진행, 표준교육개발과 인권강사교육 등 다양한 인권보호 활동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중앙단위에서 체육인지원센터, 그리고 훈련원 내 스포츠인권상담소를 설치하여, 선수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영역/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구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 장애인체육회에서 발생한 인권문제도 중앙의 체육인지원센터에서 관할하는 구조이므로, 지역 자체 인권 조사 및 관리감독 등 역량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한 부서로서 체육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신고에 따른 조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이를테면, 본 실태조사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 9.1%만이 운동부 내부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심층면접에 참여한 (성)폭력 피해 선수들과 피해 상황을 목격한 동료 선수들은 오히려 내부 기관에 신고하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인권침해적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구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육인지원센터가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후 기관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장애인체육회 내 발생한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적 문제에 대해 피해자 및 목격자가 신뢰감을 갖고 상담과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여성폭력 지원시설 및 수사·법률 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피해 선수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연계 강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센터는 체육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장애 감수성 및 폭력예방 교육, 피해 상담과 신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 과정에서 여성폭력지원시설 및 수사기관, 법률기관과의 협조·연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반대로 여성폭력지원시설이나 수사/법률 기관에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이 기관을 통해 체육인지원센터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실태조사에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도움을 요청한 곳으로 9.1%는 운동부 내부 기관(성폭력전담기구, 상담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등), 4.2%는 외부기관(경찰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이 있었다.

현재 체육인지원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을 지원하는 여성폭력지원시설, 수시·법률기관과의 협의체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체 및 외부 자원이 많은 만큼,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도 이들 기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 이들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다층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5) 폭력 피해의 일상화와 피해 신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서 체육계의 위계구조 개선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심층면접 모두에서 확인된 것이 장애인 체육인 10명 중 2~4명 정도는 지도자와 선배의 체벌, 언어적/신체적 폭력은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상하지만 개인과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실태조사에서 '경기력 향상이나 팀워크를 위해 체벌은 필요하다'에 대해 20.2%가 동의하였다. '선수는 지도자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36.0%가, '후배는 선배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19.3%가 동의하였다. 심층면접에서도 한 선수는 언어적으로 폭력적인 말을 하지만, 결국 그 말이 나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지도자의 행동이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22.2%였는데, 이들에게 피해를 가한 대상자의 50%는 감독/코치, 32% 정도는 선배선수로서, 이들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한다. 이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한 위계적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들 피해자 중에서 운동부 내부나 외부 기관에 도움(신고 등)을 요청한 경우는 15.5%로 매우 낮았는데, 나머지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 선수생활에 불리할까봐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36%로, 이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 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체육인이 운동부 내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것이 바로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선수들 간의 위계관계, 상명하복의 스포츠 문화'이었다. 심층면접에서도 폭력 피해를 경험한 몇몇 사례는 피해를 받았지만 이를 외부에 도움 요청할 수 없었던 것은 지도자가 갖고 있는 인맥이 너무 커서, 신고함으로 인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현실에 참고 견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 피해 상황은 아동청소년기때부터 경험했다는 응답이 거의 과반에 이른다. 초등학교때 처음 경험했다는 응답도 16.2%가 이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역시 거의 43%가 아동청소년기때 처음 경험하였고, 여기서 약 10%는 초등학생때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 등 폭력이 체육계에서 이른 시기부터 반복적,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체육계의 폭력의 일상화와 피해 신고를 가로막는 위계성은 경기력 향상, 엘리트 체육인 양성 등의 이유로 이 인권침해적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폭력의 문제가 지속되어 일상화되지 않도록 그 원인으로

서 체육계의 위계성을 타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경력 전환과 은퇴 준비 선수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1) 학습권 보장 강화

본 실태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주중에 경기출전 및 훈련으로 학교(학과) 수업 결손 정도를 파악하였다. 거의 2/3인 66.7%가 학교(학과) 수업을 빠진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 중 약 40%는 '가끔' 빠진다고 응답하였지만, 28.4%는 '종종' 혹은 '항상' 빠진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거의 70%는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업 결손은 80%가 선수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단체종목이나 개인단체 종목에서 좀 더 종종 혹은 항상 빠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를 볼 때, 단체종목의 경우 어느 정도는 선수 자신의 결정이기 보다는 자신이 훈련에 빠질 경우 팀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수업을 빠졌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다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면, 수업 결손 이후 학교(학과)로부터 보충(보강)수업을 받은 경우는 중·고등학생은 33.8%, 대학(원)생은 21.5% 수준이었다. 나머지 중 중·고등학생의 45.1%, 대학(원)생의 60%는 스스로 보충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상급 학교나 진학(대학팀/실업팀 등) 방법이 학업과 연관이 없거나 학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 대학 입시 체육특기자 전형 방법을 보면, 대체로 경기실적 및 실기시험 반영 비율이 학생부 반영 비율 보다 높다. 이것이 학교(학과) 수업 결손을 하면서까지 경기출전 및 훈련에 더 신경쓰도록 하는 주된 이유일 수 있다. 그렇다고 장애인 체육인들이 학업이 필요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스포츠혁신위는 최근 3차 권고(2019.6.26.)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 운동선수는 선수 이전에 학생인 만큼, 최소한 정규수업에는 빠지지 않도록 기존의 주중 대회를 주말 경기로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96] 이외에도 최저학력

96) 혁신위의 주중에는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고, 주말에만 경기참가를 할 것과 관련하여 체육인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지적도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 시간, 전지 훈련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 안에 포함하고 위반 시 학교 단위에서 책임, 경력전환 학생선수 대상으로 학생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지원 방안 마련, 주말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도 권고하였다.

이상의 혁신위의 권고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최대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은 장기간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천훈련원 내 학생선수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센터를 설치하여, 위탁교육기관과 학생의 원소속 학교의 가교역할을 통해 해당 선수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대표 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생 체육인의 출석일수, 학사관리 등 학습권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전체 장애인 학생 체육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경력전환 및 은퇴 (준비)선수에 대한 지원 강화

본 실태조사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거의 87.6%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운동을 그만 둔 후(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심층면접에서도 대다수는 장애로 인해 특별히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데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고, 뛰어난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선수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 이러한 걱정이 더욱 심화된다고 하였다.

가능한 장애인 체육인이 운동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이다. 이외에도 운동생활 중 자신의 경력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에게, 혹은 은퇴를 해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직업교육을 받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라. 체육시설 접근권 강화 및 차별 근절

1)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및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시설 이용·접근의 장애요소 점검 및 장애친화적 시설환경 조성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노후화된 곳이 많고,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주차공간이 있더라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 체육인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심층면접에서 지적된 것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내 샤워시설은 남녀 전용으로 구분되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장애인 선수들은 활동보조인이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샤워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연구진도 체육시설을 방문했을 때, 많은 체육선수들이 배우자 및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샤워시설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구조가 아니어서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한다고 하였다. 최근 지어진 체육시설은 샤워공간을 독립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어, 배우자 및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한 선수들 중 35.7%는 이용 시 불편하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서 앞서 언급한 편의시설(샤워실 등)이 부족하다(33.3%)는 의견 이외에도 장애인용 운동용품, 기구 및 장비가 부족하다(50.0%)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우선으로 장애 감수성이 부족한 시설은 없는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 체육인이 마음 편히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운동도구·장비 등 포함) 및 내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 체육시설 역시 장애인 체육인이 접근하는데 장애요소가 되는 지점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접근의 장애요소로서 장애 체육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관련 시설 관리·감독 강화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체육인의 60%는 공공 체육시설을, 45.2%는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장애를 갖고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편견과 낙인으로 스스로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최대 30%까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공과 민간 체육시설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막거나,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차별적 상황이 있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 선수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편의시설은 보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있다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 전환과 함께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감수성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 장애인 체육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동수단 지원 강화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하였듯이 장애인 체육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21.2%)이었다. 이어서 민간 체육시설(20.3%), 공공 체육시설(18.0%)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체육인이 이들 시설로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60.3%)'이었다. 많은 격차가 있지만, 이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장애인 콜택시(9.7%)였다.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등급이 높아야 우선 이용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이 길어서 불편함이 크다고 하였다. 그래서 실태조사와 같이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장버스'나 '셔틀형 복지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이는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공간(복지기관,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 장애요소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해당 시설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중증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집에서부터 체육시설(운동공간)까지 어떠한 장애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은 장애인 콜택시 공급 상황을 재점검하여, 필요한 만큼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나 지하철, 대중교통에서 하차하여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환승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교통수단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가맹단체운영규정」

「국가대표선발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19.1.10)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19.1.11)

「국제위원회 운영 규정」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 규정」

「시도지회운영규정」

「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윤리강령」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장애인 권리협약」

「전임지도자 운영규정」

「지도자협의회 운영 규정」

김동식(2019). 스포츠계 미투. 젠더리뷰. p.42-52

김동식, 윤덕경, 이미정, 동제연, 천재영, 정다은(2019).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6.12.15.).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장애인 권익신장 기대.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12507&pWise=sub&pWiseSub=B12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 "8. 장애인스포츠 권익보호센터 지원(담당 : 장애인체육과/장체회 체육인지원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보도자료(2019.3.19.).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권역별 포럼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 보도자료(2019.5.29.). 대한장애인체육회, 성폭력 등 비위근절을 위한 제규정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1.10.). “문체부, 2018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률 23.8%로 전년 대비 3.7% 포인트 증가, 10년전(2009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https://www.koreanpc.kr/rulebook/rulebook.do?menu_idx=8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도 업무계획」.

황정임, 선보영, 허현미(2007). 프로스포츠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 조사. 문화관광부

세계인권선언(외교부 국문본), http://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여성가족부(201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이명선, 김상범, 변혜정, 이성은, 국미애, 오미영, 이진영(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이창훈, 유성연, 윤우석, 안계원, 정송이, 박서영(2018). 2018년 스포츠(성)폭력 실태조사.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체육회.

조향현(2009), “장애인 체육 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한 의견”, 「장애인체육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pp.18-2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9). 2019년 국제심포지엄 “스포츠 #미투, 국제적 현황과 대응” 자료집.

국외문헌

“Mål: Deltakelsen fra underrepresenterte grupper skal økes, slik at deltakelsen på en god måte gjenspeiler mangfoldet i samfunnet, ved at (...) nulltoleranse for diskriminering og trakassering uansett kjønn, etnisitet, livssyn, seksuell orientering og funksjonshemming håndheves.”, 노르웨이 스포츠연맹(Norges Idrettsforbund), 스포츠 정책문서(Idrettspolitisk Dokument) 2011-2015, 2011, 2.4장

“Norsk idrett skal praktisere nulltoleranse for enhver form for diskriminering og trakassering innenfor idretten.”, 노르웨이 스포츠연맹(Norges Idrettsforbund), 스포츠 정책문서(Idrettspolitisk Dokument) 2015-2019, 2015, 6.4장 d)

A New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Commentary

Alexander, Stafford 및 Lewis, 영국 내 아동의 조직 스포츠 참여 경험(The Experiences of Children Participating in Organised Sport in the UK), NSPCC, 2011

Degener, Begg, From Invisible Citizens to Agents of Change: A Short History of the Struggl,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Commentary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07). Consensus Statement on Sexual Haras sment and Abuse in Sport, 2007. 2. 8., https://www.olympic.org/news/ioc-adopts-consensus-statement-on-sexual-harassment-and-abuse-in-sport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https://www.paralympic.org/ipc/who-we-are

IOC 윤리강령(Code of Ethics), IOC, 2018 개정. https://stillmed.olympic.org/media/Document%20Library/OlympicOrg/Documents/Code-of-Ethics/2018/Code-of-Ethics-2018.pdf#_ga=2.186234857.1133389250.1569168803-1709701376.1566143761

IOC,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2019. 6. 26. 개정

IPC Handbook, May 2008, IPC Position Statement on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IPC 헌장 (Constitution) (2011)

Mountjoy, M., Brackenridge, C., Arrington, M., Blauwet, C., Carska-Sheppard, A., Fasting, K., & Starr, K. (2016).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Consensus Statement: Harassment and abuse (non-accidental violence) in sport" Br J Sports Med, 50(17), 1019-1029.

Norwegian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 and Confederation of Sports (2008). The procurement and handling of police certificates of good conduct – guide for sports clubs in NIF. Oslo.

OHCHR, Monitor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ance for Human Rights Monitors, HR/P/PT/17

Prevention of Sexual and Gender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s: Initiatives in Europe and Beyond, Deutsche Sportjugend (dsj)/ 2nd edition, November 2012, pp. 48-51.

STATUS OF RATIFICATION, http://indicators.ohchr.org/

노르웨이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 및 스포츠연맹, 스포츠에서의 성적 괴롭힘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s), 2010,

스포츠 여성 위원회(Women in Sport Commission), IOC, https://www.olympic.org/women-in-sport-commission

올림픽 운동에서의 여성 참여 자료표(Factsheet: Women in the Olympic Movement), IOC, 2016. 1. 22.

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2019. 6. 26. 개정.

유네스코 베를린 선언(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inisters and Senior Officials Responsibl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베를린, 2013년 5월 28-30일.

유럽평의회, Recommendation No R(92)13, 유럽 스포츠 헌장(European Sports Charter), 1992. 9. 24. 채택 및 2001. 5. 16. 개정.

유럽평의회, Recommendation No R(92)14 Rev, 스포츠 윤리규정(Code of Sports Ethics), 1992. 9. 24. 채택 및 2001. 5. 16. 개정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권고 21호(2009),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권고 2호 (2014),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para. 9.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제3호 (2016)

유엔 총회, 교육, 건강, 개발과 평화 증진의 도구로서의 스포츠 (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 A/RES/69/6, 2014. 11. 10.

유엔총회 결의안 48/96호, '장애인의 균등한 기회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 12. 20.

홈페이지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physical-education-and-sport/sport-charter/

https://www.koreanpc.kr/rulebook/rulebook.do?menu_idx=8

https://www.un.org/en/sections/universal-declaration/history-document/index.html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부 록

〈부록 1〉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227

〈부록 2〉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인용 24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부록 1>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국가인권위원회

ID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중·고등학생용 -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다양한 경험과 상황을 파악하여 더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조사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조사 대행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 권여진 차장, Tel : 02-3406-3876

201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SQ. 선문

SQ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당신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_____년
① 2007년~ (초등학생) [☞ 초등학생용 설문지로]
② 2001~2001년 (중고등학생) [☞ 중고등학생용 설문지로]
③ ~2000년 성인(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성인용 설문지로]

SQ2-1. [SQ2의 ②해당자만] **당신은 현재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A. 학습권 A1로] ② 아니오 [☞B. 접근권의 **B4**로]

A. 학습권

A1. 당신은 대회출전이나 시합 준비(훈련) 때문에 학교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A2로] ② 가끔 있다 ③ 종종 있다 ④ 항상 있다

A1-1. [A1의 ②~④번 응답자] **학교수업을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② 감독이나 코치 등 주변의 강요나 압박 때문에 빠진다

A1-2. [A1의 ②~④번 응답자] **그렇다면, 어떻게 학교수업을 따라 갑니까?**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학교선생님(감독, 코치 등 제외)이 보충수업을 해 준다[☞ A1-3로]
②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통해 보충한다
③ 부모님이 학습자료로 보충해 준다
④ 나 스스로 학습한다
⑤ 기타(_____)

A1-3. [A1-2의 ①번 응답자만] **위의 보충수업이 학교수업을 따라 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약간 도움이 된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A2. 당신은 운동과 공부(학교수업)를 같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A2-1로] ② 약간/다소 필요하다[☞A2-1로]
③ 별로 필요 없다[☞A2-2로] ④ 전혀 필요 없다[☞A2-2로]

A2-1. [A2의 ①,② 응답자만] **운동과 공부를 모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운동을 그만 둔 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②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③ 대회 출전을 위한 학력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④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⑤ 대학팀/실업팀 등에 들어가기 위해서 ⑥ 기타(_____)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A2-2. [A2의 ③,④ 응답자만]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운동과 훈련에 방해가 되므로　② 신체적으로 피곤해서
③ 코치, 감독이 원하지 않으므로　④ 대회 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⑤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　⑥ 기타(_____)

A3. 당신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운동을 하십니까?

① 1~2시간 이내　② 3~4시간　③ 5~6시간　④ 7~8시간　⑤ 8시간 이상

A4. 당신은 평소 주말(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운동을 하십니까?

① 전혀 안 한다　② 시합이 있을 때만 한다　③ 시합이 없어도 한다

A5. 당신이 생각할 때, 평소 운동시간이 당신의 일상생활(학교수업과 치료활동 등)에 지장(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는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B. 접근권

B1. 당신은 국가나 시청/구청/군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종목 시설 등 포함)을 이용해 본적 있습니까?

① 있다[☞B1-1로]　② 없다

B1-1. [B1의 ① 응답자만] **이용 중에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① 전혀 불편하지 않다　② 별로 불편하지 않다
③ 다소 불편하다[☞B1-1-1로]　④ 매우 불편하다[☞B1-1-1로]

B1-1-1. [B1-1의 ③,④ 응답자만] **불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애인용 운동용품, 기구, 장비가 부족해서　② 비장애인이 많아서
③ 편의시설(샤워실 등)이 부족해서　④ 비용이 비싸서
⑤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⑤ 기타(_____)

B2. 당신은 국가나 시청/구청/군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국립/시립/구립/군립)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B2-1로]　② 없다

B2-1. [B2의 ① 응답자만]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다음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예	아니오
(1)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육상경기장,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수영장 등)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3)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이 출입하기 위한 시설(휠체어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장애인전용주차장 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항목	예	아니오
(4)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했으나,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눈치가 보여)로 나 스스로 시설이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	①	②

B3. 당신은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B3-1로] ② 없다

B3-1. [B3의 ① 응답자만] 민간체육시설 이용 시 다음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여기서의 민간체육시설에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수영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항목	예	아니오
(1) 체육활동을 위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체육활동을 위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3) 체육활동을 위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이 출입하기 위한 시설(휠체어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장애인전용주차장 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4) 체육활동을 위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했으나,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눈치가 보여)로 나 스스로 시설이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	①	②

B4.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등 상관없이 당신이 평소 운동하는 시설은 당신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여 갈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이내 ③ 2시간 이내 ④ 2시간 이상

C. 건강권과 재생산권

C1. 당신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1) 나는 몸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지도자(감독, 코치 등)에게 휴식이나 휴가를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여성] 나는 생리로 몸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지도자에게 휴식이나 (생리)휴가를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C1-1. [C1의 (1), (2)에서 ①,②응답자만] 휴식이나 휴가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말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② 말해서 휴식/휴가를 받은 동료가 없기 때문에
③ 운동선수라면 참아야 하므로 ④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⑤ 기타(_____)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C2. 당신은 다음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예	아니오	비해당
(1) 나는 몸이 아파서 지도자(감독, 코치 등)에게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가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여성] 나는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도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경기 출전이나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3) [여성] 나는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도자에게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가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4) [여성] 나는 경기출전이나 중요한 시합을 위해 피임약을 먹고 생리일을 미룬 적이 있다	①	②	③

D. 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D1. 당신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기력 향상이나 팀워크를 위해 체벌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선수는 지도자(감독, 코치 등)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후배는 선배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D2. 당신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휴식을 포함한 운동생활 전체), 감독이나 코치, 운동부 내 남자 혹은 여자 선후배, 동료 선수들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	예	아니오
(1) 나는 운동을 하면서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2) 나는 운동을 하면서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나는 운동을 하면서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4) 나는 운동부 단톡방에서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5) 나는 운동을 하면서 놀림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6) 나는 운동부 단톡방에서 놀림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7) 나는 운동을 하면서 나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훈련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8) 나는 운동을 하면서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이나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다	①	②
(9) 나는 운동을 하면서 억지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10) 나는 운동을 하면서 다른 선수의 과제(숙제)를 대신해 줄 것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11) 나는 운동을 하면서 강제로 흡연이나 음주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12) 나는 운동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체벌로 경기 출전이나 훈련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①	②
(13) 나는 운동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체벌로 혼자 빈 공간(교실, 운동부실, 라커룸 등)에 가둬진 적이 있다	①	②

☞D2에서 모두 ②응답한 경우는 D4로 이동

[D2에서 하나라도 ①응답한 경우는 D3~D5-1까지 응답]

D3. 당신에게 이러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감독/코치
②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의료/행정스태프 등)
③ 선배 선수
④ 동료/후배 선수
⑤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⑥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⑦ 경기보조자(운동조력자)
⑧ 시설관계자
⑨ 기타(_____)

D3-1. 당신에게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의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D-2. 당신이 폭력을 경험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경기장
② 훈련장
③ 합숙소
④ 전지훈련 숙소
⑤ 지도자실(지도자 숙소 포함)
⑥ 운동부실
⑦ 라커룸/샤워실
⑧ 회식자리
⑨ 이동차량
⑩ 기타(_____)

D3-3. 당신이 폭력을 경험한 이후 주변 가족이나 동료, 외부 기관(경찰서,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D3-1-1로]
② 없다[☞D3-3-2로]

D3-3-1. [D3-3의 ① 응답자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등)이나 친인척
② 친구 및 지인
③ 운동부 내 감독 등 코칭스태프
④ 운동부 내 선후배, 동료
⑤ 운동부 내 상담센터
⑥ 체육회 등 체육단체
⑦ 외부 상담센터
⑧ 외부 수사기관(경찰 등)
⑨ 지자체 및 정부기관
⑩ 기타(_____)

D3-3-2. [D3-3의 ② 응답자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나의 장애(언어, 신체 등)로 인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서
②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서
③ 보복이 두려워서
④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⑤ 불만을 얘기하면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
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⑦ 상대방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⑧ 비난이나 왕따가 걱정되어서
⑨ 알려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⑩ 도움을 요청할 마땅한 곳을 몰라서
⑪ 내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⑫ 기타(_____)

D3-4. 당신이 폭력을 가장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혹은 성인일 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3-5. 당신은 이런 폭력을 지금 운동부에서도 경험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D4로]

D3-5-1. 지금 운동부에서는 폭력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① 가끔 발생한다 ② 종종 발생한다 ③ 자주 발생한다

D4. 같이 운동을 하는 동료(선배, 동기, 후배 등)가 이와 같은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E.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D4-1. 동료에게 이러한 폭력 행위를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감독/코치
②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의료/행정스태프 등)
③ 선배 선수
④ 동료/후배 선수
⑤ 타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⑥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⑦ 경기보조자(운동조력자)
⑧ 시설관계자
⑨ 기타(_____)

D4-2. 동료에게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③ 잘 모름

D4-3. 동료의 폭력 피해를 보거나 들은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경기장 ② 훈련장 ③ 합숙소
④ 전지훈련 숙소 ⑤ 지도자실(지도자 숙소 포함) ⑥ 운동부실
⑦ 라커룸/샤워실 ⑧ 회식자리 ⑨ 이동차량
⑩ 기타(_____)

D4-4. 지금 운동부에서는 동료가 폭력 피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① 가끔 발생한다 ② 종종 발생한다 ③ 자주 발생한다

E.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E1. 당신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휴식을 포함한 운동생활 전체), 감독이나 코치, 운동부 내 남자 혹은 여자 선후배, 동료 선수들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	예	아니오
(1) 누군가 나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한 적이 있다	①	②
(2) 누군가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있다	①	②
(3) 누군가 내 신체 부위(가슴, 엉덩이 등의 크기나 모양 등)에 대해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4) 누군가 나에게 야한 말을 하거나 내가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경험을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5) 누군가 이상한 시선으로 내 몸을 쳐다본 적이 있다	①	②
(6)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야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	①	②
(7) 누군가 내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 등 벌거벗은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진 적이 있다	①	②
(8) 누군가 내 허락 없이 손, 머리, 어깨, 허벅지, 엉덩이 등 내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	①	②

내용	예	아니오
(9)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나를 자신의 옆이나 무릎위에 앉히거나,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①	②
(10) 내가 싫다고 했음에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전화, 카톡, 이메일, 편지 등을 계속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11) 누군가 나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기분 나쁠 정도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12) 누군가 나에게 어깨 주무르기, 팔베개, 마사지 등을 강요한 적이 있다	①	②
(13) 누군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자신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	①	②
(14)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에게 뽀뽀나 키스,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15) 누군가 내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16) 누군가 지나가면서 혹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내 몸의 중요한 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	①	②
(17) 누군가 나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①	②
(18) 누군가 나에게 경기출전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①	②
(19)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의 입이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20)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의 성기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던 적이 있다	①	②
(21) 누군가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적이 있다	①	②
(22) 누군가 내 동의 없이 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적이 있다	①	②

☞E1에서 모두 ②응답한 경우는 E2-8로 이동

[E1에서 하나라도 ①응답한 경우는 E2~E2-7-3까지 응답]

E2. 당신에게 이러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감독/코치 ②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의료/행정스태프 등)
③ 선배 선수 ④ 동료/후배 선수
⑤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⑥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⑦ 경기보조자(운동조력자) ⑧ 시설관계자
⑨ 기타(_____)

E2-1. 당신에게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성별의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E2-2. 당신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 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경기장 ② 훈련장 ③ 합숙소
④ 전지훈련 숙소 ⑤ 지도자실(지도자 숙소 포함) ⑥ 운동부실
⑦ 라커룸/샤워실 ⑧ 회식자리 ⑨ 이동차량
⑩ 기타(_____)

E2-3. 당신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가장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혹은 성인일 때

E2-4. 당신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지금 운동부에서도 경험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E2-6로]

E2-5. 지금 운동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① 가끔 발생한다 ② 종종 발생한다 ③ 자주 발생한다

※ 다음 문항은 당신이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피해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E2-6.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피해를 기준으로) 당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① 어떤 말이나 행동(저항)도 하지 않았다[☞E2-6-1로] ② 싫다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③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싫다는 불만표시는 했다 ④ 화를 내고 즉시 자리를 떠났다
⑤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⑥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모르는 척 했다[☞E2-6-1로] ⑦ 기타(_____)

E2-6-1. [E2-6의 ①,⑥ 응답자만] 그럼, 아무런 말이나 행동(저항)을 하지 않았거나 참고 모른 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그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②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③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④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⑥ 기타(_____)

E2-7. 이런 성희롱·성폭력 경험 이후 주변 가족이나 동료, 외부 기관(경찰서,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운동부 내부 기관(성폭력전담기구, 상담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등)에 신고했다[☞E2-7-1로]
② 외부 기관(경찰서,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 신고했다[☞E2-7-1로]
③ 지도자에게는 알렸다[☞E2-7-2로]
④ 운동선수 동료(선배, 후배 등)에게 알렸다[☞E2-7-2로]
⑤ 가족 및 지인에게 알렸다[☞E2-7-3로]
⑥ 기타(_____)

[E2-7의 ①,②응답한 경우]

E2-7-1. 내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운동부 내부 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다 ② 지도자가 알려주었다
③ 운동부 동료(선후배)가 알려주었다 ④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⑤ 기타(_____)

[E2-7의 ①~④응답한 경우]

E2-7-2. 당신은은 피해 내용을 내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지도자 및 동료들에게 알린

이후 해당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음과 같은 2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내외부 기관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거나, 나의 사건 접수를 운동부 지도자와 동료에게 내 허락도 없이 알렸다
② 내외부 기관에서 나에 대해 조사하면서 기분 나쁜 질문을 하거나, 나를 오히려 비난하고 의심하였다
③ 내외부 기관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④ 가해자가 운동부 지도자 및 동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피해 상황을 다르게 알렸다(진술했다)
⑤ 가해자가 직접 혹은 동료들을 통해 나를 따돌리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⑥ 동료들이 나의 사생활을 캐거나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⑦ 동료들이 나에게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⑧ 기타(_____)

⑨ 2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 (⑨번은 중복응답 제외)

[E2-7의 ③~⑤응답한 경우]

E2-7-3. 내외부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장애로 인해 내외부 기관에 혼자 갈 수 없는데, 동행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② 내외부 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③ 내부에 성희롱·성폭력을 담당하는 부서(고충상담기구)가 없어서
④ 비밀보장이 안될 것 같아서
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⑥ 가해자와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⑦ 운동부 내에 소문이 날까봐
⑧ 기타(_____)

[D2와 E1에서 하나라도 ①응답한 경우]

E2-8. 당신이 운동부에서 경험한 과거의 폭력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최근 한 달 동안 당신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그 피해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밀려온다	①	②	③	④
2) 그 피해에 대한 꿈을 꾸거나 깊이 잠들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3) 그 피해 이후 신경이 예민하고 쉽게 놀란다	①	②	③	④
4) 그 피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거나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5) 그 피해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접하면 땀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	①	②	③	④
6) 그 피해를 기억하게 하는 것(사건 장소, 상황 등)을 일부러 피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7) 의도하지 않아도 그 피해가 생각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8) 그 피해가 생각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9) 그 피해가 생각날 때면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그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E3. 같이 운동을 하는 동료(선배, 동기, 후배 등)가 이와 같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F1로 이동]

E3-1. 동료에게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감독/코치　　②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의료/행정스태프 등)
③ 선배 선수　　④ 동료/후배 선수
⑤ 타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⑥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⑦ 경기보조자(운동조력자)　　⑧ 시설관계자
⑨ 기타(_____)

E3-2.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다른 동료에게 했던 사람은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① 남성 ② 여성 ③ 잘 모름

E3-3. 동료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경기장 ② 훈련장 ③ 합숙소
④ 전지훈련 숙소 ⑤ 지도자실(지도자 숙소 포함) ⑥ 운동부실
⑦ 락커룸(샤워실) ⑧ 회식자리 ⑨ 이동차량
⑩ 기타(_____)

E3-4. 지금 운동부에서는 동료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① 가끔 발생한다 ② 종종 발생한다 ③ 자주 발생한다

F. 성폭력 인식 및 예방교육

F1. 다음의 내용에 대해 당신의 생각과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사무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는 것은 성희롱이다	①	②
(2) 교사(지도자)가 선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성희롱이다	①	②
(3) 성희롱 피해는 여성만 해당되며, 남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①	②
(4) 강제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①	②
(5)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	①	②

F2.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F2-1로] ② 아니오

F2-1. [F2의 ① 응답자만]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무엇이고, 피해 시 대처 방법(신고 등)을 아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F3으로] ④ 매우 도움 됨[☞F3으로]

F2-1-1. [F2의 ③,④ 응답자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 내용이 어려워서
② 교육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③ 교육자(강사)의 강의 태도(발음, 속도, 자세 등)가 좋지 않아서
④ 교육 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아서
⑤ 교육이 형식적 이어서
⑥ 기타(_____)

F3. 장애인 운동부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F3-1로] ② 별로 그렇지 않다[☞F3-1로]
③ 약간 그렇다[☞다음영역으로] ④ 매우 그렇다[☞다음영역으로]

F3-1. [F3의 ①,② 응답자만]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애인 선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
② 비장애인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율이 낮기 때문에
③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④ 장애인 선수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⑤ 운동(훈련)을 하다보면 신체 접촉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⑥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선수들 간의 위계관계, 상명하복의 스포츠 문화 때문에
⑦ 기타(_____)

G. 응답자 인적 사항

G2. 당신의 장애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안면장애 ⑦ 신장장애 ⑧ 심장장애 ⑨ 간장애 ⑩ 호흡기장애
⑪ 장루·요루장애 ⑫ 뇌전증장애 ⑬ 지적장애 ⑭ 자폐성장애 ⑮ 정신장애
⑯ 기타(_____)

G3. 당신의 장애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① 경증(과거 등급기준 4~6급) ② 중증 이상(과거 등급기준 1~3급)

G4. 당신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G5. 당신의 현재 운동 종목은 무엇인가요?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많이 시간을 들여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검도 ② 골프 ③ 농구 ④ 당구
⑤ 댄스스포츠 ⑥ 론볼 ⑦ 롤러스포츠 ⑧ 바둑
⑨ 바이애슬론 ⑩ 배구 ⑪ 배드민턴 ⑫ 보치아
⑬ 볼링 ⑭ 빙상 ⑮ 사격 ⑯ 사이클
⑰ 수영 ⑱ 수중 - 핀수영 ⑲ 스노보드 ⑳ 스키
㉑ 승마 ㉒ 아이스하키 ㉓ 알파인스키 ㉔ 야구/소프트볼
㉕ 양궁 ㉖ 역도 ㉗ 요트 ㉘ 유도
㉙ 육상 ㉚ 조정 ㉛ 철인3종 ㉜ 축구
㉝ 크로스컨트리 ㉞ 탁구 ㉟ 태권도 ㊱ 휠체어 럭비
㊲ 휠체어 컬링 ㊳ 휠체어 테니스 ㊴ 휠체어 펜싱 ㊵ 기타(_____)

G6. 당신은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까? _____년도부터

※ 지금까지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성적불쾌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는 행위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 선수의 피해 경험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향후 심층 인터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시길 희망하시는 분은 휴대전화번호(보호자 번호도 가능)를 남겨주십시오.

※ 심층 인터뷰 진행 시, 감사의 의미로 **1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층 인터뷰 참여를 위한 귀하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국가인권위원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나.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심층 인터뷰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조사완료 및 사례금 지급(계좌입금) 시까지이며, 그 이후 즉시 폐기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 **조사 종료**

① 동의함을 선택하신 경우, 심층 인터뷰 참여를 위해 귀하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 인터뷰 참여 안내는 추후 입력해 주신 휴대전화번호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본 조사 관련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층 인터뷰 완료 후 연락처는 일괄 파기되어 개인 정보는 보호됩니다.

□ 성 명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운동, 훈련 등 선수 생활 중 성적불쾌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는 행위를 경험한 경우, 다음의 기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K-Hub)]

<부록 2>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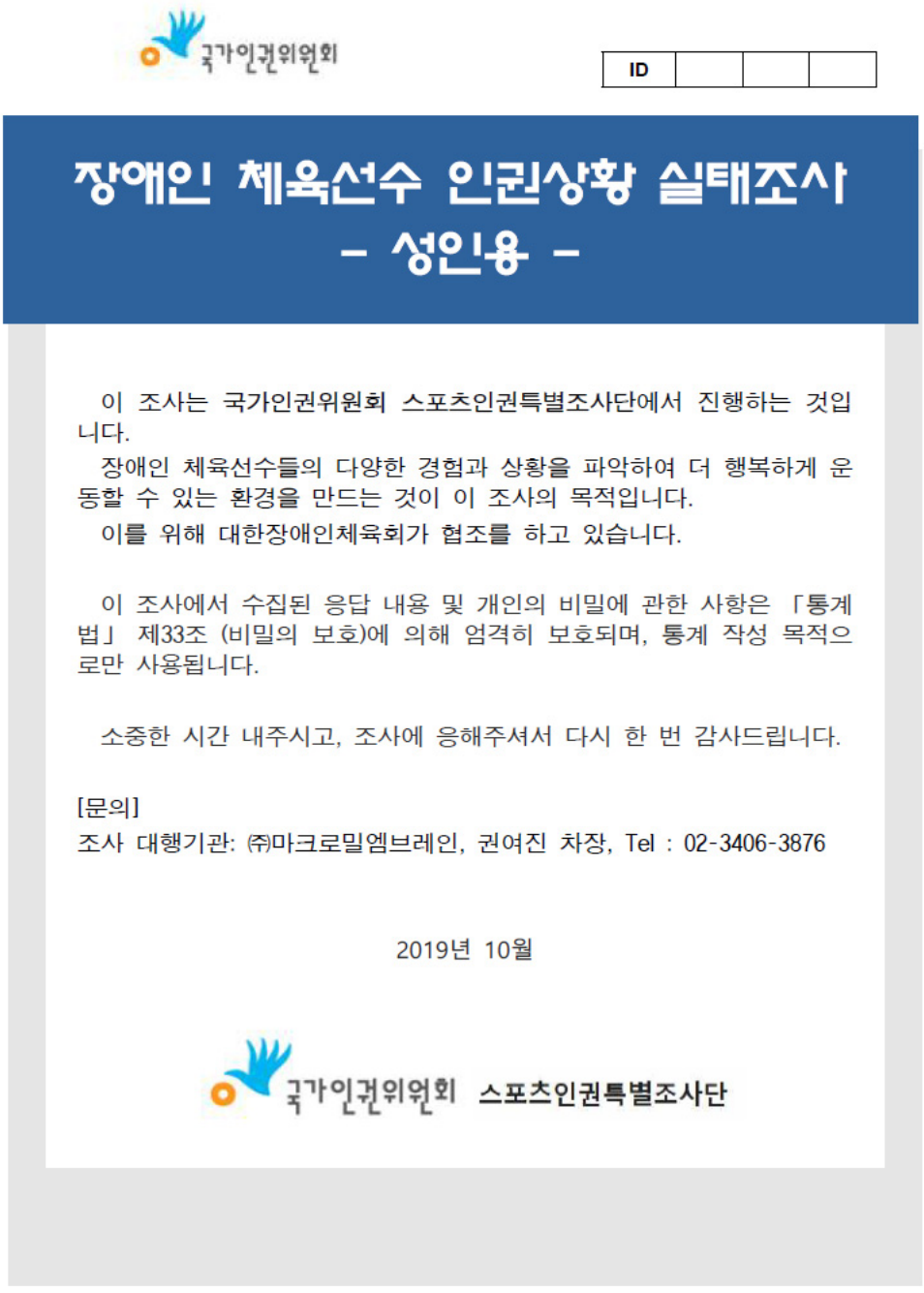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ID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성인용 -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다양한 경험과 상황을 파악하여 더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조사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조사 대행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 권여진 차장, Tel : 02-3406-3876

201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SQ. 선문

SQ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당신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_____년
① 2007년~ (초등학생) [☞ 초등학생용 설문지로]
② 2001~2001년 (중고등학생) [☞ 중고등학생용 설문지로]
③ ~2000년 성인(대학생/대학원생 포함) [☞1-1로]

S1-1. [1의 ④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입니까?**
① 예 [☞A. 학습권 A1로] ② 아니오 [☞B. 이동권 및 접근권 B1로]

A. 학습권 (대학(원)생만 응답)

A1. 귀하는 대회출전이나 시합 준비(훈련) 때문에 학과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2로] ② 가끔 있다 ③ 종종 있다 ④ 항상 있다

A1-1. [A1의 ②~④번 응답자] **학과수업을 빠지는 것은 자발적인 이유인가요?**
① 나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② 감독이나 코치 등 주변의 강요나 압박 때문이다
③ 부모의 결정 때문이다

A1-2. [A1의 ②~④번 응답자] **그렇다면, 어떻게 학과수업을 따라 갑니까?**
귀하에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학교/학과에서 보강수업을 해 준다[☞ A1-3으로]
② 학교/학과에서 리포트 제출 등으로 학과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해 준다[☞ A1-3으로]
③ 나 스스로 학습(보강)한다
④ 기타(_____)

A1-3. [A1-2의 ①,②번 응답자만] **학교/학과의 보강 및 리포트 제출이 학교수업을 따라 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약간 도움이 된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A2. 귀하는 운동과 공부(학과수업)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A2-1로] ② 약간/다소 필요하다[☞A2-1로]
③ 별로 필요 없다[☞A2-2로] ④ 전혀 필요 없다[☞A2-2로]

A2-1. [A2의 ①,② 응답자만] **운동과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은퇴 후(운동을 그만 둔 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②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③ 대회 출전을 위한 학력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④ 친구관계를 위해서
⑤ 실업팀 등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⑥ 기타(_____)

A2-2. [A2의 ③,④ 응답자만]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운동과 훈련에 방해가 되므로 ② 신체적으로 피곤해서
③ 코치, 감독이 원하지 않으므로 ④ 대회 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⑤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 ⑥ 기타(_____)

A3.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운동을 하십니까?

① 1~2시간 이내 ② 3~4시간 ③ 5~6시간 ④ 7~8시간 ⑤ 8시간 이상

A4. 귀하는 평소 주말(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운동을 하십니까?

① 전혀 안 한다 ② 시합이 있을 때만 한다 ③ 시합이 없어도 한다

A5. 귀하는 평소 운동시간이 일상생활(학업과 직장생활, 치료활동 등)에 지장(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는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B. 이동권 및 접근권

B1. 귀하가 주로 훈련(운동)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집안 ②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③ 복지관, 장애인시설(부속시설 포함) ④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⑤ 공공(국립/시립/구립) 체육 시설 ⑥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⑦ 민간 체육 시설 ⑧ 이천훈련원 등 선수촌
⑨ 기타(_____)

B2. 귀하가 훈련장을 갈 때, 주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일반버스 [☞B2-1로] ② 일반택시[☞B2-1로]
③ 지하철/전철[☞B2-1로] ④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B2-1로]
⑤ 지자체/단체 특장버스[☞B2-1로] ⑥ 복지관버스[☞B2-1로]
⑦ 셔틀형 복지버스[☞B2-1로] ⑧ 자가용
⑨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⑩ 자전거/오토바이
⑪ 도보(걸어간다) ⑫ 기타(_____)

B2-1. [B2의 ①~⑦ 응답자만] **위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불편함은 없습니까?**

① 전혀 불편하지 않다[☞B3으로] ② 별로 불편하지 않다[☞B3으로]
③ 약간 불편하다 ④ 매우 불편하다

B2-2. [B2-1의 ③,④응답자만]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저상버스가 많이 없어서 ② 콜택시 대기 시간이 길어서
③ 집이나 훈련장 인근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④ 운동에 필요한 장비를 실어주지 않아서
⑤ 기타(_____)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B3. 귀하가 훈련장을 갈 때, 누가 동행을 합니까?

① 배우자 ② 가족(아들/딸/부모 등) ③ 지인/친구
④ 동료(선수) ⑤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B3-1로] ⑥ 기타(____)
⑦ 누구의 동행 없이 혼자(스스로)

B3-1. [B3의 ⑤ 응답자만]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를 고용하고 있다면, 귀하가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제외)**

월 _____만원

B3-2. [B3의 ⑤ 응답자만]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를 고용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귀하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③ 약간 부담된다 ④ 매우 부담된다

B4. 귀하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종목 시설 등 포함)을 이용해 본적 있습니까?

① 있다[☞B4-1로] ② 없다

B4-1. [B4의 ① 응답자만]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이용 중에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① 전혀 불편하지 않다 ② 별로 불편하지 않다
③ 다소 불편하다[☞B4-4-1로] ④ 매우 불편하다[☞B4-1-1로]

B4-1-1. [B4-1의 ③,④ 응답자만]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이용이 불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애인용 운동용품, 기구, 장비가 부족해서 ② 비장애인이 많아서
③ 편의시설(샤워실 등)이 부족해서 ④ 비용이 비싸서
⑤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⑤ 기타(_____)

B5. 귀하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B5-1로] ② 없다

B5-1. [B5의 ① 응답자만]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다음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예	아니오
(1)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육상경기장,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수영장 등)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3)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이 출입하기 위한 시설(휠체어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장애인전용주차장 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4)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했으나,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눈치가 보여)로 나 스스로 시설이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	①	②

B6. 귀하는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B6-1로] ② 없다

B6-1. [B6의 ① 응답자만] **민간체육시설 이용 시 다음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여기서의 민간체육시설에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수영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항목	예	아니오
(1) 체육활동을 위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체육활동을 위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3) 체육활동을 위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이 출입하기 위한 시설(휠체어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장애인전용주차장 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4) 체육활동을 위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했으나,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눈치가 보여)로 나 스스로 시설이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	①	②

B7.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등 상관없이 귀하가 평소 운동하는 시설은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갈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이내 ③ 2시간 이내 ④ 2시간 이상

C. 건강권과 재생산권

C1.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1) 나는 몸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지도자(감독, 코치 등)에게 휴식이나 휴가를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여성] 나는 생리로 몸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지도자에게 휴식이나 (생리)휴가를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C1-1. [C1의 (1), (2)에서 ①,②응답자만] **휴식이나 휴가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말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② 말해서 휴식/휴가를 받은 동료가 없기 때문에
③ 운동선수라면 참아야 하므로 ④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⑤ 기타(_____)

C2. 귀하는 다음의 상황에 대해 경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예	아니오	비해당
(1) 나는 몸이 아파서 지도자(감독, 코치 등)에게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가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여성] 나는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도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경기 출전이나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3) [여성] 나는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도자에게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가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4) [여성] 나는 경기출전이나 중요한 시합을 위해 피임약을 먹고 생리일을 미룬 적이 있다	①	②	③
(5) [여성] 나는 경기출전이나 중요한 시합을 위해 임신계획을 미룬 적이 있다	①	②	③
(6) [여성] 나는 임신을 했지만, 운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할까봐 낙태를 고민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D. 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D1.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기력 향상이나 팀워크를 위해 체벌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선수는 지도자(감독, 코치 등)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후배는 선배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D2. 귀하는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휴식을 포함한 운동생활 전체), 감독이나 코치, 운동부 내 남자 혹은 여자 선후배, 동료 선수들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	예	아니오
(1) 나는 운동을 하면서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2) 나는 운동을 하면서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나는 운동을 하면서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4) 나는 운동부 단톡방에서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5) 나는 운동을 하면서 놀림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6) 나는 운동부 단톡방에서 놀림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7) 나는 운동을 하면서 나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훈련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8) 나는 운동을 하면서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이나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다	①	②
(9) 나는 운동을 하면서 억지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10) 나는 운동을 하면서 다른 선수의 과제(숙제)를 대신해 줄 것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11) 나는 운동을 하면서 강제로 흡연이나 음주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12) 나는 운동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체벌로 경기 출전이나 훈련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①	②
(13) 나는 운동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체벌로 혼자 빈 공간(교실, 운동부실, 라커룸 등)에 가둬진 적이 있다	①	②

☞D2에서 모두 ②응답한 경우는 D4로 이동

[D2에서 하나라도 ①응답한 경우는 D3~D5-1까지 응답]

D3. 귀하에게 이러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감독/코치
②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의료/행정스태프 등)
③ 선배 선수
④ 동료/후배 선수
⑤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⑥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⑦ 경기보조자(운동조력자)
⑧ 시설관계자
⑨ 기타(_____)

D3-1. 귀하에게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의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D-2. 귀하가 폭력을 경험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경기장 ② 훈련장 ③ 합숙소
④ 전지훈련 숙소 ⑤ 지도자실(지도자 숙소 포함) ⑥ 운동부실
⑦ 라커룸/샤워실 ⑧ 회식자리 ⑨ 이동차량
⑩ 기타(_____)

D3-3. 귀하가 폭력을 경험한 이후 주변 가족이나 동료, 외부 기관(경찰서,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D3-1-1로] ② 없다[☞D3-3-2로]

D3-3-1. [D3-3의 ① 응답자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등)이나 친인척 ② 친구 및 지인
③ 운동부 내 감독 등 코칭스태프 ④ 운동부 내 선후배, 동료
⑤ 운동부 내 상담센터 ⑥ 체육회 등 체육단체
⑦ 외부 상담센터 ⑧ 외부 수사기관(경찰 등)
⑨ 지자체 및 정부기관 ⑩ 기타(_____)

D3-3-2. [D3-3의 ② 응답자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나의 장애(언어, 신체 등)로 인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서
②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서
③ 보복이 두려워서
④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⑤ 불만을 얘기하면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
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⑦ 상대방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⑧ 비난이나 왕따가 걱정되어서
⑨ 알려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⑩ 도움을 요청할 마땅한 곳을 몰라서
⑪ 내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⑫ 기타(_____)

D3-4. 귀하가 폭력을 가장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혹은 성인일 때

D3-5. 귀하는 이런 폭력을 지금 운동부에서도 경험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D4로]

D3-5-1. 지금 운동부에서는 폭력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① 가끔 발생한다 ② 종종 발생한다 ③ 자주 발생한다

D4. 같이 운동을 하는 동료(선배, 동기, 후배 등)가 이와 같은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E.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4-1. 동료에게 이러한 폭력 행위를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감독/코치 ②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의료/행정스태프 등)
③ 선배 선수 ④ 동료/후배 선수
⑤ 타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⑥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⑦ 경기보조자(운동조력자) ⑧ 시설관계자
⑨ 기타(_____)

D4-2. 동료에게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③ 잘 모름

D4-3. 동료의 폭력 피해를 보거나 들은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경기장 ② 훈련장 ③ 합숙소
④ 전지훈련 숙소 ⑤ 지도자실(지도자 숙소 포함) ⑥ 운동부실
⑦ 라커룸/샤워실 ⑧ 회식자리 ⑨ 이동차량
⑩ 기타(_____)

D4-4. 지금 운동부에서는 동료가 폭력 피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① 가끔 발생한다 ② 종종 발생한다 ③ 자주 발생한다

E.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E1. 귀하는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휴식을 포함한 운동생활 전체), 감독이나 코치, 운동부 내 남자 혹은 여자 선후배, 동료 선수들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	예	아니오
(1) 누군가 나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한 적이 있다	①	②
(2) 누군가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있다	①	②
(3) 누군가 내 신체 부위(가슴, 엉덩이 등의 크기나 모양 등)에 대해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4) 누군가 나에게 야한 말을 하거나 내가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경험을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5) 누군가 이상한 시선으로 내 몸을 쳐다본 적이 있다	①	②
(6)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야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	①	②
(7) 누군가 내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 등 벌거벗은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진 적이 있다	①	②
(8) 누군가 내 허락 없이 손, 머리, 어깨, 허벅지, 엉덩이 등 내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	①	②
(9)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나를 자신의 옆이나 무릎위에 앉히거나,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①	②
(10) 내가 싫다고 했음에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전화, 카톡, 이메일, 편지 등을 계속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11) 누군가 나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기분 나쁠 정도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12) 누군가 나에게 어깨 주무르기, 팔베개, 마사지 등을 강요한 적이 있다	①	②
(13) 누군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자신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	①	②
(14)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에게 뽀뽀나 키스,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15) 누군가 내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16) 누군가 지나가면서 혹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내 몸의 중요한 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	①	②
(17) 누군가 나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①	②

내용	예	아니오
(18) 누군가 나에게 경기출전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①	②
(19)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의 입이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20)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의 성기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던 적이 있다	①	②
(21) 누군가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적이 있다	①	②
(22) 누군가 내 동의 없이 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적이 있다	①	②

☞E1에서 모두 ②응답한 경우는 E2-8로 이동

[E1에서 하나라도 ①응답한 경우는 E2~E2-7-3까지 응답]

E2. 귀하에게 이러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감독/코치 ②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의료/행정스태프 등)
③ 선배 선수 ④ 동료/후배 선수
⑤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⑥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⑦ 경기보조자(운동조력자) ⑧ 시설관계자
⑨ 기타(_____)

E2-1. 귀하에게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성별의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E2-2. 귀하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 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경기장 ② 훈련장 ③ 합숙소
④ 전지훈련 숙소 ⑤ 지도자실(지도자 숙소 포함) ⑥ 운동부실
⑦ 라커룸/샤워실 ⑧ 회식자리 ⑨ 이동차량
⑩ 기타(_____)

E2-3. 귀하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가장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혹은 성인일 때

E2-4. 귀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지금 운동부에서도 경험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E2-6로]

E2-5. 지금 운동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① 가끔 발생한다 ② 종종 발생한다 ③ 자주 발생한다

※ 다음 문항은 귀하가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피해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E2-6.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피해를 기준으로) 당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① 어떤 말이나 행동(저항)도 하지 않았다[☞E2-6-1로]
② 싫다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③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싫다는 불만표시는 했다
④ 화를 내고 즉시 자리를 떠났다
⑤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⑥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모르는 척 했다[☞E2-6-1로]
⑦ 기타(_____)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E2-6-1. [E2-6의 ①,⑥ 응답자만] **그럼, 아무런 말이나 행동(저항)을 하지 않았거나 참고 모른 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그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②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③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④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⑥ 기타(_____)

E2-7. 이런 성희롱·성폭력 경험 이후 주변 가족이나 동료, 외부 기관(경찰서,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운동부 내부 기관(성폭력전담기구, 상담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등)에 신고했다 [☞E2-7-1로]
② 외부 기관(경찰서,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 신고했다[☞E2-7-1로]
③ 지도자에게는 알렸다[☞E2-7-2로]
④ 운동선수 동료(선배, 후배 등)에게 알렸다[☞E2-7-2로]
⑤ 가족 및 지인에게 알렸다[☞E2-7-3로]
⑥ 기타(_____)

[E2-7의 ①,②응답한 경우]

E2-7-1. 내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운동부 내부 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다 ② 지도자가 알려주었다
③ 운동부 동료(선후배)가 알려주었다 ④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⑤ 기타(_____)

[E2-7의 ①~④응답한 경우]

E2-7-2. 귀하는 피해 내용을 내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지도자 및 동료들에게 알린 이후 해당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음과 같은 2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내외부 기관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거나, 나의 사건 접수를 운동부 지도자와 동료에게 내 허락도 없이 알렸다
② 내외부 기관에서 나에 대해 조사하면서 기분 나쁜 질문을 하거나, 나를 오히려 비난하고 의심하였다
③ 내외부 기관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④ 가해자가 운동부 지도자 및 동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피해 상황을 다르게 알렸다(진술했다)
⑤ 가해자가 직접 혹은 동료들을 통해 나를 따돌리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⑥ 동료들이 나의 사생활을 캐거나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⑦ 동료들이 나에게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⑧ 기타(_____)
⑨ 2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 (⑨번은 중복응답 제외)

[E2-7의 ③~⑤응답한 경우]

E2-7-3. 내외부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장애로 인해 내외부 기관에 혼자 갈 수 없는데, 동행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② 내외부 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③ 내부에 성희롱·성폭력을 담당하는 부서(고충상담기구)가 없어서
④ 비밀보장이 안될 것 같아서
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⑥ 가해자와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⑦ 운동부 내에 소문이 날까봐
⑧ 기타(_____)

[D2와 E1에서 하나라도 ①응답한 경우]

E2-8. 귀하가 운동부에서 경험한 과거의 폭력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최근 한 달 동안 귀하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그 피해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밀려온다	①	②	③	④
2) 그 피해에 대한 꿈을 꾸거나 깊이 잠들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3) 그 피해 이후 신경이 예민하고 쉽게 놀란다	①	②	③	④
4) 그 피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거나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5) 그 피해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접하면 땀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	①	②	③	④
6) 그 피해를 기억하게 하는 것(사건 장소, 상황 등)을 일부러 피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7) 의도하지 않아도 그 피해가 생각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8) 그 피해가 생각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9) 그 피해가 생각날 때면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그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E3. 같이 운동을 하는 동료(선배, 동기, 후배 등)가 이와 같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F1로 이동]

E3-1. 동료에게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감독/코치　　②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의료/행정스태프 등)
③ 선배 선수　　④ 동료/후배 선수
⑤ 타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⑥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⑦ 경기보조자(운동조력자)　　⑧ 시설관계자
⑨ 기타(_____)

E3-2.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다른 동료에게 했던 사람은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③ 잘 모름

E3-3. 동료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경기장 ② 훈련장 ③ 합숙소
④ 전지훈련 숙소 ⑤ 지도자실(지도자 숙소 포함) ⑥ 운동부실
⑦ 락커룸(샤워실) ⑧ 회식자리 ⑨ 이동차량
⑩ 기타(_____)

E3-4. 지금 운동부에서는 동료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① 가끔 발생한다 ② 종종 발생한다 ③ 자주 발생한다

F. 성폭력 인식 및 예방교육

F1. 다음의 내용에 대해 당신의 생각과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사무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는 것은 성희롱이다	①	②
(2) 교사(지도자)가 선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성희롱이다	①	②
(3) 성희롱 피해는 여성만 해당되며, 남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①	②
(4) 강제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①	②
(5)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	①	②

F2.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F2-1로] ② 아니오

F2-1. [F2의 ① 응답자만]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무엇이고, 피해 시 대처 방법(신고 등)을 아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F3으로] ④ 매우 도움 됨[☞F3으로]

F2-1-1. [F2의 ③,④ 응답자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 내용이 어려워서
② 교육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③ 교육자(강사)의 강의 태도(발음, 속도, 자세 등)가 좋지 않아서
④ 교육 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아서
⑤ 교육이 형식적 이어서
⑥ 기타(_____)

F3. 장애인 운동부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F3-1로] ② 별로 그렇지 않다[☞F3-1로]
③ 약간 그렇다[☞다음영역으로] ④ 매우 그렇다[☞다음영역으로]

F3-1. [F3의 ①,② 응답자만]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애인 선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
② 비장애인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율이 낮기 때문에
③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④ 장애인 선수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⑤ 운동(훈련)을 하다보면 신체 접촉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⑥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선수들 간의 위계관계, 상명하복의 스포츠 문화 때문에
⑦ 기타(_____)

G. 응답자 인적 사항

G1.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미혼/비혼 ② 기혼/사실혼 ③ 사별/이혼/별거

G2. 귀하의 장애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안면장애 ⑦ 신장장애 ⑧ 심장장애 ⑨ 간장애 ⑩ 호흡기장애
⑪ 장루·요루장애 ⑫ 뇌전증장애 ⑬ 지적장애 ⑭ 자폐성장애 ⑮ 정신장애
⑯ 기타(_____)

G3. 귀하의 장애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① 경증(과거 등급기준 4~6급) ② 중증 이상(과거 등급기준 1~3급)

G4.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G5. 귀하의 현재 운동 종목은 무엇인가요?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많이 시간을 들여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검도 ② 골프 ③ 농구 ④ 당구
⑤ 댄스스포츠 ⑥ 론볼 ⑦ 롤러스포츠 ⑧ 바둑
⑨ 바이애슬론 ⑩ 배구 ⑪ 배드민턴 ⑫ 보치아
⑬ 볼링 ⑭ 빙상 ⑮ 사격 ⑯ 사이클
⑰ 수영 ⑱ 수중 - 핀수영 ⑲ 스노보드 ⑳ 스키
㉑ 승마 ㉒ 아이스하키 ㉓ 알파인스키 ㉔ 야구/소프트볼
㉕ 양궁 ㉖ 역도 ㉗ 요트 ㉘ 유도
㉙ 육상 ㉚ 조정 ㉛ 철인3종 ㉜ 축구
㉝ 크로스컨트리 ㉞ 탁구 ㉟ 태권도 ㊱ 휠체어 럭비
㊲ 휠체어 컬링 ㊳ 휠체어 테니스 ㊴ 휠체어 펜싱 ㊵ 기타(_____)

G6. 귀하는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까? _____년도부터

※ 지금까지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성적불쾌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는 행위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 선수의 피해 경험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향후 심층 인터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시길 희망하시는 분은 휴대전화번호(보호자 번호도 가능)를 남겨주십시오.

※ 심층 인터뷰 진행 시, 감사의 의미로 **1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층 인터뷰 참여를 위한 귀하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국가인권위원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나.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심층 인터뷰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조사완료 및 사례금 지급(계좌입금) 시까지이며, 그 이후 즉시 폐기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 **조사 종료**

① 동의함을 선택하신 경우, 심층 인터뷰 참여를 위해 귀하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 인터뷰 참여 안내는 추후 입력해 주신 휴대전화번호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본 조사 관련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층 인터뷰 완료 후 연락처는 일괄 파기되어 개인 정보는 보호됩니다.

□ 성　　명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운동, 훈련 등 선수 생활 중 성적불쾌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는 행위를 경험한 경우, 다음의 기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K-Hub)]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 인쇄일 | 2019년 12월 4일
| 발행일 | 2019년 12월 6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특별조사팀 02)2125-9866
| F A X | 02)2125-0934
| 제 작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代)

ISBN: 978-89-6114-750-7 93690 비매품